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 제 3 권

### [ 농축산물 생산·유통편 ]

1. 쌀·밭 작물생산      2. 원예·특작생산
3. 농산물유통·가공 및 수출  
    가. 농산물 수급 및 판매·수출  
    나.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4. 축산물 생산·유통  
    가. 사육기반조성  
    나. 축산물수급 및 유통

농림부 도서실



0001262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 제 3 권

### [ 농축산물 생산·유통편 ]

1. 쌀·밭 작물생산      2. 원예·특작생산
3. 농산물유통·가공 및 수출  
    가. 농산물 수급 및 판매·수출  
    나.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4. 축산물 생산·유통  
    가. 사육기반조성  
    나. 축산물수급 및 유통

농림수산부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62

등록일: 2004년 7월 29일

기증:



# 목 차

[농축산물생산·유통편]

※ 표시예)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자율  
공공계획추진사업 :공공

사 업 구 분	사 업 명	쪽
1. 쌀·발작물생산 (46쪽)	1) 벼직파재배지원(자율)	7
	2) 감자원종망실재배(자율)	15
	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율)	20
	4) 토양개량제공급(자율)	27
	5)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자율)	34
	6)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자금지원(공공)	38
	7) 공동·항공방제(공공)	42
	2. 원예·특작생산 (106)	
1)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49	
2)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69	
3) 고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80	
4)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89	
5)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109	
6)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122	
7) 감종 및 원감종생산(자율)	135	
8) 인삼생산지원(자율)	139	
9)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지원(공공)	144	
10)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지원(공공)	148	
11) 과수포트대표생산사업(공공)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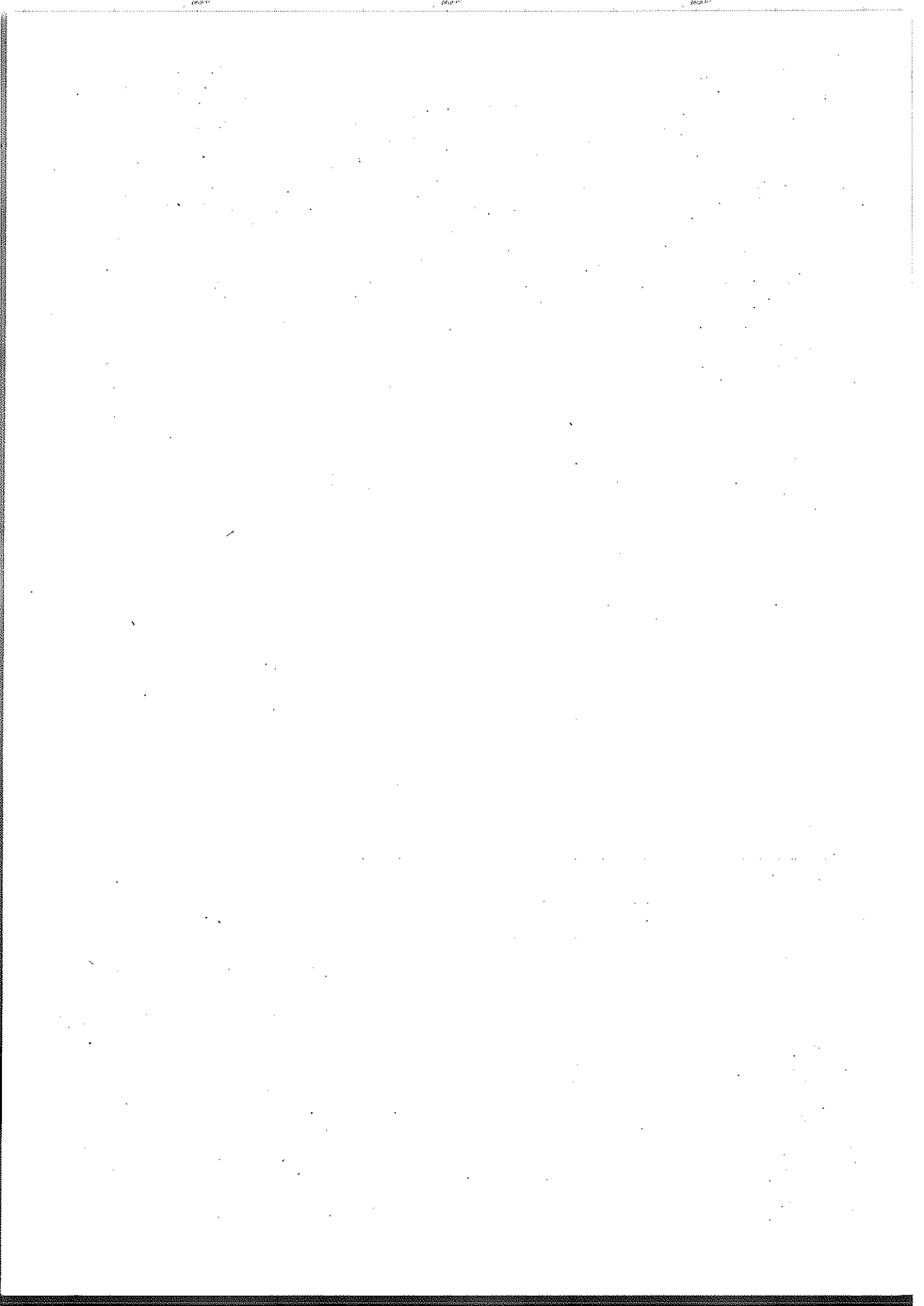
사업구분	사업명	쪽
3. 농산물유통·가공 및 수출 (216)	가. 농산물수급 및 판매·수출	153
	1) 농산물규격출하사업(지방)	157
	2) 생산자(단체)출하조절지원(공공)	165
	3) 공동규격출하지원사업(공공)	168
	4) 농수산물수매지원(공공)	178
	5) 출하촉진자금지원(공공)	184
	6) 채소유통활성화사업(공공)	191
	7) 과실·화훼판매촉진사업(공공)	196
	8)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199
	9)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지원(공공)	202
	10) 해외시장개척사업(공공)	206
	11) 해외시장정보조사사업(공공)	210
	나. 농산물유통·가공시설	215
	1) 미곡종합처리장설치 및 운영지원(지방)	217
	2) 임도정공장통폐합·시설대체(지방)	236
	3) 꽃직판장설치지원사업(지방)	243
	4)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지방)	246
	5) 농산물포장센터건설(공공)	256
	6)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공)	266
	7)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274
	8) 농수산물물류센터건설(공공)	282
	9) 인삼종합처리장설치(공공)	294
	10) 인삼종합전시장설치(공공)	297
	11) 화훼공판장건설지원사업(공공)	299
1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302	

축산

사업구분	사업명	쪽
4. 축산물생산·유통 (28P)	가. 사육기반조성	369
	1)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직육)	373
	2)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직육)	392
	3) 돼지경쟁력제고사업 (직육)	403
	4) 닭경쟁력제고사업 (직육)	412
	5) 기타가축육성지원 (직육)	421
	6)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428
	7)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공공)	436
	8) 소 수급관리전산화(공공)	441
	9) 소정액생산 및 공급(공공)	446
	가) 한우개량단지	446
	나) 한우정액생산·공급	456
	다) 젖소정액생산·공급	461
	10)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467
가) '96 양축농가해외연수	467	
나) 규격돈구매자금지원	480	
다) 축산경영상담 및 지도	484	
11) 가축방역(공공)	486	
12) 종축등록 및 능력검정사업(공공)	526	
가) 종축등록	526	
나) 젖소산유능력검정	528	
다) 돼지경제능력검정	531	
라) 닭경제능력검정	533	
13) 전문종돈업육성(공공)	535	
14) 한우쌍자생산지원(공공)	542	

사업구분	사업명	쪽
	15)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공공)	545
	16) 축산정책개발 및 교육홍보(공공)	568
	가) 축산업 자조금지원	568
	나) 축산사업 교육·홍보	569
	다)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572
	라) 가축개량신기술보급	575
	마) 전국한우경진대회개최	578
	17) 양축자금지원(공공)	580
	나. 축산물수급 및 유통	585
	1) 가축계열화사업(공공)	587
	2) 축산물접사(공공)	597
	3) 도축도매시설개선(공공)	605
	가) 축산물공판장건설	605
	나) 축산물도매시장시설개선	609
	4)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공공)	612
	5) 축산물등급판정사업(공공)	621
	가) 등급판정소운영	621
	나) 우수축 출하포상금	622
	6) 축산물가공판매시설 및 운영(공공)	626
	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626
	나) 계란가공시설	639
	다) 냉장육판매업소시설개선	641
	라) 가공직판장시설개선	648
	7) 학교우유급식(공공)	652

# 1. 쌀 · 밭작물 생산



##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자율)

### 1. 목 적

-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우리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노력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절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손쉽고 노동력이 적게드는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으로 쌀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감소추세인 벼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쌀 수급의 안정을 도모코자 함

### 2. 추진방향

- 직파재배는 적지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벼 직파재배 여부는 농가 자율적으로 결정
-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직파재배 기술지도 강화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95까지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	대 3,540	3,540	3,540	10,620	21,240
사 업 비	계	-	백만원 14,370	14,370	14,370	43,110	86,220
	국 고	-	3,593	3,593	3,593	10,779	21,558
	지 방 비	-	3,593	3,593	3,593	10,779	21,558
	용 자	-	5,747	5,747	5,747	17,241	34,482
	자 담	-	1,437	1,437	1,437	4,311	8,622

## 나. '96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보조	농협용자	자담
대 3,540	백만원 14,370	3,593	2,299	3,593	3,448	1,437

※ 사업량은 농가가 선정한 기종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나. 사업추진기간 : '96.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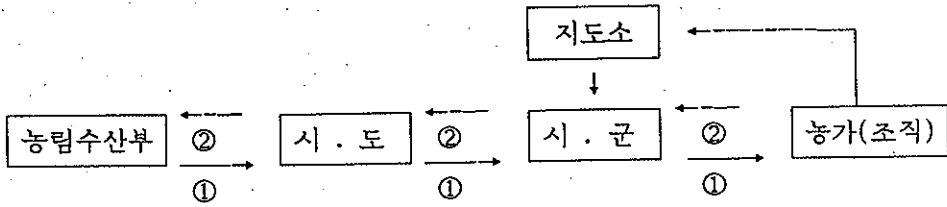
## 다.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벼 직파기 등 직파재배에 필요한 기증지원
- (2) 지원대상자 :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중심으로 경작규모에 따라 1~5농가이상 및 종합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 (3) 지원대상기종 : 벼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 직파기는 가급적 6조이상으로 효율이 높은 농업용트랙터 부착용(로타베이타 포함) 및 승용전용기 등 우선선정
- (4) 지원기준 : 국고보조 25%, 국고용자 16%, 지방비보조 25%, 농협용자 24%, 자담 10%
  - 용자조건 : 연리 5%, 1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지원단가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가격 기준.  
단, 농업기계가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종은 실제 구입가격
  - 지원한도 : 기종별 작업능력, 경작규모를 감안, 시장, 군수가 결정  
- 벼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중 선별 및 일괄지원 가능

※ 기대효과 : 일반재배 대비 전체 쌀 생산비 12%, 전체 노력비 25% 절감

- 쌀 생산비 : ('92전국 평균) 3,973 → (직파) 3,504천원/ha
- 육묘, 이앙노력 73% 절감 : (일반재배) 196 → (직파재배) 52시간/ha
- 전체 노력시간 : (일반재배) 452 → (직파재배) 338시간/ha

○ 사업시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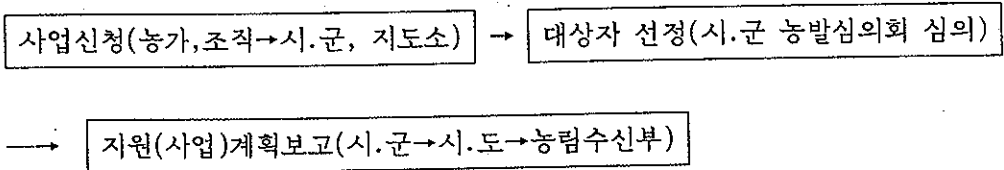
- ① 지원계획수립, 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② 사업신청,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라.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다"의 (2)항목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 또는 농업인

(2) 신청절차



(3) 구비서류 : 비직과재배 확대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가) 공통사항

- 영농에 성실하고 자부담등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가(조직)
- 신청자가 경합될 경우 동일순위에서는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조직) 우선
- 직파기, 탈망기, 중경계초기 일괄 지원요청자 우선



(나)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 1 순위 : 쌀 전업농중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농가
- 2 순위 : 경지정리가된 농업진흥지역내 쌀 전업농
- 3 순위 : 경지정리가된 농업진흥지역내 벼 재배농가
- 4 순위 : 경지정리가된 농업진흥지역외 농가

(다) 신청자가 영농조직일 경우

- 1 순위 :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내 조직
- 2 순위 : 경지정리가된 농업진흥지역내 조직
- 3 순위 : 경지정리가된 농업진흥지역외 조직
- 4 순위 : 기 타

## 바. 사업시행

(1) 공 급 자

- 벼직파기등 국내제작 기종의 공급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후봉사업자의 자격 및 시설을 갖추고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농협과 대리점으로 함

(2) 보조금, 융자금 신청 및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조직)는 공급자의 확인을 받아의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및 융자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읍면장 경우)와 관할 종합농협장에게 제출
  - 지원대상자가 공동일 경우 조직 대표명의로 신청
- 시장·군수(보조금) 및 종합농협장(융자금)은 규격, 구입가격등을 필히 확인후 지원기준에 맞도록 지원

(3) 벼 직파기등 관리 및 운영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조직)는 벼직파기등을 가능한 조기에 구입, 당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96 회계년도내에 구입
-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는 대표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관 및 수리등 성실히 관리토록 함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비직파기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단,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시장·군수 및 읍·면장은 본사업에 의한 비직파기 등 지원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조직)에 대하여는 금후 본사업에 의한 비직파기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후 당해년도 본사업에 의한 비직파기 등의 구입여부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용자금 회수토록 통보함

### 나. 사업기관 안내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산기술과
- 도 : 농정국 농산과(특, 직할시 : 농정과)
- 군 : 산업과, 지도소

< 별지 제1호 서식 >

## 벼 직파재배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조 직)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2. 경작면적

계			전			답		
계	자 작	임 차	계	자 작	임 차	계	자 작	임 차
ha								

※ 조직은 위탁영농 면적

3. '96 벼 식부계획

	계			직파재배			일반재배		
	계	일 반	직 파	계	건 답	답 수	계	어 린 모	중 모
계	ha								
자작									
임차									

4. 구입예정 직파기

	제작회사	제작년도	규 격	수 량	단 가
계	-	-	-	대	원
건 답 용					
답 수 용					

상기와 같이 '96 벼 직파재배지원을 신청합니다.

199 . . . . .

신청자 : (인)

○○○ 시장, 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 보조금 및 용자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구입예정 직파기

제작회사	제작년도	규격 (모델명)	수량	단가	사업비					
					계	국고 보조	국고 용자	지방비	농협 용자	자담
	년		대	원						

3. 공급자 확인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벼 직파기를 공급하고 공급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책임수리 하겠습니다.

1996.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 신청자 : (인)

공급자 : ○○○ 대리점 또는 공급농협 (인)

○○○ 시장.군수(읍면장) 귀하

○○○ 종합농협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 벼직파기 지원대장

지원 년도	지원 받은자		벼재배면적		지원 대수	규 격 (모델명)	사 업 비					
	주 소	성명	전체	직파			국고 보조	국고 용자	지방 비	농협 용자	자담	계
			ha		대		천원					

(주) ① 지원대상자가 조직일 대표자를 기록하고 하단에 조직명을 기재함

② 지원 당해년도 실 재배면적을 기재

# 감자원종망실재배(자율)

## 1. 목 적

- 감자원종장에서 직접 망실재배를 할 수 없는 원종재배면적에 대하여 보급종 채종 농가가 감자망실을 설치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 2. 추진방향

- 감자원종장 직영포장에서 일부 노지재배되고 있는 원종생산을 예산, 인력, 포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전면적 망실재배생산방법으로 전환
- 원종장에서 직접 망실재배할 수 없는 원종재배면적에 대하여는 보급종 채종농가가 망실설치 및 원종생산하여 차년도 보급종 생산용 증서로 사용토록 추진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ha)		73 (2,202동)	4.5 (134)	3 (90)	3 (90)	3 (90)	18 (540)	104.5 (3,146)
사 업 비	계	1,819	161	113	113	113	678	2,997
	국 지 방 비 용 자 부 담	-	-	-	-	-	-	-
	국 지 방 비 용 자 부 담	1,275 544	113 48	79 34	79 34	79 34	474 204	2,099 898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동)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부담
계	90	113	-	-	79	34
강 원	90	113	-	-	79	34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강원도 감자원종장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바이러스 매개진딧물 차단을 위한 감자원종망실 설치 지원

(2) 지원대상 : 대관령지구 감자 보급종 채종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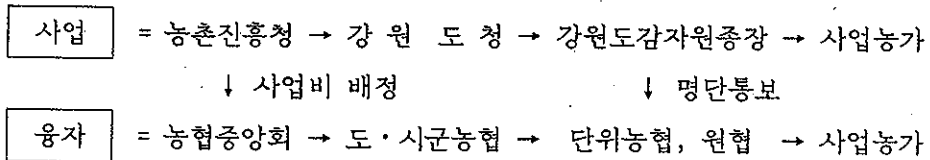
(3) 지원규모 및 조건

○ 용자규모 : 1동(100평)당 88만원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

※ 사업비 부담비율 : 용자 70%, 자부담 : 30%

(4) 사업시행 체계



※ 용자요령

- 강원도 감자원종장장은 선정된 농가명단을 용자취급기관(단위농협, 원협)에 통보
- 용자취급기관은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없이 용자금 지급 (선용자 후사업 실시)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대관령지구 감자 보급종 채종농가

(2) 신청절차 : 감자원종 망실설치 희망농가가 감자원종망실 설치신청서에 의거 강원도 감자원종장장에게 신청

(3) 구비서류 : 감자원종 망실설치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라. 대상농가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대관령지역 보급종 채종농가중 희망농가로서 감자원종장장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에 응하고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2) 선정절차

- 강원도 감자원종장장은 신청자의 채종능력, 익년도 보급종 채종계획, 기존망실 설치현황 및 망실설치능력, 원종망실 집단화 등을 고려하여 종자공급소 및 농협과 협의 선정

마. 사업시행

- 강원도 감자원종장장은 사업추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농가별 시행여부 확인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설물 사후관리 책임자 : 강원도 감자원종장장
  - 사후관리 책임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휴경기간중 고냉지 화훼, 채소류 재배 등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다만, 익년도 감자원종 망실재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강원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3년간 매년도별로 지원사업 운용상황을 평가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 고

- 원종망실 설치농가 선정 및 용자금 배정요청 보고
  - 감자원종 설치농가 선정과 동시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 계통보고
- 원종망실 설치 완료 보고
  - 원종망실 설치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계통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 도 : 강원도 농산과
- 사 업 소 : 강원도 감자원종장



[ 별지 제 1호 서식 ]

### 감자원종망실설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규망실 설치신청	평 (동)		소재지		
소요 사업비	천원	음자	사업자 부담		
기존망실 설치현황	평 (동)		소재지		
망실 재배 계획	평 (동)	신규망실 재배	평 (동)	기존망실 재배	평 (동)
익년도보급생산계획	a				

상기 본인은                      년도 원종 씨감자 농가위탁 망실재배를 위한  
신규 망실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 .

신청인 :                      (인)

(전화번호 :                      )

강원도 감자원종장장 귀하

[ 별지 제 2호 서식 ]

○ 원종망실 설치농가 선정보고

구 분	단 지 명	농가수	면 적	동 수	비 고
		호	ha	동	- 100평형 동수로 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재

- 주 : 1) 망실설치대상 포장약도 첨부  
 2) 농가별 명세서 첨부  
 3) 구분란에는 농가 설치분과 원종장 직영설치분으로 구분 기재

○ 용자금 배정 요청

구 분	계 획	실 적	용 자금 배 정 요 청	
			금 회	누 계
	동	동		

[ 별지 제 3호 서식 ]

○ 망실설치 추진상황 보고

구 분	단 지 명	망 실 설 치 상 황						용 자 상 황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농가수	면적	동수	농가수	면적	동수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 계											
농 가	소계										
	단지별										
원종장	소계										
	단지별										

- 첨부물  
 - 농협의 용자확인서  
 - 완료 보고서는 농가별명세서  
 - 기자재 구입상황 등 기타사항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자율)

### 1. 목 적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 2. 추진방향

-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 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소농단지는 가급적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형농업기반 구축
- 단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품질인증등 유통지원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개소 100	100	100	100	600	1,000
사 업 비	계	25,000	25,000	25,000	25,000	150,000	250,000
	국 고	12,500	12,500	12,500	12,500	75,000	125,000
	지방비	5,000	5,000	5,000	5,000	30,000	50,000
	용 자	2,500	2,500	2,500	2,500	15,000	25,000
	자 담	5,000	5,000	5,000	5,000	30,000	50,000

## 나. '96 지원계획

사업량	계	국고 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
개소 100	백만원 25,000 (100%)	12,500 (50%)	5,000 (20%)	2,500 (10%)	5,000 (20%)

##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 나. 사업 현황

(1) 지원내용 및 규모

단지별	구분	시설 내역	지원한도
유기·자연 농업 단지	공동시설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생산시설 및 창고, 배합기, 로다, 운반차량등 포함)	백만원 100
		○ 예냉시설	30
		○ 냉장차	20
	개별시설	○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60
		○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40
기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250

- 토착미생물을 접종증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배양기, 간이건축물도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로 지원할 수 있으며 운반, 뒤집기, 콘베어벨트, 분쇄기, 톱밥제조기등 필요한 기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과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단지당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동, 개별시설 상호간 사업의 규모 및 사업내용의 조정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타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중소농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신규 발굴될 경우 단지조성과 함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원하는 농민에게만 지원하되, 원하지 않는 농민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대신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또는 하우스등의 시설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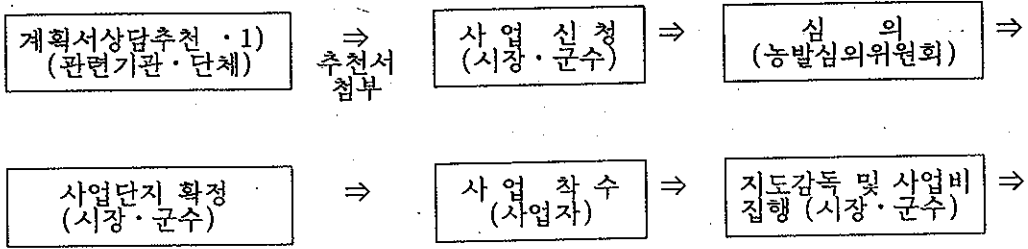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단지당 총 250백만원 한도내에서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
- 융자조건 : 연5%, 3년거치 7년상환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작물
  - 벼, 일반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 전작목
- 지원대상 단지
  - 소유농지 1.0ha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유기·자연·토종농업조직, 우수농산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복합경영 농가조직)으로서 10ha이상 규모의 단지. 단,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는 소유농지 1.0ha이상 규모의 농가도 참여토록 하거나 10ha이하의 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음
    - \* 단지에는 축산 또는 비닐하우스 농가외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유기·자연·토종농업의 경우, 가급적 상수원 보호구역 및 증산간지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되 시장·군수가 사업목적에 적합한 지구를 지정하여 단지를 조성할수도 있음

(4) 사업시행 체계



주 : 1)추천기관 : 농촌지도소, 농검, 농·수·축협, 유기·자연농업협회 등

다.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 "나"의 (3)항목의 지원대상기준에 맞는 영농단체

(2) 신청방법

- 사업희망 조직의 대표는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농협, 수협, 축협 및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회원인 각 단체의 추천을 받고, 추천 기관·단체의 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천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3) 구비서류

- 추천서, 사업계획 및 신청서

라. 대상자 선정

(1)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공 통** ○ 지역여건이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적합하고 지도자가 있는 지역
- 1 순위** ○ 상수원 보호구역, 중산간지등으로 유기·자연·토종농업 선도농가가 있고 단지화된 영농단체 또는 농검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영농단체
- 2 순위** ○ 유기·자연·토종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단체
- 3 순위** ○ 중소농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화가 가능한 영농단체

## (2) 선정 방법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후 농어촌발전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 마. 사업 시행

### (1) 시설설계

-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 기 개발되어 있는 농가보급형 하우스(예 : 1-2W형, 무기둥형등)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 기 개발되어 있는 『가변형축사표준설계도』 또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자연농업협회가 개발보급한 『유기·자연농업형 축사설계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규모를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도를 작성 시공
- 예냉시설
  - 기 개발되어 있는 예냉시설 설계도를 이용 (농기연, 식품개발연구원의 설계도)
- 토착미생물생산시설고
  - 자체설계도 작성 시공
-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기타시설
  - 기 유사모델이 있을경우 또는 농가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진공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기존시설 활용

- 시장·군수는 예냉시설, 냉장차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생산품목, 물량,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근의 기존예냉시설, 냉장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 설치된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축사에 대한 규모확대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음.

(2) 시공업체 선정

- 단지 대표자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에서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농민 스스로 시공

(3)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본 시설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가 요청할 경우 농진공에서 기술지원

## 5. 행정사항

### 가.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1차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시공업체들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단지대표 입회하여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시공업체에 지급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단지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유인비등 필요한 경비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 나. 사후관리 및 품질지도

- 기술·경영지도는 추천기관·단체에서 지도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지도(사업계획서 제출시 추천서에 책임지도자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년1회 시장·군수에게 제출)
- 생산된 토착미생물은 자가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판매시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아서 판매
- 단지별로 생산된 농산물은 희망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보증을 받아 출하

## 다. 사업기관 안내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
- 도 : 농정국 농산과 (특, 직할시 : 농정과)
- 군 : 산업과, 지도소

# 토양개량제 공급(자율)

## 1. 목 적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 공급하여 식량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2. 추진방향

산도(PH) 6.5미만의 산성밭과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의 논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 3. 투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94	'95	'96	'97	'98
사업량(천톤)	317	319	316	326	332
사업비계	18,061	17,880	17,640	22,825	23,222
- 국고보조(25%)	4,515	4,470	4,410	5,706	5,806
- 지방비보조(25%)	4,515	4,470	4,410	5,706	5,806
- 자담(50%)	9,031	8,940	8,820	11,413	11,610

나. '96 지원계획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	천톤 316	백만원 17,640	4,410	4,410	8,820
석회	207	10,928	2,732	2,732	5,464
규산	109	6,712	1,678	1,678	3,356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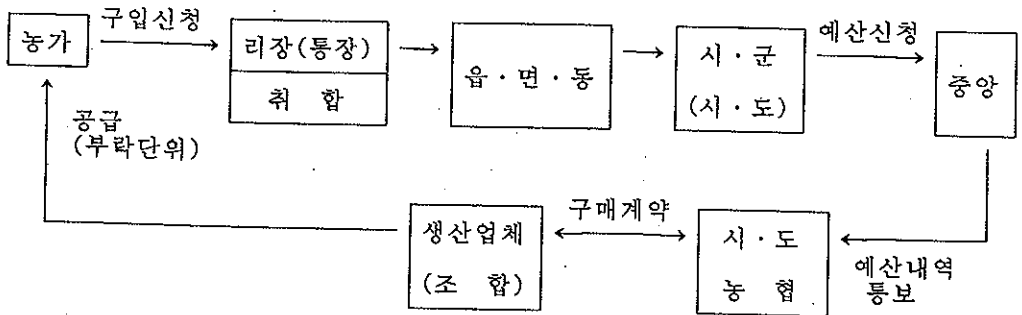
- 토양을 개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량 증대
- 폐광산, 제련소 인근등 중금속이 오염된 농경지의 오염해소

(2) 지원대상

○ 공급대상지

- 〔 석 회 : 산도(PH)6.5 미만의 산성밭
- 〔 규 산 : 유효규산함량 130 ppm 미만의 규산 부족논

(3)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단체

(2) 신청절차

- ① 농가는 리장(시의 경우는 통장)에게 구입희망량을 신청
- ② 리장(통장)은 농가별 신청량을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청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1)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읍·면에서 선정하고, 읍·면별 사업량에 대하여는 시·군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 결정

(2) 우선순위

○ 석 회

- ① 폐광산, 제련소인근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
- ② pH 6.5 미만의 산성밭으로서 산성이 강한 지역
- ③ 석회 시용후 4년이 경과한 밭 등

○ 규 산

- ① 병해충, 냉해, 도복등 재해 상습지 및 중금속오염지역
- ② 유효규산함량 130ppm 미만의 논으로서 규산함량이 적은 논
- ③ 규산 시용후 4년이 경과한 논 등

마. 사업시행

(1) 구매계약

- 석 회 : 시·도지사 책임하에 구매 계약
- 규 산 :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구매 계약

(2) 공급기간 : 춘기·추기로 구분 공급

(3) 물량인수 인계

현지부락 리장(시의 경우는 통장)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4) 사업비 집행 : 시·도별(시·군)별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비료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 농협장은 토양개량제를 영농적기에 차질없이 사용하도록 지도

### 나. 보고사항

- 토양개량제 공급상황(별지제2호서식)
  - 보고기관 : 시·도지사
  - 보고기한 : 춘기분 4.30, 추기분 12.31

### 다. 토양검정실시

- 실시기관 : 농촌지도기관
- 실시방법
  - 필지별 토양검정실시
  -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10a당 시용기준량을 산출 해당농가에 통보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행정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정과)
  - 시·군 : 산업과, 농촌지도소
  - 읍·면 : 산업계
- 농 협
  - 중 앙 :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 비료과
  - 시·도 : 시·도지역본부 자재과
  - 시·군 : 시·군지부, 경제과
  - 읍·면 : 지역농협





'96 토양개량제 공급상황

1. 공급실적

(단위: 톤)

비종	'96 공급계획 (A)			공급실적 (B)			비율 (B/A) %
	계	춘기	추기	계	춘기	추기	
계							
석회							
규산							

2. 석회질비료 공급가격 결정내역

(단위: 원, 톤)

		공급가격
산정내역	품대 수송(조작)비 취급수수료	
	합계	
조정	M/T당가격	
	포대당가격	

※ 춘기분 공급실적 보고시 보고



#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지율)

## 1. 목 적

농약살포시 피부접촉에 의한 농약중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복을 공급하고, 경지정리가 안되어 대형동력분무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수동식 분무기로 장시간 농약을 살포함에 따라 야기되는 중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형동력방제기를 공급

## 2. 추진방향

- 재래식 수동 분무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농약중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하기 편리한 소형 동력방제기를 지원 공급하여 농약을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방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
- 농약살포시 피부접촉을 통한 중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복을 공급하여 농민의 건강보호

## 3. 투자계획

### 가. 연차별 투자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사업량(대/천착)	6,000/110	6,000/100	6,000/100	12,000/130	12,000/133
총 사 업 비	4,418	4,100	4,100	7,912	8,230
- 국 고	1,567	1,440	1,130	2,660	2,758
- 지 방 비	1,568	1,440	1,130	2,660	2,758
- 자 부 담	1,283	1,220	1,840	2,592	2,714

※ 연차별 지원계획중 '97년이후의 사업량, 금액등은 변동될 수 있음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보조	지 방 비 보조	자 담
계		4,100	1,130	1,130	1,840
소형방제기	대 6,000	2,000	500	500	1,000
방제복	착 100,000	2,100	630	630	84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나. 사업내용

#### (1) 공급규격

##### ○ 소형 동력방제기

- 엔진과 분무기가 부착된 동력분무기로서 가급적 가볍고(총무게가 20kg 내외인것)
- 국산으로서 사후봉사 및 부품공급이 원활한것
- 국정검사에 합격한것

##### ○ 방제복

- 농림수산부 공고 제87-7호 규격에 적합한 제품

#### (2) 지원기준

##### ○ 재원 : 일반회계

##### ○ 소형 동력방제기 : 국고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 방제복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조건은 '97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음

#### (3) 사업 실시기간

- 시장, 군수는 농약중독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을 가장 많이 살포하는 시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여야 함

## 다. 공급 대상자 선정

- (1) 공급대상자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책임하에 선정
- (2) 공급 신청자격
  - 소형 동력방제기
    - 노약자 또는 부녀자 농가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산간 농가로써 경운기 또는 동력 방제기 사용이 어려운 농가
    - 경운기 또는 동력방제기가 없는 영세농가로서 재래식 수동 분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가
    - 기타 농약안전 사용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방제 취약농가
  - 방제복
    - 최근 4년간 공급받지 않은 농가
    -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서 영세한 농가
    - 기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농약안전 사용 취약농가

## 라. 사업실시 방법

- 시장. 군수는 3. 나. 항 공급신청자격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구매공급에 관한 방법은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함.
  - 농민의 자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시장. 군수가 경쟁방식으로 직접 구매
  - 농민의 자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장. 군수는 예산단가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함
- 시장. 군수는 구매가 이루어지면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조작기술 및 정비점검 능력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민교육(설명회)을 실시함

## 5. 기타 참고사항

### 가. 사업 안내기관

-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
- (2) 시도 : 농정국 농산과
- (3) 시군 : 산업과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자금지원(공공)

### 1. 목 적

- 조직배양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인공씨감자의 대량생산으로 우량씨감자를 확대 보급하고 첨단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함.

### 2. 추진방향

- 조직배양등 첨단농업기술 발전으로 경쟁력 강화
- 인공씨감자의 확대 생산으로 우량씨감자 공급

### 3. 투융자계획

가. 년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백만원)

	'95년까지	'96	'97	'98	합 계
사 업 량	- 개소	1	1	1	3
계	-	1,200	1,200	1,200	3,600
○ 지원액 (국고용자)	-	1,000	1,000	1,000	3,000
○ 자 부 담	-	200	200	200	600

나. '96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용자	자부담
인공씨감자 생산시설	1 개소	1,200	1,0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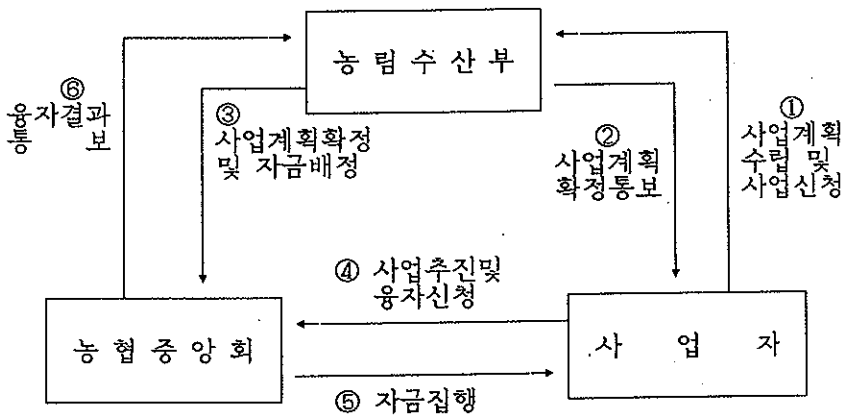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설치자금 지원
- (2) 지원대상 : 인공씨감자 생산기술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업체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인공씨감자 생산기술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업체등
- (2) 신청절차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설치 및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3) 구비서류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설치 및 사업계획 1부(별지 제1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인공씨감자 생산등 조직배양 기술능력과 씨감자 생산 및 보급기술등을 기준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

마. 사업시행

- (1)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설치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농협중앙회장에 용자지원 신청한다.
- (2) 사업비는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및 기자재구입비등으로 함.
- (3) 사업비는 농협중앙회장이 기성고에 따라 집행한다.

## 5. 행정사항

가.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집행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업무담당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전화 02-503-7228)

[별지 제1호서식]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시설설치 및 사업계획

### 1. 사업자명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2. 사업계획

가. 건축 및 시설기자재 구입계획

내역별	규모	단가	금액	비고
○ 건축비 - 토목공사 등				
○ 시설자재비 - 배양용기 등				

나. 사업추진일정

다. 생산시설 활용계획

○ 인공씨감자의 생산능력 및 판매계획

라. 사업의 수익성 분석

마. 기타사항

< 구비서류 >

○ 사업부지 확보계획(등기부 등본 포함)

○ 자부담 확보 및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계획



# 공동·항공방제(공공)

## 1. 목 적

- 가. 돌발 병해충이 만연되거나, 외래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개별 농가단위 방제로는 피해 확산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별, 들녘별 공동방제 또는 대단위 평야지에 대한 항공방제로 집중방제를 실시하므로써 노동력 부족해소와 병해충 피해 최소화
- 나.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해충 방제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식량 공급도모

## 2. 추진방향

- 돌발 병해충,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시군별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발생(예상)동향, 이병성품종 재배상황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약종등을 결정, 마을 및 들녘 단위로 공동방제 실시
- 대상지중에서 대단위 평야지는 항공방제를 추진하여 방제비용 절감 및 효과제고

## 3. 투자계획

###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사 업 량(ha)	210	210	230	810	868
총 사 업 비	5,200	5,560	6,120	25,020	26,770
- 국 고	2,600	2,780	3,060	12,510	13,385
- 지 방 비	2,600	2,780	3,060	12,510	13,385

※ 연차별 지원계획중 '97년이후의 사업량, 금액등은 변동될 수 있음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담
계	230천ha	6,120	3,060	3,060	-
공동방제	190	5,320	2,660	2,660	-
항공방제	40	800	400	400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주체 : 시, 도지사(시장, 군수)

### 나.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재 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공동방제(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 항공방제(항공기 용역대 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다. 사업실시기간 : 사업년도 1.1 ~ 12. 31

### 라. 사업지역(대상자) 선정

-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시장,군수 책임하에 선정
- 우선순위
  - 돌발, 외래병해충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 농업진흥지역
  -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마. 사업실시 방법

### ○ 공동방제

- 3.(사업지역 선정) 나. 우선순위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약을 덜 쓰고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방제실시
- 농촌 노동력의 부족, 인건비 상승등에 따라 예상되는 방제소홀에 대비하여 위탁 영농회사, 공동방제단등 공동조직을 우선 활용하여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피해 최소화
- 약종은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결정하며 소요농약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

### ○ 항공방제

- 3.(사업지역 선정) 나. 우선순위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중 대단위 평야지등 항공방제가 용이한 지역에 용역대를 지원하여 적기에 동시 방제실시
- 방제일정 수립은 입지조건, 농가의 의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고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함
- 항공기사정, 강우등 일기불순으로 적기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상공동방제로 전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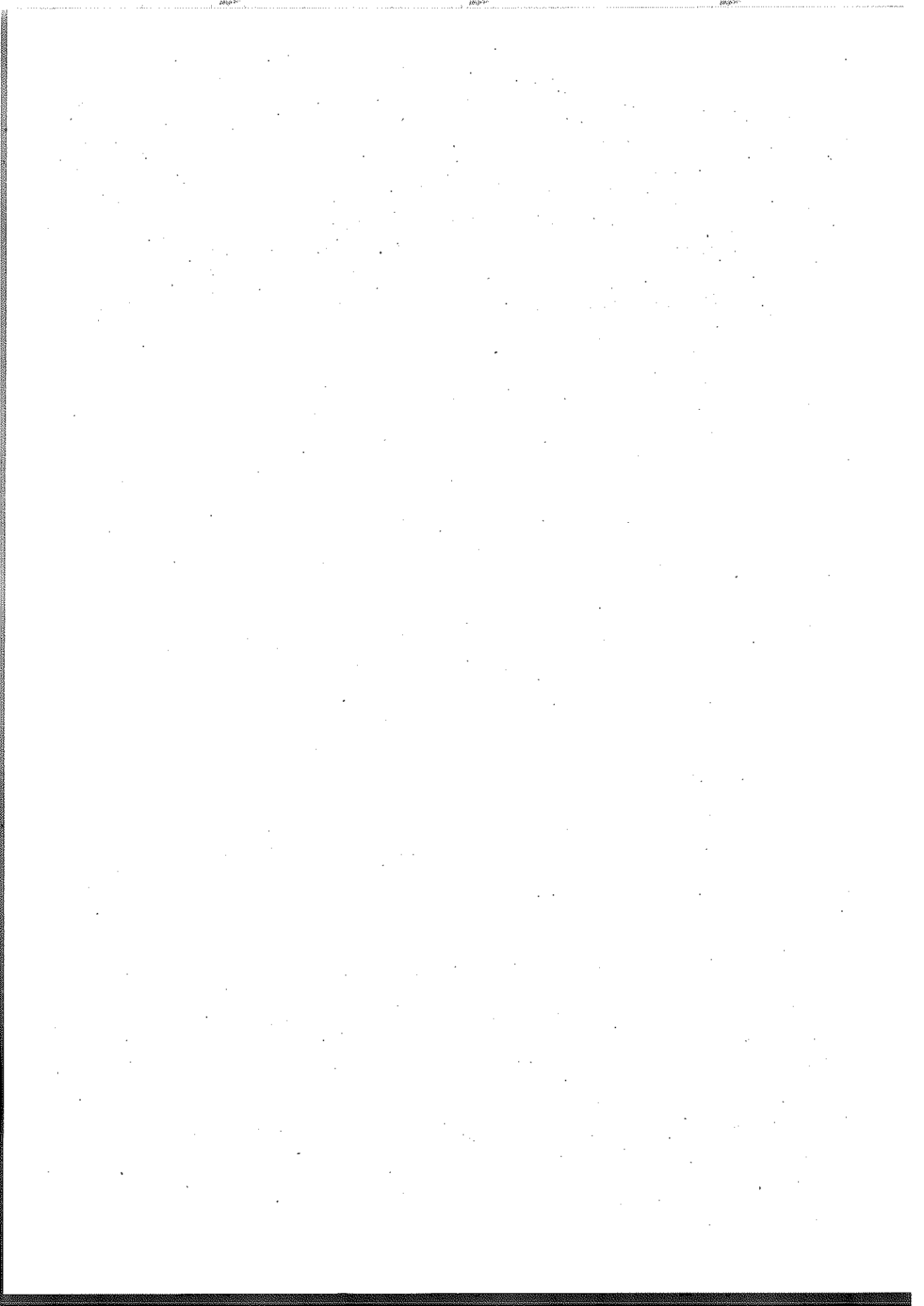
## 5. 행정사항

### 가. 농약안전사용지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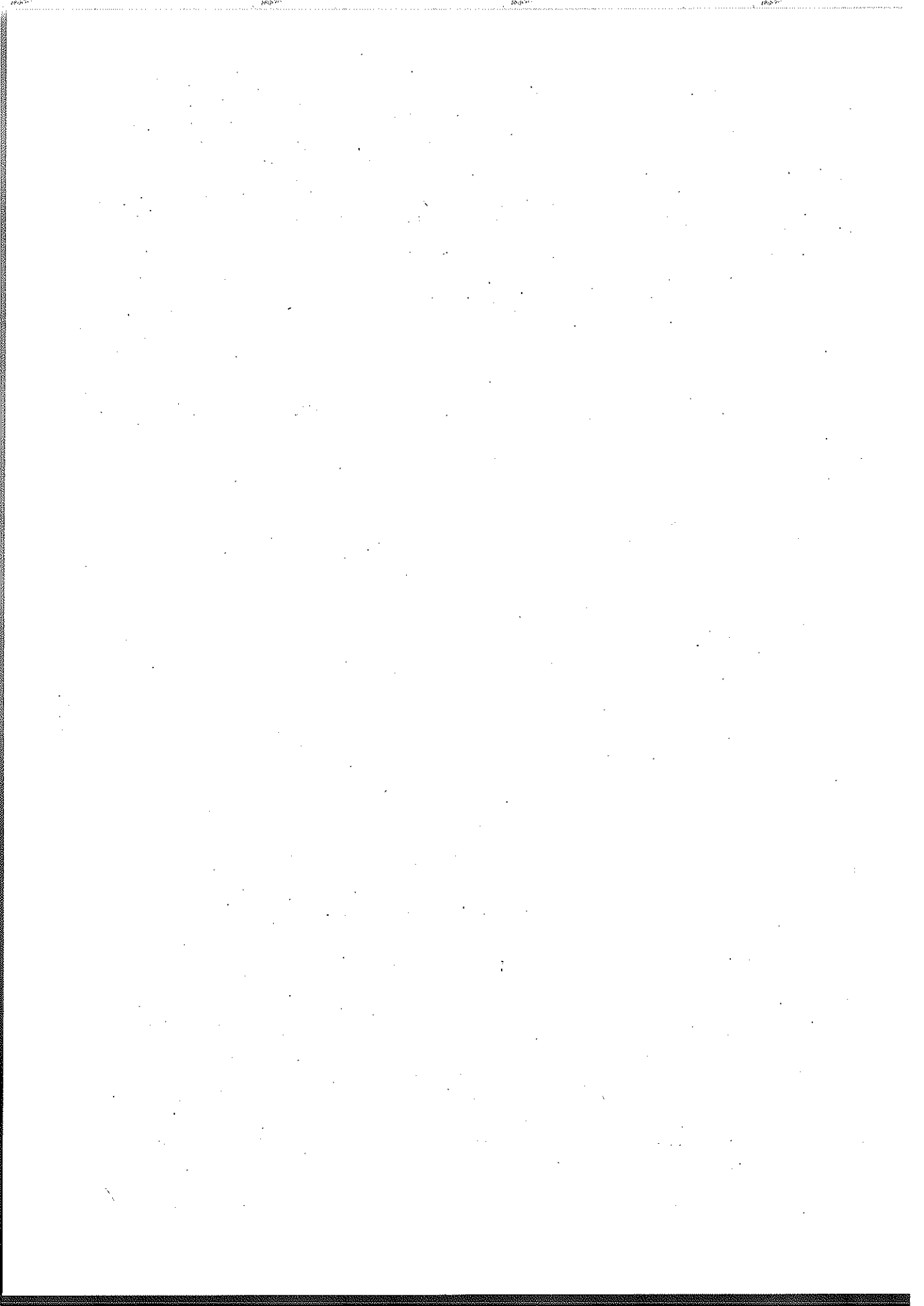
- 공동.항공방제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종선택과 대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함
- 특히 항공방제시 약제 살포로 인하여 상수원, 양식(어)장등을 오염 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관계기관 및 해당농가와 긴밀한 협조
- 항공방제 실시전 항공방제 실시계획(일시, 지역등)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 나. 업무담당기관

-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
- (2) 시도 : 농정국 농산과
- (3) 시군 : 산업과



## 2. 원 예 · 특 작 생 산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 목 적

-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기술집약형 선진농업을 지향함과 아울러
- 기존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자동화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함

### 2. 추진방향

-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시설채소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단지 육성지원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지원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로 농가수취가격 증대도모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지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94까지	'95	'96	'97~'98	'99~2004	계
○ 사업량	30	50	50	100	300	530
○ 사업비	100,648	167,750	167,750	335,000	1,006,500	1,778,148
- 국고보조	25,162	41,938	41,938	83,875	251,625	444,538
- 지방비보조	25,162	41,938	41,938	83,875	251,625	444,538
- 융 자	30,195	50,325	50,325	100,650	301,950	533,445
- 자 담	20,129	33,549	33,549	67,100	201,300	355,627



## 나. '96 지원 계획

### ○ '96예산확보 내역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개소 50	백만원 167,750	41,937.5	41,937.5	50,325	33,550

※ 수출단지 2개소 포함

### ○ 개소당 지원내역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천원 3,355,000	838,750	838,750	1,006,500	671,000

### ○ 시·도별 지원계획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계	개소 50	천원 167,750,000	41,937,500	41,937,500	50,325,000	33,550,000
대구	0.5	1,677,500	419,375	419,375	503,250	335,500
경기	2	6,710,000	1,677,500	1,677,500	2,013,000	1,342,000
강원	3.5	11,742,500	2,935,625	2,935,625	3,522,750	2,348,500
충북	3	10,065,000	2,516,250	2,516,250	3,019,500	2,013,000
충남	7	23,485,000	5,871,250	5,871,250	7,045,500	4,697,000
전북	7.5	25,162,500	6,290,625	6,290,625	7,548,750	5,032,500
전남	9.5	31,872,500	7,968,125	7,968,125	9,561,750	6,374,500
경북	6	20,130,000	5,032,500	5,032,500	6,039,000	4,026,000
경남	9	30,195,000	7,548,750	7,548,750	9,058,500	6,039,000
제주	2	6,710,000	1,677,500	1,677,500	2,013,000	1,342,000

##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 내용

(1) 대상지역 및 대상자

(가) 대상지역

농림수산부장관이 채소 주산단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이어야 함

- 지방비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 지역
-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지역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
- 사업대상 부지가 건축에 따르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 ※ 사업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 산림법, 상수원관리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하여 온실건축에 문제가 되는 경우, 대상자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이전에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완료(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출)시 가능.
- 단, 논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논에 온실설치는 가능한 지양

(나) 대상자

- 3년이상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학교·연구소·행정 및 지도기관에서 3년이상 시설원예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5인 이상으로서
  - 시설립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이라함).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후 3개월이내에 동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중앙회회원조합(이하 "농협"이라함)으로서 사업완료후 직영하거나 농업법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코자하는 단체
  - 단,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동사업 참여는 집단화를 통해 생산물 특화, 시설비 절감, 유통시설의 활용도 증진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승인된 사업비 전액으로 완전 집단화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영하지 않고 임대 또는 분양할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가능

## (2) 지원내용등

### (가) 지원대상 순위

『 모든 생산시설의 설치는 집단화 된 곳 또는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1순위 : 집단화된 사업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조직
- 2순위 : 단지당 집단화 면적 및 사업규모가 큰 조직
- 3순위 : 시설채소 수출전문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조직
- 4순위 : 경영장부를 작성하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조직
- 5순위 : 시설채소 전문교육 및 경영관련교육을 이수한 회원이 많이있는 조직
- 6순위 :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우수조직
- 7순위 :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설치코자하는 조직
- 8순위 : 이미 법인화한 생산자조직

※ 기 지원된 단지를 시·도지사가 시설채소생산전문단지 또는 수출단지로 육성코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순위와 관계없이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지원 가능

### (나)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 : 상기(가)의 지원순위를 차등 점수제화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조사요령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시달

### (다) 사업대상자의 의무

- 정부(자치단체포함) 또는 정부로 부터 위임받은자의 자료요구시 자료 제출
- 관계자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사업장출입 및 견학허용
- 규격상품 출하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 필요한 교육이수 및 평가회등에서 사례발표등

## (3) 지원조건

(가) 재원별 지원기준 : 국고보조25%, 지방비보조25, 용자30, 자담20

### (나) 용자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
- 자금용도 :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자동화

- 대상자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 용자기간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채소공동육묘장, 예냉시설, 집하장 : 연리 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파이프비닐온실, 관정, 선별기, 저온수송차량, 반출도로개설 및 보수, 비상발전시설, 변전시설 : 연리 5%,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회원농협)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기성내역 통보 : 시장.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 농협장은 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후 그 내용 및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용자조치 : 시장.군수가 기성고에 따라 집행
- ※ 시장.군수는 용자취급기관장의 사업계획서 발부 요청시 사본 제공으로 사업추진의 원활화 도모

(4) 세부사업내역

(가) 개소당 표준사업비 내역

세부사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백만원	4,195
○ 생산시설				3,876
- 유리온실	ha	0.5	1,200	600
- 철골경질판온실	ha	2.0	750	1,500
- 파이프비닐온실	ha	3.2	282	902
- 채소공동육묘장	1,500평/개소	1	800	800
- 관정	공	2	37	74
○ 산지유통시설				319
- 예냉시설	50평/동	1	125	125
- 집하장	150평/동	1	120	120
- 선별기	대	2	17	34
- 저온수송차량	5.0톤/대	2	20	40

- 주) 1. 개소당 지원단가 : 3,355백만원 (세부메뉴중 필요한 사업이외는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표준사업비 4,195백만원의 80%적용)  
 2.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채소공동육묘장 및 예냉시설의 단가에는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나)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 기본시설을 제외한 장비 및 기기는 농가 선택사양으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종 설치 가능
-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기준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은 자담으로 집행

[ 유리온실 ]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400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철골, 알미늄, 피복, 천, 축창개폐장치,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관비장치, 난방장치, 복합환기 제어장치</li> </ul> </li> <li>○ 장비 및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제기</li> <li>- CO2발생기</li> <li>- 토양소독기</li> <li>- 기화냉각장치</li> <li>- 운반차</li> <li>-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li> </ul> </li> </ul>	철골유리온실	0.2~0.5ha/호  농가 선택사양 1대/호 1대/300평 1대/호 1대/900평 1대/호 1대/호	

[ 경질판온실 ]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250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철골, 알미늄, 피복, 천, 축창개폐장치, 강제환기장치, 온풍난방기, 집중콘트롤장치</li> </ul> </li> <li>○ 장비 및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2발생기</li> <li>- 무인방제기</li> <li>- 토양소독기 (배지경제비용)</li> <li>- 관리기 및부속작업기</li> <li>- 운반차</li> </ul> </li> </ul>	철골PET(PC)	0.2~0.5ha/호  농가선택사양 1대/300평 1대/호 " " "	



[ 산지유통시설 ]

구 분	규 격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 예냉시설	차압식	50평/동	2,500 천원	125,000 천원
○ 집하장	일반블록건물	150평/동	800	120,000
○ 선별기	전자식 또는 기계식	1대	17,000	17,000
○ 저온수송차량	5.0톤	1대	20,000	20,000

[ 관 정 ]

구 분	시 설 규 모		채 수 량	관개면적	기준사업비
	구 경	심 도			
○ 암반관정	200 mm	m내외	m <sup>3</sup> /1일이상	ha	천원/공
○ 소형관정	40	50~150 18	200 50	3이상 0.5이상	37,000 700

※ 해안.산간지의 암반관정 채수량은 100m<sup>3</sup>/1일 이상을 기준으로함

[ 기 타 ]

구 분	단 위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비 고
○ 양액재배시설	평	1,500/농가	천원 50	75,000 천원	집단화된 단지의 인센티브 지원에 한함
○ 비상발전시설	set	1/단지별	25,000	25,000	
○ 변전시설	set	1/단지별	30,000	30,000	
○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Km	2 / "	90,000	180,000	

- 주) 1. 양액재배 시설은 고품배지경재배(순환식) 기준으로 양액자동조절 시스템 포함.  
 2. 양액재배 시설은 설계비 및 감리비 미포함, 반출도로는 설계비만 포함.

## 다. 사업추진 체계

### (1)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 농림수산부 :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자 교육, 사업추진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도,
- 농촌진흥청 : 표준설계도 및 표준모델개발, 온실설치·작물재배 및 규격상품 생산 기술지도,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성과(경영)분석
- 시 . 도 :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변경), 시·군별 사업개소수 및 사업비 배정, 사업대상자 교육훈련 계획수립, 도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추진 감독 및 진도보고
- 시 . 군 : 사업신청서 접수·심사·후보지구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확정,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지도·감독 및 상황보고, 기성 및 준공 업무, 사업비 집행·정산,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검사소 : 규격출하지도 및 평가, 자율검사원교육, 품질인증제 실시등
- 농협중앙회 : 금융지원, 기자재공급, 계통(규격)출하 및 판매지원, 상표개발 지원, 출하조직 육성, 시설원에 전산화 및 관측정보 제공,
- 농어촌진흥공사 : 표준설계도 및 모델 개발, 공사감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 기술교육·지도, 용수개발, 자재의 규격화·국산화추진
- (사)대한온실산업협회 : 시공기술 개발·보급, 온실기자재가격 조사·통계, 시공업자(회원사)지도·감독, 주요 온실기자재 공동구매·보급, 확인서발급, A/S센터 설치운영, 온실시공관련 연구 용역사업등
-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수립, 시설채소관련 사전교육이수, 사업시행,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작성, 규격상품생산·출하, 정책건의등

### (2)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사업대상자(신청) → 시군, 시도(농발심의회위원회 심의) → 농림수산부
- 대상자선정 : 농림수산부(현지조사) → 시도(현지조사) → 시군(사업대상자확정)
- 사업시행:사업대상자(시행) → 시군, 시도(지도·감독, 추진상황보고) → 농림수산부
- 자금배정 : 농림수산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부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 5.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가 본 통합실시 요령을 참조,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율적으로 수립

### 나.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본 지침의 사업지역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후 정부가 제시한 표준 메뉴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는 자기가 계획하는 메뉴사업에 대한 사유, 소요예산, 경제성분석, 사업효과등을 정밀 분석하여 단위사업을 선정하되
  - 집단화한 단지에는 인센티브 및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사업지역을 최대한 집단화

#### ■ 집단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집단화한 사업비를 연속된 필지(1개부지)에 집중투자하여 온실을 설치(단, 온실 배치를 위해 1개필지 정도를 띄우는 것은 예외)하는 것을 말하며, 집단화한 다음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양액재배시설, 반출도로, LPG연료탱크, 비상발전시설, 변전 시설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음.

∴ 철골온실 6,000평이상을 집단화하는 단지

∴ 철골온실 3,000평이상과 파이프비닐온실을 혼합, 7,000평이상을 집단화하는 단지

∴ 파이프비닐온실 10,000평이상을 집단화하는 단지

※ 집단화한 기 지원된 단지를 추가지원코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신청시 지원(육성)계획을 별도로 수립,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림수산부장관은 전국의 추가지원계획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개소수를 승인

- 유리온실은 투자비용(설치비 및 경영비)이 많이 들므로 소요자본, 경영규모, 기술 수준, 재배작목등을 정밀검토하여 선택하고 다적설지대, 태풍상습지, 연약지반, 상습 안개지대 및 평균기온이 낮아 난방비가 많이드는 지역은 유리온실 설치지양
- 채소공동육묘장은 도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하우스병 예방등을 위하여 온실내 작업장설치 권장
- 생산·유통·판매·재배기술등 정보교환 및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단지조성은 필지가 연결된 1개단지로 집단화하되, 기존시설을 고려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을 균형있게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여건에 따라 2개시.군을 1개사업 단위로 할 수 있으나 시.군별로 가능한한 1개단지로 집단화
    - 예) 가군(0.5) + 나군(0.5) → 1개소, 3,355백만원
- 개소당 사업규모는 지역실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나 시.도별 전체 사업비는 개소단위로 확정되어야 함.
  - 예) 2개소, 6,710백만원인 경우 : 1단지 4,300 백만원 + 1단지 2,410
- 집단화를 위한 토지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 조건으로 허용
  - 임대기간은 사업별로 용자금 상환기간따라 철골온실 20년, 파이프비닐온실은 10년이며 장기임대시 공증계약등 필요 조치 강구
- 사업신청시 필지를 나타내는 지적도에 농가별 사업지역을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
- 사업비로 토지구입, 퇴비제조장 및 유기농산물 생산.관련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은 수혜농가 공동부담
  - 퇴비제조장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유기농산물 생산.관련시설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추진
- 기반정비(농로개설, 발경지정리등)가 필요한 지역은 발경지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연계 또는 병행추진 권장

## 다 사업시행

사업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견실시공, 우수한 장비구입 및 기한내 완공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 확정시달일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에 설계계약 완료, 5개월까지는 착공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동 기간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상기의 기간전이라도 자담미예취, 법인설립지연등으로 인해 기한내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대상자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1) 설 계

온실설계는 농림수산부 『온실구조 설계기준』 및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설계하여 함.

- 정부가 지원하는 온실별 단가를 초과해 설치하는 시설은 지방서 및 공사비 명세서에 사업자 자부담 내용을 별도로 명기
  - 납품된 설계도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도기술지원단 또는 온실설계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아 시공여부를 결정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채소공동육묘장
- 기준설계도 : 농진청 『능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
  - 실시설계도 : 설계전문기관이 기준설계도를 기준하여 현장에 맞게 작성한 실시설계도에 따라 시공
  - 설계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전문업체』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설 계 비 : 사업시행 세부지침으로 별도 통지

- 설계계약 : 사업시행 농민 또는 생산자조직의 대표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설계기관과 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지
- 설계비 지급 : 설계비는 시장.군수가 설계도서가 납품되는 즉시 사업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예취된 자담분에서 설계업체에 지급

■ 파이프비닐온실

- 기준설계도 : 농진청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
- 시공도서 : 기준설계도를 기초로 시공업체가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시공

■ 예냉시설 : 농업과학기술원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소가 개발한 『예냉시설 표준설계도』를 기준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도기술지원단과 협의 시공

■ 집 하 장 : 농협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표본모델 설계도』를 참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도기술지원단과 협의 시공

■ 양액재배시설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개발한 『양액재배시설 표준설계도』를 기준하여 현장에 맞도록 설치

■ 기 타 :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등은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자격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2) 적격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자율경쟁 품토조성을 통한 국내 온실산업의 발전과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위장시공 및 업체부도등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는 단지별로 선정하여 계약하되, 이 지침 『단위사업내용 및 사업단가』에서 온실별 기본시설로 명시한것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총금액보다 하도급한도액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시공업체의 영세성 타개를 통한 기한내 사업완공을 위하여 주업체를 대표로 수개업체가 참여하여 시공하는 단지별 공동도급 권장

■ 시공업체 자격기준

- 건설업법에 의거 온실 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시행 조직은 실시설계도를 납품받은후 공사비 명세서를 참고하여 관계기관 및 기 사업시행자의 자문을 받아 자율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되 계약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

■ 시공계약 승인 : 시장.군수는 계약승인시 시공업자로 부터 (사)대한온실산업협회 회장이 발행한 자본금, 도급한도액, 기술인력보유현황, 연간수주능력, 상벌사항, 부실시공 횟수, 당해연도 현재까지의 수주실적, 그간의 시공실적등을 기재한 『 확인서 』를 제공받아 수주능력 초과여부등을 종합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시장.군수가 당해업체의 『 확인서 』를 검토한 결과 수주능력을 초과한 과다수주, 도급한도액 초과, 부실시공한 경력이 있는등 부적격 업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가보호 및 기한내 사업완료등을 위해 다른업체 선정지시 또는 공동도급 유도
- (사)대한온실산업협회 회장은 업체별 수주상황을 매월 집계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확인서 발급 : (사)대한온실산업협회 회장은 회원사들로 부터 전기한 각업체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한 후 확인서를 회원사에 발부하여 시장.군수가 시공업체 승인시 활용토록 하여야 함

■ 기타 : 시공업체 선정방법의 개선(변경)이 확정될 경우에는 세부내용 별도시달

(3) 시공, 장비 및 기기설치

- 온실의 기본시설은 온실설치공사업 면허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으며 장비 및 기기는 생산 또는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가능
- 국산화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온실기자재 국산화 비율이 사업금액 기준 60% 이상 이어야 하며, 시공에 고가의 장비 및 기술이 필요한 양액재배시설 설치하는 경험이 있는 자의 설치권장

- 온실자재는 국산화 개발촉진, 규격화.표준화의 조기정착, 우량 기자재의 적기확보 및 단가 인하등을 위하여 (사)대한온실산업협회에서의 공동구매.보급 권장
  - 철재, 유리, 알미늄바, 파이프, 장비 및 기기등
- 모든 시설, 부대장치와 기기등은 표준설계도 및 사업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이상이 되도록 설치
  - 부대장치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기종을 설치
  - 국산화개발에 성공하여 국가기관의 공인(ME마크, NT마크, KT마크등)을 받은 제품 사용권장

#### (4) 공사감리

- 감리기관 : 당해 사업의 설계를 한 업체 또는 감리전문 유자격업체
- 감리대상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채소공동육묘장, 예냉시설
- 감리계약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의 대표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감리기관과 계약 체결
- 감리수행 : 『농림수산부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건설업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감리수행
- 감리비 : 사업시행 세부지침으로 별도 통지
- 감리비 지급 :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와 협의후 보조금에서 감리비를 감리업체에 지급

#### (5) 관정개발

- 관정개발시는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및 유자격 민간 관정개발업체에 의뢰하여 기초 조사후 시추하여야 함
  - 관정개발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용수를 확보
-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소형관정』을, 집단화하는 단지에는 『암반관정』을 개발
  - 암반(공동)관정의 사업비는 개발심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수혜자가 공동부담

(6)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대표와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사업비 적립(자담,용자금) 및 기성고 지급등에 활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가 기성고에따라 사업대상자의 대표 입회하에 시공업체등 관련자에게 신속히 지급
  - 자담사업비는 사업대상자의 명의로 된 은행구좌에 예치(공사계약금 및 설계비로 지급)하고 통장 및 도장은 위임장을 받아 시장.군수가 관리하거나 또는 사업대상자의 대표와 공동관리
  - 용자금은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성고 확인서를 농협장에게 통보하며, 농협장은 동 확인서가 접수되는 즉시 사업자 명의로된 은행계좌에 용자금을 입금시켜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지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기준 0.3%범위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 6. 사업계획의 변경등

###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온실구조변경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의 대표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 및 부대장치등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 사업단가와 지원기준은 변경할 수 없으나, 온실부대장치 및 기계구입 단가는 선택기종이나 옵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수산부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관계법규, 예산관련사항은 예산회계법등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실정을 감안,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 나.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설, 장비, 기기등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설물은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 한다.
- 산지유통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는자는 동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산지유통시설의 이용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 다. 보고사항

-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2호서식) : 매분기 익월10일까지
- 보조금 정산실적보고(별지 제3호서식) : 사업익년도 3월 20일까지

## 라.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채소과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 별지 제1호서식 ]

# 기성고 확인서

〈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

1. 사업명 : '96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2. 사업자 :

○ 주소 :  
○ 성명 :  
(사업지역 :

○ 주민등록번호 :

)

3. 사업계획

( 단위: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4. 사업실적( 199 년 월 일 현재)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A)	사 업 비 지원			비 율 (B/A)%
		기 지원	금회지원	지원누계(B)	
	원				

5. 입금통장 번호 :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용자금)을 통장에 입금할것을 통보함.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 농 협 장 귀 하

▣ 여신관리자금 지급액 산출(대출 취급기관 기재사항)

사업추진비율 (C=B/A)	용자금 (D)	여신관리자금 지급 해당액 (E=CXD)	여신관리기금 기 지급액 (F)	여신관리자금 금차지급액 (E-F)

※ 본 확인서는 용자관련서류에 편철 보관함

[ 별지 제2호서식 ]

( )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대상 지역 : ○○도 □□군

2. 사업진도

( 단위 : 천원 )

	사업량	사업진도		사업비집행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담
가. 생산시설			%					
·								
·								
·								
나. 유통시설								
·								
·								
·								

주) 주요추진내역 난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건물공사 착수등  
주요 작업실시 내용 및 일자 표시

3. 금후 사업추진일정

4.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5. 기타 참고사항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산실적보고

( 단위 : 천원 )

단지명	농가명	사 업 량				시 업 실적						비 고			
		세부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점행실적 (정산)			차년도 이월액	비용액 또는 집행금액	착공일 준공일	
						계	보조 (C)	지방비	지방비	방용자	자담				대비 (D/C)
합계			평대 (㎡)	평대 (㎡)	%	계	보조 (C)	지방비	지방비	방용자	자담	%			

( 작성요령 )

- 세부사업명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분하고 각종 기계·장치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 목 적

- 양념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및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 함으로써 양념채소류 품질 및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을 적극 지원 하는것임

### 2. 추진방향

-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집하, 선별, 가공, 저장시설등을 종합지원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할수 있도록 메뉴방식으로 사업추진
- 자율적인 사업추진과 시장·유통을 주도할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중점 지원
- 연차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기 지원했던 조직(지역)도 추가지원 가능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 사업량	개소 10	10	10	10	10	120	170
○ 사업비 계	백만원 32,680	32,680	32,680	32,680	32,680	391,160	555,560
- 국고보조	8,170	8,170	8,170	8,170	8,170	98,040	138,890
- 지방비보조	8,170	8,170	8,170	8,170	8,170	98,040	138,890
- 융자	9,804	9,804	9,804	9,804	9,804	117,648	166,668
- 자담	6,536	6,536	6,536	6,536	6,536	78,432	111,112

#### 나. '96 지원계획

- '96 예산지원 규모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담
개소 10	백만원 32,680	8,170	8,170	9,804	6,536

(2) 시·도별 지원계획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전 국	개소 10	백만원 32,680.0	8,170.0	8,170.0	9,804.0	6,536.0
강원	1	3,268.0	817.0	817.0	980.4	653.6
충북	1	3,268.0	817.0	817.0	980.4	653.6
충남	2	6,536.0	1,634.0	1,634.0	1,960.8	1,307.2
충전	1.5	4,902.0	1,225.5	1,225.5	1,470.6	980.4
전경	2	6,536.0	1,634.0	1,634.0	1,960.8	1,307.2
경남	1	3,268.0	817.0	817.0	980.4	653.6
남	1.5	4,902.0	1,225.5	1,225.5	1,470.6	980.4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개소당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세부 사업명	단 위	단 가	기존사업량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 계		백만원		백만원 4,086	○ 1,000ha 기준
○ 개별 생산시설				1,942	○ 지원한도 :
- 발 정지사업	ha	15.0	10	150	3,268 백만원
- 관수시설	ha	6.5	43	280	
- 비가림채배시설	ha	55.0	20	1,100	
- 건가시설	개소(20평)	4.0	75	300	
- 이식기(정식기)	대	2.5	8	20	
- 고추세척기	대	1.5	20	30	
- 고추건조기	대	2.5	25	62	
- 기 타					
○ 공동시설				2,144	
- 공동육묘시설	개소(200평)	14.4	10	144	
- 종합처리시설	개소	1,000	1	1,000	
- 가공시설	개소	1,000	1	1,000	
- 기 타					

주) 기타사업은 품목별, 지역별 특성에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되, 사업단가는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산출근거 자료 첨부

(2) 대상지역 및 대상자

- 대상지역 :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고추, 마늘, 양파, 파)와 읍·면당 30ha이상 재배지역(생강, 쪽파)
- 대상자 : 대상지역 해당품목의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3)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기준 : 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용자 30, 자담 20
- 용자 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대상지역에 소재한 양념채소 생산자조직
- (2) 신청절차 : 통합실시요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근거(필요시)

##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가) 지역, 생산자조직

- ① 영농조합법인, 광역조직(군단위 이상) 및 이에 가입한 조직
- ② 양념채소 재배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의 조직
- ③ 공동구입, 공동작업, 공동판매등 활동이 우수한 조직
- ④ 생산물의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 획득여부
  - 표준출하규격에 의한 공동선별, 공동출하등 품질관리체계 확립정도

⑤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이 적합한 조직

- 사업대상자로서 경영능력, 계획의 합리성
- 사업목적과 다르게 시설·기자재를 사용할 우려가 없는자
- 생산자조직의 우선순위 조건에 합당한 농업인
- 양념채소 전업농규모 농업인
- 생산자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업인

⑥ 부지, 사업자금(지방비, 용자담보, 자담) 적기확보등 원활한 사업집행 가능성

- 논의·타목적 전용을 수반할 경우 후순위 부여

⑦ 공동이용사업 비중이 높은 조직

⑧ 기타 지역별로 필요한 사항

(2) 선정절차

- (가) 상기 우선순위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평가표를 작성
- (나) 통합실시요령 총칙에 따라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다) 사업량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조직(지역)을 확정

## 마.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모든사업을 전량 실시할 경우 사업비 누계액은 4,086백만원이나, 기존에 일부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누계액의 80% 수준인 3,268백만원을 개소당 지원 한도액으로 하였음
- 품목별 주산지에 필요성이 높은 세부사업 및 사업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정부보조, 용자 비율및 단가는 변경할 수 없으며, 생산·유통분야 균형 개발을 위해 가급적 특정사업 편중 신청 지양
- 시설과임이 예상되는 저온저장고는 최소한 면적으로 억제
- 사업비 합계가 개소당 지원한도액이 되도록 사업량을 선택하되, 불가능할 경우 정부 보조및 용자금은 지원한도액이 되도록 하고, 부족금액은 지방비, 자담액을 조정

- 품목 또는 지역특성상 필요할 경우 단위사업내용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경우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주산지 군별 재배규모에 따라 1개사업 지원액을 2~3개군에 분할 지원 가능하나, 도별로는 예산상 개소 단위가 되도록 사업신청
  - 사업을 분할 지원할 경우 가급적 분할 개소당 사업비가 균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가급적이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을 지양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및 소기의 사업성과를 얻을 있도록 추진
  - 이 사업은 신농정 계획기간중 매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한번 지원된 조직 (지역)도 추가지원 가능

## (2) 세부사업별 시설기준

### (가) 기본지침

- 시설업체는 관련 면허소지자를 선정하고, 시설물은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건설 또는 설치해야 함
- 시설용 기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사업별 시설기준은 (2)항에 의하되, 품목 및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규격 또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보조단가는 변경할 수 없음

### (나) 세부사업별 시설기준(규격)

#### 1) 밭 정지사업

- 사업단가 : 시가(최고한도 30,000천원/ha)
- 시설기준 : 밭 경지정리사업에 준하여 구배정리등 비가림시설,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적인 사항, 경지여건별 사업단가 결정등을 시.군 건설과 또는 농지계량조합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 2) 관수시설

- 사업단가 : 6,500 천원/ ha
- 시설내역 : 착정(관정), 양수시설(양수기와 모터 또는 엔진), 이용시설 (스프링클러 또는 점적)



○ 시설기준

- 지하수여건, 관개면적등을 감안 현지실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가능한한 규모화가 되도록 인접 필지 소유농업인과 공동으로 설치할것
- 이용시설은 점적식 또는 스프링클러식, 고정식 또는 이동식중 현지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 시설내역의 일부만 지원코자 할때는 세부단가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생산자조직(농업인)의 요청이 있을경우, 농어촌진흥공사(지사)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수시설 설계와 시공을 담당토록 할수 있음

3) 비가림재배시설

- 사업단가 : 55,000천원/ha
- 농가별 지원한도 : 최하 300평, 최고 1,500 평
- 시설내역 : 펜타이트(파이프) 비닐온실, 측면개폐장치
- 시설기준 :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로서 시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자문

4) 건가시설

- 사업단가 : 4,000 천원/20평 개소
- 농가별 지원한도 : 20 평
- 시설기준 : 목조, 철골조 또는 브릭조 건물및 건조대

5) 이식기, 건조기 등

- 사업단가 및 규격

기종	규격	사업단가	비고
이식기	독립형	2,500 <sup>천원</sup>	
세척기	시간당 500kg 처리	1,500	○ 고추 세척기
건조기	건조실 면적 2.0평	3,000	○ 고추 건조기
	" 1.5	2,500	
	" 0.8-1.0	2,200	

- 농가당 지원한도 : 기종별 1대

6) 공동육묘시설

- 사업단가 : 72천원/평
- 작목반당 지원한도 : 1,500 평
- 용도 : 고추 육묘용
- 시설기준 : 비닐온실, 온풍난방기, 관수시설
  - 농촌진흥청 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 표준모델 1-2W형을 준용하여 설치

7) 산지 종합처리시설

- 사업단가 : 1,000,000천원/개소
- 시설내역 : 선별.포장시설, 집하장등 산지유통시설과 지게차, 운반용기등 기자재(부지구입비 제외)
- 시설내역별 지원단가 및 설치기준
  - 시설규모는 품목별 지역별 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별장은 200평, 집하장은 150평을 표준규모로 함
  - 개소당 사업단가(10억원)이상일 경우는 시.도지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 조치

	사업단가	시설내역
○ 선별장 - 건물 - 선별.포장기	1,000천원/평 시 가	○ 선별장건물 및 선별.포장 작업기 - 철근(철골) 라멘. 브릭조 또는 조립식
○ 집하장	800천원/평	○ 작업.수집.판매장, 관리실등
○ 부대 기자재 - 지게차, 수송차 - 팔레트, 운반용기	시 가 시 가	○ 시설 설치시만 선택 가능 - 선별장, 집하장당 각1대 한도

8) 양념채소 가공시설

- 사업단가 : 1,000,000천원/개소
- 용도 : 양념채소류 가공 공장및 부대 기자재 (부지구입비 제외)
- 시설기준 : 가공원료및 제품에 맞게 지원대상자가 전문연구기관 또는 식품공학 전공 대학교수의 지도, 자문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 공장 설계결과 개소당 사업단가(10억원)이상일 경우는 시.도지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조치

## 5. 행정사항

### 가. 사업계획의 변경등

#### (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요청 하되, 생산시설의 사업대상자 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통합실시요령 및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 나. 보고

- 사업진도 보고 : 매분기 익월15일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1월 20일까지
  - 보고양식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과 동일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500-2683/4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 별지 제1호서식 ]

##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

### 1.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 대상 지역 : ○○도 □□군

○ 대상 작목 생산현황

사업지역	대상작목	재배면적	농가호수	생 산 량	주산지지정여부
시·군 계		ha	호	톤	
○ ○ 읍					
○ ○ 면					
○ ○ 면					
○ ○ 면					

### 2. 생산자조직 현황

조 직 명	사무소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일	조직원수
					명

### 3. 생산자조직 활동상황

- 조직형태, 조직규모, 등기일
-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 자본금, 공동작업·구매·판매등 사업실적
- 생산물 규격화 실적

## 4. 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지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농가수
합 계									
<개별 생산시설>									
○ 관 수 시 설	ha								
○ 비가림재배시설	ha								
○ 건 가 시 설	개소								
○ 이식기(독립형)	대								
○ 고추세척기	대								
○ 고추건조기	대								
- 2.0평형	대								
- 1.5평형	대								
- 0.8-1.0평형	대								
○ 기 타									
-									
<공 동 시 설>									
○ 공동육묘시설	평								
○ 종합처리시설	개소								
- 선별장									
- 건물	평								
- 선별포장기	대								
- 집하장									
- 건물	평								
- 지게차	대								
- 수송차	대								
○ 가공시설	개소								
- 건물	평								
- 분쇄기	대								
- 포장기	대								
-									
○ 기 타									
-									
-									

주) 세부사업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에 포함

나. 공동시설 설치 계획

공동시설명	위 치 (면.리)	규 모			운영주체	참여농가 수
		부지 평	시설 평	기자재 대		
○ - -						
○ - -						

- 자부담 조달 및 용자담보 계획
- 부지 확보 계획 및 지목(관련법규상 해당시설물 설치가능성 포함)
- 사업추진 일정
- 시설물 활용계획

다. 생산자조직별 개별시설 세부내역

○ 세부사업명 :

조 직 명	농가명	지번 또는 주소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합 계								
○○○조직 (품목명)	소 계							
○○○조직 (품목명)	소 계							

주) 대상농가가 많을 경우 중앙보고시 농가명란에 농가수로 기재 가능

##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자율)

### 1. 목 적

- 고랭지 채소의 열악한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 유통시설등을 종합지원하여 농가실질 소득증대와 자율적인 생산, 출하조절 기능강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임

### 2. 추진방향

-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시설과 산지유통 및 기계화에 필요한 장비등을 종합지원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메뉴방식으로 사업추진
-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 및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에 중점지원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 업 량		20개소 ( - 공)	20 (54)	20 (50)	20 (50)	20 (50)	180 (50)	280 (254)
사 업 비	계	8,300 ( - )	10,730 (2,430)	10,550 (2,250)	10,550 (2,250)	10,550 (2,250)	76,950 (2,250)	127,630 (11,430)
	국 고	2,075 ( - )	3,776 (1,701)	3,650 (1,575)	3,650 (1,575)	3,650 (1,575)	20,250 (1,575)	37,051 (8,001)
	지방비	2,075 ( - )	2,561 (486)	2,525 (450)	2,525 (450)	2,525 (450)	19,125 (450)	31,336 (2,286)
	용 자	2,490 ( - )	2,490 ( - )	2,490 ( - )	2,490 ( - )	2,490 ( - )	22,410 ( - )	34,860 ( - )
	자 담	1,660 ( - )	1,903 (243)	1,885 (225)	1,885 (225)	1,885 (225)	15,165 (225)	24,383 (1,143)

※ 사업비 ( )내서는 암반관정임

## 나. '96 지원계획

○ '96예산지원 규모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개소 20 (50)	백만원 10,550 (2,250)	3,650 (1,575)	2,525 (450)	2,490 ( - )	1,885 (225)

※ 사업비 ( )내서는 암반관정임

○ 시,도별 지원계획

	사업량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개소 20 (50)	백만원 10,550 (2,250)	3,650 (1,575)	2,525 (450)	2,490 ( - )	1,885 (225)
강 원	13 (41)	7,240 (1,845)	2,640.25 (1,291.5)	1,717.75 (369)	1,618.5 ( - )	1,263.5 (184.5)
충 북	1(-)	415	103.75	103.75	124.5	83
전 북	2 (5)	1,055 (225)	365 (157.5)	252.5 (45)	249 ( - )	188.5 (22.5)
경 북	2 (4)	1,010 (180)	333.5 (126)	243.5 (36)	249 ( - )	184 (18)
경 남	2(-)	830	207.5	207.5	249	166

※ ( )내서는 암반관정관수시설임

##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나. 사업현황

1)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가) 발정지사업

- 급경사를 완경사로 변경 또는 구배를 정리하는 사업
- 기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지하는 사업



나) 관수시설

- 소형관정,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집수장, 송수호스, 기타 관수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암반관정 제외)

다)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 고랭지채소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 기존의 고랭지채소 반출도로를 확장, 정비 또는 포장하는 사업

라) 비가림재배시설

- 원예작물 표준하우스 모델을 참고로 현지실정에 맞게 설치
- 축창개폐장치와 시설내 관수시설 포함

마) 망사육묘시설

- 해충의 침입방지용 망사가 부착된 비가림육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개소당 100평 기준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

바) 수송차량

- 채소 및 영농자재 수송에 필요한 일반차량 지원원칙
- 저온수송차량 구입시 구입단가 기준 : 30백만원/대

2) 개소당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단 위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				564
가) 생산·유통 종합지원 < 생산기반조성 > ○ 발정지사업 ○ 관수시설 ○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 비가림재배시설 ○ 망사육묘장 설치	ha ha Km ha 개소	5 5 2 2 5	30 10 90 55 3	150 50 180 110 15
< 산지유통 및 기계화 > ○ 수송차량 ○ 다목적관리기 ○ 육묘이식기	대/5톤 대 대	1 1 1	10(30) 1.5 2.5	10(30) 1.5 2.5
나) 암반관정 관수시설 ○ 관정개발 ○ 이용시설	개소 개소 개소	1 1 1	45 30 15	45 30 15

주1) 개소당 지원단가 [ 생산·유통 종합지원 : 415백만원 (표준사업비의 80%)

[ 암반관정 관수시설 : 45백만원

2) 발정지사업과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의 단가에는 설계비가 포함된 것임

3) 수송차량의 ( )내는 저온수송차량임

### 3) 지원조건

#### 가) 생산.유통종합지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415,000 천원/개소	103,750	103,750	124,500	83,000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지방비 25%, 용자 30%, 자담 20%

○ 용자재원 및 조건 : 농특회계 용자계정, 연리 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나) 암반관정 관수시설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45,000 천원/개소	31,500	9,000	4,500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자담 10%

○ 시공조건

- 시공업체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지하수법에 의한 유자격 민간관정 개발업체

- 시설기준

구 경 : 200mm

채수량 : 200㎡/일 이상(고지대등으로 수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경우 100㎡까지 시장.군수가 하향조정가능)

-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관정의 개발 및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

- 관정개발에 앞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수원 확보

## 다. 사업신청

### 1) 대상지역 및 대상자

#### 가) 대상지역

○ 고랭지채소 주산지로서 동일 시.군내에 무,배추등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 5ha이상 재배되고 있는 지역

#### 나) 대상자

○ 동일 시.군내에서 고랭지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등이 결성한 "생산자조직"

## 2) 지원대상 우선순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의욕 및 단결력이 우수한 조직
-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유통,기계화사업을 균형있게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
- 공동구입, 공동작업, 공동판매등의 활동이 우수한 조직
- 생산물의 규격상품 출하실적이 우수한 조직

### <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 지방비 및 사업비(농가) 부담능력
- 다른 사업과의 연계추진등으로 사업효과제고 가능여부

## 3) 신청절차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농림수산사업지원 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고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를 첨부(별지 제1호서식)
  -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될수있는 근거등
- 기타사항은 통합실시요령 총괄편을 따름

## 라. 대상자 선정

- 1)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평가표를 작성
- 2) 통합실시요령 총칙에 따라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3) 사업량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지역)를 확정

## 5. 기 타

### 가.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 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표준단위 사업중 3개이상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3개미만의 특정사업만 시행하거나 표준단위사업 이외의 사업도 추가할 수 있음
- 암반관정 관수시설은 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 시행지구내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실시 가능

### 나. 사업계획의 변경등

#### 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사유발생시
- 변경절차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사유 첨부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도지사는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 2) 통합실시요령 및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 6.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 군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나. 보고사항

- 사업진도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익년도 1월 20일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 500-2683/4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 별지 제1호서식 ]

##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

### 1.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역 : ○○도 □□군
- 대상작목 생산현황

사업지역	대상작목	농가호수	재배면적	생 산 량	비 고
시·군 계		호	ha	톤	
○ ○ 읍					
○ ○ 면					
○ ○ 면					
○ ○ 면					

### 2. 생산자조직 현황

조 직 명	주사무소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일	조직원수
					명

#### 가. 임직원 현황

#### 나. 생산자조직 활동상황

- 조직형태(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 자본금, 공동구매, 판매등 사업실적

### 3. 사업 실시계획

#### 1) 생산·유통종합지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참여 농가수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합 계									
<생산기반조성>									
○ 발정지사업	ha								
○ 관수시설	ha								
○ 반출도로개설 및 보수	km								
○ 비가림재배시설	ha								
○ 망사육묘장설치	개소								
○ 기 타									
<산지유통,기계화>									
○ 수송차량									
- 일반	대								
- 저 온	대								
○ 다목적관리기	대								
○ 육묘이식기	대								
○ 기 타									

#### 2) 암반관정 관수시설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참여 농가수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합 계									
○ 관정개발	개소							○구경 Ⅲ	
○ 이용시설	개소							○내역명시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 목 적

-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혀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

### 2. 추진방향

-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지원
- 사업대상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3. 투융자계획

#### 가. 년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30개소	120	150	150	150	300	900
사 업 비 용 자 담	계	177,231	138,000	189,000	225,000	225,000	450,000	1,404,231
	국 고	38,236	34,500	47,250	56,250	56,250	112,500	344,986
	지방비	22,086	34,500	47,250	56,250	56,250	112,500	328,836
	용 자	72,560	41,400	56,700	67,500	67,500	135,000	440,660
자 담	44,349	27,600	37,800	45,000	45,000	90,000	289,749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국고용자 30%, 자담 20%



## 나. '96지원계획

### ○ '96예산(안)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응 자	자 담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개소 150	189,000 (100%)	47,250 (25%)	47,250 (25%)	56,700 (30%)	37,800 (20%)
- 일반 과수	106	133,560	33,390	33,390	40,068	26,712
- 감 굴	44	55,440	13,860	13,860	16,632	11,088

※ 개소당 표준사업비는 일반과수 2,151백만원, 감굴 2,058백만원이나 예산단가는  
기 설치된 시설을 고려하여 1,260백만원으로 계상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실시자
  - 공동시설 : 품목별 생산자조직
  - 개별시설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생산자조직이 사업추진 지도·관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정부가 제시한 표준사업을 기초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조직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

#### (2) 지원대상

- 대상과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유자, 참다래등
- 대상자 : 동일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그 회원농가

(3) 세부지원사업

○ 일반 과수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계			백만원 2,156	
< 공동시설 >			1,167	과실생산자조직에 지원
저온저장고	200 평	백만원 2.5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100-200평</li> <li>○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li> <li>○ 콤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이상</li> <li>○ 에어커튼 설치</li> <li>○ 응축기 : 콤프레서와 동일 마력</li> <li>○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 1식(시간당 20ℓ 이상)</li> <li>○ 메인타트 : 1식</li> <li>○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li> <li>○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li> <li>○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li> </ul>
선 과 장	1 등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150평규모</li> <li>○ 대형선과장 : 3조식 1대 (선과능력 : 3만개/시간)</li> <li>○ 제합기, 테이핑기, 밴딩기, 전자저울각1대</li> <li>○ 벨트 로라, 무구동 로라, 작업대, 선반, 혼베어 각1식</li> <li>○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li> </ul>
집 하 장	200 평	0.3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200평</li> <li>○ 바닥 : 콘크리트 시공</li> </ul>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공동퇴비장	200 평	1,675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200평</li> <li>○ 발효조 시설 : 년산 2,500톤 기준</li> <li>○ 제품보관 및 관리시설 : 1조</li> <li>○ 혼합기 및 스키드로다 : 각 1대</li> <li>○ 틀밥 및 왕겨분쇄기 : 1대</li> <li>○ 콘베어 시스템 : 1조</li> <li>○ 원료투입기 : 1대</li> <li>○ 자동포장기 : 1대</li> </ul>
수송차량	1 대	10	10	○ 차종별 구입가격 기준
지 계 차	1 대	15	15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콘 베 어	1 대	10	10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파 레 트	400 개	0.03	12	○ 플라스틱 또는 목재 파레트
운반상자	10천개	2.5	25	○ 20kg들이 플라스틱 제품
< 개별사업 >		-		과실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에 지원
신규개원	10 ha	5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경, 석회 및 유기물 시용, 배수(암거, 명거배수시설)</li> <li>- 포도는 지원 불가</li> </ul>
품종갱신	20 ha	4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량 신품종으로 개식 또는 고집갱신</li> <li>○ 수분수 부족포장 수분수 확보 : 주품종의 15~20%</li> </ul>
배수시설	20 ha	3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거배수(배수로, 집수로 등)</li> <li>○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li> </ul>
관 정	5 공	3	15	○ 지역실정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선택
점적관수	10 ha	2	20	○ 점적관비 1식, 액비혼입기 1식
다목적 스프링클러	10 ha	7.5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식: 노즐 및 노즐대 1식, 펌프1식</li> <li style="padding-left: 20px;">파이프시설 1식</li> <li>○ 상하이동식 : 탱크용량 3톤이상, 상하이동거리 80~250cm</li> </ul>
모노레일	5 ha	1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 : 30° 이상</li> <li>○ 등판능력 : 250kg이상/1회</li> </ul>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과원내 운반차량	7 대	4	28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가지절단기	10 대	2	20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전정목 분쇄기	5 대	2	10	○ 파쇄능력 : 나무직경 7cm이상
토양개량	20 ha	0.1	2	○ 토양개량제 구입비
반사필름	20 ha	0.6	12	○ 반사필름 구입비
덕 시 설	20 ha	4	80	○ 풍수피해가 예상되는 과종 우선 지원
비가림시설	10 ha	20	200	○ 하우스형 비가림시설
서리방제시설	1 ha	28	28	○ 쉼 10개이상/ha, 온도감지장치 및 자동콘트롤설비
인공수분기	1 조	4	4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약파기, 화 분정선기 등 5종 1조 기준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굴 삭 기	1 대	13	13	○ 자체중량 1톤미만으로 버켓 산적 0.016루베 이상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SS 분무기 (다목적SS기 포함)	6 대	12	72	○ 기종별 실 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트 렉 타	6 대	15	95	○ 플라워, 로타베이타, 트레일러등 부속 작업기에 따른 실 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승용관리기	6 대	20	120	○ SS장치, 적재함, 퇴비살포기, 제초기, 중경제초기, 잔가지파쇄기, 구굴기, 복토기등 부속작업기에 따른 실 구입 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수출용자재>				수출단지에 지원
봉    지	160만매	0.176	28	○ 수출단지의 계획물량에 의거 지원
포장상자	6만상자	14	84	○ 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포장 ○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묘목생산>				허가받은 과수묘목생산업자에 지원
묘목생산	70천주	0.5	35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량 신품종 증식, 품종갱신용 묘목생산등 수급상 필요할 때만 지원

○ 감 골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 공동사업 > 저온저장고	200 평	백만원 2.5	백만원 500	<p>과실생산자조직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100-200평</li> <li>○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li> <li>○ 콤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이상</li> <li>○ 에어커튼 설치</li> <li>○ 응축기 : 콤프레서와 동일 마력</li> <li>○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 1식(시간당 20ℓ 이상)</li> <li>○ 메인다트 : 1식</li> <li>○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li> <li>○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li> <li>○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li> </ul>
선 과 장	1 동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150평규모</li> <li>○ 대형선과장 : 3조식 1대 (선과능력 : 3만개/시간)</li> <li>○ 제함기, 테이핑기, 밴딩기, 전자저울각1대</li> <li>○ 벨트 로라, 무구동 로라, 작업대, 선반, 문베어 각1식</li> <li>○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li> </ul>
집 하 장	200 평	0.3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200평</li> <li>○ 바닥 : 콘크리트 시공</li> </ul>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공동퇴비장	200 평	1,675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평 : 200평</li> <li>○ 발효조 시설 : 년산 2,500톤 기준</li> <li>○ 제품보관 및 관리시설 : 1조</li> <li>○ 혼합기 및 스키드로다 : 각 1대</li> <li>○ 톱밥 및 왕겨분쇄기 : 1대</li> <li>○ 운배어 시스템 : 1조</li> <li>○ 원료투입기 : 1대</li> <li>○ 자동포장기 : 1대</li> </ul>
수송차량	1 대	10	10	○ 차종별 구입가격 기준
지 계 차	1 대	15	15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큰 배 어	1 대	10	10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파 레 트	400 개	0.03	12	○ 플라스틱 또는 목재 파레트
운반상자	10천개	2.5	25	○ 20kg들이 플라스틱 제품
< 개별사업 >		-		과실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에 지원
품종갱신	20 ha	4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량 신품종으로 개식 또는 고접갱신</li> <li>○ 수분수 부족포장 수분수 확보 : 주품종의 15-20%</li> </ul>
배수시설	20 ha	3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거배수(배수로, 집수로 등)</li> <li>○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li> </ul>
관 정	5 공	3	15	○ 지역실정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선택
점적관수	10 ha	2	20	○ 점적관비 1식, 액비혼입기 1식
다목적 스포팅클러	10 ha	7.5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식 : 노즐 및 노즐대 1식, 펌프1식, 파이프시설 1식</li> <li>○ 상하이동식 : 탱크용량 3톤이상, 상하이동거리 80~250cm</li> </ul>
모노레일	5 ha	1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 : 30° 이상</li> <li>○ 등판능력 : 250kg이상/1회</li> </ul>
과원내 운반차량	7 대	4	28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가지절단기	10 대	2	20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전정목 분쇄기	5 대	2	10	○ 파쇄능력 : 나무직경 7cm이상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토양개량	20 ha	0.1	2	○ 토양개량제 구입비
반사필름	20 ha	0.6	12	○ 반사필름 구입비
덕 시설	20 ha	4	80	○ 풍수피해가 예상되는 과종 우선 지원
비가림시설	10 ha	20	200	○ 하우스형 비가림시설
서리방제시설	1 ha	28	28	○ 헥타 10개이상/ha, 온도감지장치 및 자동콘트롤설비
인공수분기	1 조	4	4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약파기, 화분정선기 등 5종 1조 기준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굴 삭 기	1 대	13	13	○ 자체중량 1톤미만으로 버킷 산적 0.016루베 이상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SS 분무기 (다목적SS기 포함)	6 대	12	72	○ 기종별 실 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트랙 타	6 대	15	95	○ 플라워, 토타베이라, 트레일러등 부속 작업기에 따른 실 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승용관리기	6 대	20	120	○ SS장치, 적재함, 퇴비살포기, 제초기, 중경제초기, 잔가지파쇄기, 구굴기, 복토기등 부속작업기에 따른 실 구입 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수출용자재>				수출단지에 지원
봉 지	160만매	0.176	27	○ 수출단지계획물량에 의거 지원
포장상자	6만상자	14	84	○ 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포장 ○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묘목생산>				허가받은 과수묘목생산업자에 지원
묘목생산	70천주	0.5	35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량 신품종 중식, 품종갱신용 묘목생산등 수급상 필요할 때만 지원



####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생산자조직당 600백만원 이상 3,000백만원 이하
  - 수출단지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봉지 및 포장상자 사업을 추진할수 있음.
- 지원조건
  - 생산자조직이 선정한 사업의 사업비중 국고와 지방비로 50%를 보조지원하고 30%는 용자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사업실시자가 부담함
  -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농협(전문농협 포함),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생산자조직이 희망하는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대여함
    - 기타 사항은 『농특회계 용자업무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름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동일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법인화된 품목별 생산자조직으로 사업추진 능력과 자부담능력이 있어야 함.

#### (2) 신청절차

-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사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
  - 회원농가의 개별사업은 생산자조직이 발부한 사업대상자 추천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
- 2개 시.군 이상을 관할하는 생산자조직은 전체 사업계획과 별도로 시.군단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각각 신청

#### (3) 구비서류

- 파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 라. 대상자선정

### (1) 우선순위

#### □ 1순위

- 도이상 광역단위로 조직된 품목별 생산자조직
  - 조직의 재배면적이 전국재배면적의 20%이상 되어야 함.
- 『과실수출단지 지정요령』에 의거 지정된 수출단지

#### □ 2순위

- 수개 시.군을 관할하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 □ 기 타

- 동일 순위에서는 재배면적이 많은 조직을 우선적으로 선정

### (2) 선정절차

- 선정기관 : 시.군,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
- 심의방법
  -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공개 심의
- 심의시 고려사항
  - 조직의 활성화 정도
    - 참여농가수, 조직의 규모 등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의 적합 여부
    - 조직의 운영 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비 조달 능력
    -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자부담 능력
    -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조직의 부지확보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 조직의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 여부
    - 사업량 및 단가의 적정성
    - 생산자조직의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가능성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마. 사업시행

### (1) 사업기간

○ 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시장.군수는 조직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합지침에 부합되면 곧 바로 시행토록 하고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사업 추진시 고려할 사항

- 세부사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함.
- 세부지원 사업에 제시된 단가는 기준단가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많아 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할수 있으나, 이 경우는 계획사업비내에서 조정하고 시장.군수가 인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표준사업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시장.군수가 인정하여야 함.
  -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체계구축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선과기등 농가용 유통 시설은 지원할 수 없음
  - 과실 장기 수급안정을 위하여 포도, 감귤의 신규과원조성은 지원 불가
  - 과실저온저장고등 공동시설은 관내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설치
- 농기계, 시설, 자재는 동일품목이 형식검사합격, KS 규격획득등 정부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품목이 있는 경우는 인정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
- 사업계획 변경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는 사업단가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집행
- SS분무기, 트랙터, 굴삭기등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한 지원대상기종의 보조금 및 융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요령과 같이 공급자에게 직접지급할수 있음.
  -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불위임장, 신청, 지급, 판매대금 중앙결제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요령에 준함.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함

나. 보 고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양식 : 별지제4호서식)
- 사업계획변경 : 연 2 회(상반기 : 7월15일까지, 하반기 : 12월15일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 : 익년도 3월말까지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과수화훼과 (02-504-9425,9426)
- 시.도 : 시(농정과), 도(농산물유통과, 제주 감귤진흥과)
- 시.군 : 산업과

## 6. 기 타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함

<별지제1호서식>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

(1) 조직현황

조직명										
소재지	(주소)					(TEL)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설립일						설립법적근거				
회원수	능가			자산규모			백만원			
관할구역										
과재배현황	계	사과	배							
	면적 생산량	ha 톤								
시설현황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평	개소 (톤)	Set	(대 톤)	평				
	개별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점적: 스프링: 클러	ha 평	평	평	대 (톤)				
(주) : 1. 선과기 ( )내는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 ( )내는 보유대수에 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 특기사항										

(2) 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계	-	-	-					
(1) 공동시설 ○○○○ ○○○○								
(2) 개별시설 ○○○○ ○○○○								

- 자부담조달 계획
- 건축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3) 향후사업계획

- 조직활성화 방안
- 생산기반시설 확충
- 공동출하 계획
- 기 타

<별지제2호서식>

# 사업대상자 추천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과수재배현황

	계	사과	배				
면적 생산량	ha 톤						

##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								
○○○								

위 사람은 (○○○ 조직)의 회원농가로서 조직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직과 함께 생산·유통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95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조직) 대표

<별지제3호서식>

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

(1) 도 집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지 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농가수
계		-						( 호 )
(1) 공동시설 ○○○○ ○○○○ ○○○○								
(2) 개별시설 ○○○○ ○○○○ ○○○○								

※ ( )내 농가수는 공동시설 이용등 지원 혜택을 받는 농가수



(2) 시·군별, 조직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조직별	세부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지 원 농가수 (호)
					계	국고	지방	용자	자담	
합 계	-	-		-						(호)
○○ 군	-	계								
	○○조직 (과종명)	(소 계) (1)공동시설 ○○○○ ○○○○ ○○○○ (2)개별시설 ○○○○ ○○○○ ○○○○								- - -
○○ 군	-	계								
	○○조직 (과종명)	(소 계) (1)공동시설 ○○○○ ○○○○ ○○○○ (2)개별시설 ○○○○ ○○○○ ○○○○								- - -

<별지제4호서식>

(년도, 분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추진상황					사업비 집행상황				
		진도별 사업량					종합 진도	국 고		용 자	
		20%	40	60	80	10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						%				
(1)공동시설 ○○○○ ○○○○ ○○○○											
(2)개별시설 ○○○○ ○○○○ ○○○○											

※ 주요사업별 공정별 진도 : 별표 1참조

<별표 1>

## 주요 사업별 공정별 진도

세부 사업별	공정별	진도	비고
저온저장고, 선과장등 기계설치가 수반되는 건축물	대상자선정	10	
	부지확보	20	
	설계도작성	30	
	건축허가	40	
	업체선정	50	
	기초공사	60	
	골조공사	70	
	지붕공사	80	
기계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	대상자선정	10	
	부지확보	20	
	설계도작성	30	
	건축허가	40	
	업체선정	50	
	기초공사	60	
관수시설	골조공사	70	
	지붕공사	80	
	내부공사	90	
	준공검사	100	
	대상자선정	25	
	업체선정	50	
농기계구입	착공	75	
	공공	100	
	완공	100	
농기계구입	대상자선정	30	
	구입계약체결	70	
	기계인수	100	

(주) : 기타 사업은 상기유사한 사업에 준함

##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자율)

### 1. 사업목적

- 화훼재배농가에게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종합지원하여 생산에서 부터 출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는 체제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꽃 품질향상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2. 추진방향

- 기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유도
-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제반시설의 집단화유도로 사업효율의 극대화 도모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총 계	'92-'94 ※	'95	'96	'97	'98	99~2004
○ 사업량	개소 235 백만원	10	15	20	30	30	130
○ 총사업비	917,370	48,420	57,930	77,240	115,860	115,860	502,060
- 국 고	229,833	12,595	14,483	19,310	28,965	28,965	125,515
- 지방비	229,833	12,595	14,482	19,310	28,965	28,965	125,515
- 융 자	275,211	14,426	17,379	23,172	34,758	34,758	150,618
- 자 담	182,494	8,704	11,586	15,448	23,172	23,172	100,412

※ '92, '93년에 추진한 종합시범단지 7개소 사업비포함

나. '96 지원계획

(1) '96 예산

사업량	단 가	총사업비	재 원 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 담
개소 20	백만원 3,862	77,240 (100%)	19,310 (25%)	19,310 (25%)	23,172 (30%)	15,448 (20%)

- 예산단가(3,862백만원)는 개소당 표준사업비 4,827백만원의 80%를 계상

(2) 시·도별 지원계획

	사업량	단 가	총사업비	재 원 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 담
계	20 개소	3,862 백만원	77,240 (100%)	19,310 (25%)	19,310 (25%)	23,172 (30%)	15,448 (20%)
서울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경기	3	3,862	11,586	2,896.5	2,896.5	3,475.8	2,317.2
강원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충북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충남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전북	4	3,862	15,448	3,862	3,862	4,634.4	3,089.6
전남	2	3,862	7,724	1,931	1,931	2,317.2	1,544.8
경북	2	3,862	7,724	1,931	1,931	2,317.2	1,544.8
경남	4	3,862	15,448	3,862	3,862	4,634.4	3,089.6
제주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표준단위사업내용

세부사업	단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주요시설내용
합 계	-	-	백만원	백만원	○사업비의 80%로 예산편성(3,862백만원)
○ 생산시설					
- 유리온실	ha	1	1,200	1,200	철골구조, 관수시설, 자동액비시비장치, 2층커튼, 온수보일러, CO <sub>2</sub> 발생기, 방제, 살수기, 환풍기, 환경제어시설 등
- 경질판온실 (PET, PC, PVC 등)	ha	2	750	1,500	경량철골구조, 관수, 시비장치, 2층커튼, 강제환기장치, 온수보일러 또는 온풍난방기, CO <sub>2</sub> 발생기, 환풍기 등
- 비닐온실	"	2	282	564	파이프골조, 관수시설, 난방기, 온도센서, 타이머, 누전차단기, 커튼장치 등
- 조직배양실	평	50	2.5	125	브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향온, 향습설비, 배양시설 등
- 관 정	공	2	37	74	암반관정(1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한함)
- 비상발전기	대	3	8.3	25	상용전력용량의 약3배 용량 수준 (1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한함)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평	200	4.5	900	구근류 등의 저장고
			2.5	500	기타 화훼류의 저장고
- 저온처리실	평	90	1.1	99	브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냉동, 단열 등
- 집하장	평	200	0.8	160	평지콘크리트, 브록조건물 등
- 선별처리장 등	"	200	0.4	80	단열철골유리온실 이상(건물면적의 1/10 이상 저온저장고 건설가능)
- 수송차량	대	5	15	75	2.5톤이상 보냉 또는 냉동차 등
- 절화선별 결속기	"	5	5	25	선별, 절단, 결속장치 등

주) 1.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저온저장고 단가에는 설계·감리비가 포함

(2)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 25%, 지방비 25, 용자 30, 자담20
-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계정
  - 용자조건

시설종류	금리	상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리온실</li> <li>○ 경질배양실</li> <li>○ 조온저장고</li> <li>○ 집하장</li> <li>○ 선별처리장</li> <li>○ 저온처리실</li> </ul>	5%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온실</li> <li>○ 기타사업</li> </ul>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전문농협)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공사기성고 통보 : 시장.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
  - 용자조치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조치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 담보실행 및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다. 사업신청

(1) 사업신청자 자격

- 아래 각호의 자로 구성된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통: 온실등 시설을 설치할 자기소유의 부지를 확보(증빙서류첨부)하고 자부담능력과 담보능력이 있는 자(농협장의 확인서 첨부)
  - 집단화를 위해 시설별 용자기간(철골온실 : 20년, 파이프 비닐온실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토지도 가능(임대계약서 법원공증사본첨부)

- 사업신청일 현재 화훼를 재배하고 있고 재배경력이 3년이상인자
- 최근 5년 이내에 학교, 연구소, 행정, 지도기관, 공사 및 기업체등의 시설원예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증명서류첨부)
- 시장,군수가 단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서 (사)한국화훼협회가 추천하는 자. 이 경우 단지당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한함)

(2) 사업신청방법

- 자격을 갖춘 농가들이 생산자조직(농협 포함)을 결성하고 농림수산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 서식) 및 기타서류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3) 우선지원대상

신청자자격, 생산자조직의 활동, 사업계획, 사업지역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평가요령 : 별도시달 )

(가) 생산자조직 활동 및 사업계획

- 참여농가수가 많고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사업규모가 크고 생산시설중 유리온실, 경질판온실의 사업량이 많은 조직
- 재배작목을 전문화하여 집단화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조직
- 재배기술 수준이 높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조직
- 화훼공판장 또는 직판장으로 규격출하실적이 많은 조직

(나) 사업지역

- 지방비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 시,군
- 시설이 설치될 지구의 집단화(인접필지)가 잘된 지역



- 사업대상부지가 건축등 사업추진에 따르는 법적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 건축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하여 법적 제한이 있는 지역은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설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화훼재배에 적합한 지역
  - 홍수,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지내력이 양호하여 기반정비가 용이하고 용수확보, 진입도로, 전기인입 등이 용이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 5.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 가. 사업계획 수립

- 정부가 제시한 표준단위사업내용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신청
  - (통합요령 별첨 서식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름)
- 표준단위사업이외의 사업도 가능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객관적인 단가와 사업 필요성 제시
- 개소당 세부사업내용은 농가가 자율로 선택가능하나 기존시설을 고려 생산 및 유통시설을 균형있게 설치
- 개별시설 농가당 지원규모
  - 온실면적 : 600 - 1,500평이내
  - 기타세부사업 :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조정가능
- 세부사업중 생산시설은 최소 1ha이상씩 인접필지로 집단화하되 관련 유통시설을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인접하고 있는 읍·면범위내에서 2 - 3개소로 분산 집단화 가능
- 참여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지당 최소 10명 이상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집단화된 사업지역에서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시공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기준의 사업비(3,862백만원) 범위내에서 다음세부사업을 선택하여 실시가능  
(시공업체 선정부분 참고)

종 류	기 준 사 업 량	단 가	기 준 사 업 비
○ 양액재배시설	1,500평이내/농가	50천원/평	75,000천원
○ 비상발전시설	1set/단지	25,000 " /set	25,000
○ 변전시설	1set/단지	30,000 " /set	30,000
○ 압반관정	2공/단지	37,000 " /공	74,000
○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2Km/단지	90,000 " /Km	180,000
계			384,000

- 1개소사업비(3,862백만원)로 유리온실, 경질판(PET, PC 등)온실을 합하여 2ha 이상  
설치토록 지도하되 설치지역, 재배작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온실종류를 선택
  - 온실종류별 적정작물(참고)
    - . 유리 또는 경질판온실 : 장미, 거베라, 카네이션, 서양난 등 광요구량이 많거나  
고온성 작물 또는 수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 . 경질판 또는 비닐온실 : 국화, 안개꽃, 튜립, 선인장, 관엽식물 등 광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저온성 작물 또는 내수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 1개 사업은 1개 시.군내에서 추진함을 원칙함.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1개사업을 2개  
시.군에 걸쳐 사업시행 가능(예: 갑군+을군 → 1개소 3,862백만원)하되 최대한  
1개소로 집단화시켜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별 개소당 사업규모를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2개소 사업비로  
1개시.군 집단설치도 가능)하나, 시.도의 전체사업비는 기준사업비의 개소단위로 신청
  - (예) ○○ 도 : 3개소 11,586백만원  
갑군: 1개소 3,562백만원, 을군 : 1개소 4,162백만원, 병군 : 1개소 3,862백만원

## 나.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 시장.군수는 화훼생산유통단지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 구성 : 관계공무원(지도소 포함), 단지회장,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농협장, 학계, 시공업체,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능 : 사업계획서 심의, 분기별 사업추진평가, 사업계획변경(사업대상자 포함)심사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내용의 심사,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의 심의

## 다.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 농촌진흥청 :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온실설치 및 작물재배관련 기술지도, 농민 교육훈련, 사업성과분석 등
- 시 . 도 :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변경), 사업추진 감독 및 상황보고
- 시 . 군 : 사업신청서 접수.심사.후보지구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지도.감독 및 상황보고, 준공검사.사업비 집행.정산, 사후관리
- 농어촌진흥공사 : 설계 및 시공감리, 설계기준개발.보급,용수개발, 안전시공기술개발, 시설자재산업육성 등
- 농협중앙회 : 금융지원, 기자재공급, 계통출하 및 판매지원
- (사)대한온실산업협회 : 시공기술개발.보급, 시공업체지도.감독, 주요 온실기자재 공동구매알선

## 라. 설계, 시공업체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

### (1) 설계

#### □ 시설별 설계방법

#####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 실시설계도서 : 농진청의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를 기준설계도로 하여 현장에 맞게 실시설계도서 작성
- 설계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 설계비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 1993-277호)의 75%적용  
. 과학 51260 - 114('95.3.29) 참고
- 설계계약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후 2개월이내에 체결
- 설계비지급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분으로 설계도서가 납품되는 즉시 설계업체에 지급

##### ○ 비닐온실

- 시공도서 : 농진청의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를 기준설계도로 하여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 조직배양실, 유통시설 및 기타

- 사업대상자가 지역여건에 맞게 시공업체와 협의 설계 시공

#### □ 설계 또는 설계변경시 고려사항

- 표준단위사업내용에서 제시된 세부사업에 있어서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시공업체를 입찰제로 선정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추가설치가 가능한 양액재배시설은 고품배지경(순환식)에 양액자동조절시스템 기준이상
- 낙뢰등 돌발재해대비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
- 모든 시설, 부대장치 및 기기 등은 농진청 표준설계도 및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 되도록 설치(국산자재 사용비율은 사업비 기준 60%이상 되도록 지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설계심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 (2)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시공업체 선정

####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 '96년 사업은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서, 사업비내역, 시방서등 포함)에 의거 사업대상자가 시장.군수승인을 받아 선정하거나 시장.군수에 위탁하여 경쟁입찰로 선정(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지역에 추가시설설치 허용 : 사업계획 수립란 참고)
  - 시장.군수는 필요시 경쟁입찰관련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재위탁할 수 있음.
  - '97년부터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할 계획임
- (시장.군수는 '97년사업 신청을 받을시 신청자에게 이점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 기타시설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선정

###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온 실 : 건설업법에 의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 관 정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유자격 민간관정개발업체
- 기타시설 : 설치할 시설의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 □ 계약시 주의사항

- 시장.군수의 입회하에 계약하되 세부사업의 공종별로 별개의 시공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함
-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등 시설물의 A/S관련사항을 명확히 할 것

### □ 사업착공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시설설계 계약을 완료하고 5개월 이내에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5개월내에 사업착공을 못할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변경 또는 사업반납조치를 취하여야함

### (3) 시 공

- 자재규격화와 국산화 촉진을 위해 자재중 철골조, 유리, 알루미늄바 등은 가능하면 (사)대한온실산업협회를 통해 공동구매토록 권장

### (4) 공사감리

- 감리대상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저온저장고
- 감리기관 : 온실(농어촌진흥공사), 저온저장고(시설설계업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 감리계약 : 시장, 군수입회하에 사업시행 생산자조직대표와 감리기관이 계약
- 감리수행 : 농림수산부의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거 감리
  - 채소 51240 - 127('95.3.22)참고
- 감리비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 1993 -277호)의 75%적용
  - 과화 51260 - 114('95.3.29)참고
- 감리비지급 : 사업비 정산시 시장, 군수가 사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보조금에서 감리업체에 지급

## 파.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위임함
- 시장, 군수는 자담사업비를 생산자조직 대표자 명의로 된 은행구좌에 예치토록하여 공사기성고에 따라 집행하고, 수시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
- 철골온실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사업지역은 철골온실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입찰전에 시장, 군수에게 예치하고 공사기성고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집행
-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즉시 시공업체에 지급하여야함
  -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농민대표 입회하에 농어촌진흥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게 지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회의, 유인비 등)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 바.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사업지역의 변동, 표준단위사업에 없는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 사. 교육 및 경영지도

- 단지별 참여농가 1인이상 기설치된 유리온실에서 1개월이상 실습교육토록 유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농어촌진흥공사 광양유리온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선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유리온실 시설의 운용, 경영에 관한 교육실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지역별로 농촌지도소의 직원을 전담지도사로 지정하여 지도
  - 재배작물 입식, 재배관리, 경영지도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사업대상자의 영농일지 작성을 확인, 지도
  - 작목입식일부부터 1년간의 경영분석 등

## 6. 사후관리 등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 7. 사업안내

확획·생산·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부 과수확획과 ☎ (02) 504-9425~6
- 각 시도 농산물 유통과 원예계(특작계)
- 각 시군 산업과 농사계(유통계, 특작계, 농산계)



#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 목적

- 특용작물(버섯, 생약, 차, 잡업)생산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에게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확충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 2. 추진방향

- 분산·개별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토록 Package화하여 집중지원
-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자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목별 사업메뉴를 제시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 ~2004	계
사업량			64개소	138	172	172	1,032	1,594
사 업 비	계	62,134	27,993	59,904	74,356	74,356	446,136	744,879
	국 고	5,599	2,799	6,103	7,586	7,586	45,516	75,189
	지방비	5,599	2,799	6,103	7,586	7,586	45,516	75,189
	용 자	37,467	16,796	35,717	44,313	44,313	265,878	444,484
	자 담	13,469	5,599	11,981	14,871	14,871	89,226	150,017

※ '94년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지원, '95년부터는 Package화하여 지원, '96년부터는  
 잠업종합단지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나. '96 지원계획

< 총괄 >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38	59,904,000	6,102,900	6,102,900	35,717,400	11,980,800
경 기	11	5,457,000	545,700	545,700	3,274,200	1,091,400
강 원	15	7,215,000	721,500	721,500	4,329,000	1,443,000
충 북	13	6,336,000	633,600	633,600	3,801,600	1,267,200
충 남	19	9,471,000	947,100	947,100	5,682,600	1,894,200
전 북	19	7,266,000	756,600	756,600	4,299,600	1,453,200
전 남	20	8,146,000	837,100	837,100	4,842,600	1,629,200
경 북	25	9,174,000	962,400	962,400	5,414,400	1,834,800
경 남	16	6,839,000	698,900	698,900	4,073,400	1,367,800

< 버 섯 >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버 섯 사 업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80	45,120,000	4,512,000	4,512,000	27,072,000	9,024,000
경 기	8	4,512,000	451,200	451,200	2,707,200	902,400
강 원	10	5,640,000	564,000	564,000	3,384,000	1,128,000
충 북	9	5,076,000	507,600	507,600	3,045,600	1,015,200
충 남	14	7,896,000	789,600	789,600	4,737,600	1,579,200
전 북	9	5,076,000	507,600	507,600	3,045,600	1,015,200
전 남	10	5,640,000	564,000	564,000	3,384,000	1,128,000
경 북	11	6,204,000	620,400	620,400	3,722,400	1,240,800
경 남	9	5,076,000	507,600	507,600	3,045,600	1,015,200

< 생 약 >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생 약 사 업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40	12,600,000	1,260,000	1,260,000	7,560,000	2,520,000
경 기	3	945,000	94,500	94,500	567,000	189,000
강 원	5	1,575,000	157,500	157,500	945,000	315,000
충 북	4	1,260,000	126,000	126,000	756,000	253,000
충 남	5	1,575,000	157,500	157,500	945,000	315,000
전 북	6	1,890,000	189,000	189,000	1,134,000	378,000
전 남	5	1,575,000	157,500	157,500	945,000	315,000
경 북	8	2,520,000	252,000	252,000	1,512,000	504,000
경 남	4	1,260,000	126,000	126,000	756,000	252,000

< 차 >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차 사 업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3	1,059,000	105,900	105,900	635,400	211,800
전 남	2	706,000	70,600	70,600	423,600	141,200
경 남	1	353,000	35,000	35,000	211,800	70,600

< 잠 업 >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잠 업 사 업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5	1,125,000	225,000	225,000	450,000	225,000
전 북	4	300,000	60,000	60,000	120,000	60,000
전 남	3	225,000	45,000	45,000	90,000	45,000
경 북	6	450,000	90,000	90,000	180,000	90,000
경 남	2	150,000	30,000	30,000	60,000	30,0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 시장.군수는 표준사업내용(Package)에 제시된 세부사업(menu)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menu)내의 시설내용도 현지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시설 및 기종을 선택
- 하나의 Package는 1개의 재배단지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따라 대규모단지에는 2개이상의 Package를 지원하거나 1개의 Package를 2개단지이상에 분리지원 가능
- 단위사업은 표준사업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군수가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업만 시행하거나 표준단위 사업이외의 사업도 추가할 수 있음.

다.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버섯 : 버섯종균 및 생산시설, 버섯첨단 재배사 시설, 버섯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냉동차량등
- 생 약 : 우량종묘 공동생산육묘포, 생약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생약집하장
- 차 : 다원조성, 생산기반시설, 제다시설등
- 잡 업 : 자동소독기, 빵수확기, 건조기, 분쇄기, 냉동기, 포장기등

(2) 지원대상

사 업 명	대 상 자
< 버섯 >	
○ 버섯 종균.배지생산 시설	○ 버섯종균.배지 생산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종균생산업 허가업체,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버섯첨단 재배시설	○ 자체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버섯재배 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년생산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농가)
○ 버섯 균상재배시설등	○ 일반버섯 재배사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을 희망하는 농가

사 업 명	대 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 운반차량</li> <li>○ 저온저장고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사업 실시 지역에서 증균배지 생산시설, 버섯첨단 재배시설, 버섯균상 재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li> <li>○ " "</li> </ul>
<p data-bbox="211 529 371 562">&lt; 생 약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육묘포설치</li> <li>○ 생약 재배시설</li> <li>○ 생약 조제시설</li> <li>○ 생약 집하장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ha이상 종묘를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 조직(농가)</li> <li>○ 생약재배 또는 재배희망 농가</li> <li>○ 생산자조직(농가), 생산자 단체</li> <li>○ 생산자조직, 생산자 단체</li> </ul>
<p data-bbox="211 863 353 896">&lt; 차(茶)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 원 조 성</li> <li>○ 생산기반조성</li> <li>○ 제 다 시 설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신규 조성농가</li> <li>○ 기존다원과 신규 조성다원의 기반시설 지원희망 농가</li> <li>○ 차재배 생산자조직(농가), 차재배겸 가공업자</li> </ul>
<p data-bbox="211 1147 353 1180">&lt; 잠 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기, 냉동저장고, 분쇄기, 포장기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잠농업협동조합</li> <li>○ 양잠생산자 조직</li> <li>○ 대규모 양잠농가</li> </ul>

(3) 지원규모(표준사업내용) 및 조건

○ 지원규모(표준사업내용) : 별표 1 참조

- 버섯(기준면적 : 1,200평)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 계 > ○ 종균배지생산 시설	50평/동	1	85	805 85	○ 건축물(전기)수도등 부대 시설 포함)  ○ 시설기기(탈병기, 보일러 살균기, 콘베어, 냉동시설 크린룸, 배합기, 입병기 기자재)
○ 첨단재배시설	150평/동	1	200	200	○ 건축물(전기, 수도, 실험실 무균실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통발제조기, 통발채, 혼합기, 콘베어, 입병기, 고압살균기, 자동접종기, 균확기, 억제기, 탈병기, 가습기, 냉동기, 온습도 자동제어장치, 진공포장기 등)
○ 균상재배시설	35평/동	30	15	450	○ 건축물(전기, 수도, 난방 온습도조절시설등 부대 시설포함)
○ 냉동운반 차량	대	1	20	20	○ 2.5톤 이상
○ 저온저장고등	20평/동	1	50	50	○ 건 축(부대기자재 포함)

※ 개소당 사업단가는 564백만원(표준사업단가 805백만원의 70% 적용)

- 생 약(기준면적 : 2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 계 > ○ 공동육묘포 설치	ha	1	30	450 30	○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토지입차료, 고용노력비등
○ 생약재배시설	ha	20	5	100	○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등
○ 생약조제시설	100평/동	1	200	200	○ 건축물 : 전기, 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 : 선별기, 탈피기 세척기, 탈수이송콘베어 절단기, 건조기, 상층콘베어 계측기, 자동포장기
○ 생약집하장등	150평/동	1	120	120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개소당 사업단가는 315백만원(표준사업단가 450백만원의 70% 적용)

- 차 (기준면적 : 2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 계 >				505	
○ 다원조성	ha	1	14.4	14.4	○ 개간비, 묘목대, 식재대등
○ 생산기반조성	ha	20	281.0	281.0	○ 관수시설(관정, 스프링), 방상기, 전정기, 자동채엽 기등)
○ 제다시설등	50평/동	1	209.6	209.6	○ 건축 : 전기, 수도등 부대 시설 포함 ○ 기기 : 급엽기, 증기, 냉각 기, 증엽기(증엽온베어, 증엽투입, 증엽개량) 조유기, 유념기, 증유기, 건조기, 포장기등  ○ 저온저장창고 30평1동

※ 개소당 사업단가는 353백만원(표준사업단가 505백만원의 70% 적용)

- 잠 업(기준면적 : 10ha)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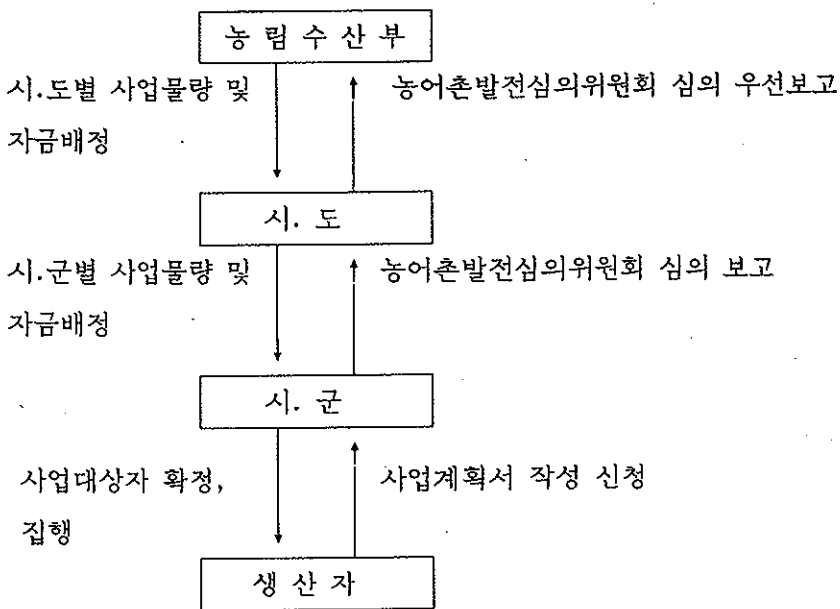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 계 >				107.0	
○ 건 조 기	대	3	6.0	18.0	○ 생력기계화 및 시설현대 화 시설위주로 지원하되
○ 냉동저장고	대	2	9.0	18.0	누에틀 이용한 건강보조
○ 분쇄기	대	2	8.5	17.0	식품생산.가공시설비등
○ 빵 수확기	대	4	3.5	14.0	양참농가 소득증대를
○ 빵 발 관정	정	2	5.0	10.0	위한 시설에 중점지원
○ 자동온풍기	대	6	1.5	9.0	
○ 빵가지절단기	대	3	3.0	9.0	
○ 포 장 기	대	2	2.5	5.0	
○ 빵발관리기	대	2	2.0	4.0	
○ 자동소득기등	대	2	1.5	3.0	

※ 개소당 사업단가는 75백만원(표준사업단가 107백만원의 70% 적용)

○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버섯.생약.차(국고보조 10%, 지방비보조 10, 용자 60, 자담 20)  
 잡 업(국고보조 20%, 지방비보조 20, 용자 40, 자담 20)
- \* 지원율은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용자조건 : 연리 5%(버섯 : 3년거치 5년상환, 생약.차.잡업 : 3년거치7년상환)

(4) 사업시행체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특용작물(버섯.생약.차.잡업)재배 또는 신규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생산자조직 포함)중 생산.유통(가공)시설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신청절차

- 자격을 갖춘 농민,생산자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 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관련 자료(통합요령 제2호 서식)

라. 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 생산자조직이 조성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공동이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주산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집단재배단지 조성지역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자
- 상기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작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심사, 선정)  
→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및 예산요구 → 농림수산부 예산요구 및 확보  
→ 시.도시달 → 사업대상자 확정

## 5.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등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절차
  - 사업시행농민 또는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사유 첨부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도지사는 경우 개소당 사업단가 범위내에서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나.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

## 6.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함

### 나. 보 고

- 분기별 진도보고(익월 15일까지) 및 해당년도 사업결과(정산)보고(익년1월말까지)  
: 별지 제1호서식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과(02-500-2681)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군 : 산업과  
(협조기관 : 농촌지도소, 농협도지부)

[별지 제1호서식]

특각생산·유통사업지원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계 획				실 실행 실적				비율(%)		
	사업량 (A)	사 업 비			사업량 (C)	능가수	사 업 비			C/A	D/B
		계 (B)	국 고 보 조	지 방 보 조			용 자	자 담			
계											
품목사업명											
-											
-											
-											
-											

[ 별표 1 ]

### 개소당 표준사업 내역

세부사업명	단 위	단 가	사 업 비
○ 버 섯		백만원	백만원
계			805
- 종균, 배지생산시설	50평/동	85	85
- 칩단재배시설	150평/동	200	200
- 균상재배시설	35평/동	15	450
- 냉동운반차량	대	20	20
- 저온저장고	20평/동	50	50
○ 생 약			450
계			450
- 공동육묘포설치	ha	30	30
- 생약재배시설	ha	5	100
- 생약조제시설	100평/동	200	200
- 생약집하장	150평/동	120	120
○ 차			505
계			505
- 다원조성	ha	14.4	14.4
- 생산기반조성	ha	281.0	281.0
- 제다시설	50평/동	209.6	209.6

※ 개소당 사업단가 : '95표준사업단가의 70% 적용

세부사업명	단 위	단 가	사 업 비
○ 잠 업 계			142
- 일반잠실	20평/동	1.1	26.4
- 공동잠실	30평/동	7.5	22.5
- 뽕수확기	대	3.5	17.5
- 초미립자동소독기	대	1.5	15.0
- 고치건조기	대	2.8	14.0
- 개량잠구	조	0.7	13.1
- 동력예취기	대	1.0	10.0
- 자동수건기	대	3.0	9.0
- 열풍기	대	0.5	5.0
- 관정시설	공	1.0	5.0
- 자동온풍기	대	1.5	4.5

## 잠종 및 원잠종생산(자율)

### 1. 목 적

- 잠종산업의 육성을 통한 우수한 잠종기술개발과 양잠능가의 안정적인 잠종공급 및 잠종수출 증대를 위하여 잠종생산자에게 생산비를 지원하고자함.

### 2. 추진방향

- 국제적수준의 잠종생산 기술유지 및 우수한 잠종생산지원
- 양잠능가가 필요로 하는 잠종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 우수한 잠종의 생산수출을 통한 잠종생산능가 소득증대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	원 잠 종	31,120 <sup>매</sup>	7,050	5,000	8,000	9,000	66,000	126,170
	보급잠종	천상자 716	155	60	135	150	1,347	2,563
사업비	계	5,428	1,524	630	1,359	1,512	13,311	23,764
	국 고 (원잠종)	280	64	45	72	81	594	1,136
	지 방 비 (원잠종)	280	64	45	72	81	594	1,136
	용 자 (보급잠종)	3,408	977	378	851	945	8,486	15,045
	자 담 (보급잠종)	1,460	419	162	364	405	3,637	6,447

나. '96 지원계획

( 단위 : 천원 )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원잠증	보급잠증	계	국 고 (원잠증)	지 방 비 (원잠증)	용 자 (보급잠증)	자 담 (보급잠증)
계	매 5,000	천상자 60	630,000	45,000	45,000	378,000	162,000
경 기	100	-	1,800	900	900	-	-
강 원	150	-	2,700	1,350	1,350	-	-
충 북	250	4	40,500	2,250	2,250	25,200	10,800
충 남	600	-	10,800	5,400	5,400	-	-
전 북	1,000	-	18,000	9,000	9,000	-	-
전 남	400	10	97,200	3,600	3,600	63,000	27,000
경 북	1,600	23	235,800	14,400	14,400	144,900	62,100
경 남	900	23	223,200	8,100	8,100	144,900	62,100

##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 기관 : 도지사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원 잠 종 : 잠업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원잠종 생산비지원
- 보급잠종 : 잠종생산업자가 생산하는 보급잠종 생산비용자

### (2) 지원대상

- 원 잠 종 : 잠업사업소(8개소)
- 보급잠종 : 잠종생산업자(34개업자)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원 잠 종 : 18천원/매, 국고 50%. 지방비 50%
- 보급잠종 : 9천원/상자, 용자 70%. 자담 30%(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 사업시행 체계

- 원 잠 종 : 농림수산부 → 도 → 잠업사업소
- 보급잠종 : 농림수산부 → 도 → 잠종생산업자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원 잠 종 : 잠업사업소
- 보급잠종 : 잠종생산업자

### (2) 신청절차

- 원 잠 종 : 잠업사업소 → 도 → 농림수산부
- 보급잠종 : 잠종생산업자 → 도 → 농림수산부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 농림수산업정책자금 융자신청자료(통합요령 제2호서식)

##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 원 잠 종 : 잠업사업소
- 보급잠종 : 한국잠종협회에 가입한 잠종생산업자

(2) 보급잠종 생산업자 우선순위

- 병독이 없는 우량잠종 생산업자
- 잠종수출실적이 많은 잠종생산업자
- 잠종생산실적이 많은 생산업자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함.

### 나. 보 고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97. 1. 20일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과 (02-500-2681.2)
- 도 : 농산물유통과

# 인삼 생산지원사업 ( 자육 )

## 1. 목 적

○ 인삼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므로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확대 도모

## 2.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목 표	'95	'96	'97	'98	'99 이후
사업량		33,870	-	2,420	3,030	4,060	33,870
사 업 비	계	2,210,732		175,992	210,316	260,632	2,210,732
	국 고	17,910	-	600	1,154	2,308	17,910
	지방비	14,782	-	532	950	1,900	14,782
	용 자	484,860	-	20,300	45,904	59,808	484,860
	자 담	1,693,180	-	154,560	162,308	196,616	1,693,180

나. '96 지원계획

○ 총 괄

( 단위 : 백만원 )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 담
계	2,420 <sup>ha</sup>	175,992	600	532	20,300	154,560
인천 대전	35 4	2,442.2 320	16.3 -	9.5 -	295.8 32	2,120.6 288
경기 강원	292 146	20,501.2 9,248.2	94.2 80.9	87.4 74.1	2,491.2 1,299.4	17,828.4 7,793.8
충북 충남	493 577	36,398.2 41,967.4	99.9 140.9	93.1 127.3	4,109.4 4,841.4	32,095.8 36,857.8
전북 전남	571 17	41,845.2 941.2	124.6 18.2	117.8 11.4	4,777.6 155.2	36,825.2 756.4
경북 경남	267 18	20,941.2 1,387.2	18.2 6.8	11.4 -	2,155.2 142.8	18,756.4 1,237.6

○ '96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식재자금 >

( 단위 : 백만원 )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 담
계	2,130 <sup>ha</sup>	170,400	-	-	17,040	153,360
인대 천전	29	2,320			232	2,088
	4	320			32	288
경강 기원	245	19,600			1,960	17,640
	106	8,480			848	7,632
충충 북남	443	35,440			3,544	31,896
	508	40,640			4,064	36,576
전전 북남	508	40,640			4,064	36,576
	10	800			80	720
경경 북남	260	20,800			2,080	18,720
	17	1,360			136	1,224

< 우량묘삼생산 >

( 단위 : 백만원 )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 담
계	10 <sup>ha</sup>	272	68	-	68	136
인대 천전	1	27.2	6.8		6.8	13.6
	-	-	-		-	-
경강 기원	1	27.2	6.8		6.8	13.6
	1	27.2	6.8		6.8	13.6
충충 북남	1	27.2	6.8		6.8	13.6
	2	54.4	13.6		13.6	27.2
전전 북남	1	27.2	6.8		6.8	13.6
	1	27.2	6.8		6.8	13.6
경경 북남	1	27.2	6.8		6.8	13.6
	1	27.2	6.8		6.8	13.6

< 재배시설현대화 >

( 단위 : 백만원 )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 담
계	280 <sup>ha</sup>	5,320	532	532	3,192	1,064
인대	천전 5	95	9.5	9.5	57	19
	-	-	-	-	-	-
경강	기원 46	874	87.4	87.4	524.4	174.8
	39	741	74.1	74.1	444.6	148.2
충청	북남 49	931	93.1	93.1	558.6	186.2
	67	1,273	127.3	127.3	763.8	254.6
전전	북남 62	1,178	117.8	117.8	706.8	235.6
	6	114	11.4	11.4	68.4	22.8
경경	북남 6	114	11.4	11.4	68.4	22.8
	-	-	-	-	-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식재자금 : 인삼을 심을때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용자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재배의욕 고취로 생산기반 유지
- 우량묘삼생산 : 우량한 묘삼의 생산 및 보급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 재배시설의 현대화 : 인삼생산시설인 지주목을 반영구적인 프라스틱으로 교체하여 생산비 절감

(2)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재원별 지원비율 및 상환조건
○ 식재자금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	융자10%, 자담90 연리5%, 3~5년거치 일시상환
○ 우량묘삼생산	"	국고25%, 융자25, 자담50 연리5%, 2년거치 일시상환
○ 재배시설현대화	"	국고10%, 융자60, 지방보조 10, 자담20 연리5%, 3~5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율은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 절차 : 생산농가 → 인삼협동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부

다. 사업신청자격

○ 식재자금 :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경작지정을 받거나 재배신고를 한 자

○ 우량묘삼생산

- 우량묘삼생산 기술수준이 우수한 묘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인삼협동조합, 인삼영농조합법인)

- 단, 판매전문 묘포경작자, 연작재배지 파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배시설 현대화

- 당해년도 식재할 자로서 식재면적 기준소요량 지원

- 우량묘삼 생산자로 금년도 파종할 자

라.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통합요령 제1호 서식)

#### 4. 세부사업내용 및 단가

##### 가. 우량묘삼 생산자금

(단위 : 10a, 원)

비 목	금 액	비 고
제 재료비	2,200천원	○ 약토(퇴비), 원야토(토양), 모래
토양개량비	520	○ 약토혼합 및 묘상 두둑작업
계	2,720	

##### 나. 재배시설 현대화 시설자금 (지주목)

구 분	평당소요량	금 액	사 업 비
계		6,463 원/kg	19 백만원/ha
○ 기본시설			
- 4각 철관(백관)	1 개	1,040	
- 지주목, 연목, 도리목등	6 개	4,143	
- 피복물(180×180)	1 매	1,280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별 작성보고 (계획대 실적)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과 (☎504-9421)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군 : 산업과 (협조기관 : 인삼협동조합)

# 고품질 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지원(공공)

## 1. 목 적

-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채소종자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신품종 육성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종묘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종묘산업을 육성,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추진방향

- 우량한 채소종자 신품종 육성개발을 위하여 채소종자의 생산 보관시설 및 육종자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므로서 채소생산기반 구축

## 3. 투용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용자 계획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사업량		152,809평/ 94품종	9,650/ 24	6,200/ 45	4,300/ 100	4,300/ 100	25,800/ 600	203,059/ 963
사업비	계	12,957	2,428	4,290	9,200	9,200	55,200	93,275
	용 자	9,027	1,700	3,000	6,440	6,440	38,640	65,247
	자 담	3,930	728	1,290	2,760	2,760	16,560	28,028

## 나. '96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용 자	자 담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	6,200 45	백만원 4,286	3,000	1,286
- 육채종시설 (평)		2,036	1,425	611
- 신품종육종 (품종)		2,250	1,575	675

### ○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담 30%
- 용자재원 및 조건 : 농특회계용자계정 연리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 (1) 개소당 단위사업 내용 및 단가

세부사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채소종자육채종개발				백만원 4,290
○ 시설자금	평	6,200		2,040
- 저온저장고	"	500	2,000	1,000
- 일반창고	"	300	700	210
- 실험실	"	200	1,600	320
- 온실	"	200	1,300	260
- 망실 및 비닐하우스	"	5,000	50	250
○ 신품종육종	품종	45	50,000	2,250

### (2) 사업대상시설 및 품목

- 채소종자 육채종생산·보관에 필요한 시설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실험실, 온실, 망실 및 비닐하우스등
- 종묘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 14개(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채소종자의 육종개발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종묘생산자로서 사단법인 한국종묘협회에 가입한 종묘생산업체

### (2)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한국종묘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종묘업체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통합요령 제1호서식)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사업확정자가 증도에 포기하므로써 자금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철저
  - 육채종시설 : 육채종시설 허가가능여부 및 담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채소종자 신품종육종 : 한국종묘협회장이 추천한 업체의 신품종육종에 필요한 육종시설, 관리장비, 기술자 보유유무, 담보능력등 제반사항을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시.도지사 : 각 시장.군수가 보고한 사업신청내역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농림수산부에 보고
- 농림수산부 : 각 시.도지사의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종자생산실적, 수출실적, 연간 종자매출실적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 각 시.도에 계획시달

## 5. 행정사항

### 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

#### (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 변경절차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사유첨부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도지사는 사업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성격을 감안,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 나.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500-2683.4)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 공공 )

### 1. 목 적

생산자조직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소득과 경쟁력을 강화

### 2. 추진방향

- 생산자의 조직화 유도 및 조직의 활성화
  - 조직형태는 품목별로 자율결정하되 가능한 한 법인화 유도
- 우수조직에 집중지원으로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 조직중심의 생산유통시설 완비
  -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장기적으로 광역품목별 조직으로 육성
  - 저장, 가공, 유통, 수출등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생산자에 환원

###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사업내용

- 체 소 : 비축수매, 포전수매, 공동출하, 가공원료구입, 생산시설·자재 공동구입
- 파실, 화훼 : 생산시설·자재공동구입, 농산물수매 및 출하조절, 산지유통개선을 위한 유통시설 설치등의 사업을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

#### 나. 지원대상

- 양파, 마늘, 대파, 생강의 전국조직 및 이에 가입한 조직, 특수조합, 영농조합법인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참다래, 유자, 화훼등의 생산자조직

## 다. 사업실시기관 및 지원계획

품 목	사업실시기관	'96 지원계획
마 늘	농 협 중 앙 회	16,000
양 파	"	8,000
대 파	"	3,000
생 강	"	2,000
사 파	"	25,000
배	"	5,000
복 승 아	"	400
포 도	"	1,500
유 자	"	1,300
참 다 래	농수산물유통공사	2,500
화 훼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30,000
계		79,200

## 라. 재원 및 지원조건

- 재 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연 5%
- 용자기간 : 1년이내(시설자금은 10년이내)
- 지원기준 : 소요액의 80% 이내

##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채소 : 품목별 전국조직 및 이에 가입한 조직, 특수조합, 영농조합법인
  - 과일, 화훼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생산자조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자조직

○ 신청절차

생산자조직이 사업계획(통합요령 별첨서식)을 수립하여 품목별 해당 사업실시  
기관에 신청

## 나. 대상자선정

○ 선정권자 : 사업실시기관장 또는 품목별 전국조직 협의회

○ 선정기준

- 채소 : ① 생산·출하약정사업이 잘 이행된 조직

② 공동작업, 공동판매등 활동이 우수한 조직

③ 생산물의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④ 재배면적 비율이 높은지역의 조직

- 과일 : 공동시설(선과장, 저온저장고, 가공공장등)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화된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물의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 화훼 :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물의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 5.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약정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 6.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채소과, 과수화훼과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금융부

## 과수포트 대묘생산사업 (공공)

### 1. 목 적

- 과실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키가 큰 노력 과다형 수형과 노후과수원의 갱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 우량품종의 규격묘를 포트에서 대묘로 키워 갱신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줄이고 조기다수확으로 경쟁력제고

### 2. 추진방향

- 우량규격묘 생산을 지원하여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의 조기갱신 유도
  - 노목원의 갱신, 저수고 밀식재배를 위한 신규과원조성 등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6	'97	'98	'99	2000-2004	계
사업량		개소 2	2	2	2	10	18
사업비	계	1,600	1,600	1,600	1,600	8,000	14,400
	국고보조	400	400	400	400	2,000	3,600
	국고융자	400	400	400	400	2,000	3,600
	자담	800	800	800	800	4,000	7,200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국고융자 25(농특회계 : 연리 5%, 5년 거치 5년상환),  
자부담 50

※ 사업량 1개소는 묘목 10만주 생산 기준임.

나. '96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융자	자담
2 개소	1,600 (100%)	400 (25)	400 (25)	800 (50)

4. 사업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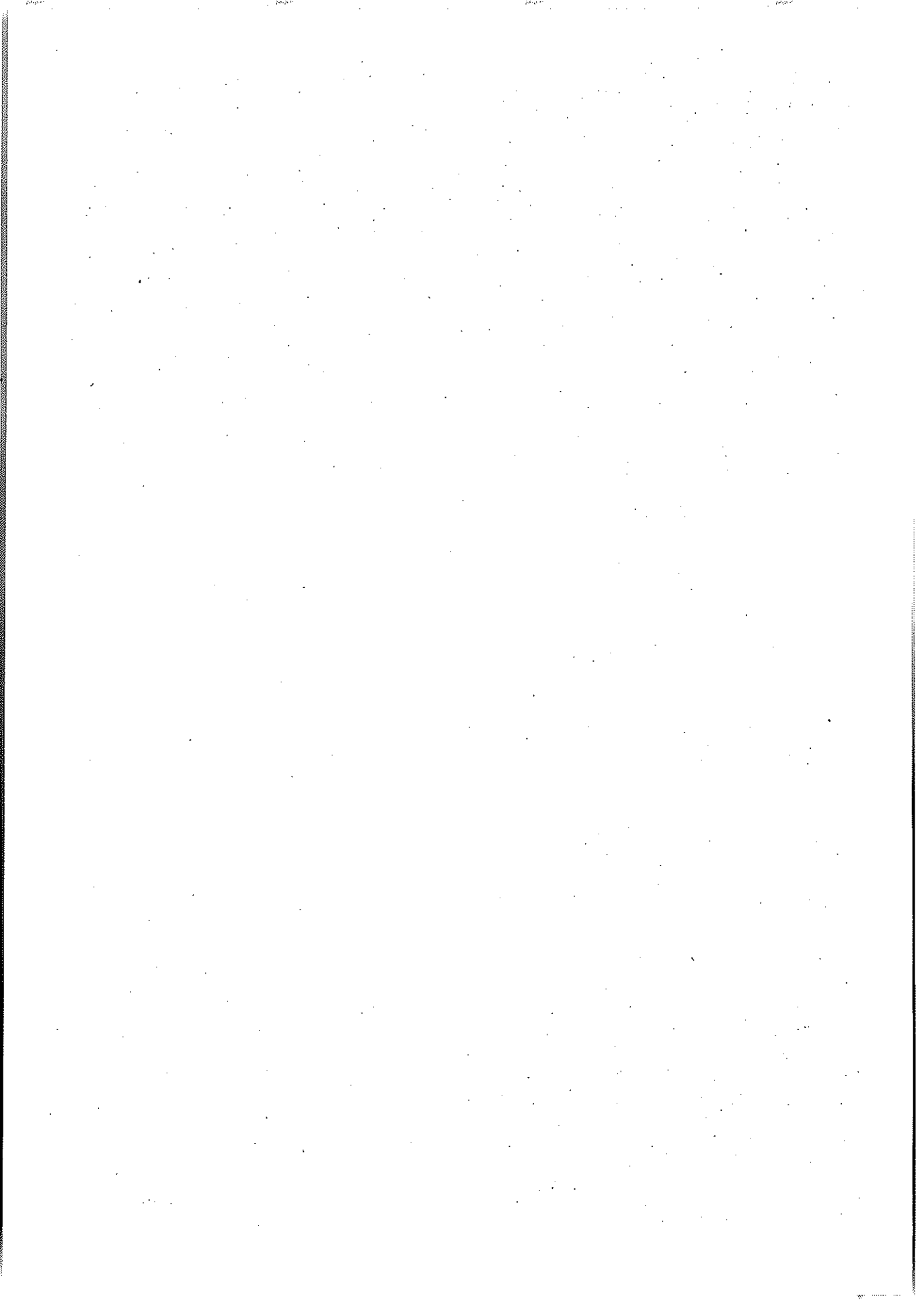
○ 별도 시달

### 3. 농산물유통·가공및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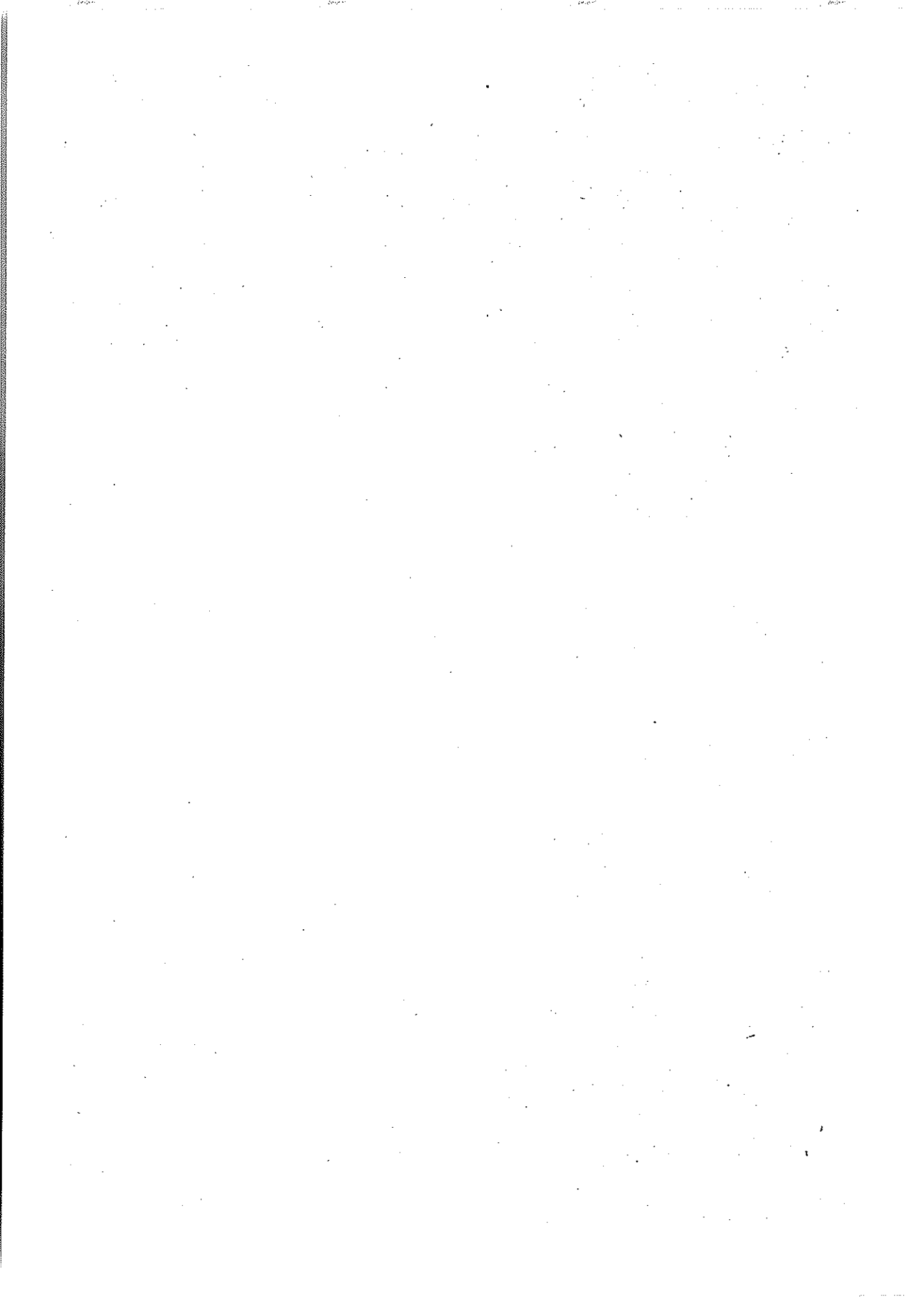
가. 농산물수급 및 판매·수출

나. 농산물유통·가공시설





## 가. 농산물수급 및 판매·수출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자율)

## 1. 목 적

-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전분·통명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 2. 추진방향

-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실시
-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지원의 차별화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 3. 투융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매,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254	76	123	138	164	1,026	1,781
사업비	계	103,610	28,670	55,954	66,000	78,500	498,829	831,563
	국고보조	13,987	5,734	11,191	13,200	15,700	99,766	159,578
	지방비	11,590	5,734	11,191	13,200	15,700	99,766	157,181
	자부담	78,033	17,202	33,572	39,600	47,100	299,297	514,804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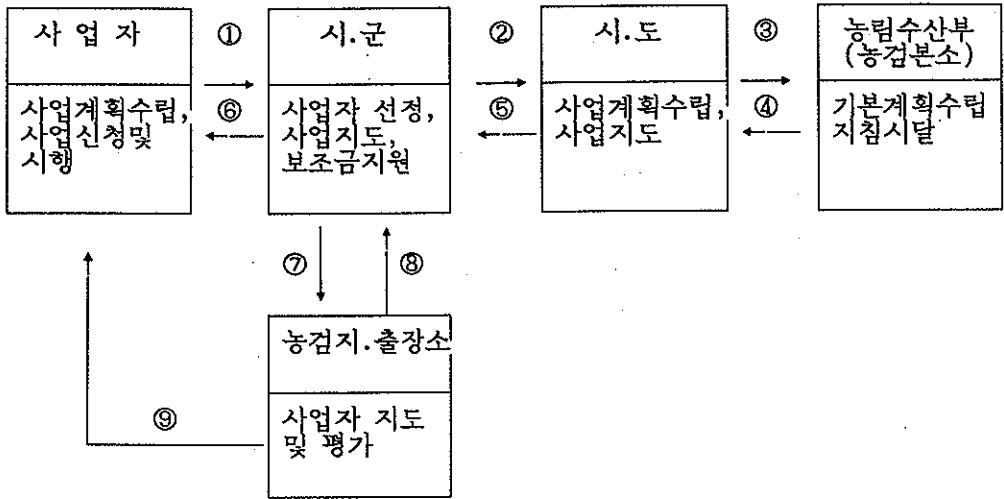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자재비 일부보조
- (2) 지원대상 :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

(3) 지원기준 및 조건

등 급	활 동 기 준	지 원 내 용
최우수출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전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li> <li>○ 공동계산제 실시</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재보조 : 규격출하량의 40% 보조하되</li> <li>- 사업량을 신청량의 80% 이상 반영</li> </ul>
우수출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li> <li>○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재보조 : 규격출하량의 40% 보조하되</li> <li>- 사업량을 신청량의 30-50% 반영</li> </ul>
일반출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우선지원 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지원</li> </ul>

(4) 사업시행체계



- ① 사업신청
- ②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신청보고, 사업실적 보고
- ③ 사업신청보고, 사업실적 보고
- ④ 기본계획 확정시달, 사업지침 시달, 예산배정
- ⑤ 보조금 배정, 사업자 지도
- ⑥ 보조금 지원, 사업자 지도
- ⑦ 사업자 신청상황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협의 및 결과통보
- ⑧ 사업자 평가결과 통보
- ⑨ 사업자 지도, 실적점검 및 평가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선별.표시하여 공동출하하는 생산자 조직 (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 농협, 기타 자생조직 등)
- 규격출하 사업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조직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은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에 신청
  - 최우수 출하, 우수출하, 일반출하 등으로 구분 신청
- 읍.면장은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시.군에 보고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본 지침 4. 나. (3)항의 "지원기준 및 조건" 표에 의거 상위등급 조직부터 우선 지원

(2) 선정절차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농검에 통보
- 농검은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신청 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 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농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

(3) 대상자별 사업량 결정

- 사업대상자별 사업량은 농검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차등 인정

- 분류기준 및 사업량 결정기준

분 류	최우수 조직	우수 조직	일반 조직
사업량 결정기준	사업신청량의 80-100%	사업신청량의 30-50%	사업신청량의 30%이하

※ 주) 1) 전년도 실적, 조직활동 등을 감안하여 조직분류 및 사업량 조정

2) 최우수 조직부터 사업량을 우선 결정하고 우수조직, 일반조직 순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 마. 사업시행

### (1) 자금집행

- 시.도지사는 시.도에 확정 배분된 예산을 농검 지소장과 협의를 거쳐 시.군별로 배분
- 농검 지소장은 시.군별 규격화 실태, 지원이 필요한 품목 등 협의자료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농검의 실적확인에 따라 자금집행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품목 또는 대상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검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 시장,군수는 농검의 실적 확인 통보를 받는 즉시 보조금 집행
- ※ 사업자는 포장재 제작시 표시사항 등을 농검과 사전에 협의

### (2) 사업대상자 교육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교육 실시
  - 협 조 : 농검, 농협
  - 교육내용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격출하의 필요성, 자율검사방법, 사업추진체계등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포장재비 지원대장 비치

- 시장·군수는 조직별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농검에 통보
- 기록사항 : 품목명, 재배면적, 재배양식, 생산량 및 출하량, 포장재 소요량, 지원수량, 지원금액, 유통관리실적 등

#### (2)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농검 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검사원을 배정하여 자율검사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출하개시부터 종료까지 주1회 이상)
- 농검 출장소장은 산지 출하품 점검결과 및 소비자 품질평가결과를 시·군 및 출하 조직에 수시 통보
- 규격출하 실적 및 점검·평가결과는 차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에 반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할 것
- 농검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 나. 보 고

- (1) 시·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농검본소에 제출 보고
- (2) 시·도지사는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농검본소에 제출

###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과, 농검 품질관리과
- 시·도 : 시·도 유통과, 농검지소 품질관리과
- 시·군 : 시·군 산업과, 농검출장소

##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소					
	조직결성일시			조직원수(농가)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재배현황		ha	톤			
출하실적 전년실적	총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공유시설 보현	집하장	선별(파)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파)기	기타공동시설및장비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조 ( )	( )

※ 상 표 명 : 00농협 딸기, 00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유통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 내서

### 3.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사업신청)

구 분	품목	포장 종류	단량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최우수출하 (공동계산)			kg	원	매				
우수출하									
일반출하									

○ 출하계획

품목	생산량	출 하 량				주출하 처	출하 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 표준규격화 계획

- 출하자교육

- 선별.포장방법 :

품 목	농가별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이용

### 4. 기 타

○ 농림수산부 정책사업 실적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년 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 생산자(단체)출하조절지원 (공공)

### 1. 목 적

- 농수산물의 성출하기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출하를 조절하여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2. '96 지원계획 및 사업실시기관

품 목	사업실시기관	'96 지원계획
밤	임협중양회	11,020백만원
표고	인협중양회	1,320
수삼	인협중양회	11,200
버섯	수협중양회	4,800
천초	수협중양회	6,000
계		34,340

### 3. 지원대상

- 밤, 표고, 수삼, 일반 버섯류, 천초의 생산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중 출하조절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공동규격출하가 우수한 생산자(단체),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주산단지내의 생산자(단체)등에게 우선 지원
  - 출하조절자금을 지원받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등은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4. 지원내용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한도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지원금리 : 연 5%
- 용자기간 : 1년이내
- 지원절차 :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연중)

## 5.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목적외 사용금지, 출하의무량 부여시 이행등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하도록 하고, 그 약정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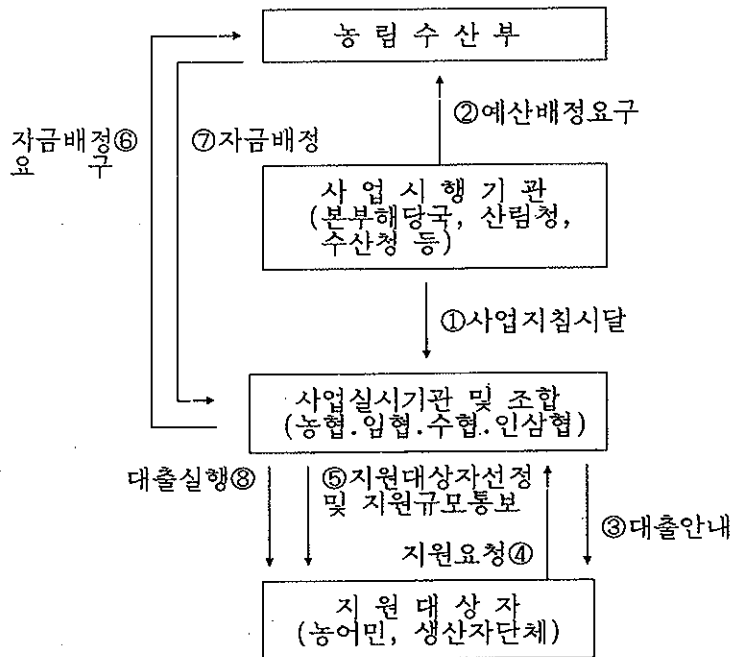
### < 제재대상 >

- 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 기타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제재내용 >

- 위약금 징구, 융자금회수, 2년 이내 기간동안 자금지원 중단

## 6. 사업시행 체계



## 7.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국 유통관리과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 수협중앙회 유통계획부
- 임협중앙회 금융부
-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업무부

##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공공)

### 1. 목 적

-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공동규격출하를 촉진함으로써 유통의 대량화로 유통효율을 증진
-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를 유도하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주문거래, 전본거래, 통명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의 현대화 실현

### 2. 추진방향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고 표준출하규격에 의한 공동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자의 조직화 유도
- 조직을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우수조직에 집중지원 하는 등 지원의 차별화로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 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자 조직에 우선 지원하여 유통시설 운영활성화를 도모

### 3. '96 사업 계획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공동규격출하추진사업 매 취 사 업	1,450 403 억원	이자율:연리 5%, 용자기간: 11개월 이자율:연리 5%, 용자기간: 11개월

### 4. 사업 추진계획

#### <공동규격출하 추진사업>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공동규격출하를 위한 용자금 지원

(2) 지원대상

- 조직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공동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작목반, 영농회, 전문조합, 영농법인 등) 소속농가

(3)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 급	활 동 기 준	지 원 내 용
최우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전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li> <li>○ 공동계산제 실시</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규격출하 촉진자금 : 규격출하금액의 80% 이내 - 연리 5%</li> </ul>
우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li> <li>○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규격출하 촉진자금 : 규격출하금액의 40% 이내 - 연리 5%</li> </ul>
일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우선지원 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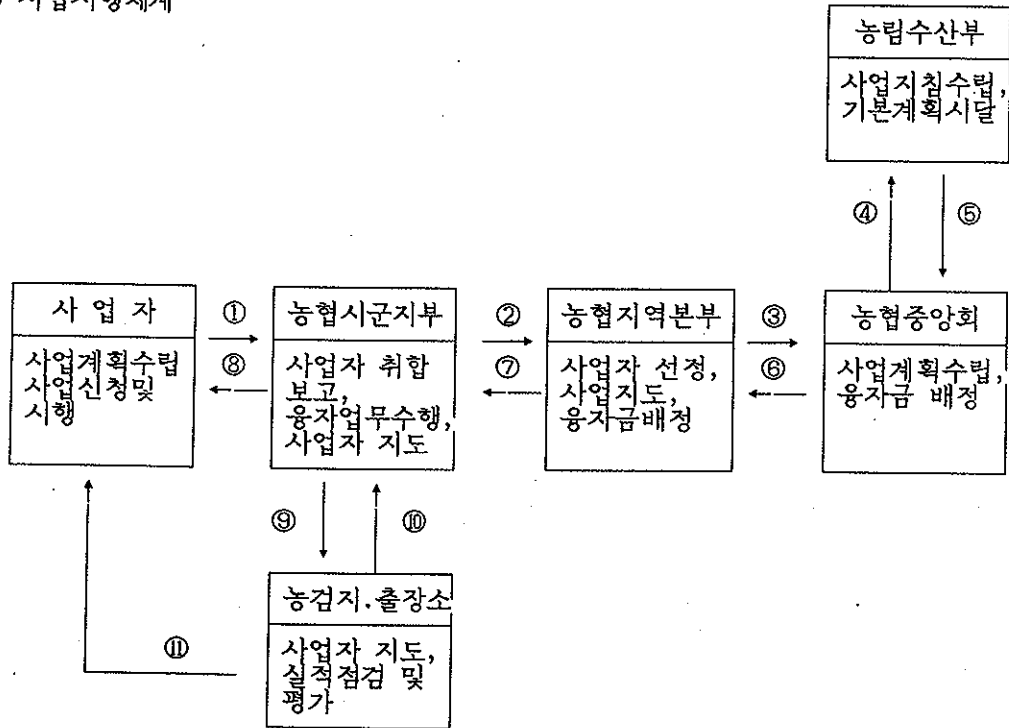


(4) 지원대상 품목 및 지원시기 등

구분	대 상 품 목	지원시기	용자기간
1 차	마늘, 양파,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호박,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 복숭아, 포도, 화훼, 고구마 (19품목)	2 월	용자기간은 정부 차입일로 부터 1년
2 차	가을무, 가을배추, 딸기, 파, 단감, 양배추(제주), 당근(제주), 사과, 배, 감귤, 감자, 풋고추, 감 (13품목)	8 월	- 농협은 용자 기간중 11개월 간 농민에게 대출
계	30개 품목(2개품목 중복)		

※ 상기품목의 관내 주산품목의 경우 지원 가능(단, 곡물류 및 축산물은 불가)

(5) 사업시행체계



- ① 사업 신청
- ② 사업자 취합 및 신청보고
- ③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사업신청보고
- ④ 사업계획보고, 자금요청
- ⑤ 기본지침시달, 사업계획승인, 예산시달
- ⑥ 사업계획 수립시달
- ⑦ 용자금 배정, 사업자 지도
- ⑧ 용자지원, 사업지도
- ⑨ 사업신청상황 통보, 지원순위 협의 및 결과통보
- ⑩ 사업자 평가결과 통보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조직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선별·포장하여 공동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 농협, 기타 생산자 조직 등)에 속한 농가
- 규격출하 사업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조직의 소속 농가

###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조직원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사업지원 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농협(회원조합)에 일괄신청
- 농협(회원조합)은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농협 시·군 지부에 보고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본 사업지침 4. 나. (3)의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에 의거 상위등급 조직부터 우선 지원
- 농가간 자금 배분은 조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2) 선정절차

- 농협 시·군지부는 사업신청내역을 농협에 통보
- 농협은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신청 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고 조직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는 농협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통보

## 마. 사업시행

- 농협은 농협이 통보한 조직 등급과 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지원액을 결정
- 용자 담보는 조직공동 또는 수혜농가별로 설정할 수 있다.
- 대농가 지원 완료기한은 농협중앙회의 대정부 차입일로부터 40일 이내
- 기타사항은 회원조합 대출취급요령에 의함.

# <매취사업>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시·도지사)

##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생산자조직의 매취자금 용자지원

(2) 지원대상 : 농협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3)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매취소요금액의 80% 이내 지원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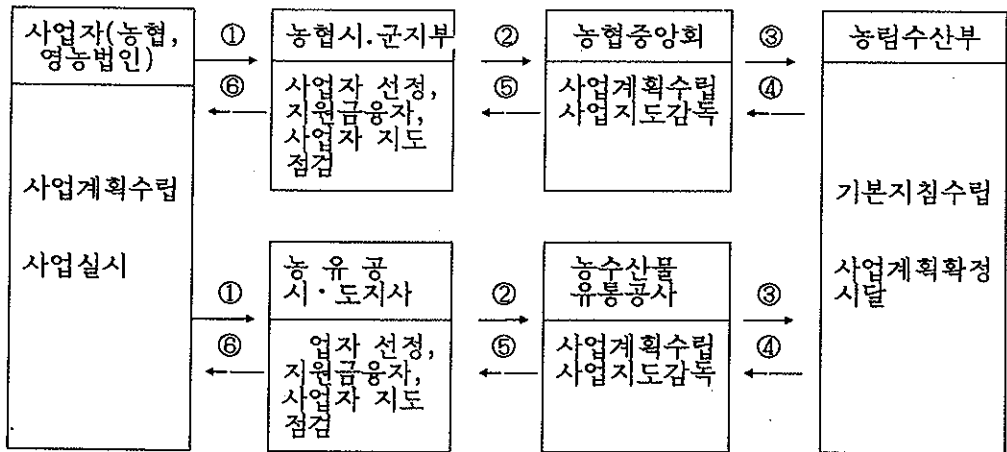
- 이자율 : 연 5%

- 용자기간 : 11개월 이내

(4) 지원대상품목

○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한 품목 (곡물류 제외)

(5) 사업시행체계



① 용자신청

③ 사업계획수립보고, 용자지원 요청

⑤ 사업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② 사업신청보고

④ 기본계획 수립시달, 자금배정

⑥ 용자지원 실시, 사업자 지도감독·평가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조직의 고유의 상표로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조직
-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자 또는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보유한 생산자조직(농협회원조합, 영농법인)으로서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조직

###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희망자는 농림수산업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농협 회원조합은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영농법인은 관할 농협 시.군지부 또는 유통공사 시도지사에게 신청
- 농협 시.군지부 및 유통공사 시도지사는 신청사항을 계통 보고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지원우선순위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지원조직 및 지원내용" 항목의 조직분류기준에 의한 상위등급 조직부터 우선지원
- 농산물포장센터 또는 공동유통시설(집하장, 선별포장, 저온저장고 등)을 보유하고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조직
- ※ 규격상품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품목을 취급하는 조직에 우선 지원할수 있음

### (2) 선정절차

-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농협 시.군지부 또는 농유공 시도지사에게 신청
- 농협 시.군지부 및 농유공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계통 보고
- 농협중앙회장 및 농유공 사장은 자금신청상황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소요자금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요청
- 농림수산부장관은 보고된 세부사업계획서와 자금배정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액을 조정, 농협중앙회장 및 농산물유통공사사장에게 일괄 배정

## 마. 사업시행

- 사업자는 매취한 물량을 규격상품화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 자금상환기일을 정부가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용자한 날로부터 11개월 이내
- 기타사항은 농협 및 유통공사의 대출 취급요령에 의함.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농협 및 유통공사의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 및 유통공사는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약정 이행여부 확인
  - 약정물량과 금액중 한가지가 이행될 경우에는 약정이행으로 간주
  - 공동규격출하실적은 농협의 출하실적 점검결과에 의하며, 조합의 판매대금정산서나 작목반장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공동규격출하 확인서를 참고로 한다.
  - 약정 불이행시는 위약금(연리 10%) 징수하며 재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이행 불가능시에는 농협 시군지부장이 시·군 및 농협과 협의하여 출하위약금 면제 가능

#### (2) 농협의 지도감독

- 농협은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등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규격출하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행정기관 및 농협 및 유통공사에 통보
  - 농협은 조직의 활동정도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행정 및 농협에 통보
  - 규격출하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시 증액 또는 감액 지원
- 행정기관 및 농협은 농협의 점검결과를 당해조직에 통보하고 지도 감독

### 나. 보 고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공동규격출하자금의 지원 및 약정상황은 지원종료일로 부터, 운용상황은 사업완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매취사업 : 농협중앙회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사업 종료시는 최종실적 보고)

### 다.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과, 농협중앙회 원예계획과, 유통지도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금융부
- 시·도 : 시·도 유통과 농협지역본부 유통가공과, 농유공지사 수출유통담당
- 시·군 : 시·군 산업과 농협군지부 지역경제과
- 읍·면 : 단위농협

(매 취 사 업)

계획서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소					
	조직결성일시			조직원수(농가)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재배현황		ha	톤			
출하실적전년실적	총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공동규격시설유형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공동시설및장비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조 ( )	( )

\* 상 표 명 : 00농협 딸기, 00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 요 출 하 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유 통 시 설 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 내서

### 3. 사업계획 및 소요자금 신청

####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

○ 품목명 :

전산반 코드번호 :

영농조합법인등록번호 :

농가명	생산계획		판매 예상량 (톤)	공동규격 출하 예상 량 (톤)	자 금 소 요 액 (백만원)	사 정 요 청 액 (백만원)
	면적 (ha)	물량 (톤)				
계						

○ 지원시기 :

년 월 일

대표자 0000 작목반장장 (인)  
(영농조합법인)

# 〈매취사업〉

○ 세부사업계획(자금신청)

(단위 : 백만원)

매취품목	매취시기	단 가 (원/kg)	사업량 (톤)	사 업 비		
				계	용자	자부담

○ 자금소요시기 :

○ 판 매 계 획

판매처	판매물량	판매예상액	판매예정시기	비 고

○ 유통시설 이용계획

품 목	매취량	선과(별)장이용		저온저장고 저장		기 타	
		물량	기간	물량	기간	물량	기간

## 4. 기타

○ 농림수산부 정책사업 실적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년 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 농수산물 구매지원 (공공)

### 1. 목 적

- 농수산물 저장, 가공, 수출용 원료구매자금을 생산자단체 및 업체에 지원하여 성출하기의 농산물을 구입토록 함으로써 생산자가격을 지지하고 단경기에는 소비자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 농수산물 저장, 가공 및 수출산업의 육성

### 2. 품목별 '96 지원계획 및 사업실시기관

#### 가. 일반농수산물 구매지원

##### (1) 생산자단체

품 목	지원대상자	사업실시기관	'96 지원계획
백 류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백만원 26,340
두 류	"	"	6,500
서 류	"	"	1,080
과 실 류	"	"	8,300
특 용 류	"	"	249
잡 사 류	"	"	6,318
인 삼 류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	8,400
수 산 물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수협중앙회	30,558
계			87,745

(2) 저장.가공업체

품 목	지 원 대 상	사업실시기관	'96 지원계획
서 류	저장, 가공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백만원 4,644
채 소 류	"	"	30,086
과 실 류	"	"	14,049
특 용 류	"	"	1,554
약 용 류	조제 및 건조장 보유업체	"	3,385
수 산 물	저장, 가공업체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81,911
계			135,629

나. 우수농수산물 구매지원

품 목	지원대상자	사업실시기관	'96 지원계획
과 일 류	수출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백만원 10,592
채 소 류	"	"	18,424
버 섯 류	"	"	660
약 용 류	"	"	2,080
인 삼 류	"	"	10,496
화 훼 류	"	"	1,000
임 산 물	"	"	31,040
수 산 물	"	수협중앙회	25,388
계			99,680

### 3. 지원대상

#### 가. 일반농수산물 구매지원

- 생산자단체 : 농·수·임협중앙회 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을 보유한 회원조합으로서 농수산물 구매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 저장업체 : 저장시설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가공(제조)업체 : 가공시설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

#### 나. 우수농수산물 구매지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출입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우수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수출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

### 4. 지원내용

- 지원시기 : 품목별 성출하기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일반농수산물 구매지원자금 : 농·수·임협 및 회원조합 연 5%, 일반업체 연 8%
  - 우수농수산물 구매지원자금 : 연 5%
- 용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용 도 : 지원대상 품목의 저장·가공 및 수출용 원료구매

## 5.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선정원칙

- 지원대상자는 당해년도 3월말까지 각 품목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준비중인 자는 용자시기전에 사업준비가 완료되면 지원하도록 조건부로 선정
- 농수산물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발된 자와 농안기금 대출기관에서 제재조치중에 있는 자는 선정제외

### 나. 선정절차

- 안내광고 : 매년 1월중 일간신문에 당해년도 지원계획 공고
- 지원신청 : 당해년도 2월말까지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당해년도 3월말

### 다. 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시설물 확인에 의해 선정하되, 저장·가공시설능력, 과거 사업실적등을 감안 지원금액 결정
  - 생산자단체의 경우, 생산 및 산지유통단계에서 규격상품화 활동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 수출신용장에 따른 우수농수산물 구매지원방안 및 일정수준 가격상승시 일반구매 지원자금 회수방안등 검토

## 6. 구매 및 수출실적 확인

### 가. 구매대상 및 구매기간

- 생산자, 생산자단체, 생산농가대표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부터 국내산 농수산물을 품목별로 정해진 구매기간중에 구매할 물량 및 금액만 인정

## 나. 실적확인

- 수매실적확인 방법
  - 수매장부에 의한 수매물량 및 수매금액 확인
  - 대금영수증에 의한 수매사실 확인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판매사실 확인
  - 실측 또는 목측에 의한 재고량, 저장물량 확인
- 수출실적 확인방법
  - 외국환 은행장 확인 수출실적증명서
  - 수출면장상의 수출물량

## 7. 자금의 목적외 사용시 제재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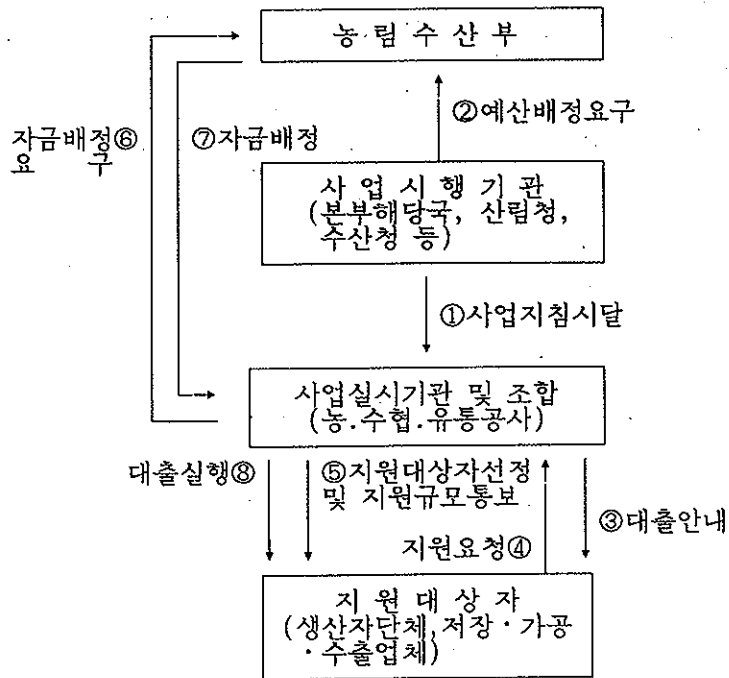
### 가. 제재대상

- 수매 또는 수출의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
-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외 사용
-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요구자료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 시증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의 불이행
- 기타 용자약정사항 미이행 등

### 나. 제재내용

- 위약금 징구, 용자금 회수, 2년이내 기간동안 자금지원중단

## 8. 사업시행 체계



## 9.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국 유통관리과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 수협중앙회 유통계획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금융부

##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공)

### 1. 목 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및 위판장에서의 농수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 2. 추진방향

- 제도권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및 위판장 등에 출하선도 및 조절용자금, 대금결제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시장에서의 안정적 출하를 도모

### 3. '96 지원계획 및 '95 실적

(단위:백만원)

지 원 대 상 별	'95 실적(잠정)	'96 계 획
○ 도매시장법인	55,000	58,000
○ 농협공판장	48,000	51,100
○ 수집상 출하조절자금	20,000	20,000
○ 수협공판장	65,284	74,900
○ 화훼공판장	1,509	1,500
계	189,793	205,500

## 4. 사업 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지 원 대 상	사업실시기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부	농림수산부 시장과
○ 농수산물 수집상	"	"
○ 농협중앙회 - 중앙회 공판장 - 회원조합 공판장	농협중앙회 사업장지원부	"
○ 수협중앙회 - 소비지 공판장 - 산지 위판장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	수산청 유통가공과
○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농림수산부 과수화훼과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
  - 출하선도금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위판장)에 출하되어 상장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 출하조절자금 : 농수산물 수집상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안정적인 출하를 위한 출하조절용 자금



(2)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효과가 없는 법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기간에 해당되는 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등록된 수집상
  - 최근 1년간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대한 출하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법인은 20억원 이상인 자)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제외대상 : 대금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지원효과가 없는 공판장
- 수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산지 위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3) 지원조건

구 분	용자기간	지원금리
○ 농협공판장 - 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수협위(공)판장, 화훼공판장 - 대금결제자금	1년이내	5%
○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이내 "	5% 8%
○ 농수산물 수집상 - 출하조절자금	1년이내	8%

(4) 사업시행 체계(지원절차도) : 붙임 참조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별도기준 작성 운영
- (2)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가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 지원절차도(별표 1) 참조
- (3) 구비서류 : 사업실시기관의 소정 양식에 의함
  - 용자신청서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출하조절자금 용자추천서 등

## 라. 지원방식

- (1)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법인별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대금결제자금 :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의 1/24)을 기준으로 배정
- (2) 농협공판장
  - 생산능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의 1/24)의 3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공영도매시장 입주(예정) 공판장에 용자금액의 15% 범위내에서 특별지원 가능
- (3) 수협 위(공)판장
  - 분기별 위판실적과 계획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 (30억원 이내에서 배정)
- (4) 수집상
  - 법정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 배정
  - 단, 개인은 50백만원, 법인은 5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에 대해 사후 관리한다.
- 사업실시기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약정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 나. 보 고

- 사업실시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주관기관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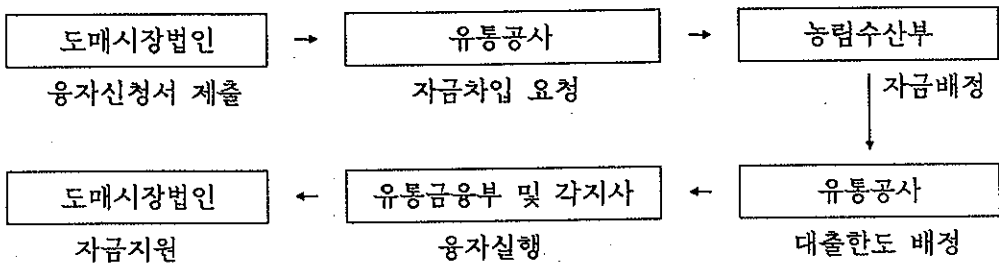
### 다. 업무담당부서

- 농림수산부 시장과, 과수화훼과
- 수산청 유통가공과
- 농협중앙회 사업장지원부
-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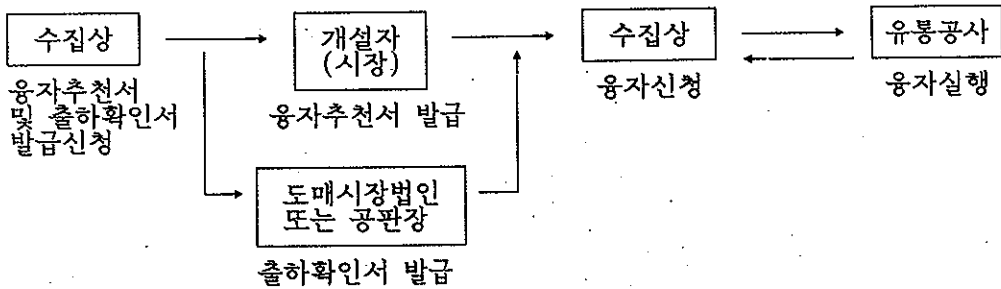
[ 별표 1 ]

## 지원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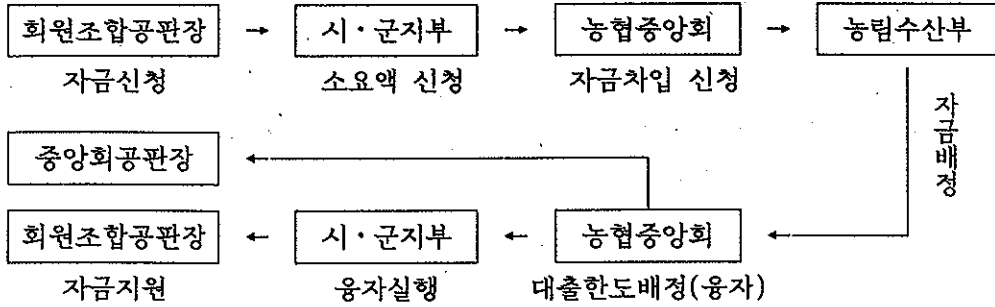
### <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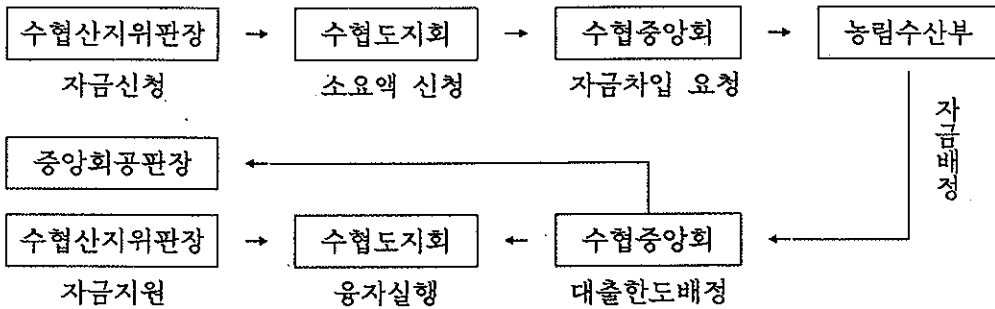
### < 수집상 출하조절자금 >



< 농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



< 수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



# 채소유통활성화사업(공공)

## 1. 목 적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조직)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중간상인 견제 및 시장교섭능력 배양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추진

## 2. 추진방향

- 산지생산자조직(작목반등)을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의 핵심조직으로 육성
- 주산단지 작목반(농가)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생산 및 출하조절
- 계약생산시 손익을 계약당사자가 공동 부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합리화 도모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년까지	'96	'97
계	300,000	62,500	100,000	137,500
국 고 용 자	240,000	50,000	80,000	110,000
농 협 자 금	60,000	12,500	20,000	27,500

- 국고용자 재원 : '95년 → 농특세전입금, '96년이후 → 농안기금
- 용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나. '96 지원계획 및 자금운용

○ '96 예산

(단위 : 백만원)

계	국고용자 1)			자부담
	소계	'95	'96	
162,500	130,000	50,000	80,000	32,500

주1) 용자재원

- '95 : 농특세전임금
- '96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2) 자부담

- 산지농협이 사업주체인 경우 : 농협중앙회 및 산지농협 공동부담
- 생산자조직이 사업주체인 경우 : 사업추진 생산자조직이 부담

○ 자금의 운용 : 사업자금 80%, 손실대비 운용자금 20%

○ 용자조건

- 정 부 → 농협중앙회 : 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중앙회 → 산지농협(생산자조직) : 1년이내, 무이자

※ 산지농협(생산자조직)에 대한 용자기간은 품목의 특성 및 사업기간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현황

1) 사업대상자

- 품목별 주산단지 농협중 사업참여 희망농협
- 품목별 주산단지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중 사업참여 희망조직(법인에 한함)

## 2) 사업대상지역 및 품목

- 대상지역 : 채소류 주산단지
-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등
  - '95년 : 고행지배추, 가을무, 배추
  - '96년 : 무, 배추, 마늘, 양파

※ 사업대상 품목은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인 받아 변경 할 수 있음

## 3) 사업 대상자의 선정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신청물량과 예년의 사업실적 및 생산실적등을 감안하여 선정 및 배정
- 생산자 조직(영농조합법인)의 사업적격자 선정시 검토기준
  -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 생산자조직의 구성원수
  - 자부담 능력 및 자금관리 능력
  -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 능력등

# 다. 사업시행

## 1) 사업방식

- 계약재배중심 생산자단체(조직) 자율방식

## 2) 계약재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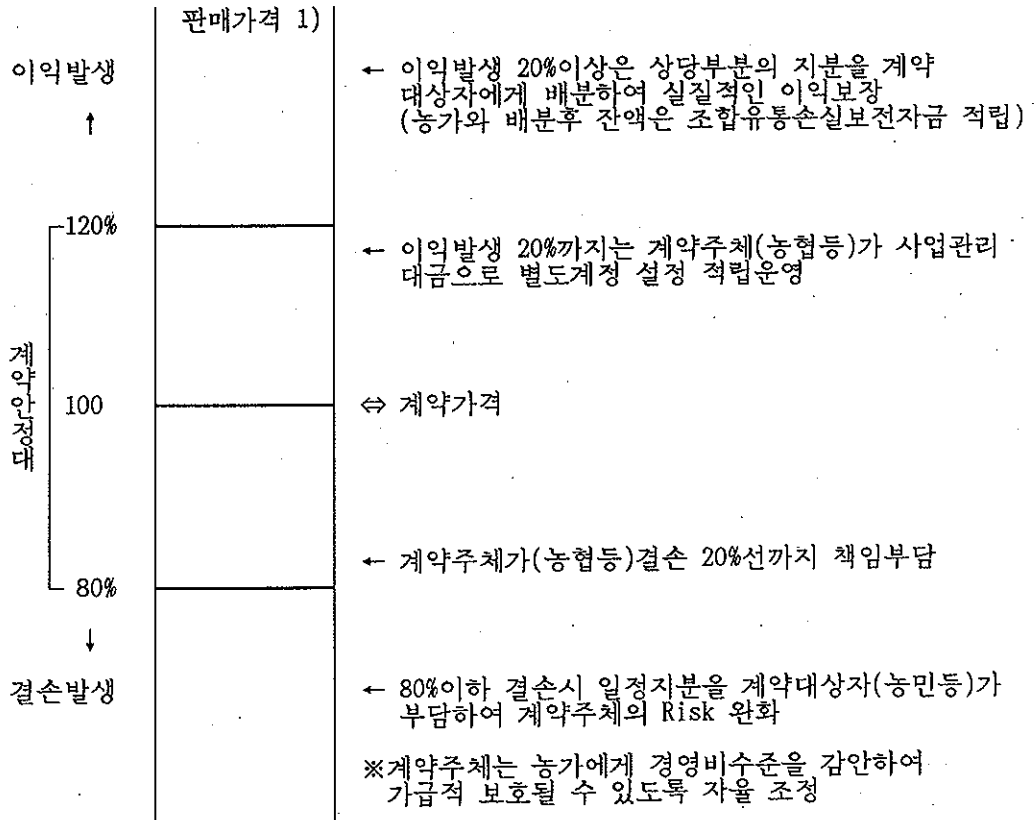
- 계약주체 : 산지농협(생산자조직)
- 계약대상 : 작목반(농민),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조직
  - 생산자조직이 자금관리등 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주체로 참여가능
- 계약체결 :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
  - 농협중앙회장은 계약재배약정서(안)을 품목별 계약시기 이전에 시달
- 계약물량 관리 : 계약대상자가 책임관리하고 계약물량 생산이행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출하후)으로 구분 지급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계약 불이행시 제재
  - 자금지회수 및 위약금 징수
  - 다음년도 계약대상에서 제외등 제재



3) 출하 및 판매

- 출하조정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 출하조절 실시
- 출하처 : 법정도매시장, 집배센터, 직판장, 대량수요처등
- 출하 및 판매 : 계약주체가 수확, 출하, 저장, 판매실시

4) 사업정산 체계



주1) 판매가격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금액

- 손익발생시 농가배분율은 계약주체가 자율결정
- 판매대금 정산은 거래명세서 및 송금된 내용을 근거로 정산

5) 사업부진 조합(생산자조직)에 대한 제재

- 사업실적이 자금 배정액 보다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업 미실시 자금은 일정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불이익 조치

6) 기 타

- 품목별 사업규모 및 사업신청기관, 신청시기등은 파종기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시달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설치
-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협중앙회장과 사업추진 조합은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통활성화 사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자금운용

### 나. 보 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 반기 익월 10일까지
-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 : 익년 3월말까지(차익년 사업계획서 동시 제출)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500~2683
- 농협중앙회 채소과 (02)397~5732

## 과실, 화훼 판매촉진사업 (공공)

### 1. 목 적

-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과실, 화훼류에 대하여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등의 수출부대비를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 2. 추진방향

- 현재 수출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수출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원가와 판매가능가격을 고려하여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을 차등지원

### 3. 투용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용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	과 실	5,249 <sup>톤</sup>	4,200	11,000	11,000	11,000	66,000	108,449
	화 훼	천상자 35	130	140	150	150	900	1,505
사 업 비	계	3,860	1,629	2,750	2,850	2,850	17,100	31,039
	국 고	3,860	1,629	2,750	2,850	2,850	17,100	31,039
	○ 과 실	3,825	1,408	2,420	2,500	2,500	15,000	27,653
	○ 화 훼	35	221	330	350	350	2,100	3,386
	지 방 비	-	-	-	-	-	-	-
응 자	-	-	-	-	-	-	-	
자 담	-	-	-	-	-	-	-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	2,750	2,750	-	-	-
과 실	11,000 <sup>톤</sup>	2,420	2,420	-	-	-
화 훼	천상자 140	330	330	-	-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현황

### (1) 지원방법

- 수출 대상국별 수출원가와 수출가능 가격을 감안하여 수출원가의 50%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을 차등지원
- 입맛들이기용 과실송부비, 광고비, 해외시장조사비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간접 사업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

(2) 지원대상 : 과실 또는 화훼류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 자(농수산물유통공사 포함)

### (3) 사업시행체계

- 농림수산부 : 사업지침시달,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자 : 수출실행, 지원신청, 수출실적 통보 등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함

## 라. 사업시행(추진일정)

- (1) 사업계획 수립(유통공사) : '95.12-'96.1월
- (2) 사업추진 : '96.1.1~'96.12.31
- (3) 국고보조금 청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익년 1월 30일까지
- (4) 사업평가 보고 : 익년 2월말까지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및 평가분석

### 나. 보 고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96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6.1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실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기에 보고

### 다.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과수화훼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 무역부 수출1담당(화훼공판장 수출팀)

#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공공)

## 1. 목 적

- 대부분 산물로 출하되고 있는 무.배추를 산지에서부터 포장규격출하를 실시함으로써 유통단계별로 거래체계 확립
- 청과물 유통개선의 고질적인 저해요소인 소비지 쓰레기 발생을 줄여 환경개선

## 2. 추진방향

- 채소류의 상품성제고 및 산지유통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원
- 시범사업으로 대량수요처 계통공급 물량부터 실시하여 포장규격출하 여건을 조성한 후 도매시장 물량까지 사업규모 확대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95까지	'96	비 고
사 업 량		-	20만개	
사업비	계	-	1,100	○ 단가 : 5,500원/개
	국고보조	-	660	
	농협자금	-	440	

- '9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추진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사업규모 확대검토

## 나. '96 지원계획 및 자금운용

○ '96 예산

(단위 : 백만원)

대상품목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농협자금
배 추	20만개	1,100	660	440

○ 농협자금 부담 : 사업추진 단협과 중앙회가 공동부담하되 분담비율은 농협 중앙회장이 결정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장

나. 사업현황

### 1) 사업대상자

- 유통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무.배추 주산단지 농협중 대량수요처와 직거래하는 농협
- 엽,근채류 주산지 농협중 대량수요처와 직거래하는 농협

### 2) 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신청 물량과 직거래 실적등을 감안하여 선정 및 배정
- 채소유통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선정

### 3) 포장재 제작

- 포장재 제작 : 농협중앙회장은 입찰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괄제작

- 규격 : 접철식 또는 사각상자
- 인정감모율 : 매년 10%이내

#### 4)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총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사후관리 주체 : 사업참여농협
- 사후관리 절차
  - 사업참여농협이 재고자산으로 취득후 비품관리
  - 농협중앙회는 포장재를 최대한 활용 및 관리토록 수시 점검

### 나. 보 고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반기 익월 10일까지
- 정산 및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 : 익년 3월말까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 500-2683/4
- 농협중앙회 채소과 (02) 297-5732



## 국제 농산물박람회 참가지원(공공)

### 1. 목 적

- 국제주요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농림수산물의 홍보 및 수출상담 추진
- 신규 농수산제품의 수출가능성 조사와 유망수출선 확보로 신규 수출시장 개척
- 중소 수출업체의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의욕 고취

### 2. 추진 방향

- 현재 참가하고 있는 국제박람회 참가규모 및 횟수를 확대
- 박람회 전시상품의 포장, 디자인, 품질개선 및 자체홍보물 제작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박람회 성과거양 및 지속적인 수출증대 추진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합계
사업량		12회	14회	15회	16회	16회	16회	16회	
사업비	계	1,112	1,094	1,597	1,800	1,800	1,800	1,800	11,003
	국고	511	766	1,118	1,260	1,260	1,260	1,260	7,435
	자담	601	328	497	540	540	540	540	3,568

나. '96 지원계획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박람회 선정, 참여업체모집, 한국관 설치, 검역·통관·상담지원 등 총괄 지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부)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세계 주요 유명박람회에 공사 주관 "한국관"으로 참가

(2)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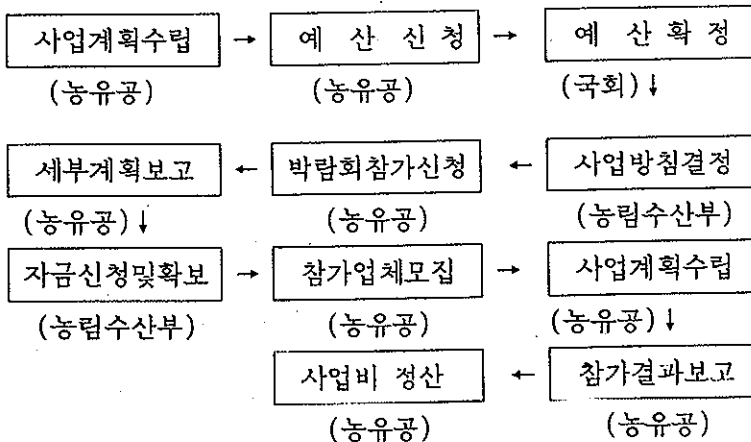
- 농림수산(가공)식품 생산업체로서 수출을 위한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부담	비고
1,597	1,118	479	국고(농특회계)보조 (보조율:70%)

(4) 사업시행 체계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당해 박람회 해당 수출용 농림수산물 제조업체로서 유통공사에 참가신청한 업체

### (2) 신청절차

- 박람회 참가신청 공고 기일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참가 신청

### (3)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품 카달로그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사업실적
- 수출시장개척의지
- 해당 박람회 여건

### (2) 선정절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관부서장이 선정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마. 사업시행

- (1) 전시장 입차
- (2) 전시물품 선적, 운송 및 통관
- (3) 한국관 설치 및 전시회 개최
- (4) 결과보고 및 정산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박람회시 한국관 방문업체에 대한 감사서신 발송
- 수출계약체결 업체에 대한 수출이행여부 확인

### 나. 보 고

- 매 박람회 결과보고 및 정산
- 연간 박람회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진흥부

# 해외시장개척 사업(공공)

## 1. 목 적

- 농수산물 수입개방 이후 우리 농림수산물 수출시장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 해외 홍보를 통해 해외 전문수입상 및 소비자에 대한 우리제품 인식제고 유도
- 채소류 수출용 포장재의 국고지원에 따른 포장자재의 규격화 유도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2. 추진 방향

- 수출 농림수산물 특별기획전,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농수산물수출홍보 등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 지난년도의 수출실적이 있으며 수출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과잉생산되어 수출의 필요성이 큰 품목을 우선 선정
- 수출시 장기간 운송에 따른 상품가치 보존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자재의 고급화 유도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합계
사	계	145	533	2,687	5,000	5,000	5,000	5,000	23,365
업	국고	-	373	1,842	3,500	3,500	3,500	3,500	16,215
비	자담	145	160	845	1,500	1,500	1,500	1,500	7,150

나. '96 지원계획

- 특별기획전,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홍보책자 발간 배포 등을 통한 해외 시장개척사업 지원
- 신선채소류 수출포장자재 지원규모설정 : 상자규격조사에 따른 지원기준서 작성
- 수출업체의 수출실적에 따른 상자대지원

####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부, 수출개발부)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해외시장 판촉을 위한 특별기획전 개최
- 포장재 개선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 옥외 전자광고판 설치, 종합 홍보책자 제작배포 등 농수산물 수출홍보
-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상자비 지원

(2)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직접 수행
- 갑류 무역업 등록을 필한 신선채소류 수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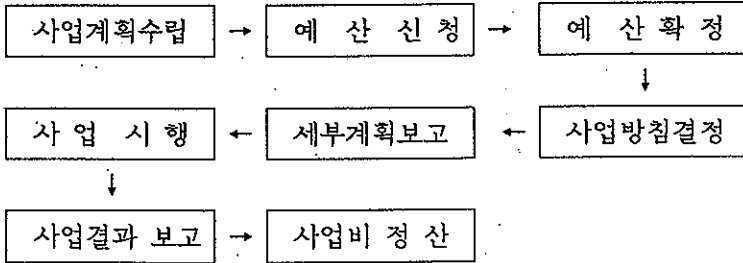
(3)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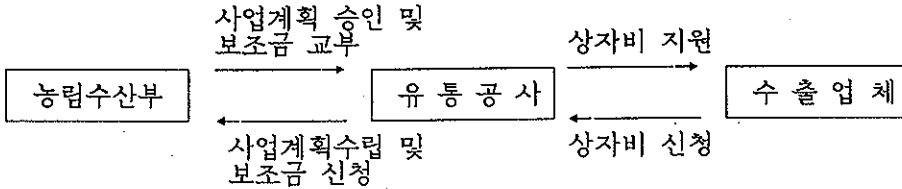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 부 담	비 고
계	2,686.8	1,842	844.8	
○ 특별 기획 전	1,000	700	300	농특회계 70%
○ 채소류포장 자재비 지원	928.8	464.4	464.4	" 50%
○ 포장디자인개선	192	134.4	57.6	" 70%
○ 옥외전자광고판	490	490		" 100%
○ 홍보책자 발간	76	53.2	22.8	" 70%

(4) 사업시행 체계

- 특별기획전, 포장디자인 개선, 옥외광고판, 홍보책자발간



- 채소류 포장자재비 지원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해외 현지 디자인 업체
  - 뉴욕 및 화란 KTDC를 통해 현지 우수 2-3개 업체 추천후 공사에서 최종선정
- 국내 디자인 업체
  - 대 일본 수출품목은 현지의 고 물가 및 동일 문화권임을 감안하여 국내 디자인 업체 중 선정
- 채소류 포장상자 지원 : 갑류 무역업 등록을 필한 신선채소류 수출업체

(2) 구비서류

- 업체의 포트폴리오 징구, 우선 심사 후 동일수준 개발품에 대한 견적 징구
- 수출계획서 및 수출실적증명서류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현지 유통실정에 맞는 포장방법, 크기, 색상, 영문표기, 규정된 표시, 포장 개선 등을 포함한 총체적 포장디자인 완성도
- 미주지역 대상 디자인 개발 품목은 NUTRITION FACTS 기준에 의거 NUTRITION LABELING 제작 표기
- 지원기준 : 지원공고에 따라 사전 신청하여 선정된 업체로서 수출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실적을 제출한 수출업체

### (2) 선정절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관부서장이 선정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채소류 수출포장재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일반공고)

## 마. 사업시행

-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부 승인 후 사업시행

## 5. 행정사항

### 가. 사 후 관 리

- 포장디자인 개발 사례집 발간
- 매 사업 종료시 결과 보고
- 포장개발품 활용 실태 보고 및 사업평가

### 나. 보 고

- 매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연간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 보고 및 정산

###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진흥부



# 해외시장정보 조사사업(공공)

## 1. 목 적

- 우리 농림수산물의 해외수출확대와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농업무역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축적
- 수집·분석·가공된 해외농업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DB구축하여 전파.

## 2. 추진방향

- 품목별 무역정보 심층조사
  - 현재 수출되고 있거나 수출가능성이 큰 농림수산물 1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현황, 수출업체, 수출상대국의 가격, 품위, 시장여건 등을 심층조사
- 수집된 정보의 DB화 및 전파
  - 조사된 내용과 각종무역관련자료를 DB구축하여 농림수산정보센터 전산망을 통하여 생산농가, 무역업체에 전파.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9	합 계
사 업 량		35품목	70품목	100품목	보완조사	보완조사	100품목
사 업 비	계	714	841	1,500	1,500	1,500	6,055
	국 고	500	589	1,050	1,050	1,050	4,239
	자 담	214	252	450	450	450	1,816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사 업 비		
	계	국 고	공사자부담
○ 세계권역별시장 심층조사	300	210	90
○ 수출입정보 가공 생산기능 강화	541	379	162
계	841	589	252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정보실)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가) 세계권역별시장 심층조사

< '96 조사반 편성 >

- 조사반편성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정보전문가
- 조사지역 : 8개국 (필요시 '95년도 조사국가포함)
- 조사방법
  - 국내기초조사 : 조사대상국의 농수산물수출여건 등 교역관련자료 문헌조사
  - 현지위탁조사 : 조사 주제를 선정, KTDC 등 공사조직망을 통하여 심층조사
  - 현지샘플조사 :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해외현지에 샘플송부 함으로써 현지 진출가능성 및 개선사항 조사
  - 해외출장조사 : 현지 수입상, 도소매상, 생산조직, 수출업체, 수입통관기관 방문조사
- 조사품목 : 70품목 ('95년도 기초사 35품목 포함)
- 조사내용
  - 국내수출품 공급여건
  - 대상국 품목별 수출 일반여건
  - 경쟁국별 시장진출 상황 및 품종, 품질 가격조사

- 품목별 현지유통경로 및 소비성향조사
- 제품화, 상품화 등 수출품개선 방향 조사
- 수출대상국의 통관, 검역, 기타 규제사항

○ 조사결과 활용

- 조사결과는 DB구축하여 생산능가, 무역업체에 전파

(나) 수출입정보 가공생산기능 강화

○ 정보의 가공 및 DB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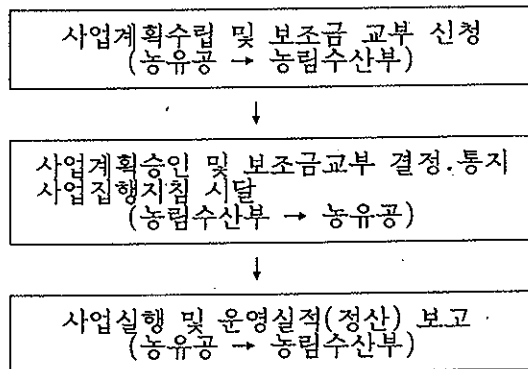
- 품목별 정보 DB축적 : ('95) 35 → ('96) 70품목
- 신규 개발정보 DB구축 : 수출 및 크레임사례정보 등
- 정보의 고품질 추구 : 그래픽정보 강화

(2)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공사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담 30%

(4) 사업시행체계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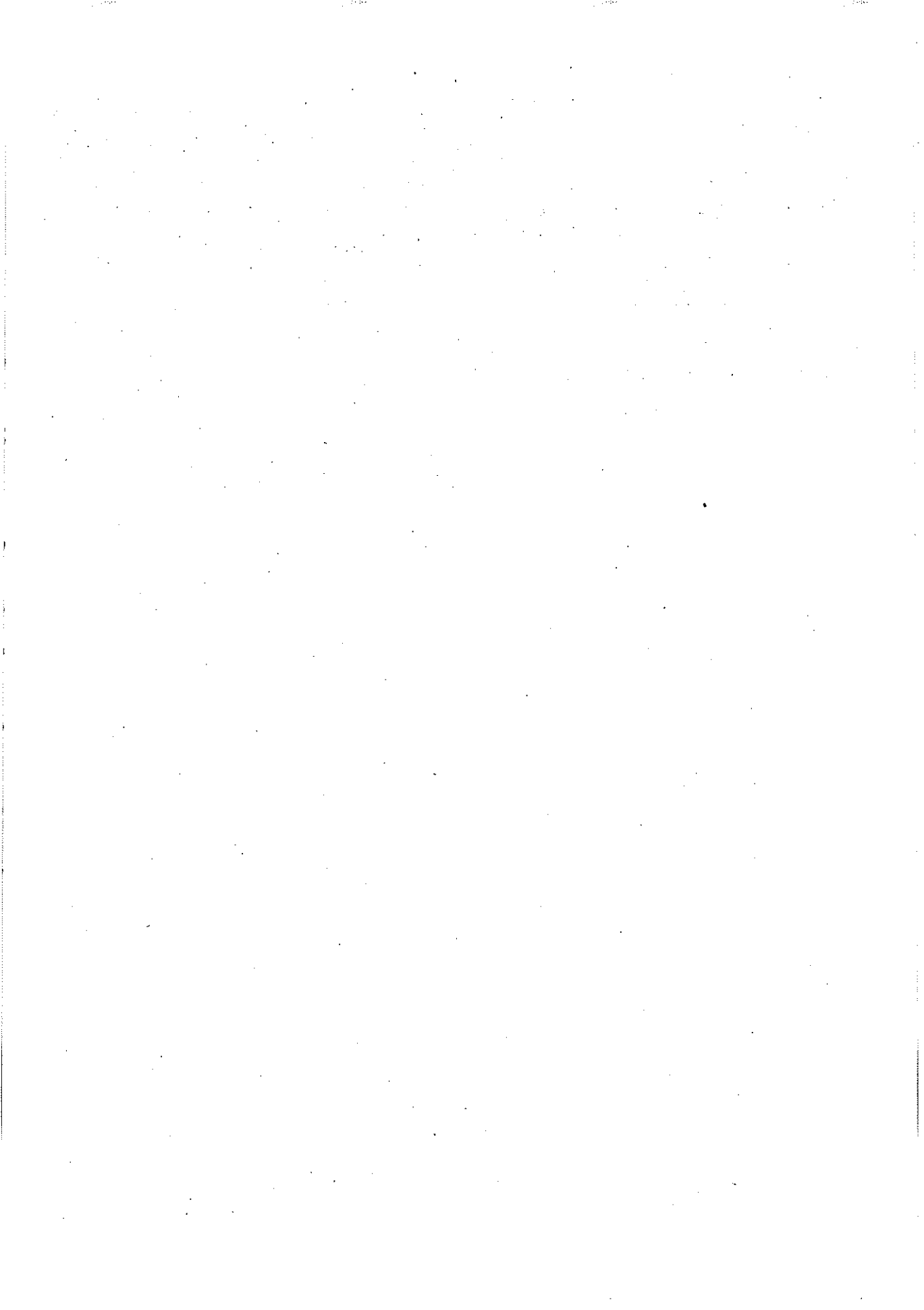
- 품목별 조사보고서 발간
- 수출입정보 가공생산 DB화 전파
- 수출입정보 활용실태 보고
- 사업평가

### 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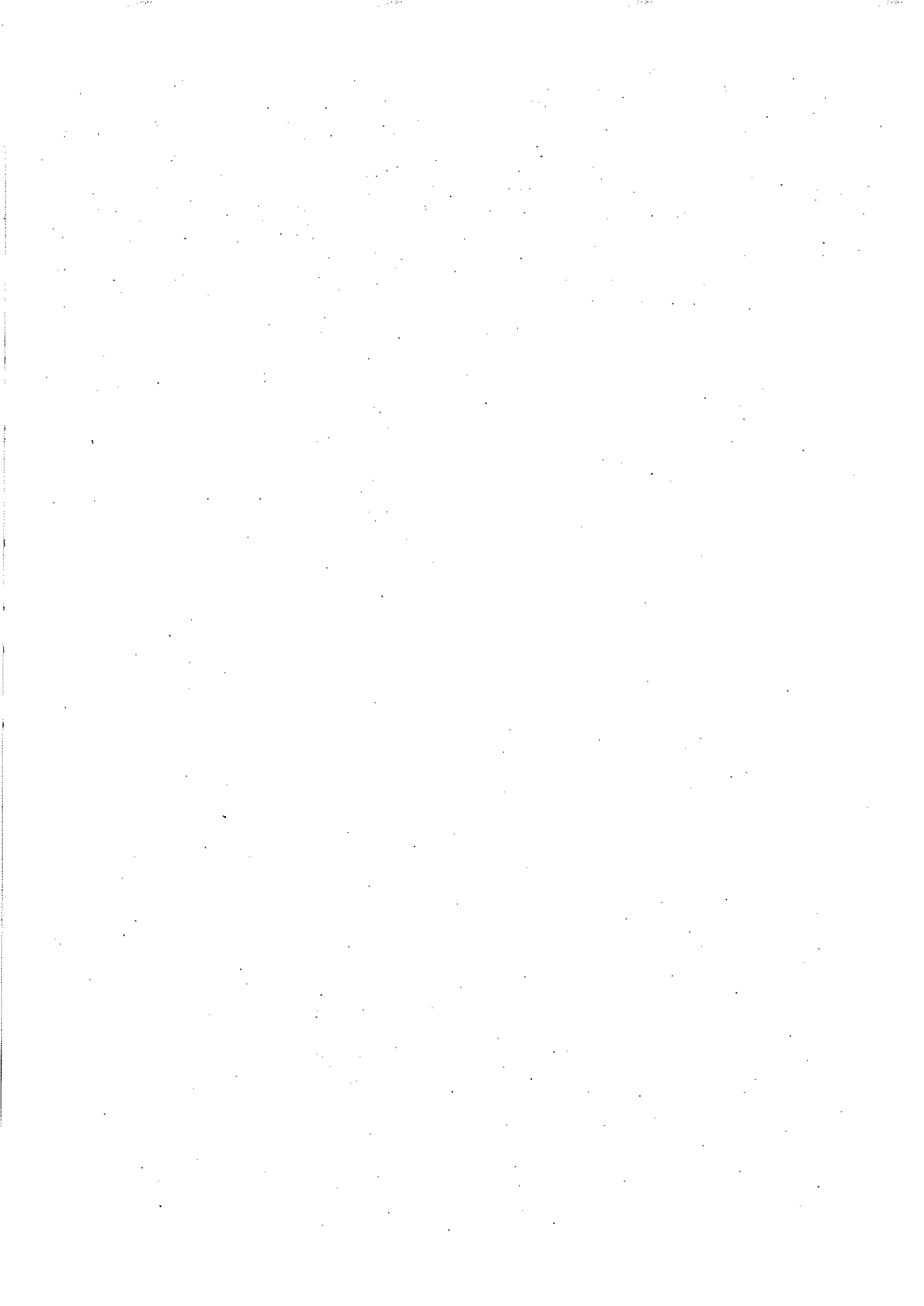
- 연간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 무역정보실



## 나. 농산물유통·가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지원(자율)

## 1. 목적

-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여 산지 쌀유통구조 개선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관처리함으로써 농가편익 제공 및 비용절감
- 수확기 벼매입기능 확충으로 산지쌀값 안정 및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지역특산미 생산공급

## 2. 추진방향

- 기계수확된 물벼를 산물형태로 수집하여 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관처리
-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얼굴있는 쌀" 생산으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
-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로 농가의 쌀 판로확대 및 산지가격 지지효과 거양  
⇒ 쌀의 산지유통기능 개선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업량 (개소)		147 (39)	47 (25)	35 (15)	35 (10)	36 (11)	100	400
사업비	계	141,600	40,800	37,500	42,500	43,000	150,000	455,400
	국고	63,000	15,400	15,000	18,750	18,750	75,000	205,900
	지방비	-	-	-	-	-	-	-
	융자	45,600	14,240	12,750	13,750	14,000	45,000	145,340
자담	33,000	11,160	9,750	10,000	10,250	30,000	104,160	

주 : ( )내는 일반사업자의 사업량임



## 나. '96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개소)

	지원액	사 업 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계	27,750	3	1	3	7	3	10	4	4	35
생산자단체	20,250	3	1	1	4	1	5	1	4	20
일반사업자	7,500	-	-	2	3	2	5	3	-	15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96. 1. 1~12. 31(가급적 벼수확기 이전 완료)

나.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다.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 시설규모 >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수집가능 원료곡생산량, 기존도정시설과의 거리, 자금조달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형, 일반사업자는 기본시설 I형으로 설치 유도
  - 기본시설 규모를 하한선으로 하며, 기본시설 규모이상 설치가능

기본시설유형	사 업 자	처 리 능 력		
		건 조	저 장	가 공
I 형	일반사업자(민간)	1,000톤	600톤	20톤/1일
II 형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1,800톤	1,200톤	20톤/1일

※ 가공시설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

※ 가공능력 : 1일 8시간 가동기준임(단위 : 정곡, 톤)

< 기계설비 기준 >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농가별, 품종별, 수분함량별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등을 자동화된 기계(일반사업자는 선택설치)로 처리하여 벼의 품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품종별, 수분함량별로 구분 건조가 가능한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이 가능하고, 품종별, 품위별로 구분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  
( "기본시설규모" 내에서 옥외 사일로를 설치할 경우 단열, 송풍, 곡온 측정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제어시설 : 입고, 건조, 저장, 출고, 품질검사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구조
- ※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되 기금적 KS규격 사용

(2)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또는 일반사업자(민간)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부문 : 건조·저장 기계설비 및 건축
- 개소당 기준사업비 및 지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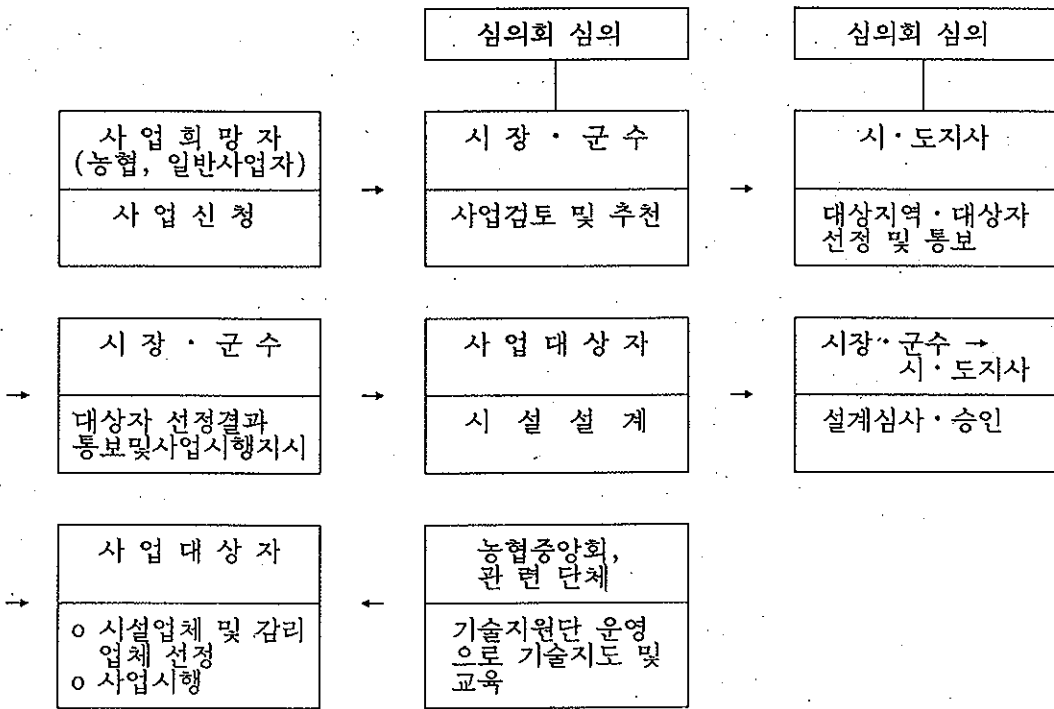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전 체	보 조	용 자	자 담
생산자단체	1,500(100%)	750(50%)	450(30%)	300(20%)
일반사업자	500(100%)	-	250(50%)	250(50%)

※ 지원한도액(보조 및 용자) 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과잉투자 지양)

- 용자조건 : 생산자단체 → 연리 5%(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일반사업자 → 연리 8%(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4) 사업시행 체계



#### 라.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민간)

(2) 신청방법

- 시설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통합요령 제 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 농림수산 정책자금 용자신청조서(통합요령 제 2호 서식)
-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 마. 사업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 지역적 요건

- 벼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서 미곡생산량이 많은 넓은 들판의 농업진흥지역
- 가급적 기존도정시설과 마찰이 없는 지역으로서 주위에 개량곳간등 건조시설, 보관창고가 확보된 지역
- 각종 영농조직 및 위탁영농회사와 연계하여 원료확보가 확실한 지역특산물 생산지역
- 기존 미곡종합처리장과 원료확보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지역

#### ○ 사업자 자격요건

- 공장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자
- 관내 기존도정공장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 수 있는 1급이상의 평창고 1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생산자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물벼, 건조벼)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자 또는 단체
- 농가와 건조·저장등 공공작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확실시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 시설비 자부담능력 및 담보능력, 원료벼 확보 및 공장운영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자 또는 단체
- 정부양곡 입도정업자(대상자 확정과 동시 공사원료일 기준 정부양곡가공 도급계약 포기서 제출)  
※ 정부양곡 입도정계약은 공사원료일부터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
- 쌀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선정 우선순위

< 생산자단체 >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거나 인접한 생산자단체
- ② 관내농가, 도정공장 또는 각종 영농조직, 위탁영농회사등 민간인과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③ 양곡판매사업이 활발하고 취급양곡이 지역특색미로 인정받고 있거나 정착되어 있고 관내 기존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자 방식을 취하는 생산자단체
- ④ 2개 이상의 조합 또는 회사가 합병 또는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⑤ 신규 고정투자와 운영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 ⑥ 지도자의 사업추진 열의도가 높고, 양정시책에 호응하여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 일반사업자 >

- ① 설치예정지역이 고도기술의 벼농사 종합시범단지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자
- ② 정부의 조곡매출사업 또는 조곡공매사업에 다년간 참여하여 미질향상과 민간의 쌀 유통기능 활성화에 공헌이 가능한 도정업자
- ③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통합 및 현대화사업 추진계획('79~'85)"에 의거 통합한 공장 또는 시설이 현대화된 정부양곡 도정업자
- ④ 5개 이상의 일반 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체  
-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일반도정공장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됨  
과 동시에 기존 도정업 등록취소
- ⑤ 관내농가, 영농조직 또는 위탁영농회사 등과 공동출자하는 자

### (3)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시장·군수 : 관내의 도정공장 분포상황 및 충분한 원료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 (생사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구분)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예정지역이 도시계획법·건축법·환경보전법 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시·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바. 사업시행

###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 < 기능 >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모델의 타당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자재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 < 구성 >

##### ○ 시·도 협의회

- 위원장 : 농수산국장(농산국장)
- 위 원 : 농산과장, 농어촌개발과장, 농촌진흥원 관련과장, 농검지소 관련과장, 사업주관 시·군 사업과장, 농수산통계사무소장, 농협 시·도지역본부 담당부장, 농어촌진흥공사 관련부장, 관련민간단체 임직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및 전문가

○ 시·군 협의회

- 위원장 : 시장·군수
- 위 원 : 산업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또는 기술담당관)  
농검출장소장, 농수산통계사무소장, 농협시·군지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관련민간단체 임직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및 전문가

(2)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종합면허)가 있는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자

○ 선정방법

생산자단체는 단체장(농협중앙회장 등)책임하에 자유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 유도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감리

생산자단체는 시설업체 선정과 함께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안전관리

농협중앙회와 대한곡물협회는 회원 사업자에 대한 시설안전설계 설치 및  
시설후 안전점검(월 2회)에 차질없도록 책임 조치

## 5.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지원

### 가. 기본방향

- 수확기 원료비 최대확보로 민간유통의 활성화 및 정부추곡수매 부담 완화
- 원료비의 농가매입 실적에 따른 자금지원 차등화
- 매입자금의 3개재원 통합운용으로 저리지원

### 나. '96 자금확보

재 원	금 액 (억 원)			금 리
	'95 기획보	'96	계	
농 특 회 계	210	350	560	0%
농 협 자 금 (상호금융)	-	383	383	12.18
농업경영자금	-	500	500	5
계 (통합운용금리)	210	1,233	1,443	5

### 다. 세부운용요령

- 집행계획수립 및 배정 : 농림수산부
- 용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농특회계 차주 : 농협중앙회장
  -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대출실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사업자
- 용자대상 : '93~'95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자('95년 사업자중 '95. 12.31까지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곳은 용자대상에서 제외)



○ 용자조건 및 운용방법

- 연리 5%(기간 3년 : 매년도 상환기일에 상환)
- 농특회계, 농업경영자금, 농협자금(상호금융)을 통합운용하여 연리 5%수준으로 지원
- 개소당 용자금 : 7억원씩은 당해년도 상반기에 일괄균등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96. 11월말기준 원료비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 사업자별 용자금액과 한도액은 매년도마다 결정시달('96용자 한도액 : 13억원)
- 원료비 매입자금과 기타자금의 구분계리

○ 용자신청 구비서류

- 균등지원분 : 원료비 농가매입 계획서(별지 제 2호 서식)
- 차등지원분 : 농검출장소장 발행 원료비 농가매입 확인서(별지 제 3호 서식)

○ 채권보전 및 기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계정운용지침 및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회계)

※ 농특회계자금의 취급수수료는 없음

## 6.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관련 민간단체는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등 전문적 기술지도와 행정지도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시·도지사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가 시설관리 및 원료비 매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담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하는등 철저히 지도·감독

### (2) 설치후 시설물 사후관리

-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센터 조직·운영(주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감리업체, 시설업체,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 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전기·기계설비등에 대한 전문기술자 확보 및 전국 1일보수체제 확립으로 주야간 신속한 수리·보수체제 구축

### (3)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지원

- 시장·군수와 농협 시·군지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원료비 매입계획 (원료매입량, 자금조달 계획등)의 적정여부 확인지도
- 사업자는 원료비 매입, 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 (별지 제 8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관계장부의 기록 상황을 점검·확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와 용자취급기관은 원료비 매입자금 용자 실행전에 사업자가 원료비를 매입할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협의하여 일정기간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목적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용자취급 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회수토록 조치

## 나. 보고

항 목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한	보고서식
○ 사업시행계획 확정 및 보조 결정	시·도지사	농림수산부 장	확정및보조 결정후 10일 이내	별지 제 4호 서식
○ 사업시행계획 변경보고	"	"	변경후 10일 이내	변경내역을 보고
○ 사업추진 실적보고	"	"	매익월10일 이내 (3월부터)	별지 제 5호 서식
○ 사업정산실적보고	"	"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별지 제 6호 서식
○ 사업추진설명회개최결과	생산자단체 민간단체	"	개최후 10일 이내	
○ 미곡종합처리장별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부 장)	월보 (분기보고)	별지 제 7호 서식( " )
○ 미곡종합처리장별 원료벼 매입자금대출실적	농협중앙 회	농림수산부 장	분기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증 양 : 농림수산부 식량관리과(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 시·도 : 농 산 과(농협 시·도지역본부, 곡협도지회)
- 시·군 : 산 업 과(농협 시·군지부)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 업 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 / 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m( 평),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토지, 원료권 확보, 제반여건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사업여건

○ 생산자단체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최근 3년간 조합의 경영수지상태, 최근 3년간 계통미 또는 특색미 판매실적, 합병 또는 공동출자 내역, 인수도정공장명, 연계출하도정공장명, 사업계획 이사회 결의, 공동건조 및 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및 참여농가수, 신규고정투자여력, 기타

○ 일반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평창고 보유현황, 조곡매출 및 조곡공매참여 연도와 최근 3년간 취급물량, 인수도정공장명, 통합 또는 공동출자 도정공장명 및 현황, 농민과의 계약재배와 생산자조직과의 물벼수집 계획량 및 공동 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농가수, 색채선별기 및 습식연미기 보유현황, 신규 고정투자여력, 기타

[ 별지 제 2호 서식 ]

## 원료벼농가매입계획서

1. 사업명 :

2. 목 적 :

3. 사업자 :

4. 처리능력 : 건조      톤, 저장      톤, 가공      톤/일

5.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원료벼 확보계획

(단위 : 조곡, 톤)

				조곡공매	농가수탁	기타	계
계약재배	일반농가	위탁영농회사	기타				

다. 자금조달계획(정부지원, 농협중앙회 융자, 기타)

라. 사업운영 방안(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계획등)

6. 기타

첨부 : 각서 1부.

# 각 서

## OO 시장·군수 귀하

본인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벼를 매입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계규정에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원료벼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 이외의 타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원료벼 매입자금을 용자받아 사업을 실시하면서 연간 700톤 이상은 생산능가로부터 직접 계약재배 또는 일반매입토록 하겠습니다.
3. 원료벼 매입 및 가공판매에 관한 제장부 비치와 사업실적 보고사항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99. . . . .

사업체명 :

대표 :

인

[ 별지 제 3호 서식 ]

원료벼 매입확인서

○○ 미곡종합처리장

연산별	매입처별 (조곡, 톤)			매입방법 (조곡, 톤)			매입금액 (천원)		
	계약 재배	일반 농가	조곡 공매	물벼	건조벼	계	농가	비농가	계
○○년산									
○○년산									
계									

위의 원료벼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19 . . . . .

○ 사업자 대표                               인  
 ○ 확인자 : 농검 ○ ○출장소장 인

※ 농검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원료벼 매입량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 주고 1부는 보관한다.

[ 별지 제 4호 서식 ]

### 사업시행계획확정 및 보조결정사항보고

사업자	지역 (시·군·읍·면)	사업개회시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교부결정인	비고
		소재지	건설비	종사업비	보조금결정액	보조사업자 부담액			
		㎡ (평)	㎡ (평)	중	천원	정부용자	자부담	천원	

동합 b4

[ 별지 제 5호 서식 ]

### '96 미국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

( '96. 원말 현재 )

사업자	지역 (시·군·읍·면)	사업계획						사업추진상황				사업비내역				비고			
		사업량		사업비		처리능력		대지	건축	착공	준공	계	보조	용자	자담				
		㎡ (평)	중	㎡ (평)	㎡ (평)	조곡, 문	조곡, 문										장곡, 문	정확	확보
		㎡ (평)	중	㎡ (평)	㎡ (평)	조곡, 문	조곡, 문	장곡, 문	정확	확보	월, 일	%	원, 일	천원					

※ 처리능력 : 건조는 연간처리능력, 저장은 일시저장능력, 가공은 1일 8시간기준 생산능력을 표시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비 매입대장

(물량 : 조곡, 톤, 금액 : 천원)

매입일자	연산별	취		개		상		기		매		입		기		매		입		조곡강매	물량	금액	
		매입	매입량	매입	금액	계약재배	물량	금액	일반농가	물량	금액	농가수탁	물량	금액	위탁영농회사	물량	금액	기	물량				금액
계		물 비 간 조 비 계																					



## 임도정공장 통폐합·시설대체(자율)

### 1. 목적

- 자율통폐합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임도정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업체경쟁력 제고 및 양곡품위 향상

### 2. 추진방향

- 임도정업체가 경쟁력 있는 산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율통폐합 및 시설현대화 유도 원칙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도정공장의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촉진
- 임도정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무리한 시설투자 방지 유도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개소수(개소)		56	20	15	20	30	171	312
사업비	계	7,500	2,500	2,100	2,800	4,200	23,940	43,040
	용 자	5,100	1,750	1,470	1,960	2,940	16,758	29,978
	자 담	2,400	750	630	840	1,260	7,182	13,062

#### 나. '96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경 기	충 남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사업량	6	2	1	3	3	15
사업비 (용 자)	840 (588)	280 (196)	140 (98)	420 (294)	420 (294)	2,100 (1,47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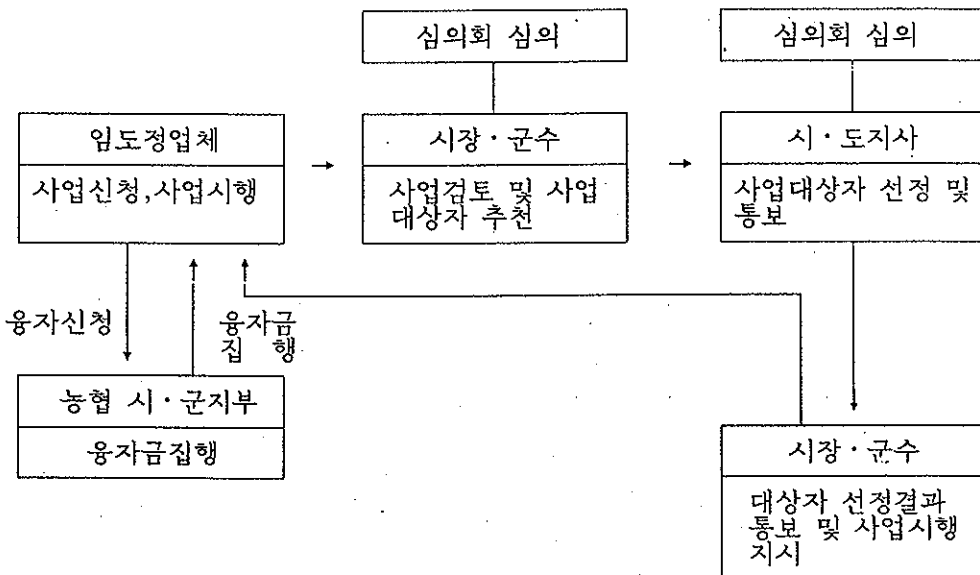
- 재래식 노후임도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통폐합하고자 하는 임도정공장에 도정기계등 시설자금 지원(부지구입비, 건축비는 자부담)

(2) 지원대상 :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임도정업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자	금리 (년)	용자조건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용자		
임도정공장통폐합 · 시설대체	8%	10년	3	7	100백만원 이 내	소요자금의 70% 이내

(4) 사업시행체계



##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읍·면에 소재하여 통폐합·시설대체를 희망하는 임도정업체

(2) 신청절차  
 사업자  $\xrightarrow{\text{사업신청}}$  시장·군수  $\xrightarrow{\text{사업대상자추천}}$  시·도지사(사업대상자 확정)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1부(통합요령 제 1호 서식)
- 농림수산 정책자금 용자신청조서 1부(통합요령 제 2호 서식)

##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자율통폐합 임도정업체
- 통폐합 촉진을 위해 다수의 공장이 통폐합하는 임도정업체
- 통폐합 희망업체간의 이해관계 사전조정 및 부지확보등을 필하여 통폐합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업체
- 지역내 도정시설 적정배치 및 다른 도정시설과의 경합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의 자율통폐합 및 시설현대화 희망업체

(2) 우선순위

- 다수의 공장이 통폐합하는 임도정업체
- 통폐합 희망업체간의 의견조정이 완료되고 부지가 확보되어 통폐합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업체
- 다른 도정시설과의 경합이 없는 지역의 자율통폐합 및 시설현대화 희망업체

(3) 선정절차

사업자  $\xrightarrow{\text{사업신청}}$  시장·군수(농어촌발전심의회 상정)  $\xrightarrow{\text{사업대상자추천}}$  시·도지사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어촌발전심의회  
 상정)·사업대상자  
 확정)

## 마. 사업시행

### (1) 용자요령

#### ○ 용자조건

사업자	금리 (년)	용자조건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용자		
임도정공장통폐합 · 시설대체	8%	10년	3	7	100백만원 이 내	소요자금의 70% 이내

- 자금용도 : 도정기계등 시설자금(부지구입비, 건축비는 자담)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또는 읍·면 농협)
- 용자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실적확인서(또는 기성고 확인통지서),  
시설구입계약서
- 채권보전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96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소요자금			
		국고보조	국고용자	자담	총사업비
임도정공장 통폐 합· 시설대체	개소 15	-	1,470 (70%)	630 (30%)	2,100 (100%)

### (3) 분기별 계획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자금지원계획		
		보조	용자	계
1/4	사업대상자 확정 및 지원규모 결정 공사확정 및 추진 건축 및 시설설치공사추진 완공	-	735	735
2/4				
3/4				
4/4				
계			1,470	1,470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업체 추천시에는 한국양곡가공협회의 협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는 가급적 KS규격품, 품질보증품등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설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공사추진상황을 확인한 후 용자신청에 필요한 사업실적 확인서(또는 공사기성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 한국양곡가공협회는 년 2회 이상 회원도정공장의 시설물 안전관리상황을 점검·시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양곡가공협회는 년 1회 이상 회원사의 시설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나.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별지 제 1호 서식)
- 사업정산 실적보고(별지 제 2호 서식)

###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식량관리과(농협중앙회)
- 시·도 : 농산과(농협 시·도지역본부)
- 시·군 : 산업과(농협 시·군지부)

[ 별지 제 1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시·도	시·군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 소	통폐합공장명
계					





## 꽃직판장 설치지원사업(자율)

### 1. 목 적

- 꽃의 직거래를 통한 건전소비 기반확대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

### 2. 추진방향

- 대도시 지하철역, 백화점 등 대중장소에 꽃 간이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망 구축
- 사업추진성파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	'97	'98
○ 물 량	450 개소	100	150	200
○ 사 업 비	2,490 <small>백만원</small>	565	825	1,100
- 용 자	1,743	396	577	770
- 자 담	747	169	248	330

#### 나. '96지원계획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고용자(70%)	자담(30%)
계	-	565백만원	396	169
판매대	100개소	520	326	156
저온수송차량	3대	45	32	13

### 3. 사업계획

가. 사업 대상자 : 한국절화농업협동조합장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자

나. 사업내용 및 지원액

사업내용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재 원 별	
				국고용자(70%)	자부담 (30%)
계			565	396	169
판매대	100개소	백만원/개소 5.2	520	364	156
저온수송차량	3대	백만원/대 15	45	32	13

다. 지원기준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4. 사업시행

- 세부시행계획은 별도시달

### 5. 운영방법

- 한국절화협동조합 : 판매장 설치 및 꽃 공급 등
- 지하철공사 : 설치장소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장애인 판매인력 알선

## 6.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지원받은 시설물을 용자기간내에 처분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후관리 책임자 : 한국절화농업협동조합
  - 한국절화농업협동조합장은 매분기 사업추진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7. 기타사항

- 본사업에 대한 상세한 의문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과수화훼과 : 504-9425
  - 한국절화농업협동조합 : 577-9871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자율)

## 1. 목 적

-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집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산지의 기초 유통시설로서, 이를 생산자조직에 지원함으로써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동 조직에 의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 농산물의 출하가 계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양곡수매 등 편익시설로 동 시설을 활용토록 함

## 2. 추진방향

- 사업자의 경영능력과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에 지원
- 조직의 발전에 따라 연차별 추가지원을 하여 일시에 과다투자 방지
- 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
-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개선 도모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 단 위 : 개 소, 백 만 원 )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	1,083	862	1,038	1,017	-	-	4,000
사업비계	62,500	52,500	61,013	23,987	-	-	200,000
국 고	25,000	21,000	24,405	9,595	-	-	80,000
지방비	25,000	21,000	24,405	9,595	-	-	80,000
자 담	12,500	10,500	12,203	4,797	-	-	40,0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간이집하장(50~200평) 건설 및 부대시설 지원

-부대시설 : 임시저장고, 포장기, 결속기, 세척기 등 (수산물은 간이  
저온저장고, 세척 및 처리시설(건조시설), 포장장비 등).

※ 부지대는 자부담

○ 설치방법은 지역특성과 사업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표준설계도 중에서 선택

- 표준설계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2) 지원대상

○ 단위조합 (영농회, 작목반,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중

공동규격출하를 하거나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조직

(3) 지원규모 및 조건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어의 호응도 및 수집 가능한 물량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규모로 설치

- 설치규모는 50~200평이며 규모별 표준설계도를 고려하여 설치

○ 개소당 지원한도

-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건설비는 표준설계도 상의 단가를 기준하여 지원

- 수산물 간이집하장의 건설비는 평당 1,250천원 이내에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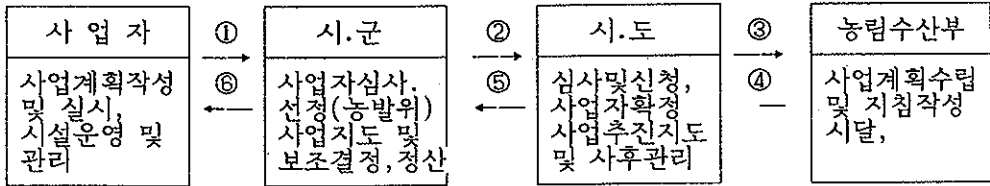
- 취급 품목, 조직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비 외에  
부대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개소당 지원 한도액 : 농산물 → 160백만원, 수산물 → 200백만원

○ 사업비 보조

- 총사업비의 80%를 보조 (국고 40%, 지방비(지방교부금) 40%, 자부담 20%)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4) 사업시행체계



- ①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 ② 사업신청보고, 사업자 선정보고, 사업추진실적 보고, 보조금 신청
- ③ 사업자 선정보고,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보고
- ④ 사업계획 확정 (사업물량 및 보조금)시달
- ⑤ 사업계획 및 사업자 확정 통보, 보조금 배정
- ⑥ 사업자 통보, 보조금 지원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단위조합 (영농회, 작목반,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기초조직으로서 공동규격출하를 하거나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조직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및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읍.면을 경유하여 시.군에 제출

라. 대상자 선정

(1)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별표1" 조직분류 기준상의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부지확보가 가능한 조직 (사용승낙서를 받은 경우는 임차도 가능)
-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공동출하 활동이 활발하여 시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 ※ 조직원의 숫자가 20농어가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 설치지역의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

- 여러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수산물은 호안 및 접안시설이 완비된 지역)
-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등과 연계되는 지역에 우선 설치
- 장기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이 규모화되고, 콜드체인화되어도 기본 유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3)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수산업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읍.면을 경유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설치예정지역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와 사업대상자 명단(지원우선순위)을 작성,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전년도 3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마.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업체 선정시부터 공사 지도까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공사 감리감독 등 기술상의 제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나 농협에 지원을 요청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조금 집행은 감리기관이 확인한 공사진척 비율(기성고)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사업자로 확정되면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되, 사업자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 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표준설계도를 사용하여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설계변경 시에는 표준설계도상의 유사한 형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되; 평형별 최고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토록 한다.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본 시설물은 준공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건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나. 보 고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보고
  - 지원 금액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변경 : 장관 승인
  -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의 계획 변경, 사업장 및 사업자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대표자 변경 및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설운영상황을 사업실시 연도부터 3년차까지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
- 시·도 : 각 시·도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각 시·군 산업과

【별표 1】

○ 생산자조직 분류 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li> <li>○ 공동계산제 실시</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 이상</li> </ul>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li> <li>○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 이상</li> </ul>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적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li> </ul>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소					
	조직결성일시			조직원수(농가)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재배현황		ha	톤			
출하실적 전년실적	총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공동유류시설유형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공동시설및장비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조 ( )	( )

※ 상 표 명 : 00농협 딸기, 00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 요 출 하 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전납품 등  
 유 류 시 설 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 내서

### 3. 사업계획

#### ○ 부지확보계획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부지면적 :      [ 위치약도 (1/5,000 축적 지적도) 첨부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 ○ 시설 설치계획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총 계	평	천원	백만원				
부 지 건 . 장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시설.장비의 처리능력, 제작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일정 (계획)

- 부지확보완료 (부지구입후 농지전용, 형질변경 필요시 행정절차 완료 가능시점)
- 토목설계 및 부지정지작업 완료
- 기초 및 실시설계 완료
- 착 공
- 준 공

○ 사업계획

품목	생산량	출하 시기	출하 형태			출하 처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도매시장	직판	기타

○ 시설 운용계획

- 원료확보방안
- 시기별 운용계획
- 판매방안

4. 기 타

○ 농림수산부 정책사업 실적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년 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공공)

## 1. 목 적

-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동 조직에 의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 2. 추진방향

- 사업자의 경영능력과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에 지원
- 조직의 발전에 따라 연차별 추가지원을 하여 일시에 과다투자 방지
- 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
-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개선 도모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 계
사업량	-	21	24	21	21	73	160
사업비계	-	18,000	18,000	18,000	18,000	83,000	155,000
국 고	-	7,200	7,200	7,200	7,200	33,200	62,000
지 방	-	5,400	5,400	5,400	5,400	24,900	46,500
자 부	-	5,400	5,400	5,400	5,400	24,900	46,50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건축비와 선파기, 세척기, 자동운반기 등 기계류 및 기타 부대시설·장비구입비 지원 (부지대는 자부담)

(2) 지원대상 : 농협회원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자가 사업능력 및 입지조건에 따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당해년도 사업규모는 15억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보조 (국고보조 40%, 지방교부금 30%, 자부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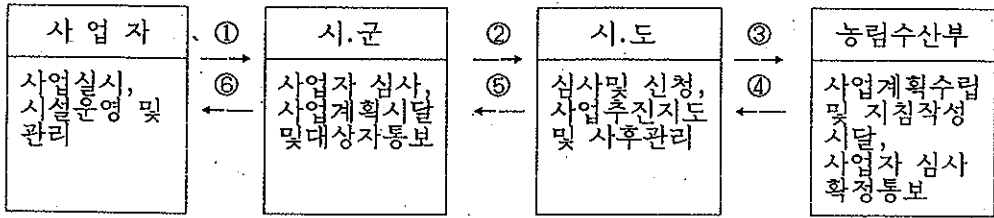
< 시설별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기준에서 >

시설명	규모	단가	사업비	비 고
< 건물 >				
선별(과)장	평 200	백만원 1/평	백만원 200	○ 수송차량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 ○ 선파장의 1면은 수송차량의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Deck 시설 설치
집 하 장	100	1/평	100	○ "
저온저장고	200	2.5/평	500	○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 ○ 콤프레서 : 평당 0.4마력 이상 ○ 가습기 : 20ℓ/h 이상 ○ 제상기, 에어커튼 등 구비
관리사무소 일반창고등	50	1/평	50	
< 기계류 >				
선별기,포장기, 혼배어등	-	-	-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 장비류 >				
팔레트,지게차, 운반상자등	-	-	-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주) . 시설별 규모는 실정에 맞게 조정  
 . 지원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예시되지 않는 시설장비도 가능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4) 사업시행 체계



- ①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 ② 사업자 심사 및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 실적보고
- ③ 사업자 심사 및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보고
- ④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배정
- ⑤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배정, 추진상황 지도점검
- ⑥ 사업자 확정 통보, 보조금 지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농협회원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서 조직 고유상표로 공동규격출하 등 유통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우수 조직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및 농산물포장센터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영농조합법인은 법인등록 증빙서류 및 조직원 현황표 첨부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사업자의 경영능력, 입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동기의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부지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 공동규격출하실적, 판매망 확보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원료확보방안, 시설운영계획, 판매계획 등)
- 조직화 정도 (조합원수, 설립시기, 전문인력 확보여부 등)

○ 생산 및 입지조건

- 생산량, 이용품목수, 연중예상 가동율
- 기존시설과 중복 또는 보완여부
- 사업장의 위치조건 등

□ 우선순위

- ① "별표 1" 조직분류 기준상의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② 간이집하장, 선과장 운영 등을 통하여 기존 유통사업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업성이 좋고 경영능력이 축적되어 사업의 확대를 위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직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이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조직

## (2)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통합요령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설치예정지역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와 사업대상자 명단(지원 우선순위)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검토한 후 지원 우선 순위를 매겨 전년도 3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수산부는 사업자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

## 마. 사업시행

- 사업자로 선정되면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일정별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로 확정된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 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설계계약, 시공업체 선정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후 계약체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부터 공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나 감리업체(관계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
  - 기계 및 장비구입시에는 물품 구입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회의비, 유인비 등)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본 시설물은 준공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건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나. 보 고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보고
  - 지원 금액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변경, 사업장 및 사업자 변경 : 장관 승인
  -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의 계획 변경, 대표자 변경 등 : 시·도지사 승인
  -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설운영상황을 사업실시 연도부터 3년차까지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
- 시·도 : 각 시·도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각 시·군 산업과

【별표 1】

○ 생산자조직 분류 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li> <li>○ 공동계산제 실시</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 이상</li> </ul>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li> <li>○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li> <li>○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li> <li>○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 이상</li> </ul>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적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li> </ul>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포장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소					
	조직결성일시			조직원수(농가)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재배현황		ha	톤			
출하실적 전년실적	총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공통설유현 유용시설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공동시설및장비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조 ( )	( )

※ 상표명 : 00농협 딸기, 00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유용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 내서

### 3. 사업계획

#### ○ 부지확보계획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위치약도 (1/5,000 축적 지적도) 첨부 ] 부지면적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 ○ 시설 설치계획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총 계	평	천원	백만원				
부 지 건 · 집 · 선 · 전 · 저 · 일 · 사  · 물 · 장 · 장 · 고 · 실  · 하 · 별 · 온 · 반 · 장 · 무 · 사  · 장 · 선 · 포 · 세 · 절 · 냉  · 비 · 기 · 기 · 기 · 차 · 단 · 동							

※ 비고란에는 시설.장비의 처리능력, 제작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일정 (계획)

- 부지확보완료 (부지구입후 농지전용, 형질변경 필요시 행정절차 완료  
가능시점)
- 토목설계 및 부지정지작업 완료
- 기초 및 실시설계 완료
- 착 공
- 준 공

○ 사업계획

품목	생산량	출하 시기	출하 형태			출하 처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도매시장	직판	기타

○ 시설 운용계획

- 원료확보방안
- 시기별 운용계획
- 판매방안

4.기 타

○ 농림수산부 정책사업 실적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년 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공)

### 1. 목 적

- 넓은 장소에서 신속한 거래를 통해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유통
- 수급을 반영하는 정확한 가격형성으로 생산 및 소비 조절에 기여
- 공개 경쟁적인 공정한 가격형성으로 공정거래를 유도

### 2. 추진방향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운영의 공익성 제고
- 전국 대도시 및 중요 중소도시에 '98년까지 34개소 건설
  - 12개 도시내 19개 거점도매시장 건설
  - 중소도시에 15개 보완도매시장 건설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계
사업량		21 개소	6 (12)	6 (18)	1 (16)	- (11)	34
사	계	502,306	169,221	176,930	314,355	243,025	1,405,837
업	국 고	187,794	63,008	72,079	123,764	97,823	544,468
비	지방비	314,512	106,213	104,851	190,591	145,202	861,369

※ 사업량은 착수 기준이며 ( )는 당해년도 국고 예산지원 개소수임

나. '96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지역명	사업규모		사업비		'96 예산(안)	
	부지	건물	총사업비	국고	사업비	국고
	천평					
구안리	56.5	32.7	109,400	54,700	5,172	2,586
의양산	25.2	19.2	72,178	36,089	11,370	5,686
서부읍	34.5	6.1	16,810	8,405	8,310	4,155
광주읍	57.0	20.0	150,000	45,000	21,780	6,534
인진포	45.2	21.4	93,390	28,017	4,920	1,476
진강원	50.0	13.0	40,000	12,000	230	69
대성고	31.4	19.6	80,921	24,276	22,500	6,750
순수구	20.0	8.0	20,000	10,000	6,000	3,000
미	17.2	12.0	36,222	18,111	13,310	6,655
	16.0	4.0	18,400	9,200	7,000	3,500
	16.0	6.0	24,000	12,000	3,000	1,500
	10.0	4.0	11,150	5,575	4,000	2,000
	45.0	25.0	112,500	33,750	22,500	6,750
	48.0	14.0	70,000	21,000	10,000	3,000
	26.1	14.5	77,200	38,600	7,600	3,800
	40.9	20.5	91,195	45,597	18,238	9,119
	20.0	7.0	20,000	10,000	6,000	3,000
	25.0	8.0	25,000	12,500	5,000	2,500
계			1,068,366	424,820	176,930	72,079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특별시, 광역시, 시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 지원

(2) 지원대상 :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시

(3) 지원비율 [ 특별시, 광역시 : 국고보조 30%, 지방비부담 70%  
 기타 일반시 : 국고보조 50%, 지방비부담 50%

(4) 사업시행체계

○ 집행기관 : 시

○ 집행절차 :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신청(시) → 대상지역 선정(농림수산부)

## 다. 사업대상지 선정

### (1)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 농안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에 한해서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이 가능함

#### 2)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특별시에는 공영도매시장 3개소 건설

○ 광역시에는 공영도매시장 2개소 건설

○ 도청소재지 시에는 공영도매시장 1개소 건설

○ 기타시의 경우에는 타도매시장과의 거리,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지방비 부담능력 및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단, 인구 20만 이상의 시를 우선함

### (2) 선정방법

○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희망하는 지역중 농림수산부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3) 구비서류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1) 사전 조사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유통체계 조사·분석

- 반출입 현황, 기존 도매시장 현황, 소매시장 현황 등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연구

- 사업조사연구 : 인구, 교통계획, 주요 도로망, 입지, 자연환경 등

- 규모, 위치 및 투자비 추정

○ 사업계획에 대한 정책결정

○ 관계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보조사업 결정 등)

(2) 기본계획 수립

- 실무작성반 편성 : 시청 담당과
  - 건설에 따른 적정 상근인원 확보 (도시계획, 건설기술직 포함)
- 추진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 관련 단체장, 기타 농수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시장관계자 등으로 구성
- 전문기관 용역의뢰 :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보완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및 용지확보

(3) 도매시장 건설 추진

- 시장건설 및 개장추진 전담기구 발족
  - 시장 건설추진반과 관리운영추진반으로 구분
-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 공사 발주 및 추진

(4) 도매시장 개장준비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추진)

-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서 및 업무규정 작성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본계획)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및 모집
- 입주대상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도매시장 홍보 추진

(5) 도매시장 개장 운영

- 공사준공
  - 관리부서에 시설인계 및 시장개설 허가
- 도매시장 관리조직 입주
- 도매시장 관련조직 입주 및 업무수행 준비
- 개장운영 초기 지도
  -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후적지 정비 추진)

## 마.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건설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도매시장 건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 보고 (시 → 시·도 → 농림수산부)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 : 분기별 도매시장 건설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고
- 당해년도 정산보고 : 당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3월 31일 까지 기일엄수하여 정산보고
- 최종 정산보고 : 도매시장 건설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3) 협조사항

- 용역기관에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할 경우 농림수산부, 시·도, 유통관련 전문기관 및 시장종사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

### (4)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국 시장과  
(일반 : 504-9415~6, 500-2675~6, 행정전화 315·316)
- 서울특별시 :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
- 광역시 : 지역경제국 농정과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시 : 산업과, 농정과

[별지 제1호서식]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보조금 신청서

###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 ○○년 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 사업기간 :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특·광역시 30%, 일반시 50%)

### 2.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 지방비에 대한 차입계획이 있을 경우에 기재

### 3. 지역별 장기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 장기 유통시설 확보계획
  - 도매시장, 공판장 확보계획
- 장기유통시설 배치 및 물량처리계획

### 4. 지역 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〇〇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m <sup>2</sup>		톤	백만원

※ 시장 : 도매시장, 공판장, 유사시장별로 작성

### 5.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6. 기 타

### ○ 도매시장 건설 연구용역 추진상황

-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연구보고서 및 내용 (용역기관, 용역비 등)
- 용역중이거나 용역계획중인 곳은 추진내용

### ○ 총사업비 증가사유 작성

- 건설중인 지역의 총사업비 증가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작성할 것
- 덧붙임 자료로 2~3페이지 정도 작성할 것

## 7.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계		



#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 1. 목 적

- 중소도시지역의 농산물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로 상거래질서 유지의 선도적 역할

## 2. 추진방향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 전국 중소도시(시지역)에 '98년까지 67개소 건설

## 3. 투자용자계획

### 가. 연차별 투용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합 계
총사업량		개소 47	4	6	5	5	67
사업비	계	23,992	20,300	18,588	10,500	12,600	85,980
	국고보조	5,626	8,120	7,435	4,200	5,040	30,421
	지방비	2,517	4,060	3,718	2,100	2,520	14,915
	국고용자	3,123	4,060	3,718	2,100	2,520	15,521
	자담	12,726	4,060	3,717	2,100	2,520	25,123

※ '94까지에는 농협자체 확보분 33개소 포함

나. '96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시도	시군	구분	규모 (평)	단가 (천원/ 평당)	사 업 비				
					계	국 고 보 조	지방비 보 조	국 용 고 자	자 담
충북	괴산	계	1,800		2,080	832	416	416	416
		부지	기확보	819		기존소유부지			
			신규 구입	481	1,996	960	384	192	192
		건물	500	2,241	448	224	224	224	224
전북	전주	계	4,800	-	5,085	2,034	1,017	1,017	1,017
		부지	3,000	350	1,050	420	210	210	210
		건물	1,800	2,241	4,035	1,614	807	807	807
경북	영주	계	1,798	-	2,695	1,078	539	539	539
		부지	1,072	997	1,069	427	214	214	214
		건물	726	2,241	1,625	650	325	325	325
	상주	계	3,221	-	2,963	1,185	593	593	592
		부지	2,036	448	913	365	183	183	182
		건물	915	2,241	2,050	820	410	410	410
경남	진해	계	2,373	3,600	3,365	1,346	673	673	673
		부지	1,473	916	1,350	540	270	270	270
		건물	900	2,241	2,015	806	403	403	403
	밀양	계	3,647	-	2,400	960	480	480	480
		부지	2,838	206	585	234	117	117	117
		건물	809	2,241	1,815	726	363	363	363

※ 용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계정

※ 부지매입비와 건물건축비의 지원총액내에서 상호 가감하여 사용이 가능함

## 4. 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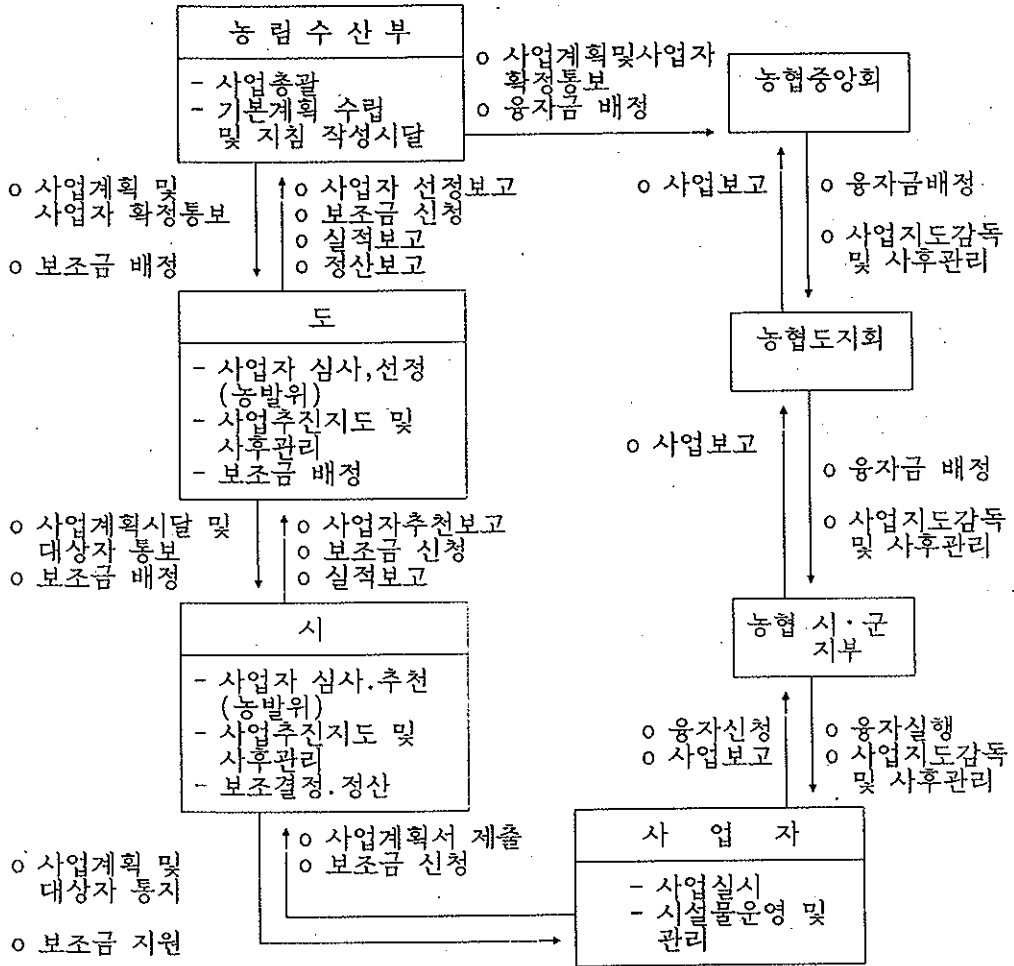
### 가. 사업주관기관

- 시행주체 : 농협회원조합
- 사업집행기관 : 시장, 군수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산지 및 소비지 농산물공판장 건설
- (2) 사업규모 :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시행 조합에서 결정
- (3) 지원대상 : 농협회원조합
- (4) 지원내용 : 농산물공판장 건설 부지매입비 및 건물 건축비
- (5) 지원기준 및 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20%, 국고용자 20%, 자부담 20%
  - 용자금의 지급
    - 용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채권보전 : 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청한바에 의함
    - 용자금 종결기한 : '97.3.31

(6) 사업시행 체계도



## 다. 사업대상자 선정

(1) 신청자격 : 시·군지역의 농협회원조합

(2)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신청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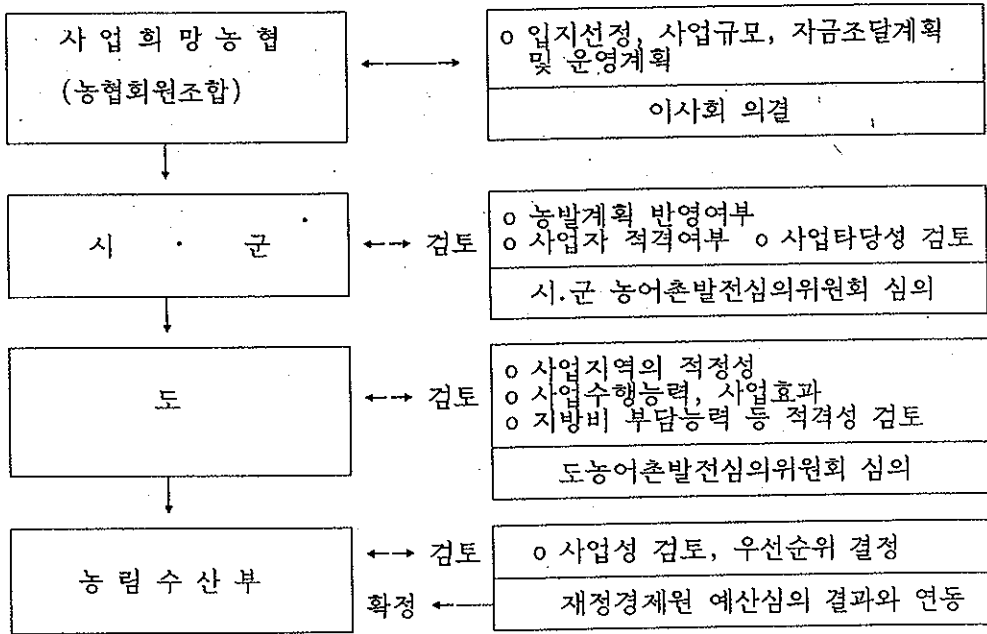
- ① 시·군지역으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설치되지 않아 대량의 농산물 거래장소가 필요한 지역
- ② 공판장은 설치되어 있으나 도심에 위치하여 차량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등에 공해를 유발시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 ③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아 유통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존시설의 확장도 불가능하여 추가로 공판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
- ④ 경매식 집하장시설이 있으면서 공판장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

### □ 사업자 선정

- ① 부지를 기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
  - 도시계획 및 건축법등 관련제도상 저촉되지 않는 부지확보가 가능한 자
- ② 조합의 투자여건(자부담능력)이 양호하고, 대표자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창고시설(저온, 상온) 및 가공처리장등 부대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 ③ 사업기간내에 건설을 완료할 수 있는 자

(3) 구비서류 : 세부 사업시행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4)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요령



라. 행정사항

(1) 사업기간 : '96.1.1 ~ '96.12.31

(2) 사업시행계획

- '96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은 '96.2.15까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96.2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보조금 교부결정 : 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 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신청 : 회원조합장 → 시장·군수 → 도지사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 도지사 책임하에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97.1.2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4) 사업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지역 및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할 시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시설물 사후관리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이 하고, 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해당조합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명령등을 할 수 있다.
- 공판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6) 공사감독 및 보고

- 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공사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체계 : 사업조합 → 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 보고기한 및 방법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서면보고

#### (7) 사업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유통정책국 시장과 (T. 02-500-2675, 2676, Fax 507-3965)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시·군청 : 유통과 또는 산업과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공판장건설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1. 위 치 : 도 시 동 번지(위치약도 첨부)

o 입지선정 사유

2. 사업의 필요성

3. 인구수(신청당시)

4. 시설 규모 (단위: m<sup>2</sup>)

구 분	법적기준	사업규모	단가(천원)	비 고
부지 건물			/m <sup>2</sup> 당 /m <sup>2</sup> 당	

5.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규모(평)	단 가 (천원/ 평당)	총사업비	재 원 조 달 계 획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 담
부지 건물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명과 규모를 별지에 기재

6. 주요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량 (과거 5개년) (단위: 톤)

구 분						
품목명	생 유 산 통 량					

7. 취급물량 및 금액 (단위: 톤, 백만원)

품 목	1 일 평 균		연 평 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8. 연차별 수지전망(손익추정) (단위: 백만원)

수 비 순	익 손				

9. 기 타 : 사업추진일정, 사업예정지의 지적도면 및 관련법령상 설치가능성,  
도시계획확인원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참고되는 자료 제출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공공)

##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판매처리능력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과의 직접연결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 도모

## 2. 추진방향

- 산지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종합 선진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 2004년까지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외곽에 16개소 설치
- 건설규모는 건설당시 권역내 취급물량과 소비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집, 배송시설, 보관시설, 소포장시설, 유통가공시설, 정보처리시설, 관리시설, 주차장등 주요시설을 갖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모 및 시설을 결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후 건설
  - 사업대상자는 개방화에 대비한 선진유통기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추진
- 건설후 물량증가, 새로운 시설설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완투자가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에 우선하여 추가지원
  - 초기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 하므로써 운영내실화 유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사업량(신규)		1	3	4	3	2	3	16
사 업 비	계	20,000	82,400	100,000	184,500	166,000	468,800	1,021,700
	국고보조	-	45,300	47,200	121,500	103,000	289,500	586,600
	국고융자	20,000	37,100	52,800	63,000	63,000	179,300	435,100

※ 연차별 투자계획 (개소수 등)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조정가능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8개소(신규4)	100,000	47,200	5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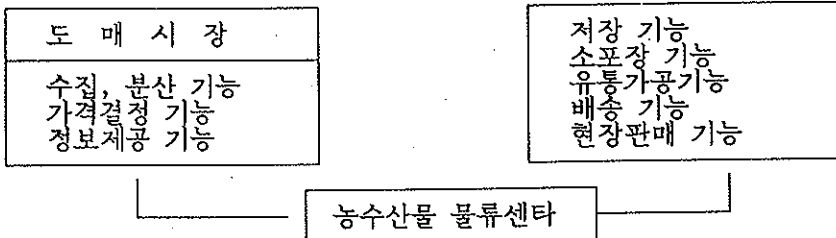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시설로 부터 농수산물을 수집 (유통가공, 소포장)하여 직영점, 가맹점, 수퍼마켓, 대량수요처 등에 직접배송
-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보관, 소포장, 유통가공, 배송, 현장판매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
- 현장판매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자만을 회원제로 하여 도매행위에 한함



- 가격결정방법은 출하자 판매희망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시황등을 감안한 상대거래 방식에 의하여 결정
- 산지유통시설 및 공동출하조직에 사전가격을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유통자회사), 민간유통업자 등 (독자적으로 건설운영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지방공사, 공단이외의 출자 출연법인(상법상의 회사)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자가 공동출자(콘소시움)하여 건설 운영하는 법인
  - ① 지방자치단체 + 생산자단체 + 민간유통업자 ② 지방자치단체 + 생산자단체
  - ③ 지방자치단체 + 민간유통업자 ④ 생산자단체 + 민간유통업자

### (3)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건축비(필수시설에 한함)의 60% 국고보조와 보조금 이외의 "건설 사업비" 총액 (부지구입비 포함)의 70% 국고용자
- \* 보조금 대상 (건축비) 필수시설은 집배송시설, 보관시설, 소포장시설, 유통가공 시설, 정보처리시설, 사무실 등의 구입 및 설치비에 한함 (부지구입 및 조성비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제외)
- 민간유통업자 : 건설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의 60% 국고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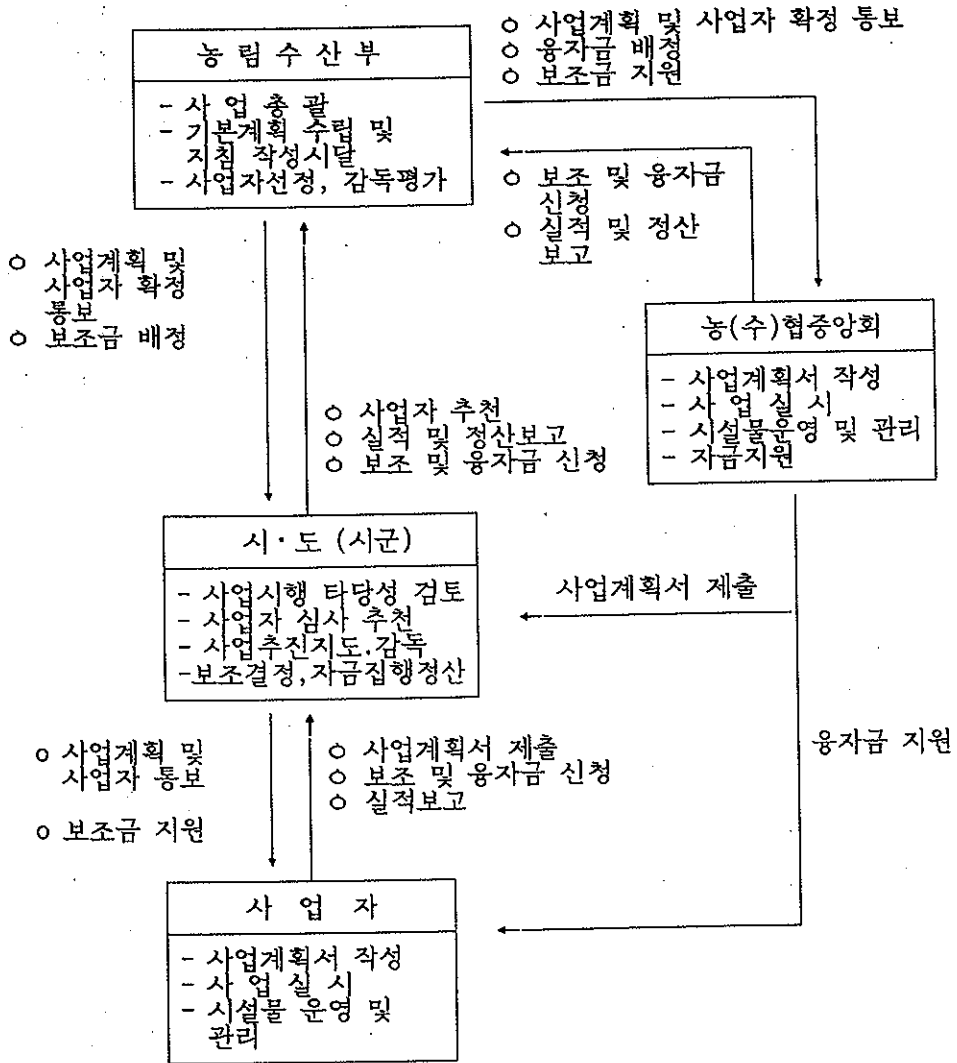
#### ○ 적용범위

- 변경된 지원규모는 '97년도 이후 사업대상자 부터 적용하며 '96년도 이전에 확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원율을 계속 적용
- \* 단, 민간유통업자에 대한 용자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96년도 사업대상자로 부터 적용
- 콘소시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자의 지원율을 각각 적용

#### ○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연리 3% (민간5%), 5년거치 10년상환
-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자와 시·도지사는 동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내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당초 지원목적의 수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년1회이상 동 협의회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농림수산부장관은 위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벌칙을 가할 수 있음.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단지내 입주사업자는 건물비에 한하여 지원

(4) 사업시행 체계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유통자회사 포함)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민간유통업자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31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전년도 3.31이후 접수분은 차년도 계획으로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3) 구비서류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편익비용 (B/C) 분석 (별지 제2호서식)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대상자를 선정토록 별도 심사 및 평가기준 설정
  - 사업구역내 농수산물의 수요량, 교통여건, 기존 유통시설 등을 고려한 사업입지와 사업자의 경영능력, 자부담능력 등을 평가
  -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여부, 정부지원 예산의 적기집행여부, 투자의 효율성 등을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소비지 유통권역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자
  -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농수산물의 반입반출이 원활한 곳)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로서 경영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자
  - \* 시설비 (자부담과 담보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
- 산지의 출하조직과의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사업자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자

(2) 선정절차

-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심사 및 평가요소 (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심사 및 평가요소

- 물류센타는 국내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유통형태로서 사업자의 경영능력과 사업의지가 뚜렷한 경영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사업경험이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
  - 사업동기가 뚜렷하고 신념과 신뢰성이 확고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
- 건설지역은 소비지 유통권역을 중심으로 대도시 외곽에 설치하되 권역내의 수요량, 인구전망,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
  - 산지유통시설과 소비지 판매망과의 연계 및 주요 도로망에 인접된 지역을 우선선정

- 대도시 권역에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확실한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법상의 제한사유가 없는 지역으로서 농수산물의 반입, 반출이 원활하고 유통상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
- 시설비(자부담과 담보능력)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
  - 조직규모, 경영상태, 재무구조,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자체재원 조달비율이 높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
  - 사업비 총액대비 자체 조달비율을 추가 점수로 직접 가산하여 우선순위 부여
- 주요품목별 산지수집망 및 소비지 판매망의 구체성과 합리성이 높은 자
  - 주요품목의 수집처, 수집물량, 계약성립상황 및 산지출하조직의 확보가능 여부
  - 소비지 판매처의 규모 및 수퍼체인, 백화점, 소매시장 등과의 협의 또는 기타 판매망의 확보가능 여부
- 기타 물량계획이 합리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적절한 시설규모를 갖춘 사업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
- 건설후 새로운 시설설치를 위한 추가지원은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원

#### 마. 사업시행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사업시행자)는 세부적인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림수산부장관은 사업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개시연도 10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부지매입, 건축설계, 건축허가 등 추진상황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도 자금 등 지원보류
- 사업대상자는 물류센터 건설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시설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융자금포함)의 집행상황 (교부결정, 검정, 정산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5. 행정사항

### 가. 행정사항 준용

- 본 사업지침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 농수산물 물류센터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 농림수산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 감독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명령에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 본 시설물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처분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다. 보 고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주체는 본사업의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농림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
- 시도 : 농정국 유통과



[ 별지 제1호서식 ]

##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 가. 사업입지

○ 위 치 :        도       시       동       번지 [위치약도(1/5,000축적지형도)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 입지선정 사유 (주변현황 등)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규모	사업비		조 달 방 법			주요기능
		단 가	금 액	보 조	용 자	자 담	
○ 부 지 ○ 건 물 ○ 집하장시설 ○ 배송장고시설 ○ 저장고시설 ○ 소포장시설 ○ 가공시설 ○ 기타시설및장비	m <sup>2</sup>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물과 규모를 별지로 상세하게 추가작성 첨부

다. 사업추진 일정 :

라.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 수집방법, 판매방법, 콘소시움의 경우 투자 및 운영방안 등 포함

5. 연차별 수지전망 : 편익비용 분석

- ※ 첨부서류 : 1.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  
 2.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 < 세부시행계획 작성시 고려사항 >

### I. 사업자 및 조직부문

- 사업추진 동기
  -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추진 목적 및 기본방침
- 사업신청자의 사업경력
  - 농수산물 유통분야, 관련분야, 기타 사업경력으로 구분 (각부분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실적자료)
- 재무구조
  - 총사업비 산출근거 및 자부담 조달방법
  - 재산상태 및 자금확보 여력

### II. 입지여건 부문

- 유통권역의 규모
  - 상품공급권역의 도시 및 인구상황
- 유통권역과의 수송시간 및 도로교통 여건
  - 상품공급권역 중심권 지역까지의 수송시간 및 예정부지 주변의 도로상황
- 부지확보 여부
  - 예정부지의 확보가능성 및 부지확보 추진내용
- 토지이용 가능성 여부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농지전용 허가 가능여부
  -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 III.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부문

- 취급물량 및 시설의 규모
  - 인근 유통권역의 농수산물 연간 수요량
  - 연간 취급품목별 계획물량 및 산출근거
  - 주요시설의 규모 및 운영계획
- 상품수집 및 분산계획
  - 산지 출하조직과 소비지 판매조직의 확보상황 및 향후 확보계획
- 정보전산화 구축계획
  - 산지 출하처 및 소비지 판매처와 물류센터간 정보전산화 구축 및 개발계획

[ 별지 제2호서식 ]

편의비용 (B/C) 분석

( 단위 : 백만원 )

		사업 년도	1 차 년도	2 차 년도	----- 9차년도 -----	합 계
비용 (C)	고정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간접비용 화재보험비 전산기기 소				
	가변비용	직접노무비 원료 건수 일 기 소				
합 계 (가)						
편의 (B)	현재가치	(가)	$가 \times 1+r$	$가 \times (1+r)^2$	$(가) \times (1+r)^9$	TC(총비용)
	수탁사업	선별포장 등 가공수조 저기 소				
	매취사업	가공및판매금액				
	합 계 (나)	(나)	$나 \times 1+r$	$나 \times (1+r)^2$	$(나) \times (1+r)^9$	TB(총편의)
B/C	나/가					TB/TC

## < 작성시 유의사항 >

###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임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건축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 (융자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 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 판매사업

- 가공 및 판매사업 인한 조수입액을 매년기재

###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  는 0.06으로 계산

### ○ 기 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 $B/C : \frac{TB}{TC}$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합계만 기재

## 인삼종합처리장설치(공공)

### 1. 목 적

- 생산자단체인 인삼조합의 인삼 저장, 가공, 판매시설 확충으로 인삼의 종합처리 능력을 제고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

### 2. 추진방향

- 규모 : 건평 560평, 저온시설 120평 내외
- 운영방식 : 관할 시·도, 시·군 인삼협동조합에서 운영

### 3. 장기 투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 2000년도까지 14개 전조합당 1개소씩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목 표	'96	'97	'98	'99	2000
사 업 량	14	2	4	4	2	2
사 업 비	29,400	4,200	8,400	8,400	4,200	4,200
- 국고보조	11,760	1,680	3,360	3,360	1,680	1,680
- 국고융자	5,880	840	1,680	1,680	840	840
- 지방비보조	5,880	840	1,680	1,680	840	840
- 자 담	5,880	840	1,680	1,680	840	840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재 원 별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계	개소 2	2,100	4,200	1,680	840	840	840
총 복	1		2,100	840	420	420	420
전 복	1		2,100	840	420	420	420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인삼류의 저장, 가공, 포장, 판매 및 생산능가 위탁사업

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 인삼협동조합 및 증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국고용자 20, 지방비보조 20, 자담 20%
- 용자조건 : 년이자율 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라. 사업신청

- 신청대상자 : 인삼협동조합 및 증양회
- 사업 신청 : 관할시·군, 시·도에 사업계획서(통합요령 별첨서식) 제출 → 시도  
→ 농림수산부
- 신청 절차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 총괄편 참조

마.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수량	금액	사업내역
합계		2,100	
○ 건물	560평	1,120	○ 건축비 560평×2,000천원
○ 저온시설		240	○ 평당시설비 2,000천원
○ 내부시설		168	○ 건물내부시설 설비비
○ 기계시설		486	○ 가공기계, 포장기계, 세척기, 건조기등
○ 기타		86	○ 운반차량, 지게차, 냉난방기, 온라인 터미널, 통신기기등

##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인삼협동조합)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별 작성보고 (계획대실적)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과(☎504-9421)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군 : 산업과 (협조기관 : 인삼협동조합)

# 인삼종합전시장설치(공공)

## 1. 목 적

-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국가적 특산물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인삼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 2. 장기 투자계획

- 없 음

## 3.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재 원 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충 남	개소 1	5,000	5,000	2,500	-	2,500	-

## 4. 사업추진계획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수
- 사업내용
  - 전시관 건립
    - 위 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지내리
    - 규 모 : 부지 3,000평 (연건평 1,000평, 3층)
    - 주요시설 : 전시관, 무역센터, 국제회의실, 판매장, 기타시설
- 총 사업비 : 5,000백만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5. 세부사업 내용

### ○ 전시관

**국내관** : 인삼의 역사등 인삼박물관 기능을 담당

- 인삼제품, 재배.제조과정, 인삼문헌, 인삼발전사등 기구 및 자료전시

**국제관** : 세계인삼 및 제품 비교전시 → 고려인삼의 우수성 입증

- 무역센터 : 해외정보(세계인삼 수출시장등), 무역상담
- 국제회의실(대회의실, 소회의실) : 회의, 세미나등 국제행사 개최
- 판매장 : 인삼 및 인삼제품 전시판매 및 홍보
- 기타시설 : 시음장, 주차시설, 부대시설등

## 6. 사업효과

- 유통의 중심지로서 세계 최대의 인삼시장 구축
  - 국제회의, 세미나, 무역상담등 인삼국제교류 활성화
- 세계인삼의 비교전시로 고려인삼의 우수성 확보 → 수출증대
- 고려인삼의 증주지로서 1,500년의 재배 역사성 부각

## 7.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인 금산군은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 책임자 : 충청남도 도지사

## 화훼공판장 건설 지원사업 (공공)

### 1. 목 적

- 화훼유통구조개선 및 유통시설현대화
- 공정거래 정착으로 농가소득증대

### 2. 추진방향

- 화훼 생산량 추이에 따라 대도시에 단계적으로 화훼공판장 건설확대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94년까지	'96	'97	'98	'99-2004
사 업 량	1	2	1	1	2
사 업 비	23,300	15,978	7,698	20,000	40,000
- 국고보조		6,391	3,079	8,000	16,000
- 지방비보조		-	-	4,000	8,000
- 국고융자		6,392	3,079	4,000	8,000
- 차 답	23,300	3,195	1,540	4,000	8,000

#### 나. '96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	재 원 별			
			국고보조 (40%)	지 방 비	국고융자 (40%)	자 답 (20%)
계		15,978	6,391	-	6,392	3,195
양재동 화훼 공판장	4,020평	7,698	3,079	-	3,080	1,539
임궁동 화훼 공판장	2,800평	8,280	3,312	-	3,312	1,656

-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2개년('96 - '97)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를 '96사업비에 반영

## 4. 사업계획

### 가. 사업대상자

- 양재동 화훼공판장(서울) : 농수산물유통공사장
- 엄궁동 화훼공판장(부산) : 농협중앙회장

### 나.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1) 사업내용

##### ○ 양재동 화훼공판장(서울)

- 경매시설 : 수탁장, 경매대기장, 경매장, 물류이동시설, 전자식경매 전산설비 등
- 부대시설 :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작업장, 전시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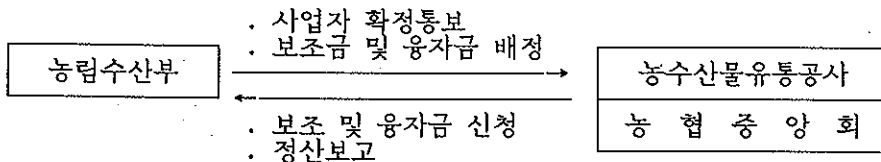
##### ○ 엄궁동 화훼공판장(부산)

- 경매시설 : 하치장, 경매장, 저온창고 등
- 부대시설 : 절화·분화·자재매장, 전시실, 사무실, 기계실, 편의시설 등

#### 2) 지원기준

- 지원기준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4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17년 상환

### 다. 사업추진체계



## 5. 사후관리

- 통합지침에 따름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매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6. 기타사항

- 본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과수화훼과 : 504-9425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579-8100
  - 농협중앙회 공판장 지원과 : 397-5114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 I. 농수산물 가공산업시설비지원

### 1. 목 적

- 가.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나. 수출하기 위해 원료농수산물의 수매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
- 전통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가. 사업목표 및 계획

- (1)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업을 하고자하는 농어민, 생산자단체와 산지일반 업체에 시설비, 포장개선비 및 원료구입자금 지원
- (2) 전국 시·군·읍면별, 주산지별로 지역특산물 및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우선으로 2004년까지 2,000개소의 가공공장 설치

### 나. '95실적 및 '96계획

(단위:개소, 억원)

구 분	연도별	'95 실적				'96계획 (예산)					
		사업량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자담	사업량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자담
○ 전통식품개발사업 ○ 산지일반가공사업 - 생산자 단체 - 일반 업체		98	209	105	63	41	114	304	152	91	61
		70	688	192	311	185	46	598	184	268	146
		37	408	192	115	101	24	378	184	114	80
		33	280	-	196	84	22	220	-	154	66
계		168	897	297	374	226	160	902	336	359	207

###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개소, 억원)

구 분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사업량		789	117	168	546	380	2,000
사업비	계	1,390	432	897	3,874	24,612	31,205
	국고보조	231	186	297	1,222	6,483	8,419
	국고용자	799	154	374	1,730	12,063	15,120
	자담	360	92	226	922	6,066	7,666

### 3. 지원대상

#### 가. 지원구분 : 전통식품개발사업과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지원

##### (1) 대 상

###### ○ 전통식품개발사업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전통식품(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4-55호로 지정한 품목)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 및 생산자단체
- 마을공동이란 농어가 5호 이상이 출자, 취업, 원료제공형태등으로 참여하고 운영은 공동운영 또는 단독운영 가능

- 기 지정된 특산단지 지정업체(식료품)는 전통식품업체에 포함지원

###### ※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지원

- 공동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에 준하여 지원
- 개인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일반"에 준하여 지원

###### ○ 산지일반가공사업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 사업자의 경영능력, 입지적여건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 가공사업에 대한 단순한 의지보다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 공장입지여건과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한 적정투자 및 구체적인 판매계획수립여부등

###### ※ 쌀가공식품시설지원 (농림수산부 식량관리과 소관) : 붙임참조

##### (2) 지 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중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규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법 제2조 제4항)

###### · 군의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은 전지역,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3) 품 목

- 전통식품개발사업 : 농림수산부장관이 전통식품으로 지정한 품목에 한함.
  - 국내산 농수산물로써 원료 조달이 용이한 품목
  -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며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할 수 있는 품목
  - 대규모 판매처, 지역단체, 기관등에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 원료 또는 제품의 보관, 수송이 용이한 품목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동일원료)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원료의 경합 및 판매전망등을 감안하여 추천
- ※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제조면허를 얻은 품목에 한정,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이후 동면허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우선 사업신청과 함께 면허증사본을 11월 30일 까지 제출하면 대상자로 인정

### (4) 기 타

- 당해 사업년도말까지 완료가능한 사업
- 협동조합은 군지부 및 도지회와 사전협의하여 반드시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시장,군수는 조합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수록된 의사록을 확인한후 도지사에 전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쳐 의사록 첨부하여 신청
- 마을공동체는 공동출자, 취업, 원료제공형태등으로 참여하고 공동운영 또는 단독경영도 가능
-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은 가구당 1인에 한하며 자체정관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추천
  - 특히 출자비율 확인(1인당 출자비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총출자비율 등)
- 보조사업의 경우 직계존·존비속 또는 부부간 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4. 사업별 지원기준

### 가. 지원기준

- 기준사업비이내인 경우 :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 : 기준사업비 지원한도액과 신청사업비의 20%인 자부담을 차감한 금액중 담보가능한 용자금지원 가능

	기준사업비	지원 기준			비 고
		보조	용자	자담	
전통식품 개발사업	마을공동 생산자단체 250 백만원	40	40	20	○ 농어가 5호이상, 건설비 자부담금액 이상 출자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가 5인 이상이며, 건설비 자부담금액 이상 출자
산지일반 가공사업	생산자단체	1,000	"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가 20인 이상이며, 건설비 자부담금액 이상 출자
	일반업체	-	-	70	30

※ 직계 존·비속 또는 부부간 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 > : 전통식품개발사업비가 300백만원인 경우 (산지일반생산자단체도 같은 요령임)

- 보조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의 40%인 100백만원
- 용자 : 300백만원(사업비) - 100백만원(보조) - 60백만원(자담) = 140백만원
- 자담 : 300백만원의 20%인 60백만원

### 나. 지원부분

- (1) 건물 및 시설 : 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
- (2) 가공기계류(대지, 차량은 제외)

### 다. 용자조건

- (1) 농어민, 생산자단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2) 일반업체 : 연리 8%, 3년거치 7년상환

### 라. 추가지원

- 용자지원으로 한정하되 사업규모의 확대, 상호보완적인 가공사업으로의 확장등에 추가지원 (부진업체 및 품목의 잦은 변경업체등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 배제)
- 추가지원업체의 용자지원액은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지원

마.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현지확인등 타당성 조사결과 시설투자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현실성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5. 참여자격요건

### 가. 시설부지확보

- (1)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2)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 나. 자부담능력

- (1) 마을공동,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마을공동 : 사업신청시 건설사업비 자부담금액이상 금융기관 예치 대표자명의 예치잔액증명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신청시 건설사업비 자부담금액이상이 표시된 출자증빙서류(등기부등본 및 조합원별 출자내역)와 법인명의 예금잔액증명서
- (2) 일반업체
  - 사업신청시 건설사업비 자부담금액이상을 금융기관예치
    - 사업신청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 다. 담보물

- (1) 본인(법인)소유 : 본인(법인)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 등본)
- (2) 타인소유 :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첨부)

### 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등록된 법인으로 다음서류 첨부

-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2)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 의사록(참석자명단포함), 이사회회의록 제외
- (3) 조합원명부
- (4) 출자금 증빙서류(조합원별 출자내역 및 예금잔액증명서)

## 6. 지원대상 예비후보자지정

- (1)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포기할 경우에 대비, 신속한 대체를 위하여 지원대상자 정수의 10%범위내에서 예비후보 지정(농림수산부장관)
  - 지정업체 사업포기시 순차적으로 승계(시·도지사가 조치하고 결과보고)
- (2) 예비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받아 농림수산부에서 지정

## 7. 지원대상업체 추천 및 선정

### 가. 지원대상자 지정신청 → 관할 시장·군수

- (1) 구비서류 □ 전통식품개발 : 별지 1호, 별지 4호 3부씩  
□ 산지일반가공 : 별지 1호, 별지 5호 3부씩
- (2) 제출기한 : 사업실시 전년도 1.15까지

### 나. 지원지정후보자 선정진달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1)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조서(별지 2호)농어촌지도소장 및 시장·군수 의견서등 첨부 지원대상자 추천
- (2) 제출시한 : 사업실시 전년도 2.15까지

### 다. 지원대상자 추천 :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 (1)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조서(별지 3호) 및 시·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원대상자 지정추천
- (2) 제출기한 : 사업실시 전년도 3.15까지

### 라. 농·수·축협중앙회장 : 회원조합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 (1) 부지확보등 사업착수 가능여부 검토
- (2) 자체자금 조달능력 여부
- (3) 제품개발내역 검토
- (4) 사업 타당성검토 (적정투자규모를 위한 사업규모축소 또는 확대)

※ 사업성이 낮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신청 포기토록 유도

### 마. 지원대상자 지정 및 통보 : 농림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1) 각도별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타당성검토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지정
- (2) 지원대상자 지정결과를 각시·도지사에 시달(시·도, 시·군에서는 대상사업자에 지체없이 통지)

### 3. 사업실시요령

#### 가.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2) 사업기간 : 사업년도 1. 1 - 12. 31
- (3)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4)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계획을 승인(제출일로 부터 45일 이내)
  -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아니한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것으로 본다.
- (5) 시장·군수는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실시
- (6) 전통식품(마을공동)의 경우 사업대표자는 자체정관작성 및 공동출자자 회의소집, 사업결의 실시

#### 나. 자금지원 절차

##### (1) 보조금

- 보조금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신 청 : 사업자 → 시장·군수경유 → 시·도지사
	결 정 : 시·도지사 → 사업자
- 보조금확정(정산) : 시·도지사가 정산을 실시한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융자금

- 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농협중앙회장(시·도지사에게 배정내역통보)
- 신청 및 지급 

[	신 청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결 정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자(군지부에서 지급)

## 9.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요령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여 보고

- 지원금액에 변동을 요하는 계획변경 : 장관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
- 품목변경 : 시·도지사 승인, 품목추가 또는 일부변경 : 신고(시장·군수)
- 품목추가 또는 일부변경 : 신고(시장·군수)
- 사업장변경 [ 시·군관내 : 시장·군수 승인  
시·군관외 : 시·도지사 승인
- 대표자변경 [ 마을공동, 생산자단체 : 신고(시장·군수)  
일반업체 : 시장·군수 승인
- 상호변경 및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

### 나. 행정사항

#### (1)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보고명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서식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실적	매월 익월 5일	시·도지사	농림수산부장관	별지6호
생산 및 판매실적	매반기 익월10일	"	"	"
보조금 정산실적	익년 1. 20	"	"	"

#### (2) 사업별로서업현황 및 관리카드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 상황일지를 작성 비치

#### (3) 시·도지사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하여야 함

#### (4) 수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

#### (5) 농림수산 사업평가 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 '95.7.6)에 의거 사업자는 가공공장 건설 및 가동상황을 성실히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 (6) 농수산물가공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운영지도, 사후관리, 자문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

## 10. 지원대상자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

나. 산지가공지원후보자 선정조서(별지 2호 서식)

다. 산지가공 지원대상자 추천조서(별지 3호 서식)

라. 사업계획서

(1) 전통식품개발사업 : 별지 4호서식

(2) 산지일반가공(별지 5호서식)

(3) 쌀가공식품 시설현대화(별지7호 서식)

마. 의견서(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수협장, 농·어촌지도소장, 식품관계전문가)

바. 공장예정지 관계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지적도(위치표시)

(4)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타인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사. 담보물 현황

(1) 등기부 등본

(2) 사용승락서(타인소유)

아. 예치금 확인서(잔액증명서,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예금잔액증명서)

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1) 정 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2) 총회 의사록(참석자명부 포함)

(3) 조합원 명부(조합원별 출자내역 및 지분율 기재)

차. 기타 참고자료

※ 위 순서에 의해 편철

## 보 조 조 건(예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난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한 계산서를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가공시설은 10년이상 지원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조금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가공공장 운영기간을 감안한 보조금액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6. 교부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가공산업육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7.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II. 포장개선 사업 지원

### 1. 지원목적

- 농수산 가공제품의 낙후된 포장개선 (디자인 및 용기)을 통한 상품성제고
- 수출상품의 포장개선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

### 2. 지원방향

- 전통식품등 농수산가공식품의 포장디자인 개발부문(용기포함)에 지원
- 수출용 포장개선(용기포함) 지원

### 3. 지원대상 및 기준

####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 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산지일반 가공사업 지원업체중 생산자단체
- 특산단지 지정업체 (식품)
- 민속주 생산업체 (민속주명인)
- 수출업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포함)

#### 나. 지원기준

- 포장디자인 개발
  - 업체당 2회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제품의 개발로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수출용은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 포장용기 구입
  - 업체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른 포장재가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에 따른 포장재가 필요한 경우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다.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소당사업비 (지원한도)	재 원 별			
		계 (100%)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수 출 업 체	50	50	25	15	10
기 타 업 체	30	30	15	9	6

※ 기타업체 (전통, 산지, 특산, 민속주 명인등)

라. '95실적 및 '96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95					'96				
	사업량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량	계	보조	융자	자담
포장개선 (디자인맞용기)	80	2400	1200	720	480	400	7855	3927	2357	1571

마.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98	'99~2004	계	
사 업 량	232	80	400	800	2,400	3,912	
사업비	계	4,846	2,400	7,855	24,000	240,000	279,101
	보 조	2,423	1,200	3,927	12,000	120,000	139,550
	융 자	1,260	720	2,357	7,200	72,000	83,537
	자 담	1,163	480	1,571	4,800	48,000	56,014



## 4. 사업자선정

### 가. 업체별 자금 수요파악

- 시·도지사는 사업년도초 업체별, 용도별로 자금수요 파악한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본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업체별 자금수요조사시 전체사업비에서 디자인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수출업체중 국제식품박람회참가업체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진흥부)와 추천하여 파악하되 수출용은 별도 구분하여 제출
- 농림수산부장관은 당해 사업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각도별로 사업비를 조정, 지원 계획 확정시달

### 나. 사업자선정

- 시·도지사는 시달된 지원계획에 의거 당초 자금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 5. 사업실시요령

### 가.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 군수)
- (2) 사업기간 : 1. 1 - 12. 31

### 나. 포장디자인개발의뢰기관

- (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농림수산정보센터(포장연구소)
- (2)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 (3)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으로 부터 각대학 산업디자인과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 (4) 단,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경우 현지업체도 가능

다. 세부사업 실시요령

- (1)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장디자인 개발의뢰기관 또는 업체와 협의하여 디자인개발 계약 체결하는등 사업실시
  - 포장디자인개발시에는 제품의 특성, 소비계층 및 기호도, 타사 유사제품의 디자인, 용기형태등에 대하여 개발기관 또는 업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후 사업 착수
  - 포장용기 구입시 포장디자인을 고려 적합한 형태의 용기 또는 포장재 구입
- (2) 수출용의 경우 현지의 기호도등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시·도지사의 협의·승인을 거친다음 사업실시
- (3) 사업대상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 하는 사례(디자인개발 보다는 용기구입)가 없도록 유의

라. 자금지원

(1) 보조금지급

- 보조금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보조금 신청 및 결정 

{	신 청 : 사업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결 정 : 시·도지사 · 사업자
- 보조금확정(정산) : 시·도지사가 보조금을 정산한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2) 융자금지급

- 재 원 : 농특회계
- 지원 조건 : 년리 5%, 1년거치 4년상환
- 융자금 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농협중앙회장
- 용 자 요 령 : 가공산업육성 지원요령에 준함.

## 6.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의거 년내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감독 철저
- (2)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시행  
(자체사업비중 포장디자인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50% 미만인 되지 않도록 유의)
- (3)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
-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 조건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나. 행정사항

-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본 지침에서 정하는 디자인개발기관 또는 업체와 디자인개발 계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확인(본 지침에서 정하는 업체이외 다른업체와 계약시 재계약 토록 지도)
- (2) 시·도지사는 업체별 사업비 정산시 포장디자인개발 및 용기구입 사실을 철저히 확인(필요시 사진 및 증빙서 비치) 하되, 지원자금이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사업계획을 위배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될 시 지원자금 회수등 필요조치
- (3)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용자금을 미대출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4)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 가공산업 육성 요령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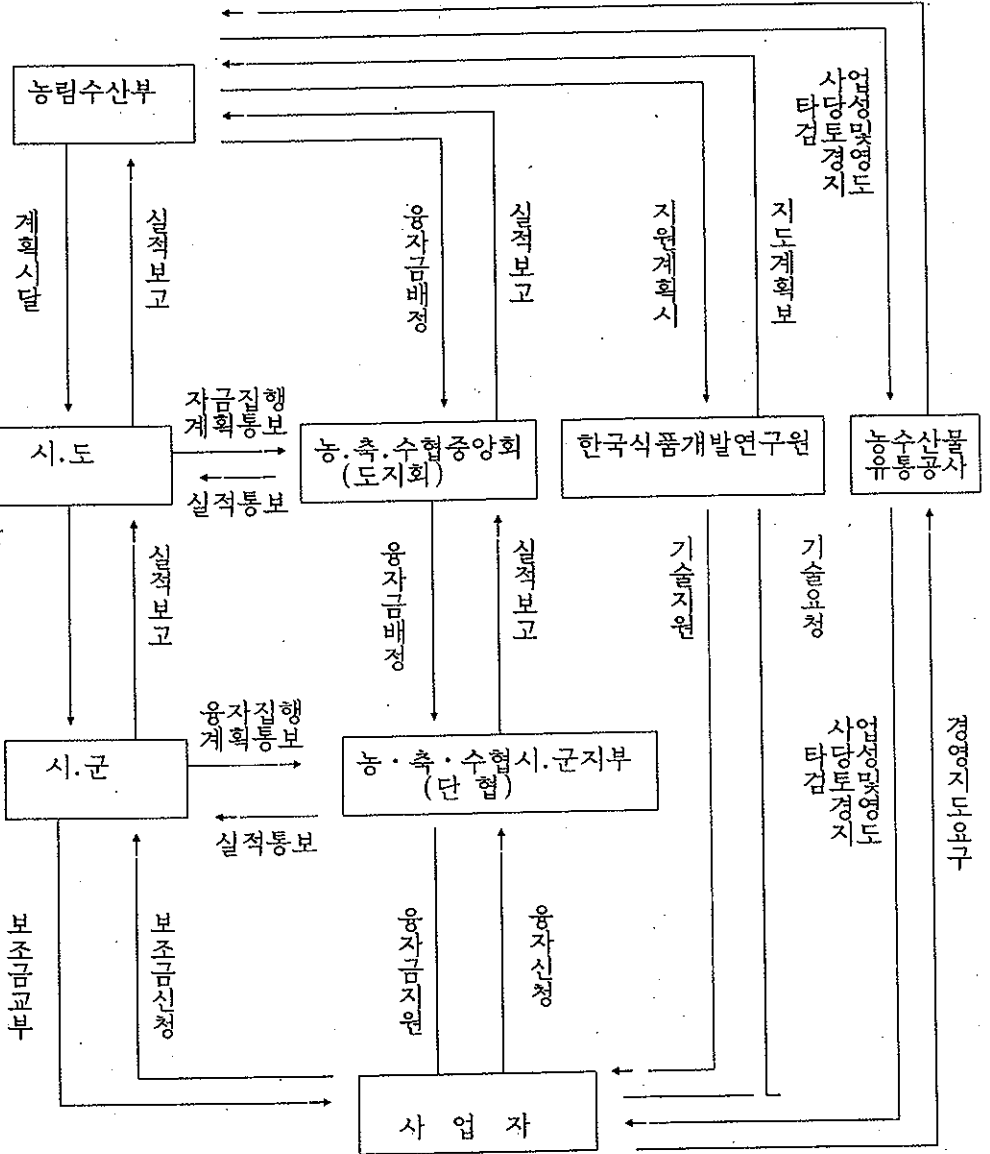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추진체계도

사업타당서검토및경영지도 실적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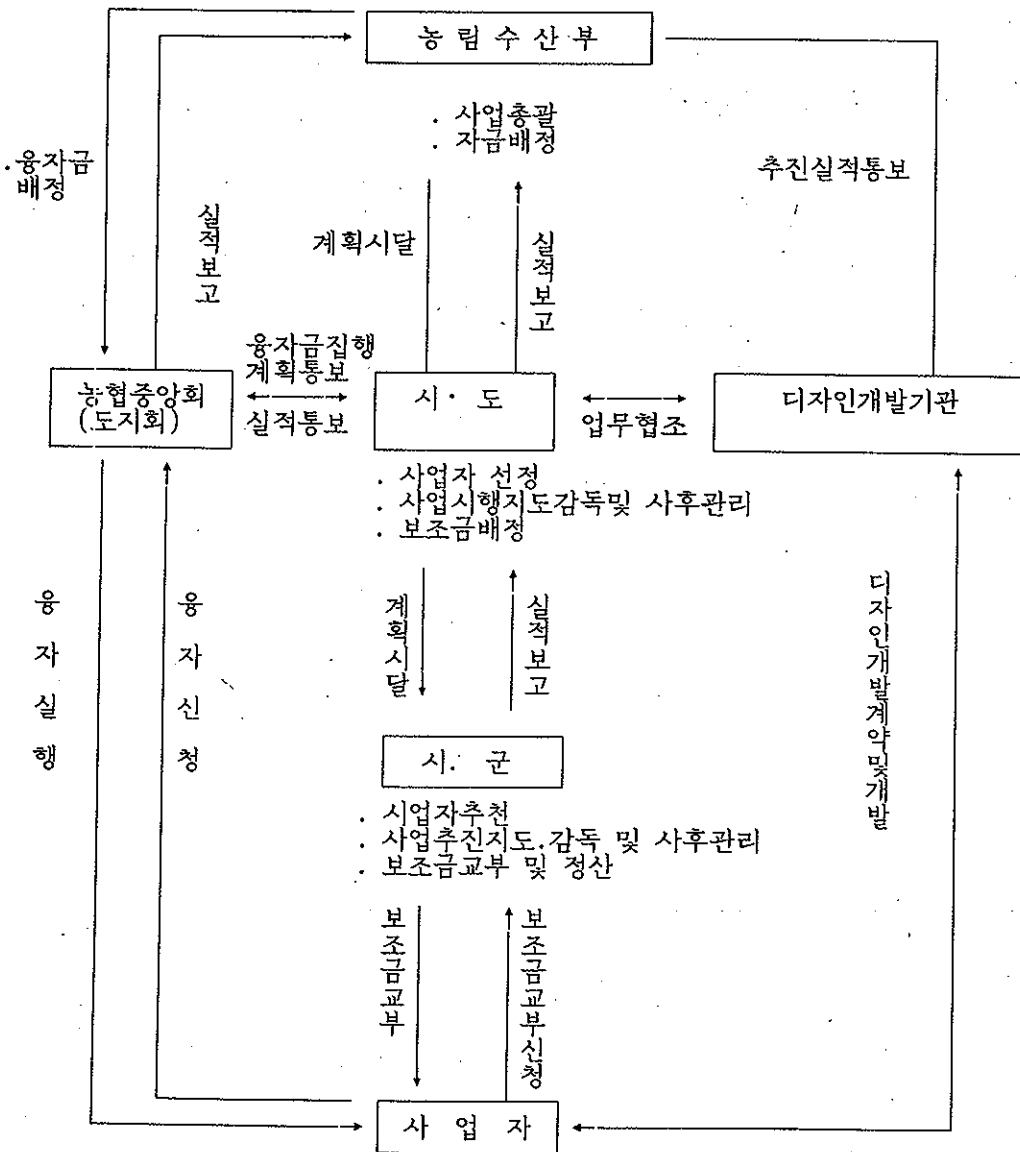
- 사업계획수립
- 사업자지정
- 사업추진
- 보조금배정

- 사업추진도
- 사업시행지시
- 사업감리및관리
- 사업계획및교부
- 보조금정산

- 사업자선정조사
- 사업시행지도
- 사업추진지후관리
- 사업감리및관리



# 포장개선사업 추진체계도



### Ⅲ. 신청서식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별지1호)
- 산지가공지원후보자 선정조서 (별지2호)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추천조서 (별지3호)
- 전통식품개발사업계획서 (별지4호)
  - 의견서(시·도지사, 시장·군수) (별지4-1)
  - 의견서(농촌지도소장) (별지4-2)
  - 의견서(농협군지부장) (별지4-3)
- 산지일반가공사업계획서 (별지5호)
  - 의견서(연구기관 또는 식품가공학전공교수) (별지5-1)

※ 도지사 및 농협군지부장의견서는 별지4-1 및 별지 4-3서식 활용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월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소									
신청자	사업명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구분주1』	계		정부보조	정부용자	자부담			
		기존사업비								
		초과비용			-					
		총사업비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농수산물가공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span>신청자</span> <span>년 월 일</span> </div>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농림수산부장관 시. 도 지 사 귀하 시장 · 군 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 주1』 · 기존사업비 : 정부보조, 정부용자, 자부담은 각각 기존사업비의 40%, 40%, 20%를 기재

- 초과비용(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정부보조 : 없음
- 정부용자 : 초과비용중 자부담(초과비용의 20%)을 제외한 금액
- 자부담 : 초과비용의 20%

【 별지 제2호 서식 】

산지가공지원후보자 선정조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 예정지					
구 분	항 목	양 호	보 통	미 흡	부적합
자 격 요 건	1 대표자의 지도력				
	2 구 성 원				
공 장 입 지	3 인·허가요건				
	4 기존사업자외의 경합성				
	5 원료권 형성				
	6 주변환경				
사 업 계 획	7 시설계획				
	8 생산계획				
	9 원료조달계획				
	10 자금조달계획				
	11 판매계획				
신 용 상 태	12 부 채				
	13 자기자본 확보				
	14 담보물 보유				
사 업 전 망	15 국내시장 경쟁력				
	16 해외시장 경쟁력				
총 합 평 가				우선순위	
구비서류 : 1.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전문가 의견서 1부.					

27273-04411 인  
'93.8.31.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추천조서

(단위 : 백만원)

순위	사업제명	공장 예정지	대표자	사업명	가종 품목	주원료	사업 형태	구성원	시설규모			자금조달계획						
									부지 (㎡)	건물 (㎡)	신비 (㎡)	구분	계	정부 보조	정부 용자	금융 기관 차입	자 부 담	
1									기준									
									초과	-								
									계									
2									기준									
									초과	-								
									계									
...																		
...																		
...																		
계									기준									
									초과	-								
									계									

【 별지 제4호 서식 】

## 전통식품개발사업계획서

업체명 :

소재지 :

대표 :

품목 :

전화번호 :

※ 사업대상

- 마을공동
- 20호미만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 이하인 농협등 생산자단체,  
영농회사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의 필요성

○ 기대효과

# 2. 사업주체

가. 개요

사업명 (품목)				사업구분	창설·증설
소재지					
사업규모	부지: 평,	건물: 평	시설자금소요액	/ 백만원	
공동참여농어가수	명	출자총액	백만원, 1인당 평균		만원

※ 공동참여자의 출자내역이 명시된 연명날인 증빙서 첨부

나. 대표자 현황

성·명		년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기재			전화번호	지역 번호도 포함
주요경력	기간	내용		재산현황(백만원)	
				계	
지역내 현직책				동산	
				부동산	
				기타	

### 3. 세부사업 계획

#### 가. 재원조달 계획 (가공공장건설사업)

항 목	규모(평)	단가(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담	
부 지(자담)							
시설자금	건	소 계					
		작업장					
		창고등					
	기계 및 설비	소 계					
	합 계						

※ 건물, 작업장, 저온창고, 일반창고 등으로 세분화

※ 기계및설비:가공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오페수처리시설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야 사업대상자로 지정이 가능함.

※ 시설자금의 합계란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별지 1호서식)의 재원조달증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 나. 원료조달 계획

년 도 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 소요액 백만원	비 고

※ 원료수매자금조달방안(구체적으로) :

다.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제품명	규격	단가	생산 및 판매물량				판매방법 및 판매처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kg	천원	톤	백만원				
계								

※ 판매회사명칭과 물량을 기재(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계약서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선정 가능함

라. 공동참여 능가현황

성명	주소	참여형태	소요경지 면적(평)	제품원료 생산량		비고
		출자액 (만원)		원료(톤)	금액(만원)	
계						

마. 수출, 판매실적

구분 년도	품목	물량	금액	주수출국	비고
수출			千\$		
판매			백만원		

※ 추가지원 요구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되 신규 업체도 실적이 있으면 기재

※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첨부

바. 금융기관 차입내역 (사업계획 신청일 이전)

거래은행	차입 금액 (백만원)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백만원)	비 고
계						

사. 사업부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 고
계						

아. 담보물 현황 (미담보 상태인 담보물만 기재)

소유자	종 류	추정가격(백만원)	위 치	비 고
계				

( 별지 4-1 )

## 의견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 의견 )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여부, 타규정 저촉여부등은 필히 개선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개선
- 시장, 군수와 시.도지사 의견서를 업체별로 각각 별도작성

19 . . . . .

시.도지사(시장,군수)

직인

( 별지 4-2 )

# 의견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 의견 )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생산, 조달가능, 품질 및 농어가 소득기여도 등

19 . . . . .

군농(어)촌지도소장          직인



( 별지 4-3 )

## 의 견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 의견 )

- 자기자본 및 수매자금 조달능력과 구성원의 신용상태 조사
- 담보물에 대한 용자가능액 검토·개선
- 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19 . . . . .

농협 \_\_\_\_\_ 군 지부장 직인

【 별지 제5호 서식 】

## 산지일반가공사업계획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품 목 :

전화 번호 :

※ 사업대상

- 기존사업비 250백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은 20호이상)
- 용자지원받는 일반업체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가. 사업의 필요성

1) 입지조건

2) 타당성

3) 기타

## 나. 기대효과

1) 농가소득증대 측면

2) 지방부존자원 활용측면

3) 고용효과

4) 향후전망

5) 기 타

## 2. 사업주체

###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 기계류 점	사업구분 창업, 증설
시설자금 총소요액	백만원		시설자금 지원요청액 (보조 : 용자 : ) 백만원

※ 보조는 생산자단체에 한함.

###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지역내 현직책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별첨

### 다. 영농법인체 현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 인 명		등기년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 농어민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       억원 ( 농어민       , 비농업인       )		
사업실적			

### 3. 제품개발 내역(계획)

품 목	원 료 명
○ 제품개발내역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조달 :</li> <li>- 제조가공방법 :</li> <li>- 제품특징 및 내용 :</li> </ul>	
○ 연구용역상황(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 약 일 :</li> <li>- 계약원료일 :</li> <li>- 계약 기관 :</li> <li>- 계약 내용 :</li> <li>- 비 용 :</li> </ul>	

※ 있을경우 기재

#### 4. 건설계획

#####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모	대지	평	기계류 : 중, 점	
	건물			
입지조건	원료구입, 판로, 고용조건 등을 기재			
용수	사용량 기재(월)			
전력	사용량 기재(월)			
도로				
통신				
기타				
공사	착공예정일		준 예 정 일	

나. 주요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대 지 (자부담)					
2. 건 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3. 구축물					
가.					
나.					
다.					
4. 가공기계					
5. 공기구비품					
6. 차량운반구(자부담)					
7. 전기공사					
8. 설계비					
계					

다. 주요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 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입처

라. 사업부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 (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 고
계						



##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모 (평)	단가 (천원)	소요 자금 (백만원)							
			계	업 체 부 담			정 부 지 원 요 청			
				계	자기 부담	외부 차입	계	보조	융자	
부지매입 (자담)										
시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건물 - 기 타									
	구축물 - 용수시설 - 시배전 시설 - 오.폐수 시설 - 기 타									
	가공기계									
시설자금 합계										
총 계										

※ 저온창고는 100평 기준으로 평당 250만원기준

※ 시설자금 합계란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별지1호서식)의 재원조달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기자금 외부차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 요청액은 제외

다. 금융기관 차입내역

(단위: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차입조건	상환일	상환잔액
계						

※ 차입조건 : 년리 % 기재

라. 담보물 현황

(단위:백만원)

소 유 자	종 류	추정가격	소 재 지	비 고
계				

## 6. 원료조달 계획

년 도 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 가	생산 능력		생산 계획		판매 계획			비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천원/ kg	톤							
2차년도										
3차년도										

## 8. 판매계획

제품명	수량	금액	판매처	비고

※ 판매회사별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계약서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 9. 수출·판매실적

구분 년도	품목	물량	금액	주수출국	비고
수출					
판매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실적 있으면 기재

( 별지 5-1 )

# 의견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 의견 )

사업전망 지역특성상 적합여부등 검토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명    직위    성명    기록)

# < 준공전 안내문 >

1.2m

0.8m

본 가공공장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임.

- 사업명 :
- 위 치 :
- 사업비 :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 ○ ○

※ 사업장의 입간판 형태로 설치하되 크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

( ) 사업추진및자금집행실적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계획			사업수진실적						정착주권 여부 (부천시 사무)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공사추진(원인)								
			매지 면적 (㎡)	건축 면적 (㎡)	기계류 집	계	보조 금	용지 비	지면 비	계	보조 금		용지 비	지면 비	부지 확보	승인 일지	착공일	공정 이행	

주) 1) 적용식별사업, 산지임민가량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표시  
 주) 2) 사업량 : 평 과 ㎡ 평행표기  
 주) 3) 면적시 R4원지 원은 좌상

( ) 사업 정산실적보고

(단위: 천원)

사업자명 (조합명 대표자명)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양(규모)						사업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F/E)	차이 도이 원액 (E-F)	불용 액 (E-F)		
			대지 (㎡)	평 (㎡)	건 (㎡)	대지 (㎡)	평 (㎡)	건 (㎡)	C/A	D/B	계	비율 (E)	계	비율 (F)					

주1) 자본실증계법사업, 산지임대차등사업으로 구분하여 비치작성  
 주2) 차년도 이원된 불용액이 있을 경우 민생내역 및 사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 민포첨부  
 주3) 반드시 R4용지 필름은 작성



# 생산 · 판매 실적보고

(1998. . . . . 월제)

사업자명 (조합 및 대표자명)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생산 능력  톤/일( )/일)	생산 및 판매 현황			비고 (문제점 및 부진사유)				
				생산		판매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톤( )/년				배달원				

- 주 1) 전통적유계발사업, 목산단지, 신지임민기공산업으로 구분하여 실적작성
- 주 2) 보고일 현재 : 말기면(6.30, 12.31)기준
- 주 3) 생산판매 실적은 반기 누계실적 표기, 당반기 실적은 ( )내시 표기

# 포장개선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원천)

사업제명 (소재지)	생산품목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다저인개발			용 기 구 입			사 업 비			다저인개발			금 액 구 입			사 업 비			
		포장 방법	진수	소요 금액	포장 방법	진수	소요 금액	총소 요액	총소 요액	용자 비	다저인개발	다저인개발	다저인개발	수령 금액	수령 금액	수령 금액	용자 비	용자 비	용자 비	

## 포장개선사업정산실적보고

(단위 : 천원)

사업제명 (소제지)	생산품목	사업계회										비율 (B/A)	보조금내역						
		디자인개발			용기구입			사업비					계	보조 (B)	용자	자담	디자인	용기	
		포장 방법	진수	소요 금액	진수	포장 방법	진수	소요 금액	종신요 금액	보조 (A)	용자								자담
																			%

## IV. 쌀가공식품시설지원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쌀가공식품 업체의 경쟁력 제고
- 우수 쌀가공식품 보급으로 국민식생활 개선

#### 나. 추진방향

- 기존 업체와 창업체에 시설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쌀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

#### 다. 사업계획

○ '95실적 및 '96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95					'96계획(예산)				
	사업량	계	국고	용자	자담	사업량	계	국고	용자	자담
쌀가공식품업체	6	60	-	42	18	5	50	-	35	15

○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94까지	'95	'96	'97-'98	'99-2004	계
사업량	33	6	5	10	30	84
사업비	347.27	60	50	100	300	857.27
용자	243.09	42	35	70	210	600.09
자담	104.18	18	15	30	90	257.18

## 2. 시설자금지원

### 가.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신제품 개발을 추천 받은업체
  - 쌀을 사용한 전통 민속주(민속주 지정)를 생산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업체
- 지원범위
  - 시설현대화 및 창업지원(건축, 토목, 구축물, 기계설비 등)
  - . 토지매입, 운영자금등은 제외
- 지원한도 및 용자조건
  - 지원한도 : 총 소요자금(토지매입비, 운영자금은 제외)의 70% 이내
  - 조 건 : 연리 8%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나. 지원 신청 및 추천

- 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4부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이하 군수라 함)에게 신청
- 군수는 공장설치 예정부지를 현지답사하고 사업계획이 본 지침의 추천기준에 적합하는가를 판단한 후 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 3부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가 본 지침의 추천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추천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 2부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다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장관은 도지사가 추천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수, 자금, 업종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조정한 후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장 (이하 원장이라 함)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타당성을 검토의뢰
- 원장은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 장관은 원장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확정

## 라 지원대상자 추천기준(도 및 군)

### (1) 시설부지확보

- 사업대상자가 복수 가공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3,300m<sup>2</sup>이상, 단일품목일 경우에는 2,000m<sup>2</sup>이상의 시설부지를 확보할것
- 부지가 각종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거나 사업착수전 그 저촉사항이 해지될 수 있는 부지일것
- 신청일까지 당해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필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2) 입지조건

- 도로·용수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
  -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 2km이내이고 공장진입로 폭이 4m이상일것
- 현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
- 농촌지역 우선

### (3) 원료사용

- 쌀을 주원료로 가공제품(쌀가공제품)을 생산할것
  - 쌀의 사용량이 많고 제품에 대한 쌀의 비율이 타원료보다 높을 것
- [ 쌀가공제품만을 생산할 경우 ]
  - 단일품목만 생산할 경우 쌀을 월 20톤이상, 복합품목을 생산할 경우 월 40톤 이상 사용할 것.
- [ 쌀가공제품 및 그이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
  - 쌀가공제품이 전체생산량중 70%이상을 차지할 것. 단, 쌀소비량이 월 400톤 이상인 업체는 70%미만인 경우도 가능

### (4) 제품사항

- 신개발제품 우선(특허취득, 민속주지정등)
- 유통기간이 장기간인 품목을 우선
-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우선
- 자동화비율이 높은 생산업체우선(자동화비율 30%이하 제외)

(5) 유통사항

- 고정판매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그것이 가능한 업체우선(납품실적, 계약서등 입증)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단체급식소의 확인(재래시장일 경우 상호.대표자명기)

(6) 자기부담능력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운영자금은 제외)중 자기부담능력이 30%이상인 업체
  - 자기부담액중 30%이상을 사업신청시 능협에 예치하여야 함(예치증명첨부)
- 담보물이 확보된 업체
  - 자기소유의 담보물 우선(등기부등본 첨부 및 기 담보여부 확인)
  - 제3자의 재산일경우 인감증명, 사용승락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기 담보여부 확인)

## 마.기관별 추진업무

- < 농림수산부 > - 기본계획수립
  - 대상자선정 및 자금배정
  - 지원업체 지도 관리
- < 도 > - 대상자 추천
  - 자금지원업체 지도·관리
- < 군 > - 농어촌발전계획에 쌀가공산업 육성계획 반영
  - 대상자 현지조사 및 적격대상자 추천
  - 지원업체 지도·관리(월1회)
-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 -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사업진척도 확인
  - 생산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 < 농 협 > - 용자금 대출 및 채권 확보
  -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

### 3. 행정사항 및 사후관리요령

#### 가 행정사항

- 군수는 쌀가공식품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군에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쌀가공식품 산업 육성계획을 포함 관리하여야 한다.
- 군수는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공사추진 사항을 매월 1회씩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사항을 종합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매분기 1회씩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익월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장은 사업타당성및 성능검사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개월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자금집행을 위한 사업진척도 확인요청을 원장에게 하여야 하며, 원장은 업체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현장 확인후 사업진척도확인서를 업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사후관리요령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시행할 수 있다
  - 대표자 및 상호변경은 농림수산부 장관 승인없이 변경 불가
  - 자부담액을 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운영자금제외)의 30%이하 투입시 자금환수
- 지원받은 업체는 장관에게 매월 자금집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준공후에는 공사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지원받은 업체는 준공전후에 정부지원 사업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첨 제4호의 예에 의거 부착하여야 한다.
- 지원받은 업체는 시설가동후 분기별 쌀소비량, 제품생산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수보기관	보고기한	비고
○ 공사추진사항(매월)	군 수 도지사	도지사 장관	익월 5일 익월 10일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	원장	"	1개월이내	
○ 완공된 기계 및 설비의 성능검사	"	"	"	
○ 월별 자금집행계획서	지원업체	"	전월10일	
○ 공사완료보고서	"	"	준공검사후 10일이내	
○ 사업운영 실적보고	"	"	분기 익월 10일	

( 별첨 제7호서식 )

## 쌀가공식품 사업계획서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가. 사업의 필요성

- 1) 입지조건
- 2) 타 탕 성
- 3) 기 타

##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방안
- 2) 쌀 소비확대 효과
- 3) 지방 부존자원 활용방안
- 4) 고용 효과
- 5) 향 후 전 망
- 6) 기 타(전통식품 개발보급, 국민식생활개선 등)

# 2. 사업주체

##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 평	기계류 점(건)
총소요액		백만원	자원요청액 백만원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지역내 현직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다. 쌀제품 생산실적(최근 3개년)

(단위 :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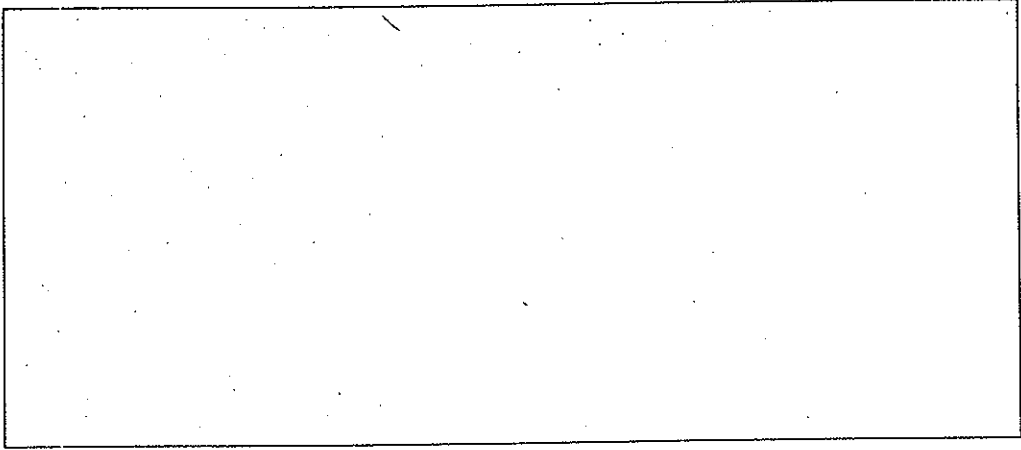
구분 연도	제품명	제품구성비(%)		월간능력		연간실적		
		쌀	기타	쌀 소요량	제품 생산량	정부미 구입량	연간 사용량	제품 판매량

### 3. 건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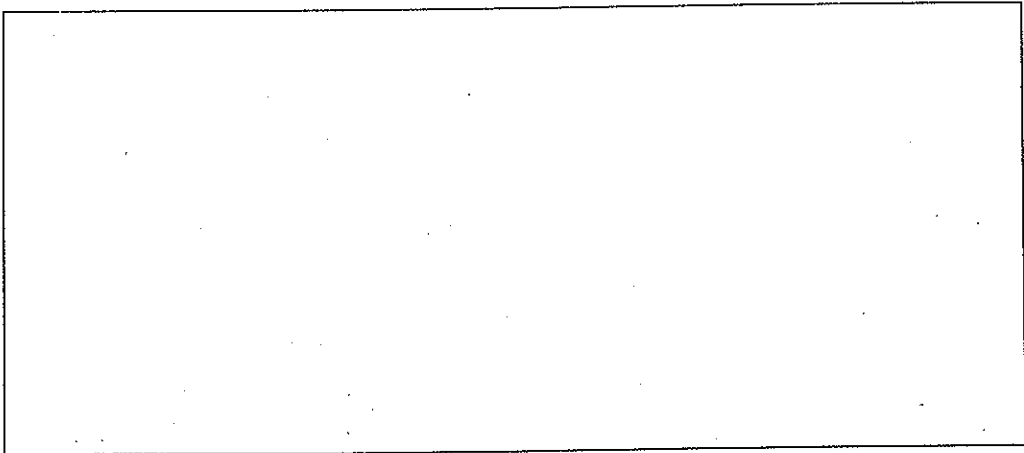
####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모	대지	평	기계류 :	
	건물	평		
입지조건	원료구입, 판로, 고용조건 등 기재			
용수	사용량 기재(월)			
전력	사용량 기재(월)			
도로				
기타				
공사	착공		준공	
	예정일		예정일	

나. 공장 및 시설배치계획



다. 제품별 생산공정도(자동화비율 %)



라. 주요 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대 지					
2. 건 물					
가. 사무실					
나. 수위실					
다. 작업장					
라. 저장고					
마. 숙직실					
바. 일반창고					
사. 기 타					
3. 구 축 물					
가. 용수시설					
나. 수배전시설					
다. 기 타					
4. 가 공 기 계					
5. 공기구비품					
6. 차량운반구					
7. 전 기 공 사					
8. 설 계 비					
계					

마. 주요 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계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구입비
합 계					



####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모 (평)	단가 (천원)	소요자금 (백만원)					비고	
			합 계 (1)+(2)	업체부담			정지자 (2)		부원금
				소계 (1)	자기 자금	외부 차입			
부지매입자금 (자담)									
시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창 고 - 구축물 -								
	소 계								
	기계및설비 - -								
	소 계								
운전자금 자담	원재료비 인 건 비 제 경 비								
	소 계								
총 계									

※ 정부지원자금은 시설자금 소요액의 70%이내 이어야 하며, 부지매입 및 운전자금은 자담으로 총당

나.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기자금 외부차입				

※ 외부차입 : 정부지원자금은 제외

다. 외부차입 세부내역

차입기관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차입조건	상환일	상환잔액
계						

※ 차입조건 : 년리 %기재

라. 담보물현황

소유자	종 류	추정가격 백만원	소 재 지	비 고
계				

※ 비고란에는 기담보여부 기재

### 5.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6.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 가 (천원)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7. 판매방법 및 판매처

(단위 : 백만원)

판매경로				
제품명	수 량	금 액	판매처	판매실적

※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시 관련자료 별첨

## 8. 고용계획

구 분	계	사무직	생 산 직			비고
			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동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기술자는 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공계 졸업자 이상  
 기능공은 기능사보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공고졸업자 이상

## 9. 제품별 쌀 소요량(추정)

(단위 : M/T)

생산제품명	제품구성비(%)		일간능력		연도별 쌀소요량(1)					
	쌀	기타	쌀 소요량	제 생 산 량	계					

※ 주 : 1) 공사준공후 3개년간 쌀소요량 기재

# 10. 사업추진 일정계획

	년											
	1/4분기			2/4			3/4			4/4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승인												
○ 실시설계												
○ 공장신축												
○ 부대공사												
○ 부대건물												
- 기숙사												
- 사무실												
- 창고												
- 전시장												
- 수위실												
- 식당												
- 기타												
○ 기계시설												
○ 공해방지설												
○ 수배전설												
○ 용수시설												
○ 공사완료												
○ 입주												
○ 가동												

※ 추진기간을 (↔)으로 표시

# 각 서

본 사업계획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으며,  
차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시된 사업목표를  
소정기간( . . . ~ . . . )내에  
수행하지 못할때는 당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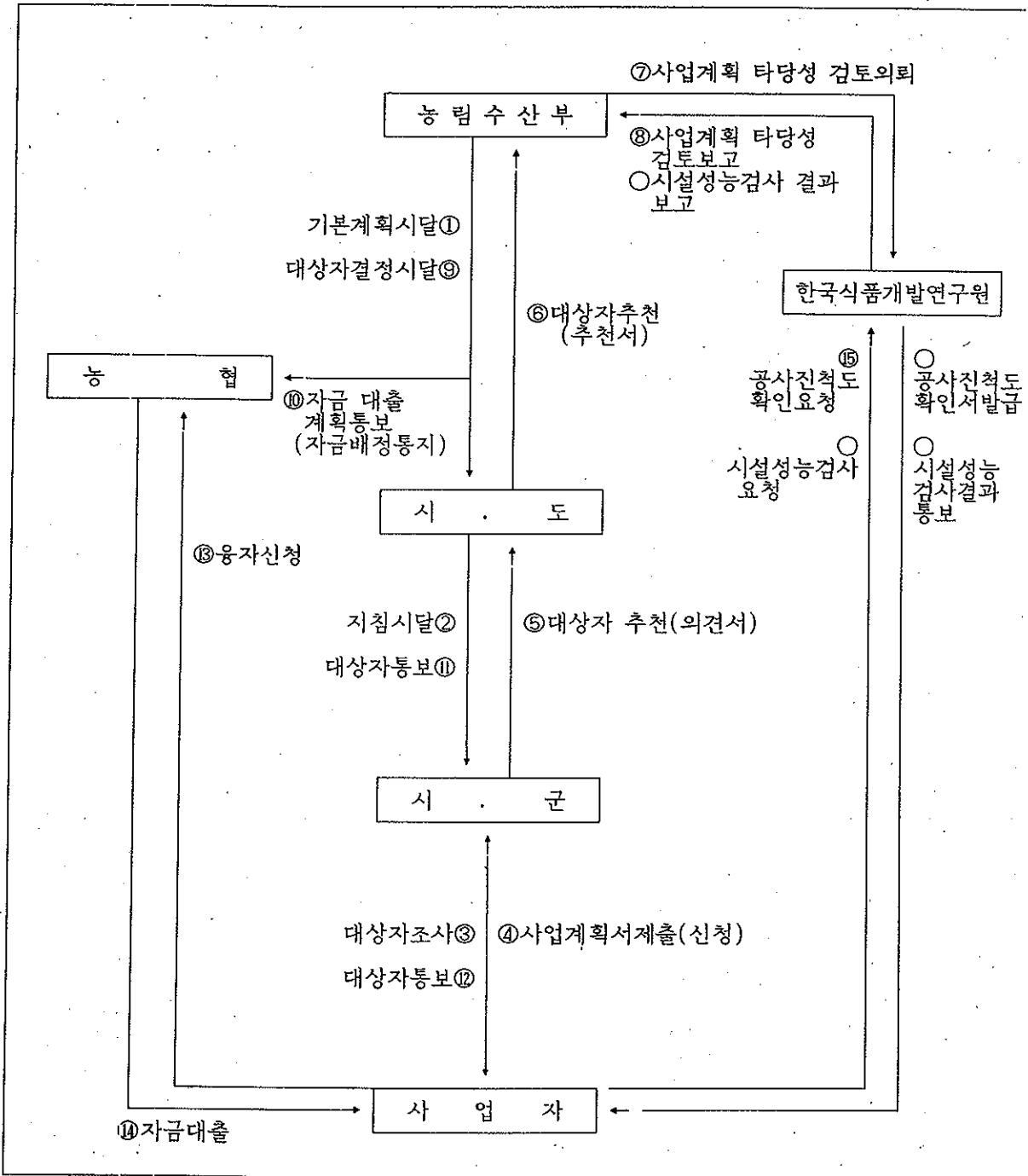
19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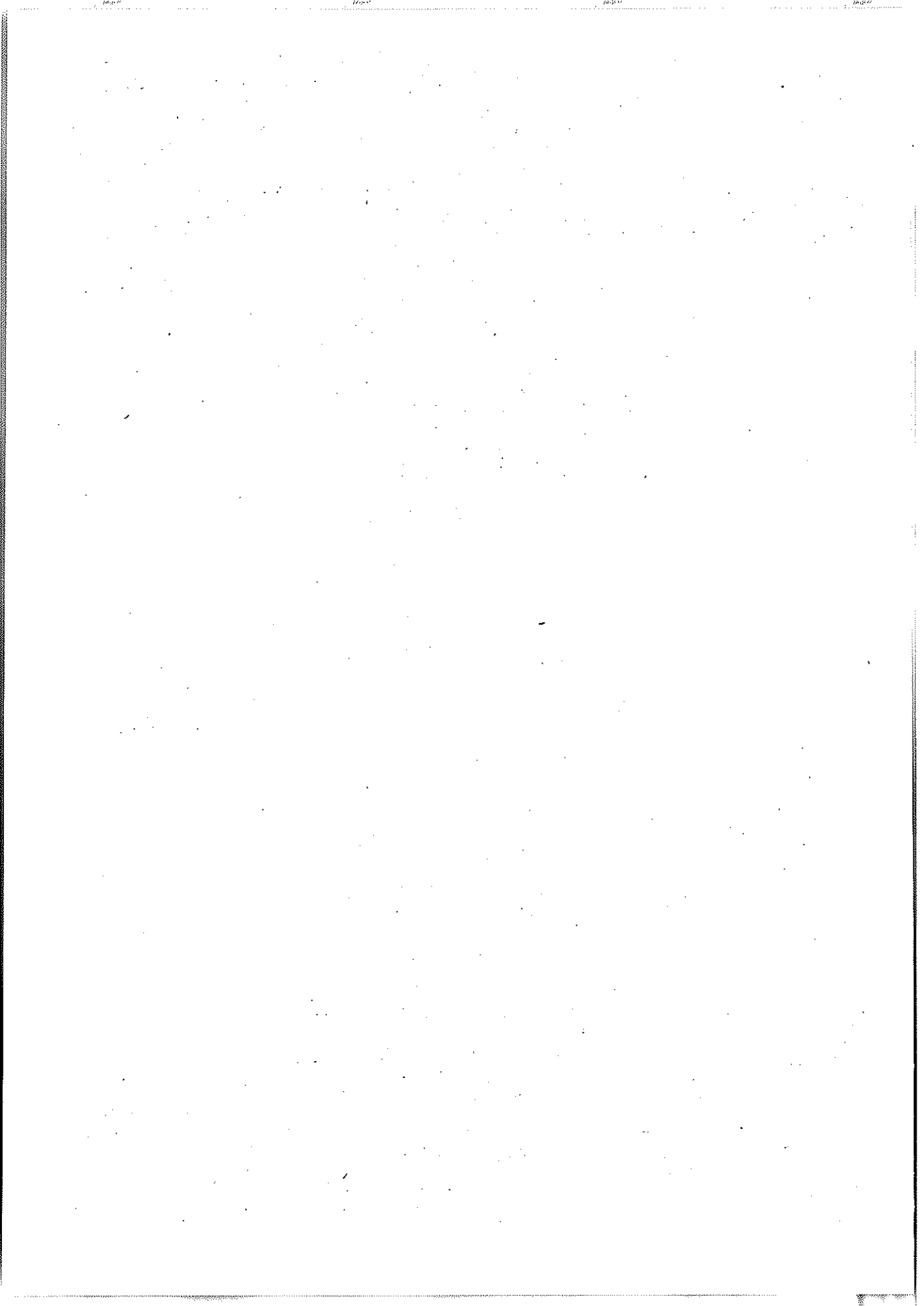


## 4. 축산물생산·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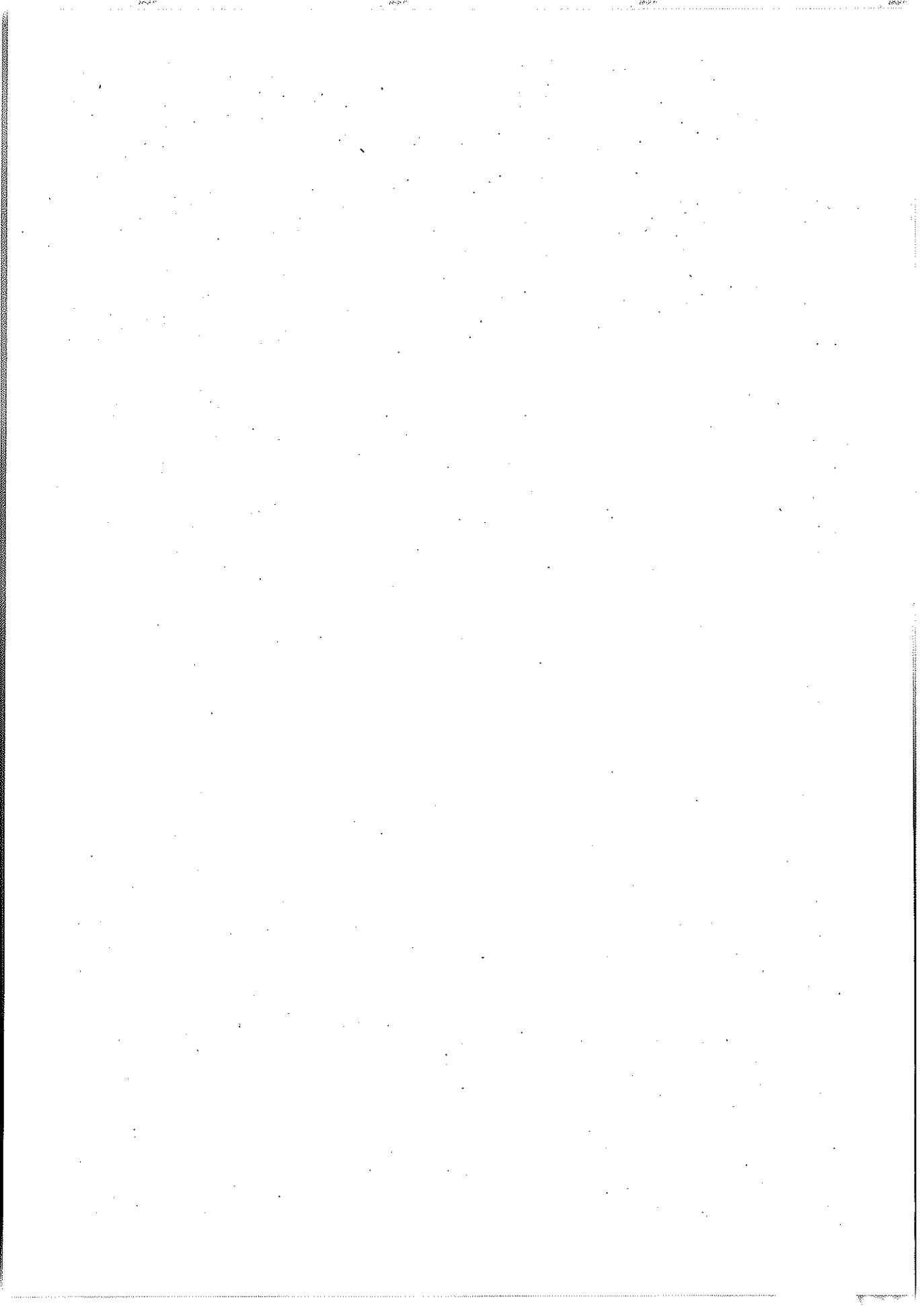
가. 사육기반조성

나. 축산물수급 및 유통





## 가. 사육기반 조성



# 한우경쟁력제고사업(자율)

## 1. 목 적

- 2001년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송아지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번식사업 집중지원

## 2. 추진방향

- 한우의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
- 지역특성에 맞는 한우 번식우공동목장 조성
- 한우번식우 중심의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전업농 육성으로 송아지생산기반 확충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93~'94까지	'95	'96	계
사업량		개소 4,353	3,125	1,500	8,978
사	계	256,830	151,477	90,000	498,307
업	보 조	16,955	7,200	4,500	28,655
	지방비	4,987	7,163	4,500	16,650
비	용 자	163,638	100,800	63,000	327,438
	자부담	71,250	36,314	18,000	125,564

### 나. '96 지원계획

- 사업량 : 1,500개소
- 사업비 : 90,000백만원(국고보조 4,500, 용자 63,000, 지방비 4,500, 자담 18,000)

- 시·도별 예산배정 : [ 별표 1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한우사육에 필요한 사업의 시설 및 장비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사육기반시설(진입로, 목로, 용수개발, 전력인입등)
  - 사육시설(축사, 창고등 부대시설)
  - 조사료생산기반조성(초지조성,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조사료생산장비등)  
단, 부지, 가축 및 사료구입비등 운영비는 제외

### (2)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협업체, 상법인 및 축협조합등 생산자단체

### (3)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지원분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개인당 2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단, 상법인은 개별농가 지원한도범위내에서 별도 지원

####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등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별표 3 ]
- 지방비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야 함
- 조사료생산의 사업별지원은 "초지·조사료의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 별표 2 ]에 의함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금 리 : 연리 5%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 사업시행체계

- 집행기관 : 시장, 군수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 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의 농발위)  
→ 대상자선정(시·군, 시·도) → 시·도 예산배정(농림수산부) → 시·군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시·군, 시·도) → 대상자확정 통보(시·군, 시·도) → 지원자금 신청(사업대상자) → 자금지원(시·군, 축협)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한우사육농가 :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한우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한우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5인이상의 한우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모임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 상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

### (2)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가 자율적으로 한우사육에 필요한 사업중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실시요령 제1호 서식), 법인설립등기(자본금 증명서서류포함), 법적인허가사항 서류일체, 농림수산 정책자금지원 증명서류, 한우사육현황(규모, 축종등 필요사항)등
- ※ 구비서류중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서식을 마련하여 사업희망자에게 제출토록함
- ※ 사업신청시에 "소 전산화사업"에 참여여부를 기입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선정기준

- 한우사육기반 확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번식사업 대상자를 최우선 선정
  - 한우사육에 적합한 초지, 사료포등의 입지를 충분히 확보한 번식우 사업대상자
  - 사육규모(두수, 사육장)가 전업규모로 가능한 사업대상자

#### ○ 우선순위

- ① 초지, 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자
- ② 번식사업(번식우 15두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자(일관사육 포함)  
번식우 10두이상 규모로써 초지, 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과 평야지 보다는 산간지대
- ③ 에서 번식사업에 필요한 여건을 확보한 자
- ④ 사업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인허가등 법적제한사항을 완료한 자
- ⑤ 한우사육에 경영전산화 및 경영일지기록등 경영분석을 도입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구비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한 자
- ⑥ 현장훈련실시 및 시범농장으로써 다른 한우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
  - ①~⑤의 요건을 갖춘 기지원농가로써 지원한도액 2억원 범위내에서는 신규신청농가
- ⑦ 보다 우선 지원하되 번식우 20두이상, 비육우의 경우는 70두이상을 사육하는 자
- ⑧ 번식우 15두이상규모로써 향후 번식우 50이상규모로 확대가 가능한 여건을 구비한 자
- ⑨ 상표등록을 하고 소비처에 한우를 거래한 실적이 많은자

### (2) 선정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등을 검토한후 사업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발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마. 사업시행

### (1)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
- 시·군에서는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당년 1월 하순부터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2) 사업비지원

- 번식부문(일관사육포함)에 사업비 최우선 지원
  - 기 지원대상자로서 번식우의 경우 20두이상 사육하는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신규 사업대상자 보다 우선지원
- 각 시·도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우선순위 이행 및 소액분산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업비 지원사항은 시정조치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1회 보완조치하고 미보완시에는 당해년도에 대한 지원자금 및 기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착수금으로 우선지원

### (3)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 시·군 예산범위내에서는 시장, 군수의 사업승인으로 조정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업승인으로 변경
  -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함
  - 시·군 및 시·도의 조정 변경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보고



## (4) 기타사항

### ○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한우사육기반확충사업의 시책방향등을 교육 및 홍보 실시
  - 교육·홍보 내용에는 수입쇠고기 수입량제한 철폐가 국내 소가격에 미치는 영향등을 반드시 명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등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
- 수입개방 및 국내 소값동향과 관련하여 동 사업평가 및 점검 실시

### ○ 축협등 생산자단체

- 기자재,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석회, 비료등 농가 필요자재 구매알선 및 지도
- 농가의 벧짚(보리짚)암모니아처리에 필요한 제반지원
- 고급육생산 사양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축사등 사육환경의 다양한 모델개발 보급

### ○ 지도기관 및 단체(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한국중축개량협회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양관리기술, 전산입력대상 소에 대한 계획교배, 및 경영개선 지도등 실시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군에서는 현장 점검하여 기록장부와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용자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비지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자금중 시설 및 장비 설치에 대한 지원 자금은 기타(소 입식성자금등)자금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이외에 사후관리사항은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제40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함

## 나. 보고

### ○ 사업계획·대상자 확정결과통보 및 추진실적 보고

- 대상자 확정 보고 : 시·도에서는 '96.1.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1호서식]
- 추진실적 보고 : 시·도에서는 '96상반기는 7.20일까지, 하반기는 '97.1.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획대 실적 보고]

### ○ 사업정산결과 보고

- 시·도에서는 사업완료후 '97.2.20일까지 정산결과를 농림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완료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TEL 504-9436~7)  
축산경영과(TEL 504-9434~5)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정계)
- 시·군 : 시·군 축산과, 농산과(축산계)

[ 별표 1 ]

시·도별 예산배정내역

(백만원)

	총사업비	능 특 회 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용 자		
부 산 시	89	28	-	28	-	61
대 구 시	1,016	668	15	653	14	334
인 천 시	436	371	39	332	-	65
경 기 도	7,183	5,435	237	5,198	274	1,474
강 원 도	5,542	4,261	306	3,955	254	1,027
충청북도	7,274	5,542	357	5,185	249	1,483
충청남도	11,718	8,736	483	8,253	556	2,426
전라북도	8,554	6,306	431	5,875	427	1,821
전라남도	14,684	11,100	711	10,389	949	2,635
경상북도	15,652	11,717	710	11,007	648	3,287
경상남도	13,639	10,187	611	9,576	587	2,865
제 주 도	4,213	3,149	600	2,549	542	522
계	90,000	67,500	4,500	63,000	4,500	18,000

[ 별표 2 ]

초지·조사료 분야의 사업별 세부실시 요령

1. 조사료생산

가. 신규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 적지로 판정된 곳으로 1ha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 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 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 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입간 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 사 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 심
1급지	20° 이하	100cm이상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30	99~50	6~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35	49~30	21~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cm이하	31%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 잡목등은 축사, 목책등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타처반출 제한

○ 자재공급

- 목초종자

- 시장, 군수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제시하는 목초종자 소요량(신규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등으로 구분)을 조사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공급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우량한 종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목초종자 수급계획을 수립
- 축협에서 공급하는 목초종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함.

- 석회비료

- 농촌지도기관의 토양조사결과등을 참고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비료는 초지 조성용 복합비료를 기준하되, 가격이나 비효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비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축협을 통한 일괄구매 또는 구매처 알선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 지도

○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함(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을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가능
- 초지조성 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하되 개간이나 파종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애물 제거비를 제외한 종자, 비료등 자재비와 개간비등 인건비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나. 기성초지보완

- 하급초지에 한하여 지원
- 유희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과 연계 추진
- 지원단가 : ha당 955천원.

## 다. 사료작물재배

### ○ 종자공급

- 시장·군수는 작목별 재배계획에 따른 종자 소요량을 조사하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축협조합을 통하여 공급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종자 소요량과 공급량을 감안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 축협중앙회장은 동 수급계획에 의거 종자를 구매하여 조합을 통해 농가에 현물 공급

### ○ 비료공급

- 시장·군수는 재배농가별 비료소요량을 조사하여 농·축협조합을 통하여 재배농가에 공급 단,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생산업허가(또는 등록)를 받은 자가 생산한 비료에 한함.
- 보조금은 농·축협조합에 직접 지급토록 하며, 농가에게는 현물로 보조
- 사료작물용 비료를 일반 농사용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
- 사료작물재배용 비료소요량 : 시장·군수가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농촌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연시회등을 개최

### ○ 주요 사료작물의 파종량 및 시비량(예시)

(단위 :Kg/ha)

작 물 명	파 종 량	시비량(질소-인산-가리)
호 맥	200	200 - 120 - 120
이탈리안라이그라스	40	200 - 150 - 150
수 수	40	200 - 150 - 150
연 맥	120	200 - 150 - 150
우 채	30	200 - 150 - 150
늪 수 수	40	200 - 150 - 150

## 라. 조사료생산용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기준 : 대상토지면적이 3ha이상인 곳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대상면적이 넓고, 참여농가가 많은 지역을 우선지원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것

## 마. 벼짚암모니아처리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지원 :
  - 벼짚(보리짚)과 비닐은 농가에서 준비
  - 암모니아가스 및 주입비등은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역별 일정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축협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 축협중앙회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벼짚준비량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결정(일괄계약체결)
    - 일괄계약에 의한 사업단가가 지원단가 이상일 경우 자부담으로 함.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2. 조사료생산장비

### 가. 조사료 생산장비 공동활용

-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농가들이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 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조건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단지화되고 전업규모 이상의 소사육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조사료생산단지를 구성하여 농기계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전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 신규초지의 조성 또는 기성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등에 의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유희(한계) 농지를 활용하여 초지나 사료작물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 단지 및 사업규모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 15ha 이상
  - 소사육농가 : 5농가 이상(한우 및 젖소농가를 구분하지 않음)
  - 농기계 구입
    - 기본장비(동력원) : 중대형 트랙터
    - 부속작업기 : 사료작물재배, 수확(이용), 운반등에 필요한 작업기 일체
  - 농기계 보관창고 : 농기계 공동보관용 창고 50평내외
  - 지원규모 : 단지별 실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되 단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단지조성 및 정관작성
  -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의 합의에 의한 단지의 구성 및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단지운영 정관에는 임원의 선정, 임무, 기계의 구입, 보관, 수선, 교체, 이용 및 회원의 임무, 책임등 단지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함.



### ○ 기계구입

- 기계구입시에는 단지회원등으로 하여금 구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방법, 절차, 가격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개입찰방법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구입
- 단지의 실정에 적합토록 구입기종 및 기종별 구입량은 구입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기계는 단지공동소유로 하며 성능이 보장된 우량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

### ○ 단지운영요령

- 농기계의 보관은 회원공동의 창고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기계의 이용은 사업목적대로 조사료생산 작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일반 농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별 이용료 규정과 이용방법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하고 단지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부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고 단지별로 비치 기재토록 하고 기초성된 단지를 포함한 모든 단지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분석
- 농기계 사용료는 단지운영비와 기계의 감가상각에 따른 기계대체를 위한 기금적립등 단지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료생산장비의 운영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인근농가의 조사료생산을 위탁작업실시

## 나. 기타 조사료생산장비

- 조사료생산 장비는 공동활용분이나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개인은 예산의 여분이 있는 경우에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초지나 사료작물재배지가 3ha이상일 것
- 공동활용하는 장비의 이용은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운영요령에 준함.
- 조사료생산장비 구분
  - 생산장비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곤포기, 포장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별표 3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1. 사육시설 및 사육장비

사 업 별		지원비율(%)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조	용자	자부담	
사 육 시설	축사시설			70	30	평당 40만원(두당 3평)
	축사부지정지					
	창고시설					평당 40만원
	관리사시설					평당 40만원, 개별농가는 불 인정
	자동급이급수시설					
	싸이로시설					기당 300만원(30톤)
	운동장사육시설					선별적으로 지원
사 육 장 비	가축수송차량			70	30	
	우형기					
	전자식저울					
	연막소독기					
	튐밥발효기					
	그늘막					
	숫소거세기					

- 주) 1. 지원단가는 상한단가이며 상한단가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2.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대체 입식비(용자 70%) 지원가능  
 3. '97예산 편성시 지원조건(보조율)이 변경될 수 있음

## 2. 조사료생산기반 및 장비

사업별		지원비율(%)				지원단가	
		지방비	보조	용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진입로개설	20	70 (50)	-	(20)	10	km당 100백만원, 선별적으로 지원(노폭 4m, 포장 3m) ※ 사육장 : 초지 및 사료포 목도 및 축사부지등 가속 사육에 실질적으로 제공 되는 토지로써 1ha당 5두 이상 사육해야함
	목로개설						km당 45백만원(노폭 4m)
	용수개발						공당 30백만원
	전력인입						km당 5,500천원
조사료 생 산 기 반	초지조성	20	50	50		ha당 단비 : 경운 2,930천원 불경운 2,115천원 입간초지 1,815천원	
	기성초지보완		50	50		ha당 955천원	
	목책시설				70	30	ha당 500천원(5ha이상 지원)
	사료작물재배		50	50		30	ha당 종자대 104천원, 비료대 198, 부지정지 5,000
	볏짚압모니아처리		50			50	기당 88천원
조사료 장 비	조사료생산장비 (트랙터, 부속작 업기, 볏짚수거 기등)	20 (10)	30 (10)	40 (50)	10 (30)		

- 주) 1. 지원단가는 상한단가이며 상한단가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2.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대체 입식비(용자 70%) 지원가능  
 3. ( )내는 개별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중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비율  
 4. '97예산 편성시 지원조건(보조율)이 변경될 수 있음

# [ 별지 제1호 서식 ]

## 1.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시·군별	사업대상자 개소수 (농가수)	사업비 투자계획					
		합 계	농 특 회 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용 자		
		천원					

- 주) 1. 사업대상자란은 개소수를 표시하되 ( )내서는 농가수를 기재  
 2. 농가수는 법인 및 협업체에 속한 개별농가와 축협은 1개소를 1농가로 하여 기재

## 2.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사육규모

대상자별	사업대상자 개소수 (농가수)	사육두수 규모별	사업비 투자계획				
			합 계	농 특 회 계		지방비	자부담
				보 조	용 자		
개별농가		50두이상 30~50두 30두미만	천원				
영농법인		50두이상 30~50두 30두미만					
협 업체		50두이상 30~50두 30두미만					
축협조합		50두이상 30~50두 30두미만					
계		50두이상 30~50두 30두미만					

### 3. 사업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대상자 ( )	사업량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사육기반시설	개소		천원				
소 계							
○ 사육시설							
소 계							
○ 조사료생산기반							
소 계							
○ 조사료생산장비							
소 계							
○ 사육장비							
소 계							
합 계							
○ 개별농가별							
○ 영농조합별							
○ 협업체별							
○ 축협조합별							
계							

- 주) 1. 사업대상자란 ( )내서는 사업별로 중복지원한 개소수 또는 농가수를 기재  
 2. 사업명의 사업별은 세부사업별로 기재하되 실시요령에 의한 사업별 구분에 적용

4. 사업별 및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우선 순위	사업대상자	대표자 (호수)	년 명	사 경 력	사육규모		사육장 규모	자본액	사업별 투자계획									
					'96 ( )	'98 ( )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량	합 계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보 조	용 자	소 계			
	개발농가별								천원									
	소 계																	
	영농조합별																	
	소 계																	
	협업체별																	
	소 계																	
	축협조합별																	
	소 계																	

- (주) 1. 대표자란 ( )내서는 구성원수의 호수만을 기재  
 2. 사육규모란 ( )내서는 번식·비육등급 구분하여 기재  
 3. 사업장규모란에는 조사로 생산기반을 제외한 주사육장인 사육시설규모를 기재  
 4. 사업명 및 세부사업명에는 실시요령에 구분된 내용에 따라 기재하되 가끔적 기타내용이 없도록 기재

## 적소경쟁력제고사업(자율)

### 1. 목적

- 낙농업을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 국내 낙농기반의 유지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2. 전업농 육성목표

○ 목 표 : ('96) 600 → ('97-'98) 1,200 → ('99-2004) 4,600호  
 (누계) (6,200) (7,400) (12,000호)

\* ( )내의 수치는 기록성된 전업농을 포함한 것임

### 3. 추진방향

- 낙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자동화등을 통한 전업농 집중 육성
- 종합지원체제를 도입하여 투자의 효율성제고 및 농가편의 도모
  -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가에 사육기반시설, 조사료생산, 장비등 종합지원
- 원유의 위생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양·환경등 낙농여건 개선

### 4. 투융자 계획

#### 가. 장기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2004	합 계
중앙 지원 (보조, 융자)	63,648	74,305	93,960	761,400	993,313
지 방 비	2,252	2,398	5,529	50,760	60,939
자 담	30,157	34,316	48,432	203,040	315,945
계	96,057	111,019	147,921	1,015,200	1,370,197

○ '97~2004년은 농어촌발전대책 투자계획(42조원)에 의함

나. '96지원계획 : 93,960백만원(기금보조 9,396백만원, 기금용자 84,564백만원)

## 5.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광역시는 구청장)

나. 사업기간 : 매년 1-12월

### 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업 : <별표1>의 세부사업별 지원내역과 같음
  - 낙농기반조성, 사육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낙농전문파출사업·육성우위탁사육사업등
- 도별 자금지원계획(배정) : <별표2> 참조

### 라. 지원대상자

- 낙농가·낙농가들이 조직한 협업체·젖소영농조합법인
- 지역축협·낙농(우유)협동조합
- ※ 단, '96년 사업대상자는 이미 사업신청한 자(법인·조합포함)

### 마.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소액분산지원을 피하고, 우선순위와 지원한도 범위에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투자효율성 제고
  - 개별낙농가(협업체포함) : 개인(농가)당 2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 및 낙협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조건

- 용자기간 : 15년(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 금 리 : 연리 5%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세부사업별 보조 및 용자 지원비율 : <별표1>과 같음

○ 사업시행체계 : 본 통합실시요령 제1권의 『축산발전기금(축협)』에 관한 시행 체계도와 같음

## 바.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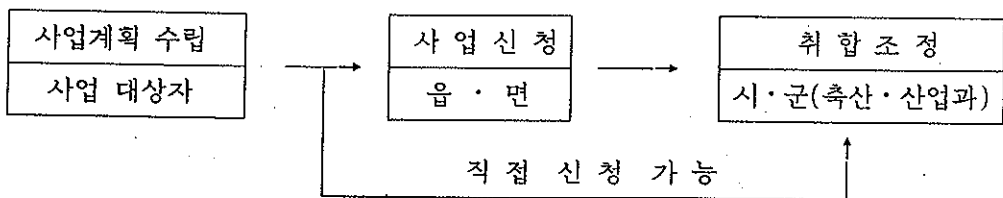
#### < 낙농가 >

- 젖소를 3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낙농전문파출요원으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 협업체·영농조합법인·지역축협·낙협 >

- 협업체는 동일사업을 위하여 5인이상의 농가가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회칙(운영 규정등)을 갖추어 운영하는 협업체
- 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젖소영농조합법인
- 지역축협·낙농(우유)협동조합

### (2) 신청절차



※ 본 통합실시요령 제1권의 농림수산사업 추진흐름도 참조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 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1부

사. 대상자 선정

(1)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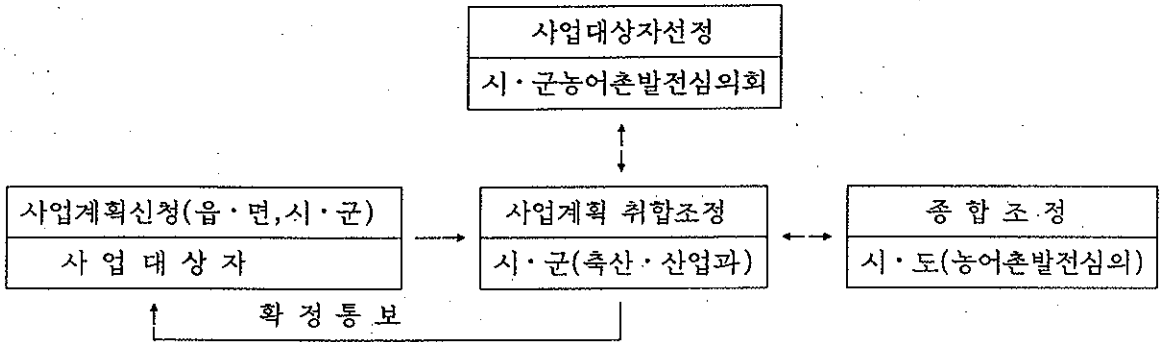
< 낙농가 >

- 가족노동력에 의하여 착유우를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2년이내 착유우 30두이상 사육할 수 있는 자 (전업농 대상자에 우선 지원)
  - 전업농은 2년이내 착유우 30두이상 사육 의무화(농가교육시 이행각서 징구)
- 도시근교 낙농목장을 낙농여건이 좋은 산간 및 농촌지역으로 이전하여 낙농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농과계학교 졸업자·농어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낙농업에 경험이 있는 자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나 낙농경영일지를 1년 이상 성실히 기록유지하고 있는 자
- 목장개방을 통하여 다른 낙농가에 대한 현장훈련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 1등급의 원유 생산비율이 높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

< 협업체·영농조합법인·지역축협·낙협 >

- 낙농전문파출사업 또는 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법인 및 조합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낙농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
- ※ 조합·법인·협업체는 개별 낙농가에 우선하여 지원하되, 협업체의 경우 개별 구성농가가 낙농가의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2) 대상자선정 절차



※ 본 통합실시요령 제1권의 농림수산사업 추진 흐름도 참조

### 아. 사업추진

- 시·도지사는 각 시·도에 배정된 본 사업자금을 시·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한 대상자 및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별 축산여건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자금 재배정
- ※ 단, 시·도지사는 낙농전문파출사업 및 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의 소요자금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배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축산분과위)  
에서 정한 대상자 및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 추진
  - 특히, 본 자금은 종합지원체계에 의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대상자에게 소액 분산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착수전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양기술 교육실시
- 각 시·도는 시·군이 사업자별 지원우선순위의 이행 및 소액분산지원 여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 보조금 및 융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정, 축협  
여신규정 및 본 공동지침등에 의거 집행

## 자. 세부사업별 실시방법

### ○ 사육시설·기타사업

- 축사시설은 젖소 두당 4평기준으로 하고, 축사부지정지는 신축의 경우 축사시설비에 포함 지원(가급적 축사표준설계도서를 활용)
- 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젖소 관리사시설의 경우에만 인정

### ○ 기반조성·조사료생산·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

- 초지·조사료분야의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별표2>]에 의함
- 이 사업은 중앙·도·시군의 초지·사료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하여 추진

### ○ 낙농전문파출사업·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희망조합이 시·군을 통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붙임1>의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신청조합의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추진
- 낙농전문파출사업 참여조합은 전문파출요원(helper)에 대하여 현장실습위주로 교육 실시(농림수산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시달)

## 6.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본 사업의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사후관리
  - 사업능가가 2년이 경과하여도 젖소계획두수를 확보하여 사육하지 않을 경우 6개월내 추가입식토록 촉구하고, 불이행시 미입식분에 상응하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하는등 사후관리 강화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타용도로 전용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 농촌진흥청은 낙농가가 원유의 위생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젖소사양관리 기술지도지침』을 세워 각 도·시군·농촌지도기관 및 축협에 시달

##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젓소경쟁력제고사업계획(확정)	도	매년 3. 10한	서식 2
젓소경쟁력제고사업추진실적(최종)	도	매년 12. 10	서식 1

\* 보고서식 1·2는 축영 51521-219('94.7.8)호 참조

\* 사업계획확정 및 추진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함

## 다.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89~90)

○ 도 : 농정국 축산과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지역축협·낙협

[별표1]

## 젯소경쟁력제고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재원별				비고	
		지방비	보조	용자	자담		
기 반 조 성	진입로개설	20 %	70 (50)	(20)	10	km당 100백만원, 선별적으로 지원(노폭 4m, 포장 3m)	
	목로 개설					km당 45백만원(노폭 4m)	
	용수 개발					공당 30백만원	
	전 력					km당 5,500천원	
사 육 시 설	축 사			70	30	두당 4평, 평당 660천원	
	축사부지정지						
	자동급이·급수시설						
	착유 시설						
	창 고					평당 400천원	
	사일로시설					기당 3,000천원(30톤)	
관 리 사	평당400천원, 개별농가 불인정						
운 동 장	선별적으로 지원						
조사료 생 산	초지 조성	20	50	50		ha당 단비 : 경운 2,930천원, 불경운 2,115천원, 임간초지 1,815천원	
	기성초지보완		50	50		ha당 955천원	
	초지목책시설				70	30	ha당 500천원(5ha이상 지원)
	사료작물재배		50			30	ha당 종자대 104천원·비료대 198천원·부지정지 5,000천원
	볏짚암모니아 처리		50			50	기당 88천원

세부사업별		재원별				비고
		지방비	보조	용자	자담	
조사료 생산장 비	조사료생산 장비등	20 (10)	30 (10)	40 (50)	10 (30)	
기 타	수송 차량			70	30	
	낙농용기구			70	30	
	낙농전문파출 사업 - 신규사업 - 기존사업		50 25		50 75	1년차(헬퍼 2인1조) : 개소당 18백만원 - 인건비·지도차량·점검장비 를 50%수준 보조지원 2-3년차 : 개소당 6백만원 - 인건비를 25%수준(헬퍼 1인당 월 25만원) 보조지원 4년차 : 개소당 120백만원 한도 범위에서 용자 - 헬퍼 운영비 조성등 용자지원
	젖소육성우 위탁사육사 업					개소당규모 : 육성우 200두수준 (초지 40ha 이상) 사업비는 본 세부사업별 지원, 기준에 의함
기 타			70	30	기타 젖소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사업, 원유분석장비(원유성분 신속 자동분석기)	

※ ① ( )내는 개별농가 및 협업체중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비율임.

② 위 사업내용이외에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단, 유제품의 가공·유통 및 판매시설은 제외).

③ 보조·용자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비를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추가  
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담으로 추진함(보조·용자금은 축산발전기금임).

④ 낙농전문파출사업, 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 및 원유분석장비는 지역축협 또는  
낙협(우유협동조합)에 지원함.

단, 낙농전문파출사업의 4년차 지원은 '96년 이전에 참여한 조합에 한함('97년  
이후 참여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97예산 편성시 지원조건(보조율)이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자금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축산발전기금			비고
	보조액	용자액	계	
부 산	21	458	479	
대 구	22 (6)	1,260	1,282 (6)	낙농파출사업 포함
인 천	50	445	495	
광 주	2	-	2	
경 기	2,574 (84)	22,786 (175)	25,360 (259)	낙농파출·우유 성분 분석기 포함
강 원	667 (6)	5,913	6,580 (6)	낙농파출사업 포함
충 북	631 (18)	5,591 (225)	6,222 (243)	낙농파출·우유 성분 분석기 포함
충 남	1,444 (48)	12,800 (120)	14,244 (168)	낙농파출사업 포함
전 북	946 (36)	8,382	9,328 (36)	낙농파출사업 포함
전 남	856 (6)	7,582	8,438 (6)	낙농파출사업 포함
경 북	1,008 (24)	8,930 (120)	9,938 (144)	낙농파출사업 포함
경 남	1,024 (18)	9,078 (240)	10,102 (258)	낙농파출사업 포함
제 주	151	1,339	1,490	
합 계	9,396 (240)	84,564 (880)	93,960 (1,120)	

※ ( )내는 낙농전문파출사업 및 우유성분분석기 자금배정분 임.



[별지 제1호 서식]

## 젓소경쟁력제고사업 사육규모별 지원계획 및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농가	사 업 비					비 고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 담	계	
구조조정사업							
30두 이상							
10~30 두							
10두 미만							
조사료생산사업							
합 계							

- ※ ① 지원농가수는 협업체, 법인, 조합도 포함됨.
- ② 구조조정사업은 <붙임1>의 세부사업중 기반조성, 사육시설, 지원장비 지원농가로서 비용이 제일 큰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농가가 세부사업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작성함.
- ③ 조사료생산사업은 <붙임1>의 세부사업중 "조사료생산 및 조사료생산장비"의 지원 농가임.

# 돼지경쟁력제고사업(자율)

## 1. 목 적

양돈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양돈전업농가로 육성하므로서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도모

## 2. 추진방향

- 가족단위 노동력위주의 전업화 또는 협업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 유도
- 축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로 사육환경 개선
-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양돈사육 기반구축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억원)

		'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개소)		1,060	1,734	500	500	500	2,400	6,694
사업비	계	790	1,670	2,385	1,500	1,500	7,200	15,045
	용 자	553	1,169	1,669	1,050	1,050	5,040	10,531
	자 담	237	501	716	450	450	2,160	4,514

\* '97년이후는 42조원 투융자계획 기준임

### 나. '96지원계획

- 지원액 : 166,950 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현황

(1) 사업기간 : 1년

(2)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진입도로, 부지정지,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신축 및 증.개축, 급이.급수시설, 환기.보온시설 등
  - 기계.기구 : 돼지사양관리, 생산물처리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 기타 : 창고,관리사, 기타 돼지사육에 필요한 시설등
    - 단, 분뇨처리시설은 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
- ※ 운영비(가축구입비,부지구입비. 경영비, 임차료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양돈농가, 종돈업경영자,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등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액 : 농가당 2억원이내, 법인은 자기자금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금의 400%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종돈업의 경우는 생산능력·사육시설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 별표1. 지원기준 참조
- 지원비율 : 용자 70% 이내, 자담 30% 이상, 연리 5%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5) 사업시행체계

- 사업구분 : 자율사업
- 대상자선정 : 시장·군수가 시·군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선정추진
- 용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 지역축협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돼지를 전업규모이상으로 사육하거나 전업규모이상으로 늘리고자 하는자, 종돈업 등록자
  - 자금지원후 가족 노동력중심의 전업규모로 양돈업을 경영코자하는 자
  - 시설개선 및 규모화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
  - 축산법규정에 의거 종돈업등록이 되어있고 종돈 분양실적이 있는 자
- 가축(양돈)계열화 및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있는 농가
- 축협, 법인, 협업체등
  - 축산업협동조합, 양돈업협동조합
  - 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또는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2) 신청절차

- 가축계열화사업 계약농가 및 종돈업은 별도로구분 신청을받아 지원 할수있다.

###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 서식)
- 종돈업, 가축계열화 및 품질개선단지 참여농가의경우는 관계증빙서류
- 축사시설등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지확보 증빙서류

## 라. 대상자선정

###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 양돈, 종돈농가 >

- 종돈업자, 돼지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참여농가
- 가족노동력중심으로 전업규모이상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 자
- 농가현장교육등 시범농장으로 활용하기위해 도지사가 교육장화 하고자하는 자
- 농과계 학교졸업자, 농어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자

< 조합, 법인, 협업체 >

-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방역등 조직의 응집력이 큰 조직
- 공해문제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양돈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
-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조직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능가는 개별능가에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

(2)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 제15조-제19조 참조
- 농발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결정은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되 동 순위자 중에서는 자부담을 많이하는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양돈계열화 참여능가 및 종돈업시설은 예산요구시 사업량,사업비를 구분하여신청
  - 계열참여능가는 계열주체가 계약농가중 지원희망자별 사업계획을 해당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대상자선정 절차 및 방법등에 의해 선정
  - 시.도지사는 종돈업과 같이 호당 2억원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하여 시군별로 소요자금을 구분신청

마. 사업시행

< 추진상 유의사항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 양돈농가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 농가에게 소액·분산 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축사 신.증.개축의 경우 시설완료후 전업규모로 사육가능한 자에 한해서 지원
  - 각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사업자별 지원우선순위결정결과 및 소액분산 지원여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한후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상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및 사양기술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 본 사업 사후관리지침을 마련 시·군에 조치하고 사후관리 실시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종합 점검 평가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조치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타용도 전용시 지원자금 회수 조치)

###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 농림수산사업 평가실시요령의 평가조사와 동시 실시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세부사업추진상황보고	시·도	7. 31	별지제2호 서식
사업대상자선정 및 완료결과	시·도	3. 10	별지 제 1,2,3호 서식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전화 02-504-9434\*5),  
축협중앙회 구조개선1부 (02-224-8114)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축협중앙회 시·도지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축협

[ 별 표 1 ]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기준

	사 업 비					비 고
	보 조		용 자	자 담	합 계	
	지방비	기 금				
< 기반시설 > ○ 용수개발.부지정지, 도로시설, 전기인입  < 사육시설 > ○ 축사신축(증).개축 ○ 급이.급수시설 ○ 환기시설.보온시설등 ○ 창고.관리사등 부대 시설 ○ 기타 시설  < 기 타 > ○ 관리용기계.기구. 장비등	%	%	70% 이내	30% 이상	100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년리5%  ○ 돈사시설설치비 평당:780천원 이내 ○ 비육돈사인경우 평당 :3*5 두

- ※ ○ 돈사시설비는 축사표준설계도 93-돼지-자(번식) 및 93-돼지-차(비육)을 기준한 것이며, 무창돈사등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실소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다
- 돈사시설내용및면적등은 동축사설계개요를 참조하되 동설계를 의무화하는것은 아님
- 지원율은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96돼지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실적

	지원대상자수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기금 용자	자 담	
합 계	개소	천원			
○ 개별농가	호				
- 전업농가					
- 종 돈 업					
- 돼지계열 참여농가					
- 품질개선 단지참여 농가					
- 기 타					
○ 영농법인	( 개소 호)				
○ 협 업 체	( 개소 호)				
○ 생산자 단 체	조합				

\* 기재요령 : 영농법인은 등기상 법인을 말하며, ( ) 내에는 참여농가수를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

돼지경쟁력제고사업 세부사업별 내역

단 위 : 천 원

		단위	사 업 량		투 자 액		
			농가수	사업량	합 계	기금용자	자 부 담
합 계							
기 반 시 설	소 계						
	-도로시설	m					
	-부지정지	평					
	-용수개발	공					
	-전기인입	m					
사 육 시 설	소 계						
	-축사신.증 개축	평					
	-급이.급수	두분					
	-환기.보온	"					
	-내부자동화	"					
부 대 시 설	소 계						
	-창고신축	평					
	-기타시설	평					
기 계 · 장 비	소 계						
	-관리용기계	대					
	-관리용장비	대					
	-기타기구류	대					

※ 기재요령: 합계란의 농가수는 1농가에 2~3개 단위사업에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1농가로 소계란의 농가수는 1농가에 2개사업 이상 지원된 경우 각 해당사업에 기재

[ 별지 제3호 서식 ]

사육규모별 지원계획 및 실적

단 위 : 백만원

	사업량	투 자 액			비 고
		합 계	지원액	자부담	
합 계					
1,000 두이상					
500 - 999 두					
500두 미만					
기 타					

※ 기재요령 : 사업량은 농가(협업) 개념

기타는 사육농가이외의 사업 "예" 생산자단체의 생산물 처리시설 등

## 닭 경쟁력 제고사업 (자율)

### 1. 목 적

양계경영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하므로서 규모화, 자동화를 추진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양계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개선 도모

### 2. 추진방향

- 가족농 중심의 양계 전업농을 중점 육성
- 시설자동화 지원
  - 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환경제어시설 및 각종 기계기구 등을 종합지원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개소 508	526	730	250	250	1,200	3,464
사 업 비	계	68,245	79,273	109,286	75,000	75,000	360,000	766,804
	국 고	-	-	-	3,750	3,750	18,000	25,500
	국고융자	11,320	-	-	48,750	48,750	234,000	342,820
	기금보조	-	-	-	-	-	-	-
	기금융자	32,610	52,900	76,500	-	-	-	162,010
자 부 담	24,315	26,373	32,786	22,500	22,500	108,000	236,474	

※ '97년 이후는 42조원 투융자계획 기준임.

#### 나. '96지원계획

- 지원액 : 76,500 백만원(축발기금융자)

## 4.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1년간)

○ 지원내용

- 기반시설 : 용수개발, 부지정리, 도로개설, 전기인입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신·증·개축, 급이·급수시설, 환경개선 시설(자동환기장치, 열풍기, 온도조절기 등), 각종 축사내부시설, 부화시설(건물, 부화 장비등)

- 유통시설 : 계란집하장시설(건물, 운반장비, 계란선별기 시설등), 계란 저온저장 시설(건물, 냉장시설 등)

- 기계, 기구, 장비 : 트랙터, 로다, 소독장비, 부산물처리장비 등

※ 부지구입 및 가축구입비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별도의 공해방지 시설사업으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의 지원기준 참조

### (2)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또는 종계장, 부화장 경영자

○ 양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축협, 자생적인 협업체 등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가 : 호당 2억원이내, 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 : 자기 자본의 400% 이내

- 단 종계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시설은 사업규모,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증액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5%
- 지원비율 : 용자 70%이내, 자담 30% 이상

(4) 사업시행 체계

- 추진방식 : 농어민 자율방식
- 사업대상자를 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업양계 농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다수 농가에 소액분산 지원역제
- 축사 신·증축 및 개축의 경우 시설완료후 전업규모로 사육 가능한 자에 최우선 지원
- 기 지원한 농가중 전업화를 위하여 지원요구시 추가지원하여 전업농 규모로 육성

##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전업농, 종계업>

-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종계장, 부화업은 시·도지사에 종계업, 부화업 등록이 되어있고 분양실적이 있는 자

<축협, 법인, 협업체 등>

- 축협, 영농조합법인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법인
- 양계사업을 목적으로 5인 이상 농가가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2)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

(3)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 서식)

##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 우선순위

#### <전업농, 종계업>

##### ○ 종계업, 부화업, 닭계열화사업 계약농가

- 계열사업 참여농가는 계열주체의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

##### ○ 전업규모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자동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

##### ○ 농과계 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농가 현장교육등 시범농장으로 활용하는 등 선도양축을 할 수 있는자

##### ○ 전산관리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자

#### <조합·법인·협업체>

##### ○ 구매, 출하, 방역등의 공동추진으로 조직의 응집력이 큰 조직

##### ○ 공해문제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 양계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

##### ○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직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 및 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개별농가에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

### (2) 선정절차

##### ○ 시·군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5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계열주체는 지원이 필요한 계열농가 내역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마. 사업시행

### (1) 시·군은 대상자 결정사항을 통보

### (2) 확정된 대상자는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대하여 축사건축 및 경영등에 대한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 닭 경쟁력제고사업은 농가자율사업으로서 사업신청자가 자율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업임
- (3) 사업대상자가 규모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수 농가에게 소액 분산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 (4) 시·군은 사업착수전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양관리 기술 등의 교육실시
- (5) 축사등의 신축시 시설부지는 수해등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토록 지도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35조~제40조의 제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사업 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 '95.7.26)에 의거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일 자	서 식	보 고
추진실태	시·도	매년 7.31	별지제 1,2,3	계획대 실적을 대비
추진실적 및 대상자 선정 결과	시·도	매년 3.10	호 서식 "	"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4-9434)
- 시·도 : 농정국 축산과
- 시·군 : 산업(축산)과

[ 별표 1 ]

# 지 원 기 준

	재원별 투자비율			비 고
	기금용자	자 담	계	
	%	%	%	
<기반시설> ○ 용수개발, 부지정리, 도로 개설, 전기인입시설 등	70이내	30이상	100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  ○ 계사신축시설비 - 산란계: 평당620천원이내 - 육 계: 평당340천원이내 (무창계사등 특수 시설의 경우에는 실소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계사 및 시설내역 은 축산단지 참조)
<사육시설> ○ 축사신축·증축·개축 ○ 급이·급수시설 ○ 환경개선시설(자동환기 장치, 열풍기, 온도조절기 등) ○ 각종 축사내부시설				
<기타시설> ○ 부화시설(건물, 부화장비 등) ○ 유통시설 - 계란집하장시설(건물, 운반장비, 계란선별기 시설등) - 계란저장시설(건물, 냉장 시설등)				
<기계, 기구, 장비> ○ 트랙터, 로다, 소독장비, 부산물처리장비 등				

\* 지원율은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별지 제 1호 서식 ]

답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선정 및 지원계획(실적)

	지원대상자수 (농가, 업체)	투 자 계 획			비 고
		합 계	기금용자	자 담	
개별농가 - 전업농가 - 종 계 업 - 부 화 업 - 계열화 참여농가	호	천원			
영농법인	개소				
생산자단체	조합				
합 계					

- ※ 기재요령 : 1. 참여농가수는 농가(업체) 개념으로 기재  
 ( 1개농가(업체)가 2~3개 세부사업을 지원 받더라도 1농가로 기재 )  
 2. 육계, 산란계 구분작성

[별지 제 2호 서식]

닭 경쟁력제고사업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량		투 자 계 획		
		농 가 수	사 업 량	합 계	기금용자	자 담
합 계						
기 반 시 설	소 계					
	- 진입도로	㎡				
	- 부지정리	평				
	- 용수개발	공				
	- 전기인입시설	㎡				
사 육 시 설	소 계					
	- 축사신축	평				
	- 축사 증·개축	평				
	- 급이·급수시설	수분				
	- 환경개선시설 (환기, 온풍기등)	"				
	- 내부자동화시설	"				
	- 창고신축	평				
	- 부대시설 신축	평				
- 기타 시설	평					
유통 시설	- 계란집하장	개소				
	- 계란저장시설	"				
기 타 기 계 · 장 비	소 계					
	- 관리용 기계	대				
	- 관리용 장비	대				
	- 기타 기구	대				

※ 기재요령 : 1. 농가구수는 1농가(업체)가 2개이상 사업에 대상이 될 경우 각기 해당란에 기재할 것

2. 육계, 산란계 구분작성

[ 별지 제3호 서식 ]

사육규모별 지원 계획(실적)

사육 규모	지원대상자수 (농가, 업체수)	투 자 계 획			비 고
		합 계	기금 용자	자 담	
30천수 이상	개소	천원			
20~30 천수					
10~20 "					
10천수 미만					
기 타					
합 계					

- ※ 기재요령 : 1. 지원대상자수는 농가(업체) 개념으로 기재  
 2. 육계, 산란계 구분작성

# 기타가축 육성(자율)

## 1. 목 적

- 소, 돼지, 닭 이외의 기타가축 사육능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  
하므로서 지역별 특수가축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발전도모
- 국산경주마 사육기반 확대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도 제고

## 2.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수가축 사육의 전업화 유도
- 사육시설과 생산물의 판매·처리시설개선으로 부가 가치제고
-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 경주마 육성시설 확대로 경주마 부가가치 제고 및 협업화·단지화 유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 위: 억 원)

		'94 까지	'95	'96	'97	'98	'99- 2004	합 계
사업비	계	81	234	356	100	100	600	1,471
	용 자	62	178	274	70	70	420	1,074
	보 조	-	2	-	-	-	-	2
	자 담	19	54	82	30	30	180	395

\* '97이후는 42조원 투융자 계획기준

### 나. '96 지원계획

- 기타가축 육성지원 : 23,201 백만원(염소가공시설 포함)
  - 종마도입 및 경주마생산지원 : 4,192 백만원
- 합 계 : 27,393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나. 사업현황

○ 사업기간 : 1년간

○ 사업내용

- 사육, 가공(흑염소 중탕시설비 포함), 유통, 저장, 초지조성등 기타가축 사육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 1 참조)  
단,가축구입비(중빈과 도입자금 제외),부지구입비,임차료,사료비등 경영비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이외의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생계수단으로(전업규모) 사육하거나 전업규모로 늘이려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축협(업종조합포함) 및 자생적인 협업체, 경주마생산자협회(공동이용 사업인 경우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 별표 1 참조 )

- 지원액

- 기타가축 육성사업은 농가 호당 50백만원이내, 경주마 생산농가 호당 2억원이내
- 영농조합 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축협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한도내에서 지원

단,종압장, 부화장시설, 초지조성사업은 사업규모, 생산능력등을 감안하여 한도 이상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비율 : 용자 70%이내, 자담 30%이상, 연리 5%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단, 중빈과 도입사업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용자 100%), 연리 5%

○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등 사업추진 : 시장·군수
- 용자금 집행 및 자금사후관리 : 지역축협

## 다. 사업신청

### ○ 신청자격

- 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등
- 해당 축종을 생계수단으로하여 전업으로 사육하거나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
-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 농업계학교 졸업자 또는 후계자로서 해당 축종을 사육하고있는자
- 흑염소 가공시설의경우 염소 100두이상 사육농가로서 흑염소 협회장 또는 흑염소 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은자

### ○ 신청절차

- 흑염소가공시설의 경우 한국흑염소협회 또는 흑염소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에 신청

### ○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요령 제1호 서식)
- 관련협회장등의 추천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생산자협회장의 추천서

## 라. 대상자선정

### ○ 선정 우선순위

- 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 법인등 협업체, 경주마생산자협회로서 해당 축종이 전문화되어 있는 조직
- 농업계학교졸업자 또는 후계자로서 일정기간이상 해당축종을 사육하고있는 자
- 경주마생산지원사업의 경우 초지, 방목장을 많이 확보한 농가

### ○ 선정절차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제15조-제19조 참조
- 농발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되 동순위자중에서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마. 사업시행

### < 추진상 유의사항 >

- 사업대상자는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 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양축 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소규모의 다수농가에게 소액 분산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지원사업 대상 가축별 사육비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균형이 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경주마생산지원사업 별도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자금상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 업무추진지침을 마련 하여 시달
- 시·도 (시·군)는 사업추진 실태를 년 1회이상 점검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조치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기타가축육성사업대상자선정결과 (경주마 별도작성)	시·도 (도)	매년 3월10일까지	별지 제2호 별지 제1호
기타가축육성사업추진실적 (경주마 별도작성)	시·도 (도)	사업익년 2월10일 -12월31일현재 기준	별지 제2호 계획/실적 (별지제1호)

###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4-9434), 경주마사업 축산정책과(02-504-9431)  
축협중앙회 구조개선1부(02-224-8114), 한국마사회 마사부(02-509-1811)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축협중앙회 시·도지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축협

[ 별표 1 ]

기타가축 육성사업 지원기준

	세부사업	투자비율		비고
		지원	자담	
• <기타가축>	:소, 말, 돼지, 닭을 제외한 가축 > ◦축사신.증.개축 ◦목책 시설 ◦급이.급수시설 ◦저온.저장시설 ◦꿀벌 사육시설 ◦채밀시설.장비 ◦절각장 시설 ◦기타 시설	◦용자:70% ◦이내	◦30%이상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연리 5%
	◦냉동.냉장기 ◦건조기 ◦농축기계 ◦유압시설 ◦포장기 ◦예열기 ◦기타			
초지조성	◦한우, 젖소경쟁력제고사업 기준 적용			



	세부사업	투자비율		비고
		지원	자담	
<경주마>				
○ 종빈마	○ 종빈마도입	용자 100%	자담 0%	○ 두당 7백만원,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
○ 사육시설	○ 마사, 창고, 패독, 약욕장, 목욕장, 원형실내마장	용자 70%	자담 30%	○ km당 100백만원 (노획 4m×포장 3m) ○ km당 45백만원 지원 (노획 4m) ○ 1개공당 30백만원 ○ km당 5,500천원 ○ '97년부터 지원계획
○ 육성조련 시설	○ 주로, 자동보행기, 마필 수송차, 조련장비			
○ 기반시설	○ 진입로 ○ 목도개설 ○ 용수개발 ○ 전력인입			
○ 조사료 생산장비	○ 트랙터, 부속작업기			
○ 초지조성	○ 초지조성 ○ 기성초지보완	한우,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지원 기준 적용		

\* 지원율은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경주마 생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 단위 : 천원 )

사업별	대 상 자					사업량	투 자 액			
	합계	농가	조합	협업체	기타		합계	보조	용자	자담
○종빈마도입										
○사육시설										
○육성조련 시설, 장비										
○기반조성										

[별지 제2호 서식]

기타가축육성사업 대상자선정결과

(단위 : 천원)

	대 상 자					사업량	투 자 액			
	합 계	농가	조합	협업체	기타		합 계	보조	용자	자담
합 계										
○ 사육시설 - 축사 - ○ 가공시설 -										
< 오 리 >										
○ 사육시설 - 축사 - ○ 가공시설 -										
< 염 소 >										
○ 사육시설 - 축사 - ○ 가공시설 -										
< 사 슝 >										
○ 사육시설 - 축사 - ○ 가공시설 -										
< >										
○ 사육시설 - 축사 - ○ 가공시설 -										

##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공)

### 1. 목 적

가축사육시설 단지화로 축산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자재의 구매, 생산물의 판매·방역·분뇨처리등을 공동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도모

### 2. 추진방향

- 동일 축종의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 유도
- 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분뇨처리 시설에의한 사육여건 개선
- 공동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배치에 의한 경영개선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억 원)

		'95까지	'96- '98	'99- 2004	합 계
사 업 량		83개소	51	76	210
사 업 비	계	2,721	3,250	3,600	9,571
	기금보조	220	325	360	905
	기금융자	1,791	2,110	2,340	6,241
	지 방 비	145	165	180	490
	자 담	565	650	720	1,935

\*'94.6.14 농발대책기준

#### 나. '96지원계획

○ 지원액 : 60,159 백만원

- '95계속사업, 기존단지보완, '96신규사업 및 제주도 한우마을 공동목장 조성시설 보완사업비포함.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현황

(1) 사업기간 : 2년간

(2)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진입도로, 목도,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등
- 조사료생산기반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지조성
- 사육시설 : 부지정지, 축사시설, 창고, 관리사등 부대시설
- 기계 및 기구 : 축산물생산, 운반처리용 기계·기구, 가축방역용 장비류등
- 기타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비
- ※ 운영비(가축구입비·부지구입비·사료비·임차료등 경영비)는 지원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기존의 축산시설을 이전(당해 축종의 기존축산농가에 한함)하여 전업규모화 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자
  - 기히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된 단지로서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자
  - 기존의 가축집단사육지역에 기반시설과, 축사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단지화 하고자 하는 자
- 단지구성 요건 : 한우·젖소 3호이상, 돼지·닭 5호이상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액
  - 일반농가 : 호당 3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비율 : 축산단지 지원기준 참조 (별표 1)
- 지원조건(융자)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5%

## (5) 사업시행체계

- 사업구분 : 지방공공사업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 후 의견첨부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고 법적제한 사항이없는 지역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심사요청하고 동 심사 결과에 의거 선별하여 농림수산부에 예산요청(계획서첨부)
- 농림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확보하여 계획을 시·도에 전달
- 시·도지사는 소요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시·군에 조치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단지구성 요건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 (축사등의 건축에 법적 제한 사항이 없고 민원소지가 없는 지역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야함)한 자
  - 단지구성 후 기존 축산시설은 폐지하고 사육가축을 이전하여 가족노동력으로 전업화가 가능한 자 (신규 축산농가 또는 현사육 축종과 다른농가는 제외)
  - 단지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력이 있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 능력이 확실한자

### (2) 신청절차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2조, 제13조 참조

### (3) 구비서류

-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

## 라. 대상자선정

### (1) 선정 우선순위 (신규조성)

- 타법령에 의거 축사시설의 이주 명령을 받은자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영농법인체를 구성하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규모의 전업규모화를 위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상습수해등 예상지역에 위치한 축사시설을 안정지역으로 이전코자하는 경우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선정절차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5조-제19조 참조

- 대상자 선정은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결과 및 사업 계획의 제반여건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확정

## 마. 사업시행

### < 추진상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다음사항이 계획되어야 하며 계획대로 미 이행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존단지의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조치한다
  - 사업대상 부지는 단지구성원 자체자금으로 확보하여 소유권 등기가되고 법적제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 사업규모는 자금능력, 관리능력, 축산분뇨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조성하여야 하며 양돈단지의 경우에는 호당 1,500두, 단지당 총사육두수가 15,000두 이내로 한다.(자체자금이라도 임의로 사육규모를 확대할수없다)
  - 단지 참여농가의 현황과 자금부담 능력, 담보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료는 공동으로 계약생산등 일정사료로 통일하여야 한다.
  - 생산물에 대한 판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돼지의 경우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육가공(수출)업체, 계열주체와 생산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 하여야 한다.
  - 가축방역을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건물시설, 부지정리등 세부 항목별 사업비용은 설계서 등의 자료에의거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축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 심의신청은 시장·군수가 사업계획검토후 도지사에 신청, 시·도지사는 예산요청 1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단지조성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자체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등을 실시하여 심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도로, 부지정지,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등)은 토목설계에 의거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사업단,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기능을 이용한다.
- 기반시설비 중 지방비 (20%)는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부담 비율을 증가할수있다.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시·군)은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신규 및 기존단지포함)
- 시·도지사는 본 사업의 사후관리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하고 사후관리 실시
- 시·도지사 및 축협 도지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타용도 전용하거나 계획대로 미 이행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 나.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 축산단지조성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도	매년 3월10일까지	○ 별지 제 2호서식
○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 (중간, 완료)	도	매년 12월 20일 완료후 1개월이내	○ 계획대 실적대비 사진첨부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전화 02-504-9434~5 젓소, 돼지, 닭)  
" 축산물유통과 (전화 02-504-9436~7 한우)  
축협중앙회 구조개선 1부 ( 교환 02-224-8114)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축협중앙회 시·도 지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축협

[별표 1]

축산단지지원기준

	재원별 투자계획					비 고
	보 조		용 자	자 담	합 계	
	지방비	기 금				
○기반조성					%	
- 진입도로	20	70		10	100	○ 1km당 1억원이내선별 지원(노폭 4m,포장 3m)
- 목 도	20	70		10	100	○ 1km당 4,500천원 이내 (한우, 젖소 :노폭 4m)
- 용수개발	20	70		10	100	○ 1개공당30,000천원이내
- 전기인입	20	70		10	100	○ 1km당 5,500천원내외로 한정 산출실비 적용
- 부지정지	-	-	70	30	100	
○사육장 시설						< 축사시설설치비:평당 >
○조사료생산 시설 및 장비						○한우사 : 400 천원이내 ○유우사 : 715 " ○돈 사 : 780 "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 비육돈의 경우 평당 3-5두 수준 *축사 표준 설계도 93-돼지-자(번식) 연계 93-돼지-차(비육)
○기타시설장비						○계 사 -육 계 : 340천원이내 -산란계 : 620 " *축사 표준 설계도 · 육 계: 92-10000-파 · 산란계: 92-30000-타

- ※ ○ 축사설치비중 돼지, 닭의 경우 예시된 축사표준설계 시설을 기준한 것이며, 무창축사등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실소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다
- 축사시설내용 및 면적등은 동축사설계개요를 참조하되 동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추가지원할수있음.
- '97예산 편성시 지원조건(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축산단지 조성계획서

1. 단 지 명 : ( 축 종 : )
2. 사업장 위치 :
3. 대표자 및 구성원 내역

	성 명	생년월일	현양축규모		양축경력	현 양 축 장 위 치
			축종	두수		
대표자						
구성원						

4. 단지조성계획

○ 대상지의 입지조건

- 위치, 면적, 인.허가여건 (타법상제한사항 여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여건등)

○ 투자계획

- 사육 및 시설규모 ( 시설후 단지 총규모, 농가별규모, 시설규모, 능력 )
- 재원별투자계획 ( 개별사업, 공동사업, 세부사업별, 년도별 등 구분 )
- 시설배치도( 개별시설, 공동시설, 용도별 등 구분 )
- 추진 일정( 세부사업별로 작성 )

○ 경영계획

- 단지 경영방법
- 사업비 조달 및 상환계획
- 생산 및 생산물 판매계획, 수익성 분석 등
- 축산분뇨처리 방법 및 계획
- 단지내 방역계획

○ 구비서류, 기타

- 시설부지 확보내역(등기부 등본), 부지에대한 법적제한사항 확인서류등 증빙자료
- 자본능력(자부담 및 운영비 조달) 및 담보능력 증빙서류
- 축산기술연구소의 축산단지 계획 심사서류등 기타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

축산단지조성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보고

1. 단 지 명 : (축종)
2. 사업장위치 :
3. 대 표 자 : ( 전화 : )
4. 사업규모

부지면적	축사면적	부대시설	참여호수	사육목표	비 고

5. 투자계획

단 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 량	1 년 차		2 년 차		합 계		
		용 자	자 담	용 자	자 담	용 자	자 담	합 계

6.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인.허가 및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7. 첨 부 : 단지별 사업계획서 1부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공공)

### 1. 목적

- 사육규모의 전업화, 축사시설의 자동화에 따른 축산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경쟁력향상 제고

### 2. 추진방향

- 품목(기종) 중심의 전문업체 육성
- 축산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추진

### 3. 사업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부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분처리기등) 생산을 위한 기계, 시설자금

#### (2) 지원대상 : 축산기자재생산업체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이내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8% (용자70%, 자담 30%)

#### (4) 사업시행체계

- 사업대상 업체는 전문화된 축산기자재를 생산 공급
- 사업대상 업체는 취급기자재의 검사 및 규격화, 표준화 추진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자
-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술 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S가 양호한 자
-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자(적용대상 품목일 경우)

### (2)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는 축산기술연구소(시설환경과)의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업계획 심의요령을 마련하여 심의

###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참조)

## 라. 대상자선정기준 및 지원방법

-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계획 심의결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및 우선순위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 대상자선정시 유의사항
  -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확인

## 마. 사업시행

- 조속한 시설·기계구입으로 축산기자재의 원활한 공급
- 표준축산시설계도에 적합한 축산시설 및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 공장을 활용한 자동화설비에 의한 생산성제고에 필요한 자금 사용

#### 4. 행정사항

##### 가. 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 '97.3.10(축산기자재협회 → 농림수산부)
- 익월 20일까지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별지제2호 서식

#####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504-9434)
- 축산기자재협회 : 0343-48-1369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사업 계획서

### 가. 회사현황

- (1) 회사연혁(소재지, 대표자, 경력등)
-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3) 인력 및 자산, 시설보유 현황(구체적으로 명기)
- (4) 축산기자재 생산종류명

### 나.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사업계획

- (1) 사업개요
- (2) 신규시설, 보완, 장비등 세부사업별 용자, 자담등 투자계획
- (3) 기자재생산 및 판매방법(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관련증빙서류 포함)
- (4) 추진일정(세부사업별)
- (5) 상환계획(상환기간까지)
- (6) 시설배치도(공장시설)
- (7) 사업기대효과
- (8) 기타(관련증빙서류등)

[ 별지 제2호 서식 ]

축산기자재생산시설사업 추진결과 보고

업체명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사업량	용 자	자 담	계	사업량	용 자	자 담	계

##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공공)

### 1. 목 적

- 2001년 소수입 전면개방을 대비하여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구축

### 2. 추진방향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체별 능력관리
-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한우·젖소 개량사업 확대 실시
- 송아지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안정제 도입체계 구축
- 소 개체별 질병기록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백만원)

		'94 까지	'95	'96	'97	'98	'99	합 계
사업량		천두 -	2,530	1,180	1,180	1,180	1,180	7,250
재원별	축발기금	-	13,946	-	-	-	-	13,946
	농특회계	-	-	12,024	12,024	12,024	12,024	48,096

#### 나. '96 지원계획

- 사업량 : 1,180천두(한우 880, 젖소 300)
- 사업비 : 12,024백만원
  - 농가조사사례비 5,280백만원, 바-코드이표장착비 3,540, 전산입력제비용 3,204
- 재 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축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전산입력대상 : '96년도에 생산되는 한우·육우·젓소의 송아지
- 소 전산화 사업내용
  - 한육우·젓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이표를 장착하여 전산입력관리
  - 시·군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에서 소 전산화요원(인공수정사등)으로 하여금 농가별, 개체별 조사표를 작성·확인하여 우선 시·군 양정계 또는 농림수산 통계출장소 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하고 축산계 전산단말기 설치시에는 축산계에서 전산입력
  - 소 사육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원부완성 및 테이타 베이스 구축
  - 송아지생산시, 소 거래 및 도축등 변동사항 전산입력

#### (2)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 한육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하여 송아지 전산입력 완료후  
농가 조사사례비로 인공유사료 공급
- 소 전산화요원(인공수정사등) : 소 개체별 전수조사표 작성과 소에 바-코드이표장착을  
완료한후 이표장착비 지급
- 축협중앙회 : 농가 조사사례비로 인공유사료 공급 및 전산화요원에게 이표장착비 지급
-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가별, 개체별 전산입력에 필요한 전산입력제비용 지원

###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송아지 1,180천두(한우 880, 젖소 300)
- 지원조건 : 능특회계 보조 100%
- 농가조사사례비 : 한육우송아지 생산농가에 두당 6,000원 상당(농가도착도가격)의 인공유사료 공급
- 바-코드이표장착비 : 한육우·젖소 송아지에 소 개체 전수조사표 작성과 바-코드이표 장착시 소 전산화요원에게 두당 3,000원 지급
- 전산입력제비용 : 소 전산화에 필요한 재료비, 수용비등

### (4) 사업시행체계 [ 별표 1 참조 ]

- 집행기관 및 절차
  - 축협중앙회(지역축협) : 농가조사사례비 및 바-코드이표 장착비 지급
  - 한국중축개량협회 : 전산등록제비용 및 기구구입비 지급
- 사업추진절차
  - 한육우·젖소 송아지생산통보(사육농가 → 소 전산화요원) → 소 전산화요원 조사·확인(인공수정사등) → 조사·확인내용보고(소 전산화요원 → 시·군추진위) → 조사표 작성 및 바-코드이표장착(소전산화요원) → 농가조사사례비 및 바-코드이표장착비 지급결정서 통지(시·군 → 축협중앙회, 지역축협에 동시통지) → 농가조사사례비 및 바-코드이표장착비 전금(축협중앙회 → 지역축협) → 지역축협에서 개별계좌에 입금(소 전산화요원별) 및 인공유사료 공급요청(한육우 송아지생산농가) → 송아지 생산두수에 대한 인공유사료 공급(한육우 사육농가는 사료공급권 제시)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전국의 한우·육우·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2) 신청절차

- 농가에서 시·군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 소속 전산화요원에게 통보하여 농가별, 개체별, 축종별 조사표를 작성·확인한후 개체별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이표를 장착

## 라. 사업시행

### ○ 시행요령

- 관련 : 축통 51551-240('95.8.28)호의 소 전산화사업 세부시행요령에 의하여 추진
- ※ 소 전산화요원 교육교재('95.9.27~10.11일)의 세부시행요령에 의함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 소 전산화자료 활용 제한

-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획, 계획교배등 개량사업 및 방역자료와 부수적으로 도난 및 밀도살 근절등의 자료로서 축산진흥 목적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 ○ 개인의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소 전산화자료의 부당유출 금지

- 시장, 군수와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지급요령에 의거 보조금이 집행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금의 임의전용 및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 나. 보고

#### ○ 보조금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시·군(지역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는 97.1.10일까지 축협중앙회에 보고
- 축협중앙회는 '97.1.31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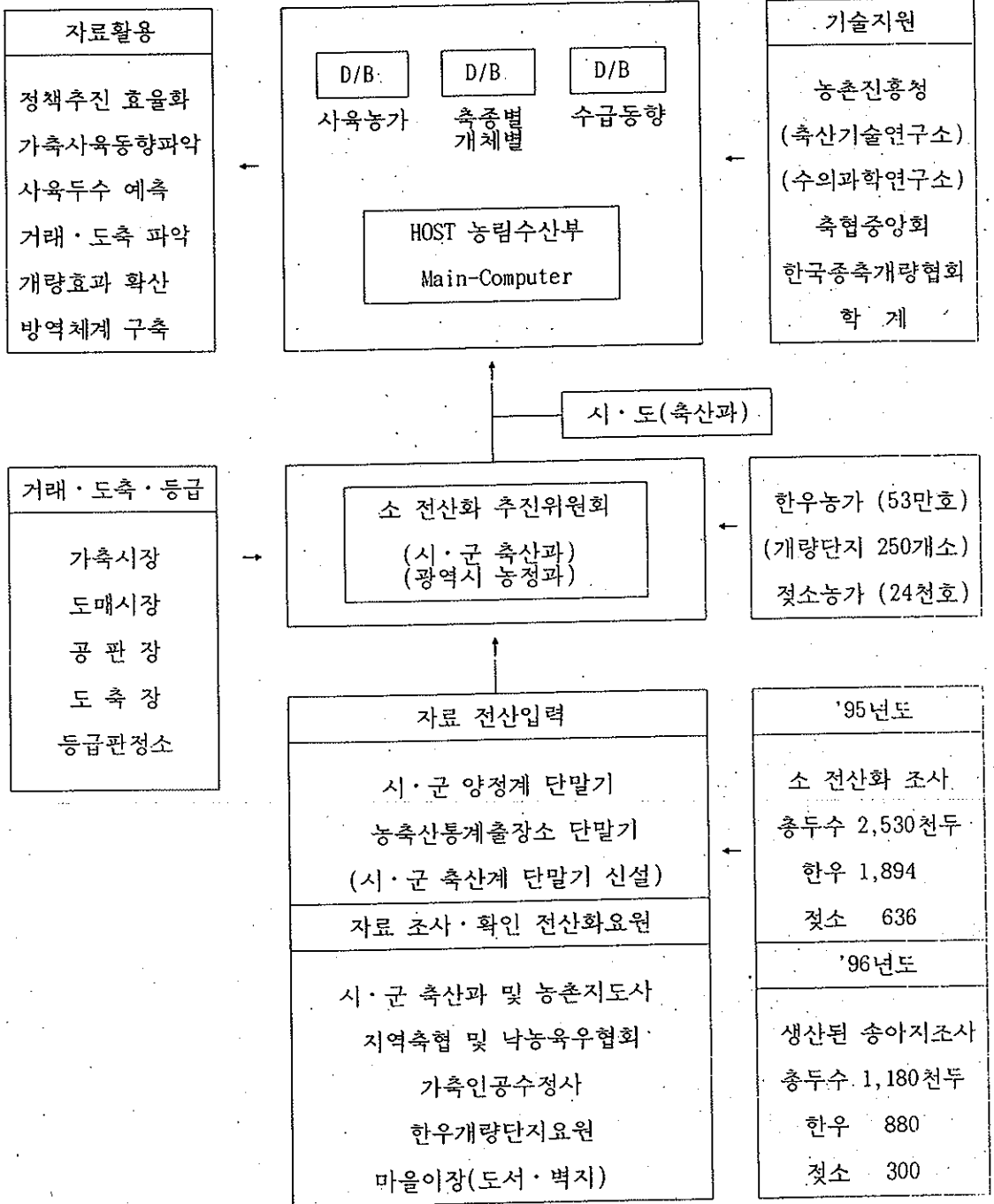
※ 사업완료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TEL 02-504-9436~7)  
농림수산부 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 (TEL 02-504-9436~7)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
- 시·군 : 각 시·군 축산과, 농산과(축산계)
- 기 타 : 축협중앙회 축산구조개선 1부(TEL 02-224-8413)  
한국종축개량협회(TEL 02-581-9301)

[ 별표 1 ]

0 사업추진체계도



소정액 생산 및 공급(공공)

1. 한우개량단지

가. 목적

- 순수개량 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
- 우량종우 생산기반 구축
-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

나. 추진방향

- 지역중심의 "개량단지"와 능가중심의 "개량능가" 병행 추진
- 참여능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로 개량 촉진
- 정확한 개체능력 조사 및 기록 유지
- 한우능력검정사업과 연계 추진

다. 투융자 계획

(1) 년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 업 량	200개소	250	250	250	250	250	250
사 업 비	63,865	16,047	7,488	7,488	7,488	44,928	147,304
	축발기금	63,865	16,047	7,488	7,488	7,488	147,304

(2) '96 지원계획

◦ 사업량

	단지(능가)운영	등록우 관리	인공수정	송아지 생산
개량단지	250개소	140 천두	126	70
개량능가	6,200호	60	54	31
계		200	180	101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 조 사 업			기금사업	계
농가지원비	단지운영비	장비구입비	사업관리비	
5,088	1,875	150	375	7,488

라. 사업추진 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사업시행(사업시행체제도 참조 : 별표 2)

(가)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개량단지

- 한국축육개량협회장은 근친교배 방지 및 등록우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우를 단지별로 3두씩 지정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  
단, 고등등록우는 개체별 최적종모우 지정

○ 한우개량농가

- 한국축육개량협회장은 심사결과 등록우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종모우를 개체별로 지정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기 타

- 단지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지정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
-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나) 농가지원

○ 개량자료 조사사례비

- 지역축협장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한 개량자료 조사표를 등록우 관리두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참여농가에 배부
- 참여농가는 등록우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경우 본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관할축협에 제출

- 축협담당자는 조사표가 지정종모우 교배등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후 해당농가에 인공유 100kg을 지급. 단,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는 10천원 해당액 어미소 사료를 추가로 지원

○ 종축등록비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농가에 무료로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실적에 의거 축협 중앙회장과 정산
- 등록단계별 등록표

기초등록우	혈통등록우	보통등록우	고등등록우
3천원/두당	4	5	7

○ 가축인공수정료

- 지역축협장은 관내 희망 수정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농가에 대한 전담 인공수정사로 지정
- 지역축협장은 점담수정사와 수정차순별(1차, 2차, 3차등) 수정료 계약
- 농가는 전담수정사에게만 수정 신청
- 전담수정사는 수정신청 농가에 수정을 실시하고 농가가 보유중인 "개량자료 조사표"의 종부사항란에 수정기록을 기재한후 1차 수정인 경우에는 계약된 수정료에서 12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농가로 부터 받음
- 전담수정사는 수정결과를 축협에 매월통보하고 1차수정 해당농가로 부터의 미징수 해당액을(두당 12천원) 지역축협과 정산

(다) 단지 및 개량농가 관리(단지조성현황 참조 : 별표 3)

- 단지지도원이 담당하던 송아지생산 농가에 대한 사료공급 업무는 관할 축협 사료 판매조직으로 이관하고 단지지도원은 심사·등록, 농가의 등록우에 대한 발육 및 번식능력 조사지도, 기록유지등 개량업무에만 전념
- 농가별, 개체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월령별, 세대별, 등록단계별로 번식 및 발육능력에 대한 기록 유지
- 지역축협은 등록우의 이동방지의 세대 축진을 위하여 노력

- 지역축협은 행정기관, 도 종축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등의 협조를 받아 년 1회 이상 단지내 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 실시
- 개량농가는 기존 개량단지 지도원들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단, 개량단지가 없거나 여유 지도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소 지도요원중 1인을 개량농가 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함
- 지역축협장은 개량농가에 대하여 매년 6월중에 선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농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축협중앙회장은 참여농가의 개량자료 조사편의를 위하여 리·동단위에 배치되는 우형기 및 체척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작성하여 시달

(라)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 예시

- 소규모 사육농가의 년차별 지원제외로 규모화 촉진

	'96	'98	2000	2002
지원제외규모	1두사육농가	2두사육농가	3두사육농가	4두사육농가

- 개량정도가 낮은 기초등록우의 년차별 지원제외로 개량촉진(단지조성 6년차부터)

	'96	'97	'98	2001
제외단지	'90조성단지 (36개소)	'91조성단지 (21개소)	'92조성단지 (79개소)	'95조성단지 (50개소)

- 혈통등록우중 보통등록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마) 지역축협 경제활성화 자금지원

- 대 상 : 한우개량단지관리조합
- 지도원배치 : 단지당 1~2명
- 지 원 액 : 지도원 1인배치 기준 100백만원
- 용 도 : 구·판매, 계통출하사업, 군납사업등 조합경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여 그 수익금을 지도원 인건비 재원으로 사용
- 용자 조건 : 무이자, 1년거치후 일시상환

마. 행정사항

(1) 보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사업 추진계획('96.2.15까지)
- 사업추진실적(매분기 익월말까지)

(2)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 (02-504-9431-3)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축산구조개선1부(02-224-8417)
- 시·도 : 축산과, 축협도지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지역축협

< 별표 1 >

## 개량자료조사표

가. 번식능력

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사육농가	주소										성명	
중부사항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분만상황	분만일자		성별		산차				분만난이도			

나. 발육능력

(단위: kg,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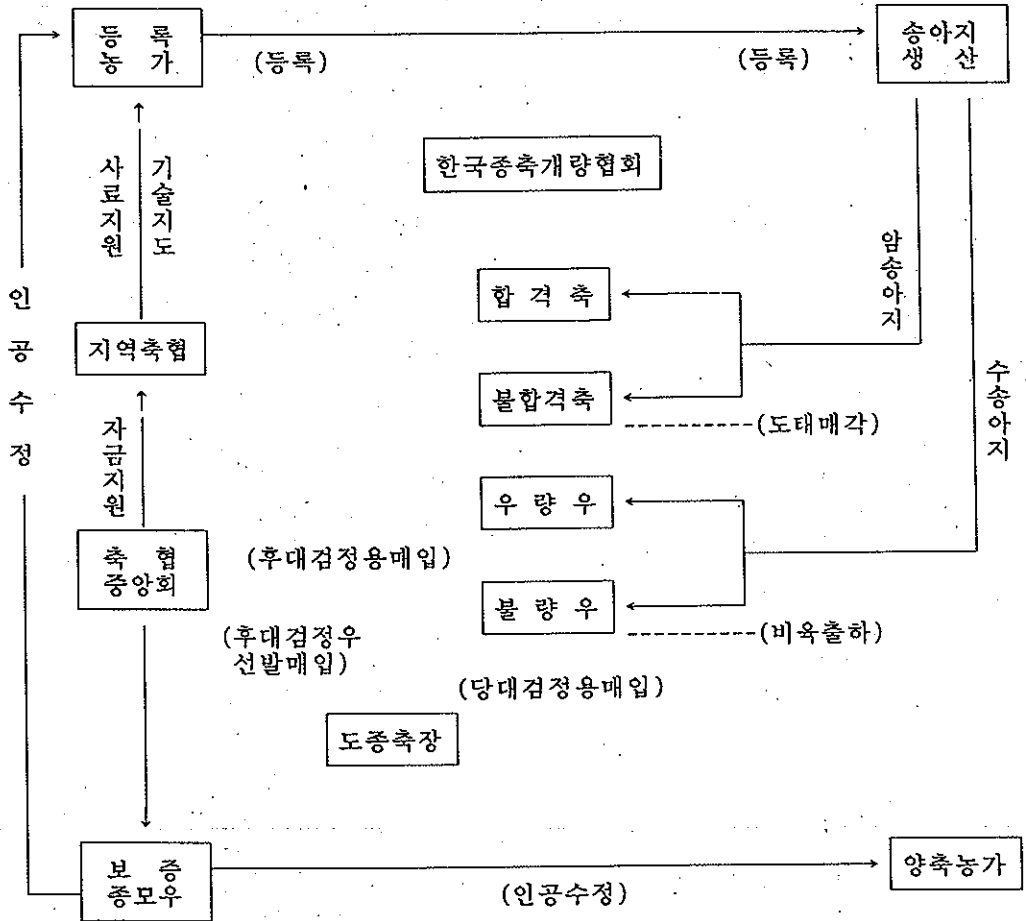
	분 만 우								송아지	
	이유시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24개월령	36개월령	48개월령	60개월령	생시	생시
조사일 (예정일)		( )	( )	( )	( )	( )	( )	( )		
체중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폭										
흉심										
요각폭										
근폭										
좌골폭										
고장										
흉위										
전관위 (우측)										

※ 소를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 등록번호 : 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써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관리번호 : 단지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써 이표를 확인하여 기재
- 생년월일 :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종부상황 : 처녀우는 최초 종부부터, 경산우는 최종 분만이후 금번 분만까지의 기간중 종부상황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기재하되 쌍태일 경우는 암2, 수2, 암·수 중 선택 기재
- 산 차 : 분만한 횟수를 기재 예) 초산, 2산, 3산, .....
- 분만난이도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조사일자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한 년월일을 기재  
(예정일) : 본 조사표 배부시 해당 등록우 대하여 농가에서 조사하여야 할 일자를 지역축협에서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우형기, 체척기, 캘리퍼, 줄자를 이용한 측정치를 기재
  - 초산우 : 이유시부터 분만시 월령까지 해당하는 월령의 측정치를 기재  
예) 26개월령에 분만했을 경우 이유시,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24개월령의 측정치가 기재되어야 함
  - 경산우 : 전번 분만부터 금번 분만까지 해당하는 월령의 측정치를 기재  
예) 26개월령에 초산을 하고 38개월령에 2산을 한 경우 :  
36개월령 측정치만 기재  
26개월령에 초산을 하고 35개월령에 2산을 한 경우 :  
분만직후 측정치를 36개월령 기재
- 송아지 : 분만한 송아지의 측정치를 기재하되 단태일 경우는 1칸만, 쌍태일 경우는 2칸 모두에 기재

# 사업시행체계도



### 연도별 단지조성 현황

		년   도   별			
		'79	'87	'88	'89
개소 도별	200	8	4	20	32
경 기	8	양평군 양동		포천군 창수 가평군 신석 설악	
강 원	21	양양군 강현	춘천시 동면 신북	홍천군 서석 정선군 임계	평창군 대화 화성군 대강 강릉시 청일
충 북	19	청원군 오창		옥천군 청산 충주군 신척 단양군 대강	괴산군 청천 진천군 초평
충 남	27	공주시 이인	예산군 신양	공주군 의당 청양군 정산	부여군 외산 홍성군 갈산 서산군 연곡 청양군 운곡 영양군 전동
전 북	20	장수군 천천		남원군 보절 진안군 귀치 순창군 부쌍	완주군 화산 정읍시 산외
전 남	33	고흥군 두원	보성군 울어 곡백	해남군 삼산 순천시 황전	강진군 량도 안동군 동전 장흥군 간양 화순군 이현 무안군 현경
경 북	36	의성군 금성		상주군 사별 의성군 보북 경주시 시동 문경시 산일	김천시 문성 영천시 소남 영주군 근양 봉성군 금수 영양군 금산
경 남	36	울산시 상북	합천군 합천	남해군 남면 밀양시 단장	하동군 양곡 진주시 대유 의령군 차령 산청군 거정 고성군 남곡 사천군 동상 거창군 북상



## 2. 한우정액 생산·공급

### 가. 목적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보증종모우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나. 추진방향

- 한우개량단지 및 검정기관 보유축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 생산
- 당대 및 후대검정을 통해 우량종모우 선발
- 한우개량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 선발된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및 정액생산·공급

### 다. 투융자계획

#### (1) 연차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종모우 관리두수)	1,818 두	100	100	100	100	600	2,818
사업비	56,977	9,738	8,079	8,079	8,079	48,474	139,426
축발기금 보조	56,977	9,738	8,079	8,079	8,079	48,474	139,426

#### (2) '96 지원계획

- 고정 투자 : 1,293백만원
- 기금사업비 : 6,786
- 계 : 8,079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협조기관 : 축산기술연구소(종축개량부), 도 종축장

(2) 사업시행(사업시행체계도 참조 : 별표 1)

(가) 당대검정

- 목표 : 당대검정 300두, 후보종모우 선발 40두
- 검정축 확보
  - 축산기술연구소(대관령, 남원) 및 한우개량사업소는 자체 생산우에서 확보
  - 도 종축장은 한우개량단지에서 매입 또는 자체 생산우에서 확보
- 검정계획의 수립·통보 및 조정
  - 검정기관은 검정개시일, 검정기간, 검정두수, 사료소요량 등을 포함한 검정계획을 축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95. 2.20까지)
  - 축협중앙회장은 후대검정에 공시할 후보종모우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당대검정기관의 검정개시시기 조정 가능
- 검정사료의 생산·공급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검정사료 소요량을 축협 청주배합사료 공장에 신청
  - 동 사료공장은 한우검정요령중 농후사료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기준을 준수한 검정사료를 일괄 생산·공급
- 검정방법 및 검정성적 통보
  - 검정방법은 한우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92-24호, '92. 6. 5)에 의함
  - 검정기관장은 검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개체별 검정성적을 축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

- 축협중앙회장은 개체별 검정성적을 종합분석하여 후보종모우 선발
- 선발된 후보종모우는 산지평균시세의 150% 수준에서 축협중앙회에서 매입

(나) 후대검정

- 목표 : 후보종모우 공시 40두, 후대검정 420두, 보증종모우 선발 20두
- 후대검정용 숫송아지(검정대상우) 확보
  - 한우개량사업소는 자체보유축 및 한우개량단지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로 확보
- 검정방법
  - 한우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92-24호, '92. 6. 5)에 의함
- 검정성적 평가 및 보증종모우 선발
  - 축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검정대상우의 성적을 후보종모우별로 종합 정리·분석
  - 가축개량협의회(한육우분과)에서 후보종모우별 검정성적을 심의·평가하여 보증종모우를 선발

(다) 정액생산 및 공급

-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축협중앙회장(한우개량사업소장)은 선발된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태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음.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및 공급
  - 축협중앙회장(한우개량사업소장)은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함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비경혹등) 생산여부등에 대한 현지조사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민원방지

(라) 당대 및 후대검정기관의 교체 추진

- 가축개량 종합대책(축영 51530-445, '93.12.23)에서 제시한 개량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확보등 노력을 경주
  - 축산기술연구소 : 후대검정 축사 건축
  - 한우개량사업소 : 우량 종빈우 확보
- 해당 기관의 검정축사 및 종빈우 완비시까지 현행체계 유지

마. 행정사항

(1) 보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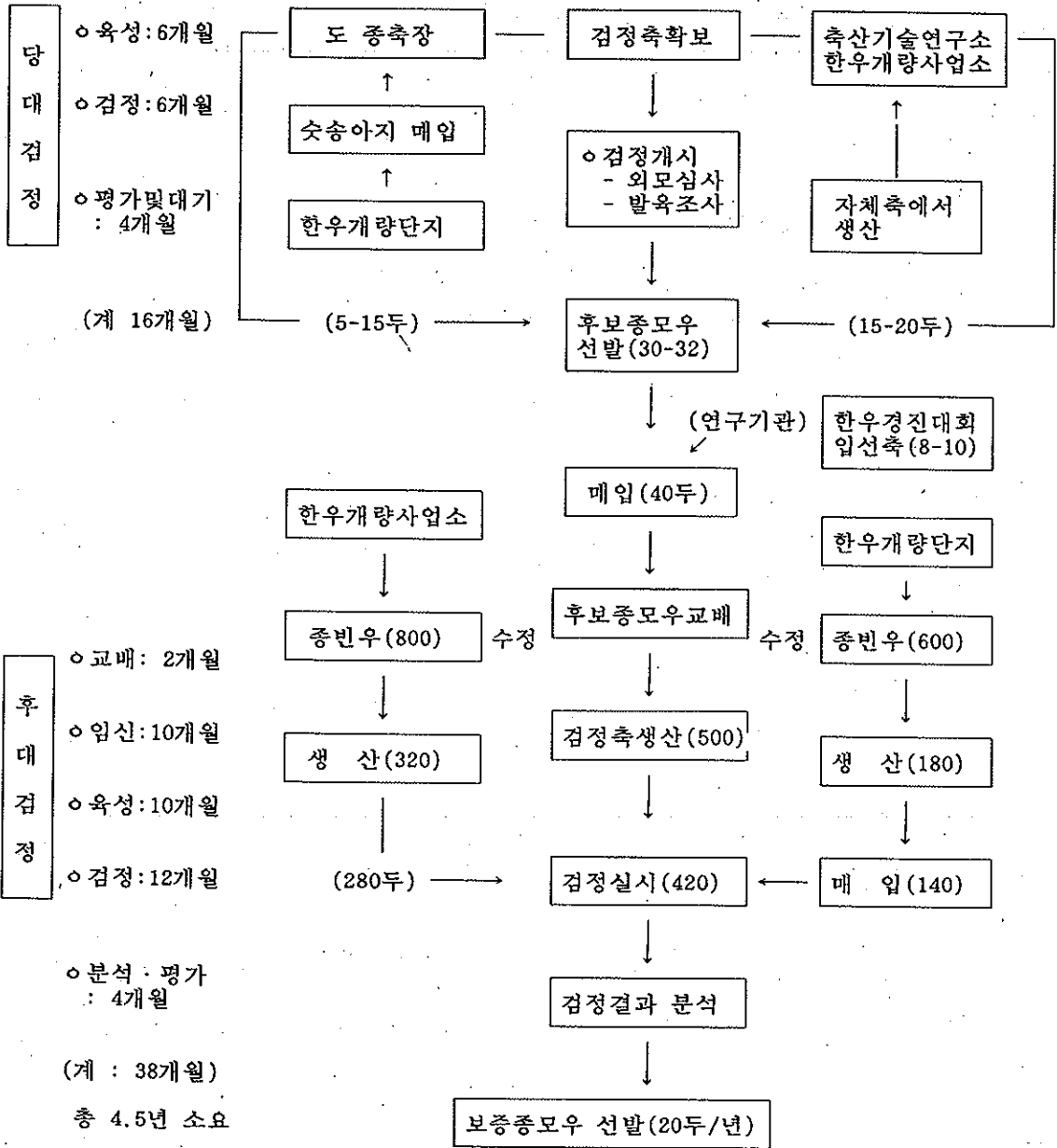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보고(매입완료후 1개월이내)
- 한우보증종모우 선발결과 보고(선발 완료후 1개월이내)

(2)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 축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0455-63-4665)
- 시·도 : 도 종축장

[별표 1]

## 단계별, 기관별 업무체계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 3. 젓소 정액 생산·공급

#### 가. 목적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보증종모우 도입 및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젓소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나. 추진방향

- 국내 우량종빈우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 생산
- 당대 및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종모우 선발
- 젓소 산유능력검정 사업과 연계 추진
- 도입 및 국내 선발로 확보된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및 정액생산·보급

#### 다. 투융자 계획

##### (1)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종모우 관리두수)	832두	30	30	30	30	180	1,132
사 업 비	37,159	4,912	4,129	4,129	4,129	24,774	79,232
축발기금 보 조	37,159	4,912	4,129	4,129	4,129	24,774	79,232

##### (2) '96 지원계획

- 고정 투자 : 1,576백만원
- 기금사업비 : 2,553
- 계 : 4,129

##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사업시행(사업시행체계도 참조 : 별표 1)

### (가) 당대검정

- 목표 : 후보종모우 15두 선발
- 당대검정우 확보 : 고능력 정액에 의한 국내생산과 Young bull도입으로 확보
- 후보종모우 선발
  - 선발된 후보종모우는 축협이 매입하여 유우개량사업소에서 관리
  - 후보종모우 관리는 젖소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92-25호, '92.6.5)에 의함

### (나) 후대검정

- 목표 : 보증종모우 3두 선발
- 검정낭우 확보 : 젖소산유능력 검정우를 활용하여 생산·확보
  - 축산기술연구소와 도 종축장은 각각 독립된 축군(Herd)으로 간주
- 검정방법 및 보증종모우 선발
  - 젖소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92-25호, '92.6.5)에 의함

### (다) 정액 생산 및 공급

-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축협중앙회장(유우개량사업소장)은 선발된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태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음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및 공급
  - 축협중앙회장(유우개량사업소장)은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함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송아지(이모색, 비경혹등) 생산여부등에 대한 현지조사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민원방지

마. 행정사항

(1) 보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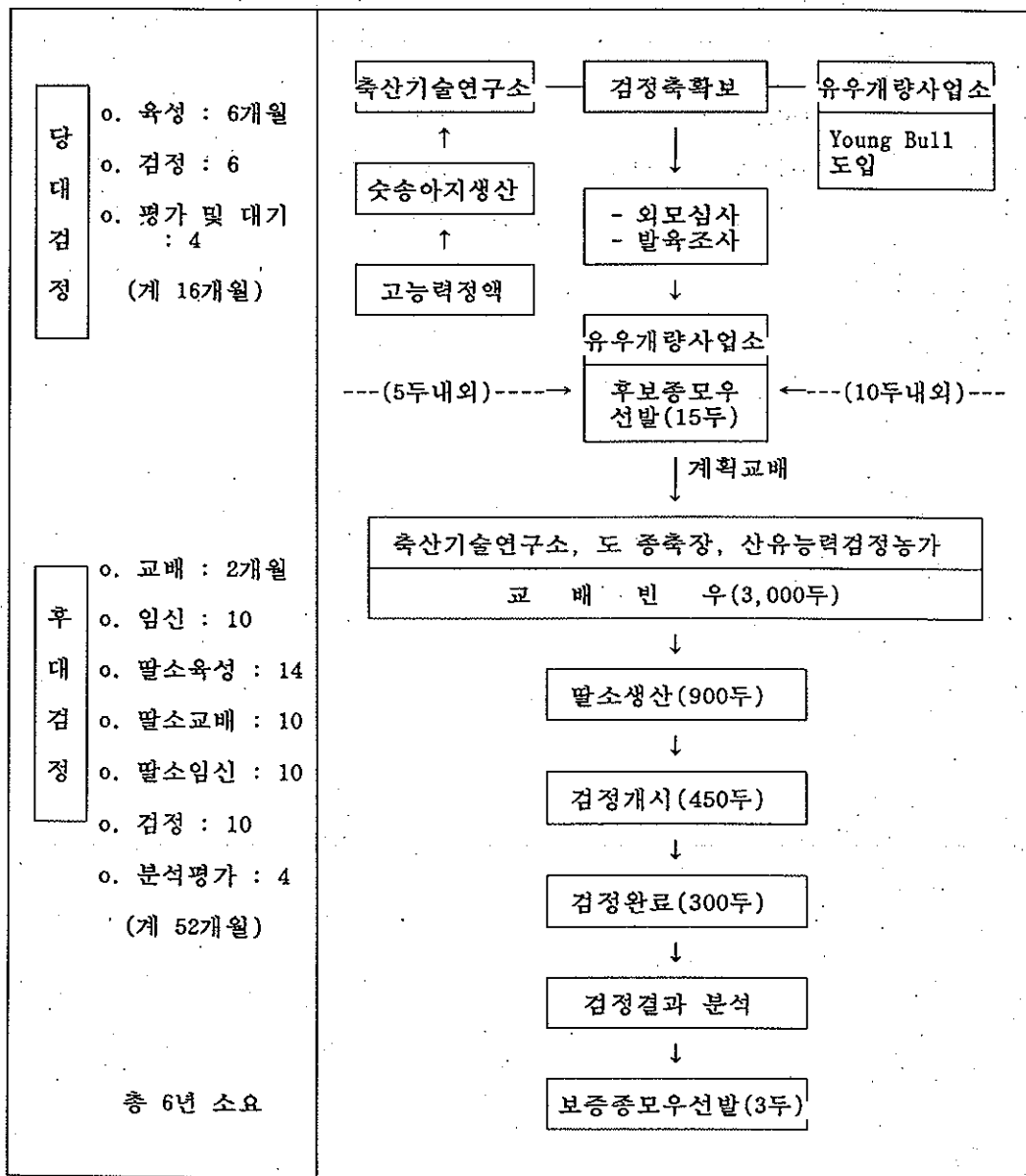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보고(매입완료후 1개월이내)
- 젖소보증종모우 선발결과 보고(선발 완료후 1개월이내)

(2)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유우개량사업소(02-359-9285)

[별표1]

## 사 업 시 행 체 계



※ 상기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가능

## 4. 가축인공수정

### 가. 목적

- 도서벽지등 수정여건이 불리한 지역농가에 가축인공수정 보급

### 나. 추진방향

- 민간수정사들이 기피하는 지역농가에 우선적으로 수정 실시
-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축협 소속 수정사의 인건비 지원

### 다. 투융자계획

#### (1)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명	86	37	37	37	-	
사 업 비	34,130	306	113	76	38	-	34,663
국 고	9,453						9,453
지 방 비	99						99
축발기금	21,093	306	113	76	38	-	21,626
자 부 담	3,485						3,485

#### (2) '96 지원계획

- 지역축협(성장조합)수정사 : 108백만원
- 울릉군 수정사 : 5백만원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협조 : 경북도 축산과)

(2) 사업시행

- 축협중앙회장은 수정사인건비 보조지원에 대한 세부집행 요령을 작성하여 관련 조합에 통보함
- 지급대상 : 지역축협(성장조합) 소속 가축인공수정사
- 지급항목 : 본봉, 직책수당, 협동수당,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년월차수당, 정기 및 특별상여금, 보건단련비, 중식비
- 보조비율 : 지급항목 합계액의 30%이내

마. 행정사항

(1) 보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사업 추진계획('95. 2월말까지)
- 자금집행 실적(매분기 익월말까지)

(2)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축산구조개선 1부(02-224-8417)

## 축산경영여건 개선 (공공)

### 1. '96 양축농가 해외연수

#### 가. 목 적

- 전문 양축농가등의 새로운 경영능력 배양과 양축의욕 고취
- 선진 축산국의 축산기술 도입·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나. 추진방향

##### (1)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전문분야별(축종별)로 양축농가등을 엄선하여 해외연수 실시
  - 육우(한우), 낙농, 양돈, 양계, 유통분야등
- 연수효과 증대를 위해 가급적 현지 교육기관 위탁 및 농가입주를 통한 현장 실습 추진
  - 연수기간 : 12일 ~ 15일

##### (2) 연수방법

- 연수대상국의 축산관련 업계(농가, 시험연구기관, 생산자단체등) 현장견학 실시 및 축산전문가와의 면담 추진
- 일정기간 연수국의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농가민박(Home stay) 연수등

### (3) 분야별 연수대상국 및 계획인원

분야별	연수대상국	연수계획인원	연수시기	연수기간	연수대상자
육우 1반 (한우) 2반 3반	일본	17명	5월	10일간	한우사육농가
	일본	17	6	10	"
	일본	17	7	10	"
낙농	덴마크	18	6	15	젖소사육농가
양돈 1반 2반	일본	18	7	10	양돈농가
	네덜란드	19	8	15	
산란계	네덜란드	19	8	15	산란계농가
유통반	덴마크	17	7	15	유통종사자
계	4개국	142			

주 1. 대상국 및 연수시기는 현지사정등에 의하여 변경 가능

### 다. 연수대상자 자격요건

- 양축농가 : 연수분야의 축종을 직접 자영하는 전업농
  - 한우 : 번식우(10두이상) 또는 비육우(50두이상)
  - 젖소 : 착유우 30두이상
  - 양돈 : 번식돈 50두이상, 비육돈 500두이상
  - 산란계 : 산란계 20천수 이상
  - \* '95.12말 현재 5년이상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로서 27세이상 50세미만인 농가를 우선으로 함.
- 유통종사자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관리자, 도축장 경영자(지육 관리반출 도축장 경영자 우선), 기타 축산물유통관련업체 관리자등
- 인솔자, 통역 : 반당 2~3명 (인솔자 1명, 통역 1~2명)
  - 농림수산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축협등 산하단체 임직원
- 기타
  - 시·도별 공무원 2~3명씩 각반에 포함

## 라. '96 세부 추진계획

### (1)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 기본계획수립, 대상자 확정등
- 축협중앙회 : 세부 실천계획 수립추진, 세부 연수일정 수립, 현지연수 실시, 사전·사후교육, 사후관리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서 작성등

### (2) 연수대상자 후보 추천

(가) 양축농가 : 각도에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후보농가를 선발,

'96.3.31까지 농림수산부로 추천(별지 제1호 서식)

- 도지사는 각도에 배정된 연수분야별 추천계획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연수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시·군 및 생산자단체(축협, 업종조합등)로부터 추천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별 연수대상자를 선정
- 각도는 해당도의 생산자단체에게 연수 후보자 추천을 의뢰(50% 내외)하여야 함.
- 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협업체등 전문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

(나) 유통종사자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에서 적격후보자를 선정하여 '96.3.31일

까지 축산정책과로 추천

(다) 축산시책 유공 공무원

○ 시·도는 축산담당 공무원 1-2명을 '96.3.31까지 농림수산부로 추천

- 각 도별로 배정된 연수반에 추천(별표 1)
- 단, 해외여행(연수)경비는 소속기관에서 전액부담

(라) 농림수산부는 각도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연수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연수단을 편성하고, 각도 및 축협중앙회에 통보(3월중) 하여 연수 추진

(마) 추천배정인원 : 별표 1

### (3) 인솔책임자 및 전문통역원

: 농림수산부장관이 당해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별표 2)

#### (4) 사전 국내교육 실시

- 주 관 : 축협중앙회
- 교육장소 : 축협중앙회 대회의실
- 교육시기 : 출국 이전 ('96. 4월중, 잠정)
- 교육대상 : 인솔자·전문통역원 및 연수대상자 전원
- 교육내용
  - 해외연수일정 설명 및 여행안내
  - '95 해외연수 결과 설명
  - 연수대상국의 축산업 소개
  - 수입개방대응대책, '96주요 축산시책
  - 연수후 축산경영개선 설계작성 및 연수결과 발표회 개최요령
  - 연수후 귀국보고서 작성 안내등

#### (5) 해외연수 출국준비

- 축협은 단체 해외여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행사 지정 활용 및 재외공관에 협조 요청
- 축협 및 인솔책임자는 연수단원에 대한 여권수속 및 출국준비 상황등을 수시 확인

#### (6) 자치회 구성

- 단체 해외연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자치회를 구성운영 (사전 국내교육직후)
  - 해외연수시 단체 활동상의 업무분담을 위해 총무, 간사등 필요한 임원을 선출

## (7) 귀국후 조치사항

- 인솔책임자는 귀국후 연수자별 개인 귀국보고서를 취합, 정리하여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업무 처리지침(농림수산부 총무 12148-3572, '95.4.27)"에 의거 인솔연수단의 귀국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 \* 축협중앙회에서 연수자별 개인 귀국보고서 양식을 준비
- 각도는 연수성과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수자로 하여금 농민교육, 직장교육 또는 반상회등을 통해 해외연수결과 발표 및 홍보

## (8) 소요예산 및 경비지급

### (가) 여행경비 지급기준

- 연수에 소요되는 직접연수비와 행정비를 지급
  - 직접연수비 : 숙박비, 항공료, 현지교통비, 교육등록비 및 안내비등
  - 행정비 : 현지업무 추진비(인솔자 및 통역원 경비 등)

### (나) 경비부담

- 축산농가, 유통중사자 : 축산발전기금 70%, 자부담30%
- 각도 공무원 : 소속기관에서 전액 부담
- 인솔책임자, 전문통역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부담
- 여권 발급수속 비용 및 준비금등은 전액 자부담(연수자 공통)

### (다) '96 소요예산액 : (311백만원, 잠정)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9) 기타 행정사항

- 각도는 해당 도별로 확정된 연수대상자가 중도에 연수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각 반별로 연수 후보자(1인이상)를 선정·확보
  - 연수대상자로 선정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연수포기서를 작성하여 관할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동 연수포기서 및 기 선정·확보된 연수 후보자를 재 추천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출국예정 2주전까지)
- \* 안내기관 : 농림수산부(축산정책과 504-9431), 축협중앙회(축산기술환경  
지원부 224-8467)

(별지 제1호 서식)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후보자 추천 보고

- 도별 총괄표 -

(○○ 도)

인 적 사 항			주민등록 번 호	연수 분야	영능 경력	지방비 확 보 여 부	비 고 ( 해외여행 여부등)
주소(소속)	직위(직급)	성 명					
							* 반드시 명기

- 첨부 : 1.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추천기관 : 축산과장) 1부.  
3. 도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의결서(자체서식/축산농가에 한함) 1부.  
4. 이력서 1부.  
5.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

##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신청서

인 적 사 항			주민등록 번호	연수 희망 분야	연수 희망 시기	영농 경력	자부 담 능력 여부	비 고
주 소	목장명	성명						

위와 같이 축산농가등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1996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추천서

1. 인적사항					
성명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연수분야	연수대상국		
주소			전화번호	(지역번호)	
최종출신학교		축산업종	축산경력		
2. 축산경영규모					
경지규모		축종	사육두수	축사	기타
논	평	한·육우	두	평	
밭	평	젖소	두		
사료포	ha	돼지	두		
초지	ha	닭	천수		
3. 현지조사 결과					
조사자 소속			직성명	(인)	
피추천자	품행				
	지역사회 기여도				
추천자	종합 의견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연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1996 년      월      일					
추천관	도	축산과장	성명	(인)	
농림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서 약 서

주소(소속) :

주민등록번호 :

직 성 명 :

위 본인은 '96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사업의 연수자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해외연수자 준수사항(별표 3)을 완전 숙지하여 여행시 철저히 준수하고, 귀국시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2. 해외연수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여행중 불미스런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위반통보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1996년 월 일

서약자 :

(인)

농 립 수 산 부 장 관 귀하

< 별표 1 >

'96 분야별 해외연수 후보자 배정계획

	육 우			낙농	양 돈		산탄계	계
	1 반	2 반	3 반		1 반	2 반		
경 기	1	2	1	3(1)	2(1)	2	2	13(2)
강 원	3(1)	1	2	2(1)	1	2	1	12(2)
충 북	1	3(1)	2	1	2	1	2(1)	12(2)
충 남	2	1	2	3(1)	2(1)	2	1	13(2)
전 북	1	2(1)	2	1	2	2(1)	2	12(2)
전 남	2	1	1	1	3(1)	1	3(1)	12(2)
경 북	3(1)	2	1	2	1	2	2(1)	13(2)
경 남	1	2	2(1)	2	2	2(1)	2	13(2)
제 주	1	1	2(1)	1	1	2(1)	1	9(2)
소 계	15(2)	15(2)	15(2)	16(3)	16(3)	16(3)	16(3)	109(18)
인솔책임자 ·통역요원	2	2	2	2	2	3	3	16
합 계	17(2)	17(2)	17(2)	18(3)	18(3)	19(3)	19(3)	125(18)

주 1』 ( )내는 지방공무원 배정인원으로 외서에 포함

주 2』 유통반 (17명)

- 유통종사자 (13명) : 도매시장관리자 5명, 도축장경영자등 8명
- 시·도 공무원(2명) : 대전광역시 1명, 광주광역시 1명
- 인솔·통역 (각1명) : 농림수산부에서 선정

< 별표 2 >

인솔책임자, 전문통역요원 추천계획

		시기	연수국	인솔책임자(단장)		전문통역요원	
				추천기관	추천인원	추천기관	추천인원
육우	1 반	5월	일 본	축산정책과	1 명	한국축육개량협회	1 명
	2 반	6	일 본	축산물유통과	1	축협중앙회	1
	3 반	7	일 본	가축위생과	1	축산기술연구소	1
낙농	1 반	6	덴마크	축산경영과	1	축산기술연구소	1
양돈	1 반	7	일 본	축산경영과	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
	2 반	8	네덜란드	가축위생과	1	한국축산학회 대한양돈협회	1 1
양계	산란계	8	네덜란드	축산정책과	1	농경연 대한양계협회	1 1
유 통 반		7	덴마크	축산물유통과	1	축협중앙회	1
합계	8반				8		10

\* 통역 요원은 외국어에 능통하면서 축산관련 전문용어를 완벽히 숙지하여야 정확한 통역이 가능하므로 해당연수반에 관련된 축산전문 산하기관·단체임직원, 교수중에서 적격자를 선발

\* 연수시기 및 대상국은 소속기관, 단체등 사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별표 3 >

## 해외연수자 준수사항

### 1. 연수자 의무이행사항

- 해외연수자는 본 연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목적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수자는 인솔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며, 연수종료후 지체없이 귀국한다.
- 여행경비중 국내여권수속 비용과 준비금은 자력으로 부담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연수도중 연수를 포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하는 경우 지급된 여행경비(여비)를 반납한다.

### 2. 신변 안전조치

- 현지 도착즉시 주관기관 및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연수계획과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연수기간중 발생할 질병·사고등에 대비하여 보험등 가입, 재외공관과의 상시 연락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연수종료후 귀국시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가. 목적

돼지고기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므로서 수출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양돈업 경영유도

### 나. 추진방향

- 돼지고기 품질개선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효과 증진
- 돼지고기 가공업체 육성

### 다. 투융자계획

#### (1) 연차별투자계획

	'96	'97	'98	'99-2004	합 계
지원액(백만원)	16,600	19,109	21,974	131,846	189,529
구매계획(천두)	1,154	1,327	1,526	9,156	13,163

#### (2) '96지원계획

- 지원액 : 16,600 백만원

###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관 : 농림수산부

(2) 사업현황

(가) 사업기간 : 1년

(나) 사업내용

- 육가공업체에서 규격돈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의 40% 융자

(다) 지원대상

- 돼지고기품질개선지원사업의 단지(조합)과 계약체결을 한 육가공업체

(라) 지원기준 및 조건

-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돼지를 구매한 경우
  -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의 지원기준 검사결과(별지제3호서식)에 해당하는 돼지
- 용자조건 : 연리 5%, 1년거치후 일시상환

(3) 사업신청

(가)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신청
- 협회는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농림수산부에 제출

(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가공 및 수출계획
  - 전년도 규격돈 구매실적(돼지고기품질개선 지원기준에 적합한돼지)
  - 단지·조합별 원료돼지 구매공급 계약사항
  - 잔여육처리계획등
- 수출실적 증명서류

(4)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절차

- 농림수산부 장관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장이 제출한 업체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대상자별로 사업비를 배정한다.



## 마.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및 보고

- 한국육류수출입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구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도록 농림수산부에 요청한다.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30까지 (사)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2.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규격돈 구매(돼지고기 품질개선지원사업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기준 검사결과사본 첨부) 및 수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보고하고, 동 협회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협회에 보고, 협회는 2.10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 (2)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 02-504-9434-5
- (사)한국육류수출입협회 : 02-515-2306

[ 별지 제1호 서식 ]

규격돈 구매자금 집행실적

○ 규격돈 구매 및 자금집행실적

	규격돈 구매계획 및 실적				자금 집행 실적					
	금 분 기		누 계		금 분 기			누 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용 자	자 담	계	용 자	자 담	계
계	두				백만원					
수출 수용										
내수 수용										

○ 분기별 수출실적

	1/4분기	2/4	3/4	4/4	누 계
물 량(톤)					
금 액(천\$)					

### 3. 축산경영 상담 및 지도

#### 가. 목 적

축산업이 단지화, 계열화 되고 사육규모가 전업화 되는데 필요한 경영기법과 기술을 보급하고 가축질병 및 가축분뇨처리 기술지도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상담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함.

#### 나. 기본방향

- 축종별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양축경영 상담 및 지도로 농가애로사항 해소
- 기존사업에 대한 축산경영의 새로운 기법을 보급하여 축산경영 및 관리기술의 향상
- 신규사업(축산단지, 가축계열화사업)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로 사업대상자 엄선

#### 다.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축협 중앙회
  - 협 조 : 시, 도지사, 농촌진흥청 및 축산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
- 사업기간 : 1년간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 지원내용 : 축산경영 상담 및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여비, 회의비, 수당, 수용비 등 필요한 경비
- 예산액 : 300백만원(재원 : 축산발전기금)

#### 라. 세부실시요령

##### (1) 경영개선상담 및 지도를 위한 조직 구성

- 축종별 전담반구성 : 한우반, 젖소반, 양돈반, 양계반
- 기존사업 상담반 구성
  - 학계, 연구기관, 축협, 축산관련민간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반을 구성하되 4-5명을 1조로하여 각반별로(축종별, 기능별) 사업량에 따라 1-3개조로 편성
  - 반별 구성원은 축산경영, 사양기술, 시설 및 환경, 가축질병, 방역 등 각 분야에 상당한 경력과 학식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 신규사업 심사반(축산단지, 가축계열화 사업)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위탁하여 동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 (2) 사업 대상자 및 추진요령

### (가) 사업대상자

- '95년도에 축산경영상담지도 대상자로 선정된자(축산단지 우선실시)로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자 (축산단지 우선실시)
- 자금지원을 받아 축산단지 조성이 완료된자 및 전업규모 양축농가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 신규사업도 축산단지, 가축계열화사업을 하고자하는자

### (나) 사업 추진요령

- 주요 축산경영상담 및 지도 내용
  - 축산경영에 관한 상담 및 기법지도
  - 종축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에 관한 내용
  - 축사시설 및 축산분뇨처리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가축질병 및 방역에 관한 기술지도 상담등
  -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투자타당성, 입지여건, 참여농가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 사업추진방법

-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방문하여 상담 지도
- 농가소집교육, 세미나 및 연찬회등 개최
- 국 내.외의 성공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활용
- 경영상담 결과를 기록하여 종합분석 평가
- 신규사업 계획서 심의는 시·도, 시장군수, 농촌진흥청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세부 추진요령을 농림수산부에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시행(세부사항은 축산단지 요령 참조)

### ○ 협 조

- 축종별 상담 지도사업 구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현지 출장지도 등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 (다) 기 타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 세부요령을 작성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 가축방역사업 (공공)

###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 가축혈청검사사업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사전예방
- 우수동물용예방약의 생산·공급으로 전염병발생 방지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

### 2. 추진방향

- 만성·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억제정책 추진
  -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및 검진·도태사업 확대
- 국가방역체제에서 자율방역체제로 점차 유도
  - 예방주사사업은 점차 축소하고 혈청검사사업 강화
  - 인수공통전염병 및 중식단계전염병에 대한 사업 확대실시
-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 방안 추진
  - 방역요원에 대한 의식전환, 사명감 고취로 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 년차별 시도시험소 기술인력 양성과 정밀검사장비 확보
  - 해외 선진국의 가축위생분야 견학 확대 추진
- 가축위생검사와 가축방역사업의 연계추진
  - 도축장, 도계장 출하가축의 혈청검사에 의한 가축질병의 추적조사로 양성축 출하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관내 종돈장·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업무강화로 선진방역 대책 강구
  - 가축질병예찰업무의 활성화 강력 추진
  - 관내 공수의의 적극 활용으로 예찰업무의 활성화 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약 개발보급 및 품질향상으로 가축방역 효과 거양
  - 동물약품제조업의 약사감시 및 품질관리 강화

(\* 사업별 지원율은 '97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3.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 가. 가축방역사업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예방주사	7,110천두	3,243,000	2,021,250	1,221,750	
검진	706	364,720	312,360	52,360	
기생충구제	3,420	670,000	427,000	243,000	
혈청검사사업등	734천건	600,590	600,590	-	
오제스키병검색사업	160천두	304,000	272,000	32,000	
긴급방역비	-	100,000	100,000	-	
유방염 방제사업	60	190,000	190,000	-	
계	12,190	5,472,310	3,923,200	1,549,110	
살처분보상	2,650두	1,348,000	1,348,000	-	
진도견방역	24천두	30,000	21,000	9,000	
제주도 부루세라병 특별검진	70천두	420,000	140,000	280,000	
가축위생시험소지원	14대, 2기	503,000	251,500	251,500	장비14대 소각로2기
합계	12,286	7,773,310	5,683,700	2,089,610	

## 나.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1) '96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

(단위 : 천두, 천수, 천원)

구분	측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예방주사	우	탄저·기종저(혼합)	1,500	180,000	73,500	106,500
		전염성 비기관염	270	418,500	283,500	135,000
		소 유행열	250	512,500	350,000	162,500
		소 아까바네병	90	319,500	220,500	99,000
	돈	돼지콜레라	1,000	110,000	42,000	68,000
		일본뇌염	1,350	540,000	330,750	209,250
		돼지전염성위장염	550	247,500	154,000	93,500
		돼지오제스키병	600	390,000	252,000	138,000
	견	광견병	1,500	525,000	315,000	210,000
	소 계			7,110	3,243,000	2,021,250
검진및 진단액 구입	우	우 결핵	360	288,000	252,000	36,000
		부루세라(MRT)	120	48,000	42,000	6,000
		부루세라(Plate)	32	14,400	11,200	3,200
		우 간질	50	10,000	5,000	5,000
	계	추백리	144	4,320	2,160	2,160
소 계			706	364,720	312,360	52,360
기생충 구제	우	진드기	2,600	130,000	91,000	39,000
		간질	120	120,000	84,000	36,000
	꿀벌	꿀벌응애류	700	420,000	252,000	168,000
가축혈청검사사업 등			734	600,590	600,590	-
오제스키병 검색사업			160	304,000	272,000	32,000
유방염 방제사업			60	190,000	190,000	-
긴급방역비			-	100,000	100,000	-
합 계			12,190	5,472,310	3,923,200	1,549,110

(가) 시·도민, 에빙주시 건설 및 구제사업량(총량)

(단위: 천부)

구분	총계	에빙주시				주서				건설				구제				기타	합계	비고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신지		
시울	107.7	84.4	0.4	-	-	1	2	1	-	80	2.3	0.2	2	0.1	-	-	-	15	2	-	4		
부산	141.7	123.5	2.5	-	-	15	55	8	3	40	4.2	2	2	0.2	-	-	-	10	2	-	2		
대구	100.2	67.7	12	1	0.5	7	17	6	3	21	10.5	4.8	3	0.3	1.5	1	-	17	2	0.5	2.4		
인원	168.2	142	8	2	2	28	28	10	8	45	13	7	4	0.5	0.5	1	-	4	2	1	4.2		
광주	52.7	33.7	4.2	2	1.5	4	9	3	2	7	5.1	2	2	0.1	-	1	-	1	8	2	0.5	2.4	
내진	49	25.7	0.9	2	1	4	9	2	2	4	5.1	1	2	0.1	1	1	-	1	13	2	2.2		
경기	1586	1199	250	25	20	100	150	150	180	309	254	133	41	8	62	7	-	20	45	12	18	38	
강원	1079.1	408	100	30	8	48	40	20	22	130	36.5	20	8	3	1.5	4	500	20	92	10	5	7.6	
충북	559	439	90	30	8	48	60	20	24	120	40	20	6	1	9	4	-	4	53	8	4	11	
충남	1566.4	1352	240	35	42	300	350	110	115	150	107.4	51	18	2.4	33	3	-	4	50	12	8	33	
전북	866.5	702	130	20	7	150	120	30	45	180	53.5	22	6	2.5	19	4	-	10	75	10	5	11	
전남	1658	799	157	35	34	150	170	70	81	120	40	22	6	2	4	6	700	30	60	10	4	15	
경북	996.3	780	300	45	50	50	100	60	62	100	62.3	36	7	3.8	7.5	8	-	10	117	10	5	12	
경남	1416	809	160	37	30	80	200	50	68	170	60	36	10	2	4	8	400	15	105	10	5	12	
제주	1203.7	145	35	6	-	15	40	10	15	24	12	3	-	6	1	2	1000	3	36	4	0.5	3.2	
수리업 (총량)	3.5	-	-	-	-	-	-	-	-	-	-	-	-	-	-	-	-	-	-	-	-	-	3.5
계	11551	7110	1500	270	250	90	1000	1350	550	600	1500	706	360	120	32	144	50	2600	120	700	98	60	160



(나) 서도빌 에빌주사 기전 및 부재사업 국비예산

구분	총계	내		주		시		집		전		국		기타	기타	기타	
		소계	가정지 (혼합)	사업 장비 기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소 유 행 업
시	32566.617631.6	19.6	-	-	42	490	280	16800	875	140	700	35	-	-	5400	1860	6800
부	37157.5	26127.5	122.5	-	630	13475	2240	1260	2170	1400	700	70	-	-	3600	1860	3400
내	32834.5	14637	588	1050	294	4165	1680	1260	4637.5	3360	1050	105	22.5	100	6120	1860	4080
인	53300.5	31878	882	2100	1176	6860	2800	3360	6582.5	4900	1400	175	1400	1400	1440	1860	3000
관	25633.812378.8	205.8	2100	2100	168	2205	840	840	2245	1400	700	35	100	100	2880	1860	1500
대	22647.110117.1	44.1	2100	1400	168	2205	560	840	1550	700	700	35	100	100	4680	1860	3740
경	59380	326630	12250	26750	4200	36750	42000	75600	64890	93100	15100	2800	930	700	14000	16200	54000
강	244068.5123956	4900	31500	14000	2016	9800	5600	9240	18272.5	514000	2690	1050	22.5	400	17500	33120	9300
충	244711	167706	4410	31500	2016	14700	5600	10080	16985	14000	2100	350	135	400	2800	19080	7440
충	496455	340760	11760	36750	12600	85750	30800	48300	43635	35700	6300	840	495	300	2800	18000	11160
진	269380	173320	6370	21000	6300	29400	8100	18900	19060	15400	2100	875	285	400	7000	27000	9300
진	368373	235613	7693	36750	6300	41850	19600	21420	18800	15400	2100	700	60	600	24500	21000	21600
강	377952	5254240	14700	47250	2100	24500	16800	26040	29892	52520	2450	1330	112.5	800	7000	43120	9300
강	330870	253610	7840	38850	3360	49000	14000	28560	30200	25200	3500	700	60	800	14000	10500	37800
제	97700	32585	1715	6300	630	9800	2800	6300	5040	4415	2100	2100	15	200	35000	2100	15960
추	240590	-	-	-	-	-	-	-	-	-	-	-	-	-	-	221090	20500
(중)	3533820	2021250	73500	283500	42000	530750	154000	252000	312360	252000	42000	11200	2160	5000	84000	252000	190000
계	2021250	220500	220500	350000	220500	330750	154000	252000	312360	252000	42000	11200	2160	5000	91000	252000	190000

(단위: 원천)

(나) 시·도별 애병주서 검진 및 구제사업 자방비예산

(단위: 원천)

구분	총계	에 방 주 서				검 진				구			유 방법 제 사 업	유 방법 제 사 업				
		진 지 기증액 (혼합)	진 지 성미 가관 입	소 유 체 업	소 이 깨 바 내	소 해 라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소 해 라 일 본 외	
시 울	16306.4	11776.4	28.4	-	-	68	310	170	-	11200	130	20	100	10	-	-	-	800
부 신	20492.5	17372.5	177.5	-	-	1020	8525	1160	690	5600	320	200	100	20	-	-	-	400
내 구	15000.5	9658	852	500	325	220	2035	1920	690	2940	782.5	480	150	30	22.5	100	-	480
인 천	24219.5	20762	1278	1000	1300	1100	1904	4340	1840	6300	1057.5	700	200	50	7.5	100	-	840
평 주	10100.2	6990.2	238.2	1000	975	1100	272	1395	460	980	410	200	100	10	-	100	-	480
대 전	9805.9	5620.9	63.9	1000	650	880	272	1395	460	560	325	100	100	10	15	100	-	440
강 기	242290	199960	17750	12500	13000	16500	6800	23250	41400	43260	17930	13300	2200	800	930	700	-	7600
강 원	113746.5	73524	7100	15000	6500	4800	3264	6200	5060	16200	3122.3	2000	400	300	22.5	400	7500	1520
충 북	112879	93824	6390	15000	25350	8800	3264	9300	5520	16800	2935	2000	300	100	135	400	-	2200
충 남	240475	213640	17040	17500	27300	11000	20400	54250	26450	21000	7035	5100	900	240	495	300	-	6600
진 북	136015	109380	9230	10000	13000	7700	10200	18600	10350	25200	3435	2200	300	250	285	400	-	2200
진 남	181187	140927	11147	17500	22100	13200	10200	26350	11730	16800	3360	2200	300	200	60	600	10500	3000
경 북	186682.5	147960	21300	22500	32500	17300	3400	15500	14260	14000	5242.5	3600	350	380	112.5	800	-	2400
경 남	192400	149150	11360	18500	19500	15400	5410	31000	15640	23660	5160	3600	500	200	60	800	6000	2400
세 주	47510	21215	2485	3000	-	-	1020	8200	3450	3360	1115	300	-	600	15	200	15000	640
계	1549110	1221730	106500	134000	162500	90000	68000	209250	138000	210000	52360	36000	6000	3200	2160	5000	39000	32000
																		168000

(리) '96 계속형경직시용 전단액류 원민 생산내역(수의과회연구소)

(단위 : 두, 수분)

진 단 액 명	'95생산 이원분	'96 생산량	보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뉴렛수명	35,200	39,200															
실업저하증	35,200	39,200															
김분류법	35,200	39,200															
비이코부리즈비	35,200	39,200															
주액리	35,200	39,200															
추형정기견지업	35,200	39,200															
웨지약품	19,600	19,600															
위축성비임	19,600	19,600															
원순어업	19,600	19,600															
채지미이코프로즈 비법	19,600	19,600															
채지파보	19,600	19,600															
패지PARS	6,900	6,900															
요네방	9,800	9,800															
유간정	50,000	50,000															
부부세리방CF항원	3,500	3,500															
계	319,000	403,400		6,900					396,500								

(미) '96 관수예방약품 원민 생산내역 (수의과회연구소)

(단위 : 두, 수분)

예 방 약 명	생산량	집 정 기 준 원 보 인 기 준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제역 항원	50,000																
우역백신	19,000																
우질해 진단액(PPD)	5,000	5,000															
부부세리진단액(Tube)	15,000				5,000												
8년(EI,LSA용)	10,000			3,000													
오에방 항원	10,000			3,000													
단저진장소형정	2,000			1,500													
헵토스피어리항원	150,000			70,000													
추백리진단액	2,500			2,500													
패지판테라형광항체	500				500												
광진형 광항체	2,000				2,000												
살모넬라 그루헨정(0형)	2,000				2,000												
살모넬라 그루헨정(H형)	1,500				1,000												
아니코리즈미 항원	1,500				1,000												
계	213,500		5,000	77,300	7,500	20,000	500	80,000	80,000	10,000	13,000						

① 예방주사

○ 탄저·기증저 혼합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0.4	19.6	28.4	48	○ 실시대상 : 6개월 미만의 송아지와 임신말기의 소를 제외한 각종 소 전두수  ○ 실시기간 : 2-4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70원 · 국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농번기를 피하여 2월부터 조기 실시토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종식단계에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것. - 충남, 경북은 '94년 발생지역을 중심 으로 집중실시
부산	2.5	122.5	177.5	300	
대구	12	588	852	1,440	
인천	18	882	1,278	2,160	
광주	4.2	205.8	298.2	504	
대전	0.9	44.1	63.9	108	
경기	250	12,250	17,750	30,000	
강원	100	4,900	7,100	12,000	
충북	90	4,410	6,390	10,800	
충남	240	11,760	17,040	28,800	
전북	130	6,370	9,230	15,600	
전남	157	7,693	11,147	18,840	
경북	300	14,700	21,300	36,000	
경남	160	7,840	11,360	19,200	
제주	35	1,715	2,485	4,200	
계	1,500	73,500	106,500	180,000	

○ 소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추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가 우선실시 - 전기업 양축농가 및 낙농가 제외 (자율방역유도)  ○ 실시기간 : 9-10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1,5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소 전염성비기관염 : 바이러스성 설사(BVD) 및 파라인푸루엔자 (PI <sub>3</sub> ) 혼합백신을 사용할 것.
부산					
대구	1	1,050	500	1,550	
인천	2	2,100	1,000	3,100	
광주	2	2,100	1,000	3,100	
대전	2	2,100	1,000	3,100	
경기	25	26,250	12,500	38,750	
강원	30	31,500	15,000	46,500	
충북	30	31,500	15,000	46,500	
충남	35	36,750	17,500	54,250	
전북	20	21,000	10,000	31,000	
전남	35	36,750	17,500	54,250	
경북	45	47,250	22,500	69,750	
경남	37	38,850	18,500	57,350	
제주	6	6,300	3,000	9,300	
계	270	283,500	135,000	418,500	

○ 소 유행열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가의 사육우 - '95 감염우 제외
부산					
대구	0.5	700	325	1,025	○ 실시기간 : 4-5월 - 모기 출현전에 실시 완료
인천	2	2,800	1,300	4,100	
광주	1.5	2,100	975	3,075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2,0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대전	1	1,400	650	2,050	
경기	20	28,000	13,000	41,00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강원	10	14,000	6,500	20,500	
충북	39	54,600	25,350	79,950	○ 기 타 - 대양축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사업계획 대상이외 우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적극 유도
충남	42	58,800	27,300	86,100	
전북	20	28,000	13,000	41,000	
전남	34	47,600	22,100	69,700	
경북	50	70,000	32,500	102,500	
경남	30	42,000	19,500	61,500	
제주					
계	250	350,000	162,500	512,500	

○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가의 사육우 - '95 감염우 제외 ○ 실시기간 : 4-5월 - 모기 출현전에 실시 완료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3,5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대양축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사업계획 대상이외의 소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적극 유도
부산					
대구	0.2	490	220	710	
인천	1	2,450	1,100	3,550	
광주	1	2,450	1,100	3,550	
대전	0.8	1,960	880	2,840	
경기	15	36,750	16,500	53,250	
강원	8	19,600	8,800	28,400	
충북	8	19,600	8,800	28,400	
충남	10	24,500	11,000	35,500	
전북	7	17,150	7,700	24,850	
전남	12	29,400	13,200	42,600	
경북	13	31,850	14,300	46,150	
경남	14	34,300	15,400	49,700	
제주					
계	90	220,500	99,000	319,500	

○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1	42	68	110	○ 실시대상 : 영세 양축농가 우선실시 ○ 실시기간 - 1차(춘계) 3-5월 - 2차(추계) 9-11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6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다두사육양돈장은 자율방역토록 계도 - 종돈 및 자돈거래시에는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토록 적극계도
부산	15	630	1,020	1,650	
대구	7	294	476	770	
인천	28	1,176	1,904	3,080	
광주	4	168	272	440	
대전	4	168	272	440	
경기	100	4,200	6,800	11,000	
강원	48	2,016	3,264	5,280	
충북	48	2,016	3,264	5,280	
충남	300	12,600	20,400	33,000	
전북	150	6,300	10,200	16,500	
전남	150	6,300	10,200	16,500	
경북	50	2,100	3,400	5,500	
경남	80	3,360	5,440	8,800	
제주	15	630	1,020	1,650	
계	1,000	42,000	68,000	110,000	



○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구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2	490	310	800	○ 실시대상 : 인구조밀지역 및 뇌염 발생상재지, 도시인근 양돈장을 위주로 실시 ○ 실시방법 - 모든 우선실시 - '95년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접종하고, 기타는 건강돈에 1차접종하고 3주후에 2차접종 ○ 실시기간 : 4-5월 - 모기출현전에 실시완료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350원 (국비70%, 지방비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사람의 뇌염예방을 위하여 추가 증량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조치할 것.
부산	55	13,475	8,525	22,000	
대구	17	4,165	2,635	6,800	
인천	28	6,860	4,340	11,200	
광주	9	2,205	1,395	3,600	
대전	9	2,205	1,395	3,600	
경기	150	36,750	23,250	60,000	
강원	40	9,800	6,200	16,000	
충북	60	14,700	9,300	24,000	
충남	350	85,750	54,250	140,000	
전북	120	29,400	18,600	48,000	
전남	170	41,650	26,350	68,000	
경북	100	24,500	15,500	40,000	
경남	200	49,000	31,000	80,000	
제주	40	9,800	6,200	16,000	
계	1,350	330,750	209,250	540,000	

○ 돼지전염성위장염(TGE)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1	280	170	450	○ 실시대상 : 임신 모돈
부산	8	2,240	1,360	3,600	
대구	6	1,680	1,020	2,700	○ 실시기간 : 9-11월 - 모돈에 2회접종(분만 4주전에 1차, 2주전에 2차접종)
인천	10	2,800	1,700	4,500	
광주	3	840	510	1,350	
대전	2	560	340	900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400원 (국비70%, 지방비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경기	150	42,000	25,500	67,500	
강원	20	5,600	3,400	9,000	
충북	20	5,600	3,400	9,000	
충남	110	30,800	18,700	49,500	○ 기타 - 일제방역누락 모돈은 자율방역 토록 적극 유도
전북	30	8,400	5,100	13,500	
전남	70	19,600	11,900	31,500	
경북	60	16,800	10,200	27,000	
경남	50	14,000	8,500	22,500	
제주	10	2,800	1,700	4,500	
계	550	154,000	93,500	247,500	

○ 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돼지오제스키병 발생 신고농장과 인접농장을 우선지원하여 모든·후보돈에 접종하고, 임신모돈 에는 2회 접종 ○ 실시기간 : 2-5월(인천·경기·충남 도 이외의 시도는 별도 조치시달시까지 시행보류)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600원 (국비70%, 지방비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돼지 신규입식농가에서는 오제스키병 비발생농장을 확인후 구입하여 입식토록 계도 - 의심축 발견시 조기 신고한 농가 및 검사결과 양성축을 도태한 농장 과 그 인접농장을 우선 지원할 것 이며, 지원대상 농장은 가축위생시 협소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할 것.
부산	3	1,260	690	1,950	
대구	3	1,260	690	1,950	
인천	8	3,360	1,840	5,200	
광주	2	840	460	1,300	
대전	2	840	460	1,300	
경기	180	75,600	41,400	11,700	
강원	22	9,240	5,060	14,300	
충북	24	10,080	5,520	15,600	
충남	115	48,300	26,450	74,750	
전북	45	18,900	10,350	29,250	
전남	51	21,420	11,730	33,150	
경북	62	26,040	14,260	40,300	
경남	68	28,560	15,640	44,200	
제주	15	6,300	3,450	9,750	
계	600	252,000	133,000	390,000	

○ 광견병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80	16,800	11,200	28,000	○ 실시대상 : 경기, 강원외 휴전선 인근지역(사육중인 소에도 접종) 및 인구조밀지역 집중 실시  ○ 실시기간 - 1차(춘계 : 3-5월) : 70% - 2차(추계 : 9-11월) : 30%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을 감안 년중 실시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300원 (국비70%, 지방비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예방주사 접종증명서 발급 및 표찰부착 철저이행 - 예방주사 일제접종기간을 설정, 공고하고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
부산	40	8,400	5,600	14,000	
대구	21	4,410	2,940	7,350	
인천	45	9,450	6,300	15,750	
광주	7	1,470	980	2,450	
대전	4	840	560	1,400	
경기	309	64,890	43,260	108,150	
강원	130	27,300	18,200	45,500	
충북	120	25,200	16,800	42,000	
충남	150	31,500	21,000	52,500	
전북	180	37,800	25,200	63,000	
전남	120	25,200	16,800	42,000	
경북	100	21,000	14,000	35,000	
경남	170	35,700	23,800	59,500	
제주	24	5,040	3,360	8,400	
계	1,500	315,000	210,000	525,000	

② 전염병 검진

○ 우결핵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2	140	20	160	○ 실시대상 - 젖소 : 1세이상 전두수 - 한육우 : 종축기관등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 ※ 경기도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상 젖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되, 발생하였던 농장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할 것. ○ 실시기간 : 2-11월 ○ 소요경비 - 진단액(PPD)구입비 : 두당 600원 (국비 100%)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50%, 지방비50%) ○ 기 타 - 전년도의 검진누락우에 대하여 우선실시할 것. - 경기도는 격년제 실시를 지양하고 점차로 전수검진할수 있도록 기술 인력 및 장비확보에 노력할 것.
부산	2	1,400	200	1,600	
대구	4.8	3,360	480	3,840	
인천	7	4,900	700	5,600	
광주	2	1,400	200	1,600	
대전	1	700	100	800	
경기	133	93,100	13,300	106,400	
강원	20	14,000	2,000	16,000	
충북	20	14,000	2,000	16,000	
충남	51	35,700	5,100	40,800	
전북	22	15,400	2,200	17,600	
전남	22	15,400	2,200	17,600	
경북	36	25,200	3,600	28,800	
경남	36	25,200	3,600	28,800	
제주	3	2,100	300	2,400	
계	360	252,000	36,000	288,000	

○ 부루세라(M.R.T)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2	700	100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대상 : 관내집유장에 납유하는 목장의 착유우</li> <li>○ 실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2-3월</li> <li>- 2차 : 6-7월</li> <li>- 3차 : 10-11월</li> </ul> </li> <li>○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액구입비 : 1회용 300원 (국비100%)</li> <li>- 실시비 : 건당 100원 (국비50%, 지방비50%)</li> </ul> </li> <li>○ 실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회수 : 3회</li> <li>- 건당 10두 정도의 우군 원유를 기준 (목장당 시료1건 채취 지양)</li> <li>- 유처리장, 집유장의 집유시 시료 채취</li> <li>-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 검사를 혈청응집반응검사(Plate)로 최종판정</li> <li>- 타시도 소재 목장에서 양성 및 의양성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도에 통보</li> <li>- 보고받은 시도에서는 추적검사 실시</li> </ul> </li> <li>○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스퇴르유업(주)에서 검사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li> <li>-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의거(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전두수 이동제한 조치하고 신속히 개체별 검사 실시</li> <li>- 제주도는 개체별로 로스뱅크응집반응법 또는 시험관응집반응법 실시</li> </ul> </li> </ul>
부산	2	700	100	800	
대구	3	1,050	150	1,200	
인천	4	1,400	200	1,600	
광주	2	700	100	800	
대전	2	700	100	800	
경기	44	15,400	2,200	17,600	
강원	8	2,800	400	3,200	
충북	6	2,100	300	2,400	
충남	18	6,300	900	7,200	
전북	6	2,100	300	2,400	
전남	6	2,100	300	2,400	
경북	7	2,450	350	2,800	
경남	10	3,500	500	4,000	
제주	-	-	-	-	
계	120	42,000	6,000	48,000	

○ 부루세라(Plate)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1	35	10	45	○ 실시대상 - 젖소 : M.R.T 검진결과 및 타시·도 검진결과 통보된 양성 또는 의양성 발생 목장의 전두수 - 한육우 : 종축기관등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
부산	0.2	70	20	90	
대구	0.3	105	30	135	
인천	0.5	175	50	225	○ 소요경비 - 진단액구입비 : 두당 250원 (국비 100%)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50%, 지방비50%)
광주	0.1	35	10	45	
대전	0.1	35	10	45	○ 실시요령 - M.R.T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우에 대하여는 추적조사하고, 동거가축 또는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개체별 (한육우 포함) 검사를 실시 - 유산등 부루세라병의 의심우군에 대하여도 개체별로 검사 실시 - 제주도는 육지반출우 및 양성우 동거가축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하고 음성우에 한하여 반출용 검사증명서 발급 (제주도고시 제1654호)  ○ 기 타 - 파스퇴르유업(주)에서 검사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기	8	2,800	800	3,600	
강원	3	1,050	300	1,350	
충북	1	350	100	450	
충남	2.4	840	240	1,080	
전북	2.5	875	250	1,125	
전남	2	700	200	900	
경북	3.8	1,330	380	1,710	
경남	2	700	200	900	
제주	6	2,100	600	2,700	
계	32	11,200	3,200	14,400	

○ 우간질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농가 사육우 우선 실시  ○ 실시요령 - 시도가축위생시험소장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우간질 검진을 위하여 관내공수의와 합동으로 검사할 것.  - 검진결과 양성우에는 구제약품 우선 배정  ○ 실시기간 : 4-10월  ○ 소요경비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 50%, 지방비50%)
부산					
대구	1	100	100	200	
인천	1	100	100	200	
광주	1	100	100	200	
대전	1	100	100	200	
경기	7	700	700	1,400	
강원	4	400	400	800	
충북	4	400	400	800	
충남	3	300	300	600	
전북	4	400	400	800	
전남	6	600	600	1,200	
경북	8	800	800	1,600	
경남	8	800	800	1,600	
제주	2	200	200	400	
계	50	5,000	5,000	10,000	



○ 추백리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종계장 자체검진을 실시한 종계장의 종계에 대하여 시도가축위생 시험소에서 확인검사 실시 (추백리방역실시요령 기준)  ○ 실시기간 : 3-11월  ○ 소요경비 - 실시재료비 : 수당 30원 (국비50%, 지방비50%)  ○ 기타 - 시도지사는 매월 검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미 실시 종계장 은 고발, 종계사용을 금지하는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 종계장별 진단액 구입상황 및 사용 실적을 철저히 점검·확인할 것. - 시·도지사는 위생시험소의 종계장별 확인검사상황을 수시 점검할 것.
부산					
대구	1.5	22.5	22.5	45	
인천	0.5	7.5	7.5	15	
광주	-	-	-	-	
대전	1	15	15	30	
경기	62	930	930	1,860	
강원	1.5	22.5	22.5	45	
충북	9	135	135	270	
충남	33	495	495	990	
전북	19	285	285	570	
전남	4	60	60	120	
경북	7.5	112.5	112.5	225	
경남	4	60	60	120	
제주	1	15	15	30	
계	144	2,160	2,160	4,320	

③ 기생충 구제

○ 소진드기 구제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우 (전기업양축농가제외)  ○ 실시기간 : 4-10월  ○ 실시요령 - 진드기 서식지 및 바베시아병, 타일레리아병 다발지역 우선 실시 - 진드기 출현시기에 맞춰 시·도 단위로 구제일정을 정하여 일제히 실시 - 실시간격 : 10-20일 - 축체에 분무 또는 약욕 실시 - 특히, 제주도는 전기업농장에 대하여 진드기구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강화  ○ 구제약품비 : 두당 50원 (국비70%, 지방비30%)  ○ 도지사는 타이레리아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계도할 것.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500	17,500	7,500	25,00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00	24,500	10,500	35,000	
경북					
경남	400	14,000	6,000	20,000	
제주	1,000	35,000	15,000	50,000	
계	2,600	91,000	39,000	130,000	

○ 우간질 구제

(단위 : 천두, 천원)

구제	계획량	소요 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소간질검진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를 우선하고, 간질감염농후지역에서 사육중에 소에 투여  ○ 실시기간 : 4-10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1,000원 (국비70%, 지방비30%)
부산					
대구					
인천	2	1,400	600	2,000	
광주	1	700	300	1,000	
대전	1	700	300	1,000	
경기	20	14,000	6,000	20,000	
강원	20	14,000	6,000	20,000	
충북	4	2,800	1,200	4,000	
충남	4	2,800	1,200	4,000	
전북	10	7,000	3,000	10,000	
전남	30	21,000	9,000	30,000	
경북	10	7,000	3,000	10,000	
경남	15	10,500	4,500	15,000	
제주	3	2,100	900	3,000	
계	120	84,000	36,000	120,000	

○ 꿀벌응애류 구제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15	5,400	3,600	9,000	○ 실시대상 - 개량양봉농가의 봉군 ○ 실시기간 : 3~4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600원 (국비60%, 지방비40%) ○ 기타 - 시도지사는 한국양봉협회(시도지회)와 협의하여 구제효과가 우수한 약품을 선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토록 하고 배정방법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양봉농가에 대한 약품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꿀벌응애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애류 구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것. - 월동직전·직후에는 반드시 구제토록 할 것. - 약품사용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부산	10	3,600	2,400	6,000	
대구	17	6,120	4,080	10,200	
인천	4	1,440	960	2,400	
광주	8	2,880	1,920	4,800	
대전	13	4,680	3,120	7,800	
경기	45	16,200	10,800	27,000	
강원	92	33,120	22,080	55,200	
충북	53	19,080	12,720	31,800	
충남	50	18,000	12,000	30,000	
전북	75	27,000	18,000	45,000	
전남	60	21,600	14,400	36,000	
경북	117	42,120	28,080	70,200	
경남	105	37,800	25,200	63,000	
제주	36	12,960	8,640	21,600	
계	700	252,000	168,000	420,000	

## 다. 가축혈청검사사업

### (1) 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적기 실시 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

### (2) 사업시행기관

- 수의과학연구소 : 진단액등 생산 및 기술지도
- 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 (3) 검사대상질병 : 17종

- 닭 : 뉴캐슬병(ND) · 산란저하증(EDS'76) · 감보로병(IBD) · 전염성기관지염(IB) · 추백리(SP) · 마이코플라즈마병(MG)(6종)
- 돼지 : 단독(SE) · 위축성비염(AR) · 일본뇌염(JE) · 마이코플라즈마병(MG) · 돼지파보(SP)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6종)
- 소 : 요네병(JD) · 유행열(EF) · 아까바네(AD) · 이바라기(ID) · 휴산병(CD) (5종)

### (4) 실시방법

#### ① 닭 혈청검사

##### ○ 검사대상선정

- 검사를 요청한 양계농가를 우선하고, 종계장에서 직접채혈 또는 이곳으로부터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가검물 채취 : 매월 균분 실시

② 돼지 혈청검사

○ 검사대상선정

- 혈청검사를 요청한 양돈장을 우선 검사하고, 종돈장이나 검사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에서 직접 採血 또는 이곳으로 부터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중에서 채혈하되 1개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가검물채취 : 매월 균분실시

③ 소 혈청검사

- 모기매개질병(유행열, 아까바네, 이바라기, 휴산병) 예방을 위하여 시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수의과학연구소에서 항체가 검사 실시
- 요네병은 관내 유우를 대상으로 국내 분포조사를 실시

(5) 사 업 량 : 연 734,300건(중계장·종돈장 사업량 258,600건 포함)

○ 닭 : 430,200건

- 시험소 :  $39,200\text{수} \times 6\text{종} = 235,200$   
 $32,500\text{수} \times 6\text{종} = 195,000$ (중계장)

○ 돼지 : 264,500건

- 시험소 :  $39,200\text{두} \times 5\text{종} + 4,900\text{두} \times 1\text{종} = 200,900\text{건}$   
 $31,800\text{두} \times 2\text{종} = 63,600\text{건}$ (종돈장)

○ 소 : 39,600건

- 연구소 : (모기매개질병 4종)  $5,000\text{두} \times 4\text{종} = 20,000\text{건}$   
- 시험소 : (요네병)  $19,600\text{두} \times 1\text{종} = 19,600\text{건}$

# 가축혈청검사사업

(단위: 수, 두, 천원)

구분	가위 시 축 생 소 협 소	사업량				사업비(국비)			비고
		닭	돼지	소	계	진단액 생산비	재료비	계	
서울	1개소	800	800	400	2,000		1,860	1,860	
부산	1	800	800	400	2,000		1,860	1,860	
대구	1	800	800	400	2,000		1,860	1,860	
인천	1	800	800	400	2,000		1,860	1,860	
광주	1	800	800	400	2,000		1,860	1,860	
대전	1	800	800	400	2,000		1,860	1,860	○시협소별 사업량 - 닭: 800
경기	6	4,800	4,800	2,400	12,000		11,160	11,160	- 돼지: 800 (PRRS는 100두)
강원	5	4,000	4,000	2,000	10,000		9,300	9,300	- 소: 400
충북	4	3,200	3,200	1,600	8,000		7,440	7,440	○실시재료비
충남	6	4,800	4,800	2,400	12,000		11,160	11,160	(두당)
전북	5	4,000	4,000	2,000	10,000		9,300	9,300	- 닭: 6종 각 200원 = 1,200원
전남	5	4,000	4,000	2,000	10,000		9,300	9,300	- 돼지: 6종 각 200원 = 1,200원
경북	5	4,000	4,000	2,000	10,000		9,300	9,300	- 소 요네병 : 200원
경남	5	4,000	4,000	2,000	10,000		9,300	9,300	
제주	2	1,600	1,600	800	4,000		3,720	3,720	
수의연						220,090		220,090	
계	49	39,200	39,200	19,600	98,000	220,090	91,140	311,230	

(6) 소요예산 : 311,230천원

① 진단액등 생산 : 수의과학연구소 : 220,090천원

- 닭 : 6종 각 39,200수분 99,960천원
  - 진단액 : 5종(ND, EDS, IBD, IB, MG) : 2,500원
  - 1종(추백리 SP) : 50원
  - 시험소용 99,960천원
  - 39,200수×2,550원=99,960천원
- 돼 지 102,550천원
  - < PRRS > : 24,150천원
  - 시험소용 : 4,900두×3,500원=17,150천원
  - 검역소용 : 2,000두×3,500원=7,000
  - < 5종 : AR, MG, SE, JE, SP > : 78,400천원
  - 시험소용 : 39,200두×2,000원=78,400천원
- 소 : 17,580천원
  - 요네병 : 9,800천원
    - 시험소용 : 19,600두×500원=9,800
  - 우간질 : 7,500천원
    - 150원×50천두=7,500천원
  - 부루세라용 CF 항원 : 280천원
    - 80원×3,500두=280



② 실시재료비 : 91,140천원

○ 닭 : 47,040천원

· 시험소 :  $200\text{원} \times 6\text{종} \times 39,200 = 47,040\text{천원}$

○ 돼지 : 40,180천원

· 시험소 :  $\left\{ \begin{array}{l} 200\text{원} \times 5\text{종} \times 39,200 = 39,200 \\ 200\text{원} \times 1\text{종(PRRS)} \times 4,900 = 980\text{천원} \end{array} \right.$

○ 소 : 3,920천원

- < 요 네 병 > : 3,920천원

· 시험소 :  $200\text{원} \times 19,600 = 3,920\text{천원}$

- < 4종 : EF, Ibaraki, Chusan D, Akabane > :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실시

(7) 검사결과 조치사항

- 혈청검사성적을 조사분석하여 면역역가·백신접종 적기여부·접종방법의 개선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농장에 즉시 통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할 것.
-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채혈한 혈청의 검사 및 분석결과는 출하농장이 타 시·도일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도에서 방역지도 및 예찰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가 통보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요네병 양성우에 대하여는 동질병의 특성을 홍보, 자진 도태토록 유도

(8) 모기매개질병(유행열, 아까바네, 이바라끼, 돼지일본뇌염)

-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전남북, 경남북등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시험소별 시료채취 건수를 조정하여 '96. 3. 15까지 해당 시험소에 통보
- 해당 시험소장은 시료를 채취하여 '96. 3말까지 수의과학연구소에 송부할 것.
-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소유행열등 모기매개질병 4종에 대한 항체가를 검사하여 '96. 4. 30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9) 기 타

- 각 시·도지사는 닭, 돼지, 소의 혈청검사용 진단액 추가 공급분을 활용하여 관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양측능가에 대한 홍보강화 및 양측능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혈청검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축위생시험소별로 혈청검사 전문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진단기술 배양에 주력토록 조치하고, 검사실시에 필요한 장비등을 년차적으로 보강토록 할 것.
  - 실험실 상시인원을 필히 배치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을 기할 것.
 (실험실요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강구 추진)
-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우간질 진단액과 부루세라병 검사용 CF항원을 생산하고, 당부에 생산 보고할 것.

(10) 보 고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당부에 보고 할 것.

【 별지제1호서식 】

'96. ( )분기 가축 혈청검사 결과보고

( 도)

축종	병류별	년간계획 두수	검 사 실 적		검 사 결 과			검사방법	비 고
			농장수	검사두수	양성	음성	계		
									* 비고란 은 양성 판정항체 가 기록

## 라. 돼지오제스키병 검색사업

### (1) 검진사업

#### ① 목 적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오제스키병 감염축을 색출·도태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오제스키병 발생상황 조사와 출하농장 추적조사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추진코자 함.

#### ② 사업실시기관

- 검사기관 : 가축위생시험소(본소, 지소 포함)
  - 오제스키병 감별진단키트를 시도별로 구입하여 검사기관에 배정
- 기술지도기관 : 수의과학연구소
  - 수의과학연구소는 검전에 따른 기술지도 실시

#### ③ 검사대상

-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과 검사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중 사육농장이 확인될 수 있는 돼지

#### ④ 검사실시방법

- 종돈장 :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별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여 년2회 검사실시(상반기 : 5-6월, 하반기 : 9-10월)
- 허가·등록된 양돈장 : 허가 또는 등록된 양돈장 또는 기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년 2회 검사실시
- 도축장 출하돼지중 농장별 20두 기준으로 검사 실시

⑤ 검사대상두수 (별표1 참조)

- 종돈장 : 50,000두
- 허가·등록 양돈장 및 추적조사 : 60,000두
- 도축장 출하돼지 일제조사 : 50,000두
- 계 : 160,000두

⑥ 검사결과 조치

- 각 시도지사는 종돈장과 양돈장에 대한 검사실시결과 양성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즉시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규정된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 인근지역과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동 질병방역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할 것.
-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검사는 매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 대상축은 출하농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확인·선정토록 할 것이며, 각 시도지사는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집계 보고하고, 양성축 검색시에는 추적조사 결과를 즉시 보고할 것이며,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 종돈장과 양돈장 검사실시결과는 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할 것이며, 양성축 판정시에는 즉시 보고할 것.

⑦ 기 타

- 시도지사는 도축검사 신청서(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에 돼지 출하농장의 기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도축업무와 연계하여 출하농장에 대한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1]

## 돼지오제스키병 검색사업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획량	검 사 대 상			사 업 비			비 고
		종돈장	양돈장및 추적조사	도축장출하 폐지 조사	국 비 (진단키트 구입비)	지방비 (재료비)	계	
서 울	4,000			4,000	6,800	800	7,600	○ 감별진단키트 구입비(두당) : 1,700원 (국비)
부 산	2,000			2,000	3,400	400	3,800	
대 구	2,400		400	2,000	4,080	480	4,560	○ 실시재료비 (두당) : 200원(지방비)
인 천	4,200	400	800	3,000	7,140	840	7,980	
광 주	2,400		400	2,000	4,080	480	4,560	
대 전	2,200		200	2,000	3,740	440	4,180	
경 기	38,000	16,000	16,000	6,000	64,600	7,600	72,200	
강 원	7,600	600	4,000	3,000	12,920	1,520	14,440	
충 북	11,000	2,000	5,000	4,000	18,700	2,200	20,900	
충 남	33,000	12,000	16,000	5,000	56,100	6,600	62,700	
전 북	11,000	3,000	4,000	4,000	18,700	2,200	20,900	
전 남	15,000	7,000	4,000	4,000	25,500	3,000	28,500	
경 북	12,000	4,000	4,000	4,000	20,400	2,400	22,800	
경 남	12,000	4,000	4,000	4,000	20,400	2,400	22,800	
제 주	3,200	1,000	1,200	1,000	5,440	640	6,080	
계	160,000	50,000	60,000	50,000	272,000	32,000	304,000	

[ 별지 제1호 서식 ]

### 도축장 출하돈 일제 검사결과

(            시 )  
(            도 )

검사기관 (시험소별)	출하지역 (시·군별)	검사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음 성	계	

주 : 양성축에 대하여 농장명, 사육자명, 소재지, 사육두수, 양성두수를  
별도 명기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 '96. (    )분기 종돈장·양돈장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            시 )  
(            도 )

종돈장 (양돈장)	성 명	주 소	사육두수	검사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 마. 유방염 방제사업

### (1) 목 적

- 유대지급 차등가격제(세균 및 체세포수) 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유방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 추진으로 각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 우유 생산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2) 실시기간 : '96. 1 - 12월

(3) 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4)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두,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60,000	180,000	○ 실시재료비(CMT시약등): 두당 3,000원

(5) 대상농가 : 집유장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등외(75만이상/ml당)판정농가

- 시도지사는 등외판정 농가를 파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별로 사업물량 조정

(6) 세부 실시요령

- 체세포수 등외판정 농가의 착유우에 대한 개체별, 분방별로 CMT 및 체세포수 검사 실시
  - 체세포수 50만개/ml이상을 유방염 감염 의심우로 판정
- 개체별 검사결과 유방염 의심우에 대한 분방별로 원인균 분리
- 원인균에 대한 약제감수성시험 실시
- 유방염 감염우, 감염분방, 원인균 및 약제시험결과를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자가치료토록 지도

(7) 표준화사업

-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검사장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대한 표준화검증 및 체세포수 측정기기 표준화용 세포표준용액(Standard Cell Sol.)제조.
- 사업주체 : 수의과학연구소
- 소요예산 : 10,000 천원

(8) 기 타

- 시도지사는 분기실적을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 체세포검사장비가 없는 가축위생시험소는 집유장 장비를 활용하고 유업체에서 유방염 원인균 및 감수성시험을 실시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9) 사업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실시 재료비	표준화 사업	계
서부대	-	-	-	-
울산구	500	1,500	-	1,500
인천	1,000	3,000	-	3,000
광대경	500	1,500	-	1,500
주천기	18,000	54,000	-	54,000
강원	5,000	15,000	-	15,000
충북	4,000	12,000	-	12,000
충남	8,000	24,000	-	24,000
전북	5,000	15,000	-	15,000
전남	4,000	12,000	-	12,000
경북	5,000	15,000	-	15,000
경남	5,000	15,000	-	15,000
제주	500	1,500	-	1,500
연구소	3,500	10,500	10,000	20,500
계	60,000	180,000	10,000	190,000

[별지 제1호 서식]

'96. ( )분기 유방염 방제사업 결과

( 도 )

시험소별	년간검사 계획두수	검 사 결 과			감 염 율		비 고
		검사목장수 (등외판정)	양성두수	양성 분방수	임 상	준임상	



## 바. 살처분 보상

### (1) 목 적

- 가축전염병(우결핵,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100두미만 사육농가의 돼지콜레라)에 이환된 양성축을 조기 색출, 살처분하여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
- 전염병 발생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피해방지
-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축산의욕 고취

### (2) 지급계획물량 : 2,650두

- 소 : 650두(젖소 150두, 한육우 500두)
- 돼지 : 2,000두

### (3) 재 원 : 1,348백만원(국비)

### (4)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및 시·도

### (5) 지급대상

- 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관의 명령에 의하여 살처분된 소, 돼지에 한하여 지급

### (6) 지급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농림수산부 고시 제89-46호에 의거 지급

### (7) 기 타

- 살처분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건비, 소독비, 매몰비등은 필히 지방비로 확보할 것.
- 평가액 산정은 평가인이 상호비밀 유지하여 평가하고 당부에서 정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 진도견 방역사업

### (1) 목 적

-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견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순종번식과 보호에 기여

### (2)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국 비	지 방 비	계
DHPPL 예방약	12,000두	12,600	5,400	18,000
기생충구제	12,000	8,400	3,600	12,000
계	24,000	21,000	9,000	30,000

- 사업량 : 6,000두 × 2회
- 지원비율 : 국비70%, 지방비30%

(3) 사업시행 : 전라남도

(4) 실시시기 : '96.4 - 11월

(5) 사후관리 및 감독 : 전라남도지사

(6) 기 타

- 전남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개체별 건강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병행 실시
-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이외에 질병발생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사업완료후 결과를 보고할 것.

## 아. 제주도 부루세라병 특별검진사업

### (1) 목 적

- 제주도 사육우등에 대한 부루세라병 특별검진실시로 양성축을 살처분하여 동질병의 조기근절 및 전국확산방지로 양축농가 보호와 국민보건위생의 향상에 기여

(2) 실시 시기 : '96.2 - 11월

(3) 실시대상 : 소(70천두)

- 1회 : 40,000두                      ○ 2회 : 10,000
- 3회 : 10,000                      ○ 4회 : 10,000

(4) 사업내용

- 검진방법

구 분	1 차 검 사	2 차 검 사
1-4회	Rose Bengal Test	Tube Test 또는 CF Test

- 실시기관 : 제주도지사
  -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하여 검진실시
- 사업비 : 434백만원
  - 실시재료비 : 국비 140백만원, 지방비 280백만원
  - 진단액(Rose Bengal) 구입비 : 국비 14백만원 (70천두×200원)
- 부루세라병 근절계획에 의거 '96부루세라병 검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당부에 보고하고 추진할 것.

(5) 기 타

- 의양성우에 대하여는 자진도태토록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 자.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1) 목 적

- 새로운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가의 손실방지
- 신속한 질병감정 및 원인분석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양축농가의 방역지원

(2) 사업량 및 사업비

○ 구입 검사장비명 : 자동 조직처리기

(단위 : 천원)

시 도 별	사 업 량	소 요 액			비 고
		국 비	지 방 비	계	
서울	1 대	12,250	12,250	24,500	
부산	-	-	-	-	
대구	1	12,250	12,250	24,500	
인천	1	12,250	12,250	24,500	
광주	1	12,250	12,250	24,500	
대전	1	12,250	12,250	24,500	
경기	1	12,250	12,250	24,500	
강원	1	12,250	12,250	24,500	
충북	1	12,250	12,250	24,500	
충남	1	12,250	12,250	24,500	
전북	1	12,250	12,250	24,500	
전남	1	12,250	12,250	24,500	
경북	1	12,250	12,250	24,500	
경남	1	12,250	12,250	24,500	
제주	1	12,250	12,250	24,500	
계	14	171,500	171,500	343,000	

○ 소각로 설치지원

시 도 별	사 업 량	국 비	지 방 비	계
충남	1 기	40,000	40,000	80,000
전남	1 기	40,000	40,000	80,000
계	2 기	80,000	80,000	160,000

(3) 사업시행자 : 가축위생시험소장

(4) 사업감독 및 사후감독 : 해당 도지사

(5) 정산보고 : '96. 8. 31 한

종축등록 및 능력검정사업(공공)

1. 종축등록

가. 목적

- 우량가축의 혈통보전 및 활용도 제고
- 가축개량에 대한 농가 인식도 제고

나. 추진방향

- 등록사업비의 일부지원
- 등록농가에 대한 교육, 지도강화
- 한우 발육 조사 분석으로 개량방향 제시

다. 투융자계획

(1)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종축등록 두수)	천두 1,314	204	140	140	140	840	2,778
사업비	4,761	681	707	707	707	4,242	11,805
축발기금 보조	4,761	681	707	707	707	4,242	11,805

(2) '96 지원계획 : 축발기금 보조 707백만원

◦ 사업량

한 우	셋 소	돼 지	계
천두 75	22	37	134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 종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 등록 및 부대사업

(나) 사업대상 : 등록희망농가

(3) 사업시행

(가) 등록요령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함

(나) 등록요원확보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직원
- 등록물량확대에 필요한 위촉등록요원 확보
- 위촉등록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및 등록 실무교육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등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교육으로 등록축활용도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 계획교배방법 및 필요성
  - 이동신고 및 이동시 등록증의 인계인수등

(2) 보고(종축개량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6 세부추진계획보고('96.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3)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한국종축개량협회(02-588-9301)

## 2. 젓소산유능력검정

### 가. 목적

- o. 젓소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o. 젓소 개량을 위한 기반확충 및 인식도 제고
- o. 낙농경영 합리화 유도

### 나. 추진방향

- o. 축협중앙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병행 추진
- o. 젓소 후대검정사업과 연계추진
- o. 축협의 경우 도당 1개단지는 시범단지로 운영하고 기타는 조합자체사업으로 추진
- o. 검정두수 확대를 위한 축탁검정원제 병행 실시(유료검정)  
 ※ 집유일원화시 가축개량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체계로 전환

### 다. 투융자계획

#### (1) 년차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135,840 <sup>두</sup>	21,000	25,000	70,000	90,000	850,000	1,191,840
사 업 비	3,888	452	424	424	424	2,544	8,156
축발기금	3,888	452	424	424	424	2,544	8,156

#### (2) '96 지원계획

- o. 검정조합의 검정장비, 검정운영비등 보조지원

(단위 : 백만원)

장 비 구 입	운 영 비	합 계
189	235	424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협조 : 한국종축개량협회)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o. 신규농가 선정

- 검정기관은 검정희망 농가 중에서 개량의욕과 검정편의성을 감안 선정

o. 검정방법 및 항목

- 젖소검정요령에 의함(농림수산부 고시 제92-25호, '92. 6. 5)

o.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검정기관은 검정결과 및 경영참고사항을 당해 농가에 신속히 통보

(나) 지원대상 : 검정조합(별표1 참고)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검정운영장비·관리실비 보조지원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o. 검정기록은 영구보존

- 젖소개량 및 검정농가 경영지도 자료로 활용

o. 검정기관은 연간 검정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배포 및 다음해 상반기 중 합동발표

(2) 보고(검정기관 → 축산기술연구소장)

o.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세부 추진계획('96. 2월말까지)

o. 사업 추진실적(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3)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o.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2)

축산기술연구소 능력검정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유우개량사업소(02-359-9285)

한국종축개량협회(02-588-9301)



[별표 1]

o. 축협 젖소개량단지 현황

조성년도	단지수	단 지 명	검 정 대 상 지 역	비고
'79	5개소	평택축협 천안축협 나주축협 부산경남우유 (양산) 서울우유	o. 평택시, 안성군 o. 천안시, 아산시 o. 광주광역시,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o.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군, 울산시 o. 서울, 인천, 경기도 일원	
'88	2	원주축협 고창축협	o. 원주시 o. 고창군	
'89	5	청주우유 상주축협 제주낙협 서산축협 지리산낙협	o. 청주시, 청원군 o. 상주시 o. 제주도일원 o. 서산시, 태안군 o. 남원시	
'90	2	경북우유 천안낙협	o. 달성군, 칠곡군 o. 천안시, 아산시	
'91	3	광주축협 (경기) 음성축협 부산경남우유 (창원)	o. 광주군, 하남시 o. 음성군 o.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92	2	홍성낙협 경남낙협	o. 홍성군 o. 진주시, 마산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의령군,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	
'93	2	공주낙협 전남동부낙협	o. 공주시 o.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94	2	경북중앙낙협 경북낙협	o.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청송군 o. 경주시	
계	23			

### 3. 돼지경제능력검정

#### 가. 목적

- 종돈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돼지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나. 추진방향

- 종돈업 등록업체의 출품종돈 능력검정
- 검정결과의 공표로 양돈농가의 종돈구매 편의증진
- 능력검정 요원의 전문화 및 검정장비 확보

#### 다. 투융자계획

##### (1)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21천두	4	4	4	4	24	61
사 업 비	1,549	97	303	303	303	1,818	4,373
축발기금	1,549	97	303	303	303	1,818	4,373

(2) '96 지원계획 : 격리조기이유(SEW)방식의 검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303백만원)

####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대한양돈협회

(2) 사업현황

- 검정계획 : 검정소 검정 3,240두, 농장검정은 희망농장 및 몰량에 한함
- 지원대상 :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
- 자금지원 : 격리조기이유(SEW)방식의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
  - 신속한 격리조기이유시설 설치 및 장비등 구입으로 불용방지
  - 축협중앙회장은 추진진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 검정방법 : 돼지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92 - 26호, '92. 6. 5)에 의함  
- 종돈검정위원회 운영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축산전문지 등을 통한 검정성적 공표
- 검정성적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 혈통에 명기 관리

(2) 보고(양돈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6 돼지능력검정 세부계획('96. 2월말까지)
- 사업 추진실적(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3)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대한양돈협회(02-553-3942)

#### 4. 닭경제능력검정

##### 가. 목적

- 종계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선택 지표 제공
- 양계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 제고

##### 나. 추진방향

- 검정방법의 공정화, 전문요원의 전문화, 검정시설·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외의 공표를 통한 양계농가의 종계구입 편의증진

##### 다. 투융자계획

###### (1) 인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175천수	30	42	42	42	252	583
사 업 비	1,286	498	231	231	231	1,386	3,863
축발기금	1,286	498	231	231	231	1,386	3,863

###### (2) '96 시원계획

- 검정사료비, 검정시설 및 장비 지원(축발기금 보조 231백만원)

##### 라. 사업추진계획

###### (1) 사업주관기관 : 대한양계협회

###### (2) 사업현황

- 검정계획 : 종계능력검정 42천수(산란계 30, 육계 12)
- 지원대상 : 대한양계협회 닭능력검정소
- 자금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사업 진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 검정방법 : 닭 능력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87-42호, '92.6.5)에 의함
- 닭 검정위원회 운영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능력검정 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에 공표하고 대한양계협회에 영구보존

(2) 보고(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6 닭 경제능력검정 세부계획('95. 2월말까지)
- 사업 추진실적(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3)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대한양계협회(02-588-7651)

## 전문 종돈업 육성(공공)

### 1. 목적

- 종돈수입 자유화에 대응한 국내산 종돈의 능력향상
-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의 생산·공급으로 양축농가의 질병피해 방지

### 2. 추진방향

- 원종돈(GGP)농장과 종돈(GP)농장의 분리 및 상호연계로 전문성 제고
-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 Site)으로 질병감염기회 차단
- 2000년대 종돈소요 두수의 40% 수준을 전문종돈업체에서 공급

### 3. 투융자 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	-	3개소	2 (계속3)	3 (계속5)	- (계속8)	8
사 업 비	-	-	11,070	27,675	44,280	64,575	147,600
축발기금 용 자	-	-	7,747	19,368	30,989	45,192	103,296
자 부 담	-	-	3,323	8,307	13,291	19,383	44,304

※ 사업기간 : 3년('96년 예산지원분은 4년)

#### 나. '96 지원계획

- 원종돈농장과 종돈농장의 돈사건축비 용자 지원(축발기금 7,747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원종돈농장과 종돈농장이 계약관계로 연계된 전문종돈사육업체 육성
- 격리조기이유(SEW) 방식도입 및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 Site)을 위한 돈사건축

### (2) 지원대상 : 선정된 종돈업 등록업체

### (3) 지원규모 및 조건

< 개소당 지원규모 > ; 최고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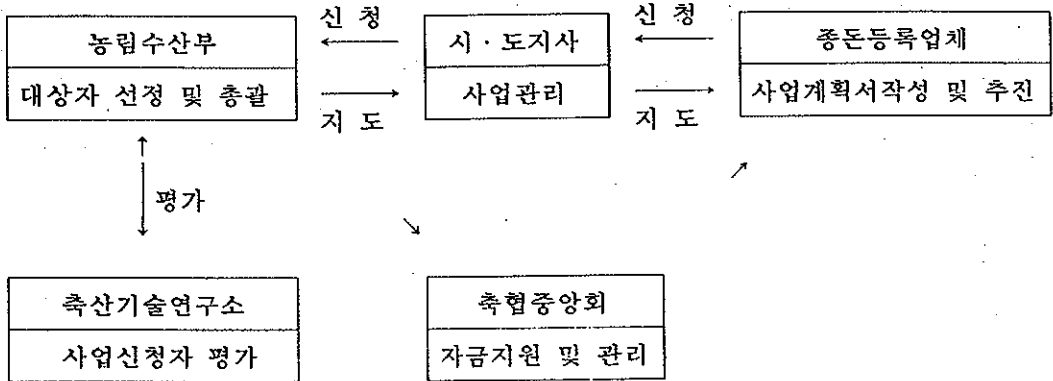
		사육두수	사업량	단 가	사업비	비 고
원종돈농장 (부계 50%, 모계 50%)	원종돈사	676 두	1,352평	천원 850	백만원 1,149	용 자
	자 돈 사	1,920	420	1,000	420	용 자
	육성돈사	3,024	1,160	600	696	용 자
	원종돈구입	-	338두	2,000	676	자 담
	부대시설등	-	-	-	299	자 담
계		5,620			3,240	
종돈농장	종 돈 사	3,310	6,620평	850천원	5,627	용 자
	자 돈 사	9,600	2,110	1,000	2,110	용 자
	육성돈사	15,120	5,820	500	2,910	용 자
	종돈구입	-	3,310두	800	2,648	자 담
	부대시설등	-	-	-	1,915	자 담
계		28,030			15,210	
합 계		33,650			18,450	사업비는 최고한도임

- 원종돈사육두수 구성 : 큰암돼지 560두, 큰숫돼지 40, 후보암돼지 64, 후보숫돼지 12
- 종돈사육두수 구성 : 큰암돼지 2,750두, 큰숫돼지 200, 후보암돼지 300, 후보숫돼지 60
- 부대시설등 : 사무실, 창고, 직원숙소, 관리차량 및 장비등임

< 지원조건 >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융자, 30% 자부담
- 용자조건 : 년리 5%, 5년거치 10년상환

(4) 사업시행 체계



다. 세부실시요령

(1) 전문 종돈업체의 개념

- 종돈사육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원종돈(GGP)농장을 운영하면서 계약된 종돈(GP)농장에게 GP종돈을 공급하는 한편 사양관리, 개량관리, 위생관리 등을 협의·지도 하므로써 능력이 우수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 및 모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
- 정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종돈업 등록업체중에서 원종돈농장을 선정하고 이들과 GP종돈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 (2~3 Site)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전문종돈업체의 유형
  - GGP농장 : (I형) 모계·부계 동시사육  
(II형) 모계만 사육하고 부계는 계약 또는 수입에 의거 총당
  - GP농장 : (I형) 1인이 2~3 site 단독경영  
(II형) 다수인이 각각의 Site를 분담경영



## (2) 전문 종돈업체의 지정대상 및 자격요건

○ 지정대상 : 종돈업 등록업체

○ 자격요건

- 축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일 현재 시·도지사에게 종돈업 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95.6월현재 종돈 200두이상을 사육중인 자로써
- 원종돈 큰암돼지 200두 이상 사육을 계획하면서 이들로 부터 생산되는 종돈(2.5년 동안 원종돈 큰암돼지 1두당 종돈 10두 분양기준)의 60%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종돈농장을 5년이상의 종돈 공급 및 인수계약에 의거 확보한 자  
단, 계약된 종돈농장수(3개소이상)의 50%이상 이 종돈업 등록업체여야 하며, 축협중앙회의 경우는 공급비율 및 계약된 종돈 농장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Hybrid 종돈사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자는 제외함

## (3) 전문 종돈업체의 의무사항

- 각각의 원종돈 농장 및 종돈농장은 별도로 격리된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 (2~3 Site)을 하여야 하며, 자돈의 이유시기는 가급적 생후 2주령이내로 하여 모체감염을 방지함
- 원종돈농장은 종돈관리전산시스템 도입 및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종돈농장에 종돈관리, 위생관리 및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종돈(GP)농장은 질병오염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종돈농장이 종돈공급을 할 수 없는 한 계약기간중에는 원종돈 농장으로부터 종돈공급을 받아야 함
- 원종돈 및 종돈농장은 Hybrid 종돈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원종돈농장은 육성돈사의 일부에 검정시설을 갖추어 생산된 자돈두수의 20%이상을 검정소검정 또는 농장검정하여야 함.

## (4) 전문 종돈업체의 선정 절차

### (가) 신청절차

- 본 사업 취지에 동의하여 원종돈(GGP)농장을 경영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부를 작성하여 '96.1.15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97년 사업 참여 희망자는 통합실시요령에 따라 '96.1.30까지 신청해야함)
  - 본인 및 종돈(GP)농장 참여 동의자의 돼지사육현황  
(품종별, 세대별, 성장단계별 돼지사육, 용도별 돈사보유 포함)
  - 본인 및 종돈(GP)농장 참여 동의자의 사업계획서  
(세대별, 성장단계별 돼지사육 및 돈사건축, 년차별 투자계획 포함)
  - 종돈(GP)농장 희망자의 참여 동의서
-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분석·평가한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96.1월말까지 당부에 추천한다. 단, '97년 사업 참여 희망자의 계획서는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96.3.31까지 추천함
  - 검토의견서 1부.
  - 사업계획서 2부.
  - 신청자 및 참여 동의자가 종돈업 등록업체일 경우 종돈업등록증 사본 및 성별 종돈등록 현황

### (나) 선정절차

- 농림수산부장관은 '96년 사업참여 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가축개량총괄기관장에게 송부
- 가축개량기관장은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가축개량협의회(돼지분과)의 심의를 거쳐 선정순위를 정하여 '96.3.15까지 장관에게 보고
- 장관은 가축개량기관장의 선정순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96.3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97년 사업 대상자를 '97.1.15까지 선정 통보) 단, GGP 모돈두수가 너무 과도할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축소할 수 있으며,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업 계획서가 없다고 판단될때는 선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선정 우선순위

- 종돈업 경력(시·도에 종돈업 최초등록일자 기준)
- 신청자 및 동의자의 종돈사육두수('95.6월말 현재 시·도 등록두수 기준)
- 신청자 및 동의자의 '94년중 종돈판매두수(시·도의 사후관리 실적기준)
- 원종돈농장의 성빈돈 두수에 대한 확보된 종돈농장의 성빈돈 두수비율  
(사업계획서 기준)
- 성빈돈 두당 용자신청액(사업계획서 기준)
  - 돈사 건축비용(성돈사, 자돈사, 육성돈사) ÷ 성빈돈 두수(원종돈·농장, 종돈농장)
- 성빈돈 두수에 대한 '94~'95년도의 등록 및 검정두수 비율
- 가축개량협의회(돼지분과) 위원들의 평가점수
- 기타 가축개량기관장이 정하는 사항

(5) 전문 종돈업체에 대한 지원

(가) 지원내용

- 원종돈 농장 및 종돈농장의 2~3단계 분리사육을 위한 돈사건축비 지원
  - 기존돈사 활용 부문에 대하여는 지원단가의 80% 이내에서 내부구조 개선비 지원
  - 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부지구입비, 원종돈 및 종돈구입비, 부대시설비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나) 업체별 용자액 산정

-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종모돈, 종빈돈, 후보돈, 육성돈, 자돈의 상시 사육두수를 확정하고 다음의 두당 용자액을 곱하여 산출. 단, 신청액이 적을 경우는 신청액을 인정함.

	종모돈, 종빈돈, 후보돈	육성돈	자돈
두당용자액	1,700천원	192 (230)	219

※ ( )내는 GGP농장분임.

(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GGP농장은 본인과 GP농장의 부지확보가 완료되었을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년도별, 분기별 용자 소요액을 당부에 신청
- 업체별 총용자액은 3개년에 걸쳐 분할(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96년 사업지원 대상자는 4개년에 걸쳐 분할지원(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30%, 4년차 20%)
- 장관은 해당년도 용자액의 미집행, 집행된 용자액의 타용도 사용,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가. 보고(시·도시사 → 농림수산부장관)

- 사업대상자 추천('96.1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매분기 익월말까지)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 시·도 : 도 축산과

## 한우 쌍자생산 지원사업(공공)

### 1. 목적

- 쌍자생산기술의 산업화로 한우개량 촉진
- 송아지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경쟁력 향상

### 2. 추진방향

- 도 종축장을 중심으로 수정란 대량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전문인력의 양성
- 수정란 생산 및 이식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	-	9개소	(계속)	-	-	9
사업비	-	-	9,642	7,170	-	-	16,812
국 고	-	-	4,821	3,585	-	-	8,406
지방비	-	-	4,821	3,585	-	-	8,406

(나) '96 지원계획 : 4,821백만원(농특회계보조, 사업비의 50%)

◦ 도 종축장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0	805	479	828	512	370	897	82	658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협조 : 축산기술연구소)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수정란 생산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지원대상 : 도 종축장(9개소)

(3) 지원규모 및 조건

○ '96 지원규모

	실험실 건축		축사 건축		기자재 구입		한우종축 구입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경기	평 60	백만원 63	평 200	백만원 50	대 25	백만원 77	-	-	백만원 190
강원	125	131	1,800	450	55	224	-	-	805
충북	100	105	1,200	300	24	74	-	-	479
충남	200	209	2,100	525	25	94	-	-	828
전북	160	167	600	150	31	195	-	-	512
전남	137	143	600	150	25	77	-	-	370
경북	200	209	1,950	488	64	200	-	-	897
경남	-	-	-	-	25	82	-	-	82
제주	200	209	1,450	363	24	86	-	-	658
계	1,182	1,236	9,900	2,476	298	1,109	-	-	4,821

○ 지원조건 : 농특회계 50%, 지방비 50% 보조

(다) 사업시행

(1) 세부추진 계획의 조속한 확정

- 각 도지사는 사업비 이월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년내에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추진
- 특히 종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6개도(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는 조속한 부지확보에 노력

(2) 지방비 확보 철저

- 지원조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액이 부족할 경우 감액지원이 불가피한 점에 유의

(3) 기 타

- 기관별 업무분담등 본 요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 추진계획(축정 51530-356, '95.7.5)을 참조

## 5. 행정사항

(가) 보고(도지사 → 장관)

- 수정란생산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96.2월말까지)
- 수정란생산센터 설립을 위한 지방비 확보상황('96.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매분기 익월말까지)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축산기술연구소 번식생리과(0331-292-4511)
- 시·도 : 도청 축산과, 도 종축장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공공)

## 1. 목 적

- 축산분뇨자원화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실현
  - 무방류 자원화로 수질오염의 원천적 차단
  - 유기질비료 생산·판매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유기질 비료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 및 농산물 품질향상

## 2. 추진방향

- 퇴비화·액비화등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증점 지원
  - ※ 간이 및 신고대상 처리시설중 간이정화조 및 정화조등 정화방류시설에 대하여는 '96에 자금지원을 최소화하고 '97부터는 자원화시설에만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농가 우선지원
- 오·폐수법 개정에 따른 규제강화 대상농가의 추가시설비 지원
- 자원화시설 증점지원에 따른 톱밥공급 원활화를 위한 소형톱밥제조기의 적기 지원
  - ※ 정화방류시설의 경우 톱밥·왕겨등 수분조절제의 수급이 곤란하고 액비살포지가 없는등 퇴비화·액비화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3. 투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95까지	'96	'97	'98	합 계
사업량	43,884	9,696	10,681	10,681	74,942
사업비	3,311	1,182	1,094	1,094	6,681
- 국고	808	590	531	531	2,460
- 용자	1,346	592	563	563	3,064
- 기금	1,157	-	-	-	1,157



나. '96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소 요 자 금					
		농 특 회 계			지방비	자담	총 사업비
		계	용자	보조			
간이대상처리시설	3,000	12,600	6,300	6,300	-	-	12,600
신고대상처리시설	6,000	60,000	30,000	30,000	-	-	60,000
개별농가비료시설①	100	7,000	7,000	-	-	3,000	10,000
개별농가비료시설②	100	3,500	3,500	-	-	1,500	5,000
개별농가퇴비 처리장비	400	4,000	4,000	-	-	-	4,000
가축분뇨운반장비	30	630	180	450	-	270	900
축분발효시설	40	28,000	8,000	20,000	-	12,000	40,000
분뇨공동저장 탱크	20	700	200	500	-	300	1,000
정착층구조개선	6	1,800	-	1,800	-	-	1,800
계	9,696	118,230	59,180	59,050	-	17,070	135,300

다. 시도별 사업비 배정(안)

(단위 : 천원)

시·도명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수익자부담
전국계	9,696	135,300,000	59,050,000	-	59,180,000	17,070,000
서울	-					
부산	4	28,400	14,200		14,200	
대구	58	565,000	192,500		327,500	45,000
인천	200	3,020,000	1,320,000		1,286,000	414,000
광주	32	163,400	81,700		81,700	
대전	-					
경기	1,455	20,750,000	8,950,000		8,935,000	2,865,000
강원	617	10,160,000	4,295,000		4,248,000	1,617,000
충북	405	4,160,000	1,380,000		2,456,000	324,000
충남	1,642	20,083,200	8,811,600		9,120,600	2,151,000
전북	1,349	18,570,000	8,505,000		8,019,000	2,046,000
전남	1,328	17,360,000	7,830,000		7,499,000	2,031,000
경북	1,281	16,520,000	7,410,000		7,358,000	1,752,000
경남	1,180	16,050,000	7,325,000		7,018,000	1,707,000
제주	145	7,870,000	2,935,000		2,817,000	2,118,000

#### 4.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개별농가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단체공동사업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집행, 사후관리 및 보고업무를 담당

#####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가) 개별농가 사업

- 간이 및 신고대상시설 : 저장액비화, 퇴비사, 건조장, 톱밥축사(개폐식우사 포함), 분뇨수거상자, 톱밥토양여과상, 정화조
- 비료화시설 : 화력건조시설, 통풍식·교반식·건조식 축분발효시설 및 기타 적절한 비료화방법
- 퇴비처리장비 : 소형톱밥제조기, 고액분리기, 스킨드로드, 소형분뇨건조기 왕겨분쇄기등

##### (나) 단체 공동사업

- 축분발효시설 :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분뇨공동저장탱크 : 가축분뇨 공동저장시설
- 분뇨운반장비 : 바큇카(Vacuum Car), 살포차량(교반기, 엔진등 부착장비 포함)
- 정착촌 구조개선 : 축분발효시설, 공동저장탱크, 공동퇴비사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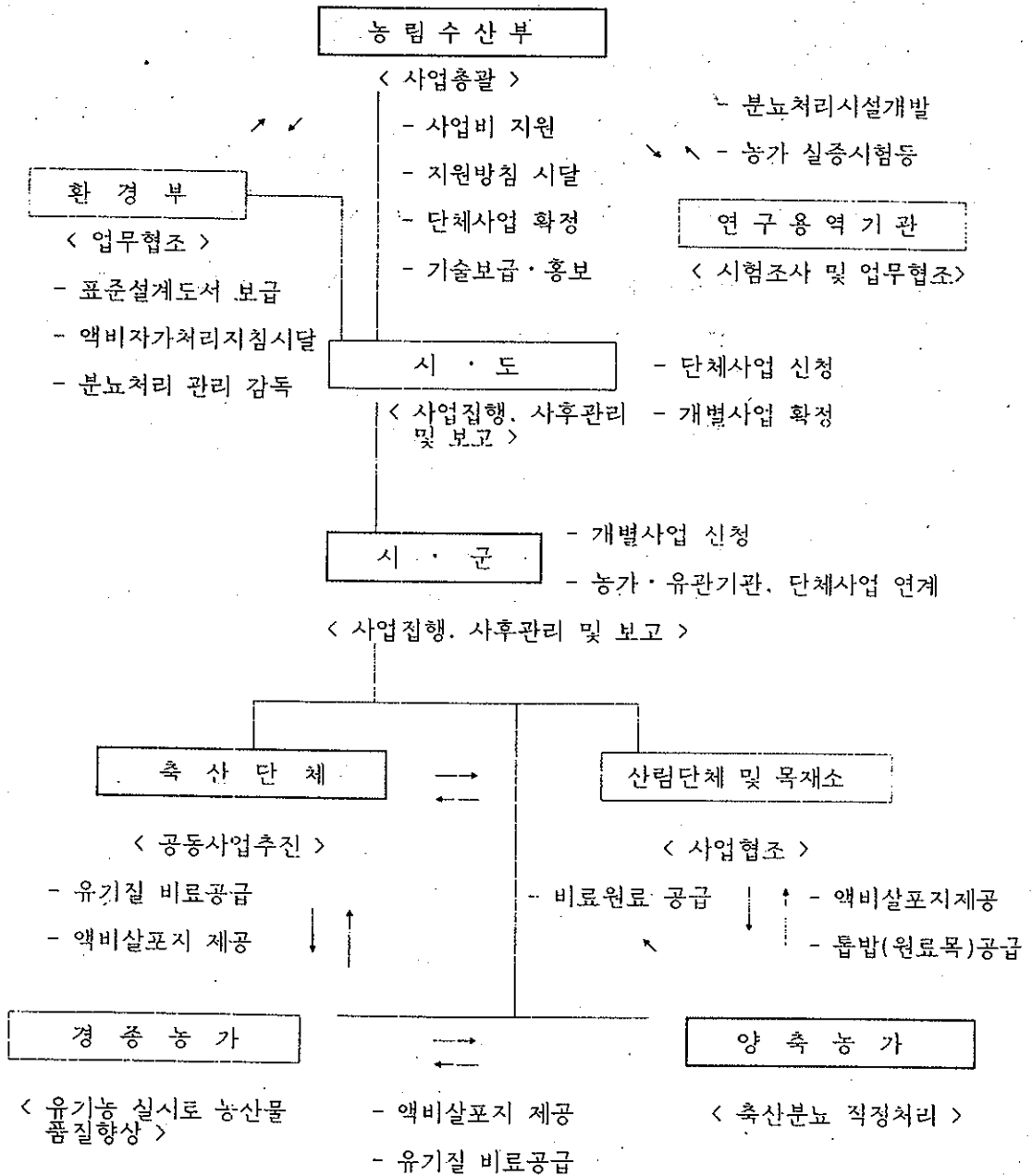
##### (2)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당 사업비	지 원 율(%)			용자 조건
			용자	보조	자담	
개 별 시 설	간이대상시설	4.2	50	50	-	3년거치 7년
	신고대상시설	10	50	50	-	균분상환
	비료화시설①	100	70	-	30	연리 3%
	비료화시설②	50	70	-	30	
	퇴비처리장비	10	100	-	-	
공 동 시 설	축분발효시설	1,000	20	50	30	3년거치 7년
	분뇨운반장비	30	20	50	30	균분상환
	분뇨공동저장탱크	50	20	50	30	연리 3%
	정착촌구조개선	300	-	100	-	

- 주) 1.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2. 지원율은 '9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추진체제도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가) 개별 농가시설

- 간이대상처리시설 : 간이대상 농가
- 신고대상처리시설 : 신고대상 농가(시설 개보수농가 포함)
-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 신고·허가대상농가

- ※
- 신고대상 : 소사육시설 350-900㎡미만, 돼지사육시설 250-1000㎡미만, 닭사육시설 500㎡이상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상
  - 간이대상 : 소사육시설 120-350㎡미만, 돼지사육시설 70-250㎡미만, 닭사육시설 150-500㎡미만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4.11.14) 이전의 신고대상농가중 허가대상으로 전환된 농가에 대하여 전업규모처리시설자금 한도로 2차처리시설 추가지원 허용

(나) 단체 공동시설

- 축산단지, 지역축협, 계열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 단체 및 정착촌

(2) 사업신청기관

- 개별농가시설 : 시·군
- 단체공동시설 : 시·군경유 시·도

(3) 사업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 간이 및 신고대상 처리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요 청 물 량			축 증 별	사 업 비		
	특정지역	일반지역	계		보조	용자	계
저장액비화			개소				
톱밥발효축사 (톱밥발효돈사, 톱밥우사등)			개소				
퇴비사			개소				
건조장			개소				
분뇨수거상자			개				
톱밥토양어과상			개소				
정화방류조			개소				
계			개소	한우 젖소 돼지	개소 개소 개소		

※ ○ 톱밥우사의 경우 개폐식 톱밥우사를 포함  
 ○ 특정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취수점 4km 상류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지하수보전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의2)

(나)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단위 : 백만원)

대 상 자		축 증	① 축사 면적	축사 부지 면적	사육 두수	② 적용 기준	③ 처리 방법	사 업 비		
성 명	농장소재지							면적	면적	면적
			m <sup>2</sup>	m <sup>2</sup>						

주) ① 가축사육시설 면적  
 ②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구분 기재  
 ③ 교반식·통풍식·건조식·화력건조기등 퇴비화방법명을 기재

※ 첨부서류 : 대상자별 사업계획서 1-2매 (A4 용지 세로 작성)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설치장소, 저장·발효·퇴적조 등 시설별 면적, 구입장비명, 시설·장비별, 자원별 투자계획

(다) 퇴비처리장비

(단위 : 백만원)

장 비 명	수 량	사 업 비			비 고
		용 자	자 담	계	
스키드로다(일반)	대				
스키드로다(트렉타부착용)					
소형튄밥제조기					
고액분리기					
분뇨건조기					
왕겨분쇄기					
계					

(라) 가축분뇨운반장비·분뇨공동저장탱크

(단위 : 백만원)

지 역	대상자 (단체)	사업량	사 업 비				시설·장비 운영 여건 ①
			보 조	용 자	자 담	계	
		개소					

주) ① : 운반장비 및 저장탱크 상호 연계실태 또는 액비살포지 확보 여부등을 기재

※ 첨부서류 : 대상자별 사업계획서 1매 (A4 용지 세로 작성)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운반장비) : 구입장비명, 장비활용계획 등  
 (저장탱크) : 설치장소, 시설부지 면적 및 탱크용량, 시설 이용능가수 및 가축사육두수, 시설운영계획 등

(마) 축분발효시설·정착촌구조개선

- 시도지사 의견서(정착촌은 한성협동회 의견서 포함) "별지제1호,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 시설설치 예정부지 관계서류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축분발효시설에 한함),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법인등기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
  - 계열주체, 축산단지 : 시도지사의 지정문서 사본

라. 대상자 선정

(1) 사업우선 순위

(가) 개별농가시설

- i) 특정지역(상수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지하수보전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 농가
- ii) 자원화(퇴비·액비)시설 설치농가
- iii) 영농후계자등 객관적으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농가
- iv)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축사시설과 연계성이 우수한 분뇨처리시설

(나) 단체공동시설

- i) 축산단지를 기 조성하였거나 시설부지를 확보한 단체
  - ii)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있고 단체구성원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단체
  - iii) 공동시설설치와 관련 농지전용, 비료제조업허가, 액비살포지 확보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단체
- ※ 축분발효시설의 경우 톱밥을 적게 사용하는 발효공법 설치 단체 및 축사 시설을 자원화가 용이도록 설계·시공한 단체 우선 지원



## (2) 선정절차

- 능가 개별사업 : 대상자 신청(시군)→ 지원물량 신청(시도)→ 지원물량 확정(농림수산부)→ 지원물량 통보(시도)→ 사업대상 확정(시군)
- 단체 공동사업 : 대상자 신청(시군)→ 대상자 검토(시도)→ 사업대상자 확정(농림수산부)→ 사업대상자 통보(시도)→ (시군)

## 마. 사업 시행

### (1) 시설의 설치

#### (가) 간이 및 신고대상 처리시설

- 개정된 오·폐수법령에 의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퇴비화·액비화 시설( 톱밥발효축사, 개폐식 톱밥우사, 퇴비사, 저장액비화)의 설치 권장.  
단, 저장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액비조에서 부속된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 등을 확보한 농가에 한하여 설치 지도
- 톱밥우사의 경우 환기가 좋고 햇볕이 잘드는 개방식·개폐식 우사에 설치지도
- 축사구조 및 농가여건상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는 농가의 경우 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서(환경부 고시 제88-21호 및 '92년 7월 농림수산부, 환경부 공동제작 축산폐수퇴비화방법)외의 방법으로 정화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정화시설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토록 하되 개정된 오·폐수법의 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 시공토록 현장 입회등 지도감독함과 아울러 정화효율이 낮은 불량정화조(생활하수정화조등)의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환경부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을 확인하거나 농림수산부의 농가실증시험성적을 확인 후 설치 허용
  -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양축농가 및 정화조 생산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시설 설치비가 지원단가에 미달되는 정화방류조의 경우 지원잔액을 퇴비사 또는 정화조 배수로등 부대시설 설치비로 사용 허용

(나) 비료화 시설

- 톱밥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 또는 톱밥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공법 권장
- 분뇨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공법보다 분뇨혼합처리공법 권장
- 수분조절제로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하는 경우 발효된 수분조절제를 재차 수분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다) 퇴비처리장비

- 스키드로다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  
히되 구입기종은 가급적 중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중량 1톤  
미만의 장비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다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소형톱밥제조기 및 왕겨분쇄기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등  
장비의 가동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 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농가에 지원
- 고액분리기는 분리된 뇨를 2차처리(정화후 방류 또는 저장후 액비살포)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농경지를 보유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라) 분뇨공동저장탱크

- 축협중앙회에서 제작한 분뇨공동저장탱크 설계도서 활용

(마) 축분발효시설

- 교반식·통풍식·건조식 발효설비로 하되 분뇨혼합처리공법을 권장하며  
    톱밥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톱밥을 이용하지 않거나 톱밥의 사용량이 적은 처리공법을 선택하도록 유도
- 축산단지의 사육규모는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돼지를 기준으로 단지당 사육두수를 15,000두 이내로 조정 유도
- 수분조절제로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하는 경우 발효된 수분조절제를 재차 수분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 관련규정 :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17조 및 별표1(농림수산부훈령)
  - 내용 :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시설중 제조업허가를 받은 시설
  - 면제범위 [ 농업진흥지역 : 3,300㎡까지 50% 감액  
              농업진흥지역밖 : 전액면제
- \*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농사용 시설로 함.

바.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기록한 일지 및 현장의 사업진척도를 확인,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하고 용자기관은 이에 따라 사업비를 대출
- 용자 및 보조금의 병행 집행
  - 보조와 용자를 동시에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용자지원을 자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비(자담포함)에 충족되는 시설이 투자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철저
  - 시설 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군에서 자체 인건비지급 기준을 설정후 집행하는 방안 강구
- 비료화시설, 축분발효시설, 분뇨공동저장탱크 및 정착촌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10% 범위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지원
  - 나머지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별도 지원(예 : 사업20% 진척시, 지원30%)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
- 예산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자취급기관(축협)의 여신관리규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것과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실적(기성고) 확인에 따라 집행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주체

- 농가 개별시설 : 시장, 군수
- 단체 공동시설 : 시·도지사

#### (2) 사후관리 내용

- 도지사, 시장, 군수, 축협등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등을 수시로 선별, 점검 실시
- 단체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단체에 대하여는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 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등을 기재토록 할 것
- 행정기관 및 용자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 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시 자금회수등 적절한 조치

(3) 시설 점검방법등

- 농가 개별시설 : 시장·군수, 년 1회 이상
- 단체 공동시설 : 시·도지사, 년 1회 이상
- 주요 점검내용
  - 분뇨처리(특히 정화조)시설 정상활용(가동) 여부
  - 지원시설 장비의 활용 및 용도의 사용 여부

나. 변경승인 사항

- 농가개별사업, 축분발효시설 및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이외의 단체공동사업의 변경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 사업장소 변경등 경미한 사항
  - 시·도지사 : 대상자 변경, 30%이상의 자부담 변경, 보조·융자금 내역변경, 공법변경등 주요한 사항 변경과 축분발효시설 및 정착촌구조개선 사업 이외의 단체공동사업의 변경승인
  - 경미한 사항의 판단 : 시·도지사
- 축분발효시설 및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 시·도지사 승인후 장관보고 : 사업장소, 30%미만의 자부담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농림수산부장관 승인 : 대상자 변경, 30%이상의 자부담 변경, 보조·융자금 내역 변경, 공법변경등 주요한 사항 변경

다.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보고기한	최초작성자	최종수보자	비고
보조금정산실적	'97. 1. 30	시장·군수	농림수산부장관	
융자금집행실적	'97. 4. 30	지역축협장	"	
사업완료(준공)	완료후 10일	시장·군수	"	
단체공동사업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실적	매반기 익월 10일 까지	시장·군수	"	
단체공동시설 운영실적	매년도 익년 1월 말까지	시설운영주체	"	보고서식 추후시달

## 6. 기타 참고사항

가.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 절차(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 배출 및 정화시설 설치허가·신고

<위탁설계시공>

축산폐수정화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자

<자가설계시공>

표준설계도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시설

허가·신고신청 → 시공·설치 → 준공검사 신청 → 검사 및 필증교부 →  
퇴비·액비화시설 가동/ 방류수질 적합운영 시험 → 적합시 조업개시

(2) 간이정화조 설치 신고

○ 배출시설설치신청 → 신고수리 → 시공·설치 → 준공검사신청 → 설치기준  
부합조사 → 적합시 준공필증 교부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제작·배포 내역

○ 환경부('88. 6)

- 종 류 : 저장액비화, 매립처분, 퇴비화, 토양침투, 살수여상, 산화구
- 배부처 : 일선 시군 및 읍면 사무소

○ 농림수산부, 환경부 합동('92. 7)

- 종 류 : 톱밥발효우사, 톱밥발효돈사, 건조식·통풍식·교반식 톱밥발효시설
- 배부처 : 일선 시군 및 읍면, 축산단체등

○ 축협중앙회('91. 5)

- 종 류 : 간이정화조(저장액비화, 퇴비사)
- 배부처 : 지역 축협 및 시군청

○ 농진청 축산시험장('92. 11)

- 종 류 : 톱밥토양여과법
- 배부처 : 시군 농촌지도소

다.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 02-504-9438, 500-2693)
- 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 군 : 산업과(축산과)

라. 축산폐수배출시설관련 규제·단속 기관

- 중앙 : 환경부 생활오수과(☎ 02-504-9255, 500-4296)
- 도 : 환경관리과
- 군 : 환경보호과

<별지 제1호 서식>

## 의견서

1. 사업명 : '96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

2. 단체별 요청내역

(단위 : 백만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공법	투·자·계·획			
				보조	용자	자담	계

3. 단체별 사업계획 검토 의견

- 부지확보, 확보된 부지의 공장용지 전용가능여부, 민원해소방안
- 사업의 필요성, 전망, 기대효과
- 자기자본 조달능력 및 단체 구성원의 신용상태
- 축사형태 및 지역여건에 맞는 발효공법의 연계여부와 단체의 시설경영능력등

1996.

○ ○ 도지사 (인)



<별지 제2호 서식>

## 의견서

1. 사업명 : '96정착촌구조개선사업

2.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공법 및 시설명	투 자 계 획			
				보조	지방비	자담	계

3. 사업계획 검토 의견

- 부지확보, 확보된 부지의 공장용지 전용가능여부, 민원해소방안
- 사업의 필요성, 전망, 기대효과
- 축사형태 및 지역여건에 맞는 처리시설의 선택여부와 단체의 시설운영능력등

1996.

사단법인 한성협동회장 (인)

○ ○ 정착촌 귀하

## 축분발효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2. 단체현황

- 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단지원(조합원)의 축산현황

농장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축종	축사면적	사육두수	축산경력	비고
				m'	두	년	

- 일일 분뇨발생량 : M/T
- 단체 자산 및 부채내역

3. 가축사육계획 (연도별)

축사신축			사육규모 (돼지의 경우)			
동수	축사면적	축사형태	계	모돈	자돈	육성돈
			두			

- 일일 분뇨발생량 : M/T
- 축사 완공예정일 :

4. 시설설치계획

- 예정부지 지목
- 부지면적, 건축면적
- 일일 처리능력( 5시간 기준) : M/T
- 일일 비료생산능력 : M/T
- 처리공법 및 분뇨처리 체계도  
※ 필요시 설계도면 첨부

- 처리공법 설명

5. 시설별·재원별 투자계획(예시)

항 목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투 자 계 획 (백만원)			
					계	보 조	용 자	자 담
○ 부지구입								
○ 건축물								
- 발효시설								
- 원료창고								
- 제품창고								
- 관리사								
-								
○ 구축물								
- 액비저장조								
- 건조장								
- 분뇨이송로								
-								
○ 기계설비								
- 발효기								
- 혼합기								
- 분쇄기								
- 포장기								
-								
○ 운반장비								
- 지게차								
- 스키드로더								
- 패이로더								
- 운반트럭								
-								
○ 동력설비								
○ 기타								

6. 시설별 공사 추진일정

7. 자담금 조성 및 용자금 상환계획

8. 시설 운영계획

- 원자재(톱밥, 생석회, 왕겨, 질석등) 구입
- 비료 생산 및 판매계획
- 관리인력 확보방안등

9. 사업 수익성 분석(향후 5년간 예상 수익·비용 대비표)

10. 기대 효과

<별지 제4호 서식>

## 정착촌구조개선사업계획서

### 1. 정착촌 일반현황

- 농장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농장 일반현황 : (세대수, 주민수)
- 가축사육두수 : (축종별 사육호수, 두수, 축사면적등)

### 2. 축산분뇨 처리현황

- 일일 가축분뇨발생량 : M/T
- 현 축산분뇨 처리형태
- '90~'95까지 정부 지원내역
- 농장 자산 및 부채내역

### 3. '96 사업계획

- 사업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예정부지 지목 및 소유자
- 시설명
- 처리공법
- 일일 처리능력 : M/T
- 축분발효시설의 경우 일일 비료생산량
- 정착촌 생활하수 및 축산분뇨 처리 체계도

4. 시설별·재원별 투자계획(예시)

항 목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투 자 계 획 (백만원)			
					계	보 조	지방비	자 담
○ 부지구입								
○ 건축물								
- 발효시설								
- 원료창고								
- 제품창고								
- 관리사								
-								
○ 건축물								
- 액비저장조								
- 건조장								
- 분뇨이송로								
-								
○ 기계설비								
- 발효기								
- 혼합기								
- 분쇄기								
- 포장기								
-								
○ 운반장비								
- 지게차								
- 스카프로드								
- 패이로다								
- 운반트럭								
-								
○ 동력설비								
○ 기타								

5. 시설 운영계획

- 원자재(톱밥, 생석회, 왕겨, 질석등) 구입
- 비료 생산 및 판매계획
- 관리인력 확보방안등

6. 기대효과

축산정책개발 및 교육·홍보(공공)

## 1. 축산업 자조금 지원

### 가. 목적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등을 통한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

### 나.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등에 의한 축산물 가격 안정유도
- 축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 다.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1)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2)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
- 사업비 지원

단 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기금보조	자 부 담	
자조금 지원사업	개소 2	600	200	400	

- 지원조건 및 방법
  - 연도별로 '96 자조금 사업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자조금 사업 운영계획을 승인받은 생산자 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조성액의 100분의5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 축협중앙회장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을 확인하여 보조금교부 및 지급

## 2. 축산사업 교육·홍보

### 가. 목 적

- 축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강화
- 농가기술 교육·홍보등 사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협회, 단체등의 사업을 활성화

### 나. 추진방향

- 교육 홍보의 효과 증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홍보매체 활용
  -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소비등 전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 팸플렛, 리후렛, 순회교육, 경연대회, 세미나 개최등 다양한 홍보방법 활용

### 다. '96 주요 교육·홍보과제

- 양축농가 기술, 경영교육
  - ⇒ 축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등 현장으로 기술 해결
- 소비자 및 식육유통종사자에 대한 위생적 육류 취급요령 교육·홍보
  - ⇒ 육류의 위생적 취급 및 육류 선택방법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위한 양돈농가 교육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 및 유해물질 잔류방지 교육·홍보
  - ⇒ 수입에 대응한 위생적인 육류생산공급
-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방역 홍보
  - ⇒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방지
- 기타 축산관련 정책내용 교육·홍보



## 라. 사업시행방법

- 교육·홍보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 주관과의 승인을 받아 교육·홍보 실시. 다만, 별도의 교육실시요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홍보효과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매체 선택등에 활용
- 사업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후, 사후정산 실시

## 마. '96년도 교육·홍보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주관부서	대 상	지원액
<b>&lt; 양축농가 기술·경영교육 &gt;</b>			
○ 한우고급육생산 기술교육·홍보	축협중앙회	한우사육농가, 단체, 공무원등	29
○ 낙농기술 강습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가	60
○ 낙농기술지도 교육	축협중앙회	낙농가	
○ 원유위생 및 유질개선지도, 능력검정등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가	
○ 낙농전문헬퍼 교육	축협중앙회	신규헬퍼 (20명) 기존헬퍼 (50명)	9
○ 양돈기술 교육	양돈산학협동연구회, 양돈산학연구회	양돈농가	16
○ 소 수정란이식 교육	축협중앙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인공수정사수의사, 양축가도종축장직원	97
○ 돼지인공수정 교육	"	가축인공수정사수의사, 양축가	21
○ 인공수정사 보수 교육	가축인공수정사협회	가축인공수정사	37
○ 낙농발전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낙농관련단체 및 학회	낙농가, 학회, 관련단체, 업계, 학계	17
<b>&lt; 소비자 및 식육유통종사자 교육 &gt;</b>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축협중앙회	식육처리종사자	450
○ 육류취급요령안내 책자 제작	"	판매점, 금융점포, 행정기관등	30
○ 식육기술경연대회	미트저널사		40
○ 우유소비 홍보	낙농관련단체	소비자	100

사 업 명	주 관	대 상	지원액
< 돼지고기 품질개선 > ◦ 육류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품질 관리 - 일본식품전 또는 식육전 참가 - 수입국상사 초청 세미나 및 현지 간담회 - 한국산 육류홍보 -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사양개선 전산 교육	(사)한국육류수출입협회		151 (67) (10) (51) (23)
< 축산물위생 및 유해잔류물질방지 > ◦ 축산물유해잔류물질방지 교육·홍보 ◦ 양돈농가 방역교육	축협중앙회 양돈산학연구회	양축가, 생산자 관련 단체 양축농가	20 20
< 축산분뇨자원화 교육 및 가축방역 > ◦ 축산환경개선 운동 ◦ 축산분뇨자원화 교육	축협중앙회 "	일선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양축가	30
< 기타 경쟁력제고대책등 > ◦ 축산시책 홍보 ◦ 소값안정대책 리후렛제작 ◦ 가축 방역편람 제작 ◦ 가축방역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제작 ◦ 세계축산학회 개최지원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 " 축협중앙회 (수의과학연구소) 세계축산학회 서울대회개최 조직위원회	양축농가, 관련 단체, 공무원등 양축가, 일선행정기관, 관련단체 행정기관, 관련단체 양축가, 생산자 단체 학계, 관련단체 양축가	50 30 30 40 40
합 계			1,317

## 바. 담당 및 행정사항

- 보고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 보고
- 업무담당 및 부서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가축위생과 : 02-504-9431-9
  - 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 02-224-8613

### 3. 식육처리전문인력 양성

#### 가. 목적

- 식육의 처리, 가공,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인력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집중 양성하여 선진 육류유통구조 구축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 육류의 표준규격 및 진공포장 냉장육의 생산·가공기술개발, 전담인력 육성

#### 나. 추진방향

-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육처리기술교육 실시
  - '96년까지 훈련원 건립을 완료하고 '97년부터 운영계획
- 동 훈련원 설치이전('94~'96)까지는 기 실시중인 식육처리기술교육을 계속 실시

#### 다. 투융자계획

##### (1)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까지	'95	'96	'97	'98	'99~04
사 업 량		90명	180	180			
사 업 비	계	200	480	450			
	국 지 기 자	-	-	-			
	방 금 보 조	-	-	-			
	담 자	200	480	450			
		-	-	-			

(2) '96 지원계획 : 450백만원

#### 라. 사업추진계획

(1)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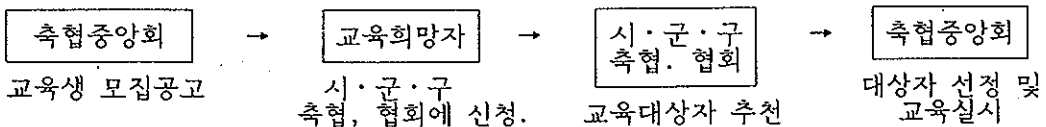
- 교육대상 :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 육가공업체, 식육유통업체 및 관련단체, 생산자단체 직원, 식육판매업소 등
- 교육인원 및 회수 : 180명 (6회 : 1회당 30명)
- 교육기간 : 1회당 1개월과정
- 교육과정 : 기초반, 판매점반
  - 코스카회원사는 축협중앙회와 협의하여 별도 집합교육하여 교육효과 증대
- 교육방법 : 이론교육 및 실습 (실습위주교육)
- 교육장소 : (이론) 축협서울공판장 (실습) 축협 집배사업소 육가공실
  -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교육대상자)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교육비는 축발기금에서 보조 : 강의료, 책자, 원료육대금 등
- 실습도구 및 피복비등은 자부담 (1인당 12만원정도)
- 숙 식 : 교육생 자체해결

(라) 사업시행체계



(3) 교육신청

(가) 신청자격 :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 육가공업체, 식육유통업체 및 관련단체, 축협 중앙회·농협중앙회 및 조합직원, 식육판매업소 종사자 등

(나) 신청절차

- 신청접수처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 축협중앙회 유통부 식육기술교육팀

○ 신청방법

- 개인신청자 : 축협중앙회(도지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
- 육가공협회, 백화점협회, 슈퍼체인협회 회원사 : 해당 협회에 신청
- 축협, 농협직원 : 소관부서장이 대상자추천하여 축협중앙회에 신청

(다)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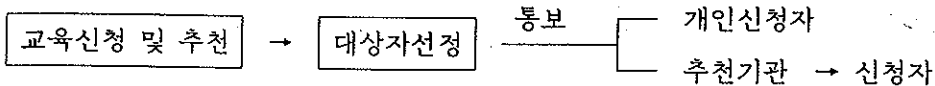
- 수강신청서 (시·군·구, 축협, 농협, 관련단체 및 협회에서 배부)

(4) 대상자선정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상·하반기 교육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기초반 : 수출육가공업체 > 생산자단체 > 육가공업체·식육판매·유통·도매시장등
  - 판매점반 : 한우전문판매점 > 식육유통·판매업체 > 생산자단체 등

(나) 선정절차



(5) 사업시행

- 선정된 교육대상자는 실습도구비 및 피복비등의 납부 및 교육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교육등록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상자선정 통보시 안내함
- 축협중앙회에서는 교육수료자의 동향 파악등 사후관리를 위해 수료자의 업계 기여도를 분석하시기 바람

마.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 보 고
  - 교육추진실적 보고 : 반기별 교육실적을 반기 익월 20일이내에 보고
  - 교육완료·평가 및 정산보고 : 교육완료후 20일이내
-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 시·도 : 축산과(농정과)
  - 시·군 : 축산과(산업과)

## 4. 가축개량 신기술 보급

### 가. 목 적

- 가축개량 관련 신기술 보급을 통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 전문인력 확보 및 추진기반 구축

### 나. 추진방향

- 가축인공수정기술 향상을 위한 수정사 보수교육 실시
- 소 수정란 생산·이식 및 돼지 인공수정 기술교육
- 실습위주의 교육실시

### 다. 투융자계획

#### (1) 연차별 교육계획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 업 량	수정사 보수교육	489명	1,000	1,000	1,000	1,000	6,000	10,489
	수정란제조·이식	-	120명	140	140	140	660	1,200
	돼지 인공수정	-	100명	100	100	100	600	1,000
	수정센터 설치	-	1개소	-	-	-	-	1
사 업 비		백만원 30	691	155	155	155	639	1,825
축발기금보조		30	691	155	155	155	639	1,825

#### (2) '96 지원계획

- 교육에 소요되는 장비, 어비, 도서인쇄비등 지원

	수정사보수교육	수정란제조·이식	돼지인공수정	계
교육인원	1,000명	140	100	1,240
교육회수	9회	14	10	33
사 업 비	37백만원	97	21	155

## 라. 사업추진 계획

### (1) 사업주관기관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협조 : 축협중앙회)
- 수정란 제조·이식교육 및 돼지인공수정교육 : 축협중앙회(협조 : 축산기술연구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 (2) 교육대상자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축산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정액등 처리업체 소속 수정사
  - 축산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소 소속 수정사
- 수정란 제조·이식교육 및 돼지인공수정교육
  - 양축농가,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 공직자등 희망자

### (3) 교육기간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1회 8시간이상
- 수정란 제조교육 : 1회 30일이상
- 수정란 이식교육 : 1회 5일이상
- 돼지 냉동정액 제조 및 인공수정 교육 : 1회 6일이상

### (4)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장소등은 주관기관이 협조기관과 협의결정

### (5) 교육관리

#### (가)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가축인공수정사는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의 교육통지에 의거 매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자는 1년내에서 연기 가능함.
- 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장은 교육과정, 교육이수증, 관련서식등 교육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수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소, 시간등 교육이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일 이전 1개월까지 교육 대상자('96 정기대상자, '95 교육연기자 및 불참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장은 교육이수자가 소속된 정역등 처리업체 및 가축인공수정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회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축산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 조치를 요구함
- 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및 연기여부가 표시되어야 함), 교육이수증 발급대상등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나) 수정란 제조·이식교육 및 돼지인공수정 교육

- 교육계획 홍보로 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함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장이 교육이수증 발급

마. 행정사항

(1) 보고(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추진계획 보고('96.2월말까지)
- 교육실적 보고(교육 완료후 1개월이내)

(2)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 (02-504-9431-3)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축산구조개선1부(02-224-8420)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02-586-9408)
- 시·도 : 축산과



## 5. 전국한우경진대회 개최

### 가. 목적

- 우량한우를 선발하여 종축으로 활용하므로서 애축심 고취 및 한우개량 촉진
- 축산에 관한 정보교류 및 경영개선 촉진
- 한우 및 한우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나. 추진방향

- 전국대회와 지방대회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개최
- 생산자단체에 의한 행사주관으로 민간의 자율성 제고
- 학술발표회등 각종 부대행사 개최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제고

### 다. 투융자계획

#### (1)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2004	합계
사 업 량	15회	-	1	-	1	3	20
사 업 비	3,340	-	836	-	836	2,508	7,520
축발기금보조	3,340	-	836	-	836	2,508	7,520

#### (2) '96 지원계획

- 예산지원액 : 836백만원(전국대회 386, 지방대회 450)
- 지방대회비는 개최를 희망하는 도에 한하여 행사계획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라. 사업 추진계획

#### (1) 사업주관기관

- 전국대회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협조 : 농림수산부, 축산기술연구소, 종축 개량협회등 관련단체)
- 지방대회 : 도, 축협도지회 공동(협조 : 시·군, 축산관련조합 및 단체)

(2) 개최시기 및 장소

- 전국대회 : '96.10월(예정), 장소는 주관기관이 결정
- 지방대회 : '96.9월(예정), 장소는 주관기관이 결정

(3) 행사내용 : 한우품평회 및 부대행사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경진대회 개최결과를 정리하여 유인물로 제작·배포
- 전국대회 입선축중 우량한우는 매입하여 한우개량에 활용

(2) 보고

- 지방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축협도지회장은 관할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사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제출('96.5월말까지)
- 축협중앙회장은 세부행사 추진계획을 수립(도 대회 지원계획 포함)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96.6월말까지)하고 승인을 받아 추진
- 도지사는 지방대회 개최결과, 축협중앙회장은 전국대회 개최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완료후 2개월이내)

(2) 업무담당 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축협중앙회 축산구조개선 1부(02-224-8420)

## 양축자금지원(공공계획)

### 1. 목적

- 양축농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축산경영을 원활하게 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 재해를 입은 양축농가에 저리의 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자금부족을 해소하여 재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2. 추진방향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자금과 연계지원으로 자금의 효율성 제고
- 노령화, 부녀화되어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후계자, 4H회원등에 우선 지원
- 축산업의 특성상 가공, 유통분야의 진출에 의한 상업화, 기업화가 급속히 전환됨에 따른 연계지원 및 동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조정

### 3. 투융자 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94까지	'95	'96	'97	'98	'99	'99-'04	누 계
재 원 별	계	4,000	4,000	4,200	4,600	5,000	5,400	년 400억 순증	7,400
	계 특회 계	1,208	1,416	1,724	2,132	2,540	2,740		3,740
	한 은 차 입 금	832	624	416	208	-	-		-
	축 협 자 금	1,960	1,960	2,060	2,260	2,460	2,660		3,660

나. '96 지원규모(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5(A)	'96(B)	증감 (B-A)
조 달	재 정 자 금	1,416	1,724	308
	한 은 차 입 금	624	416	△ 208
	축 협 자 금	1,960	2,060	100
계		4,000	4,200	200
운 용	일 반 양 축 자 금	3,950	4,150	200
	특 수 양 축 자 금	50	50	-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나.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단기성 자금 지원
-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재해 양축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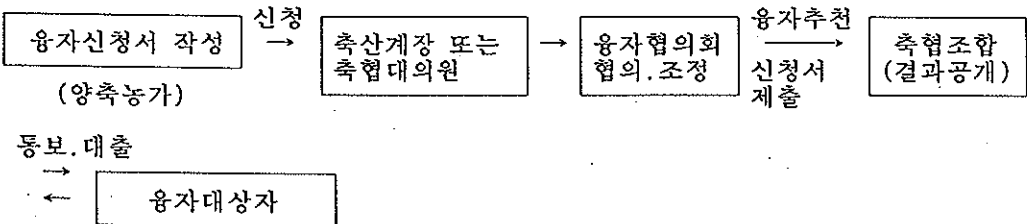
###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양축자금 : 가축사육여건을 갖춘 양축농가
- 특수목적 양축자금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로 인하여 가축.축사시설등이(유실.매몰.폐사등)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

### (3) 지원규모 및 조건

	호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금리 및 이자징수
○ 일반양축자금	8백만원 이내	1년 이내	년 5%, 원금상환일 후취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연장가능)
○ 특수목적양축자금	피해액과 정부지원액(보조+융자)의 차액, 단 호당 100만원미만은 제외	"	"

### (4) 사업시행체계



※ 용자협의회 구성 :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이하같음), 양축농가대표3인(후계자1, 일반 2)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 다.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일반양축자금

- 축협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 축산분야 시설자금을 지원받은후 경영비가 부족한 농가에 우선지원
- 후계자, 4H회원등 전업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
- 양축규모 및 양축자금의 기 지원여부를 감안

#### ○ 특수목적 양축자금

- 피해가 큰 농가(50%이상)를 우선 지원하되 일반양축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도 추가지원 가능

### (2) 선정절차

#### ○ 일반양축자금

- 축산계장은 읍자협의회를 개최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등을 종합하여 대상자별 우선순위를 선정
- 양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작성, 해당 조합에 제출
- 축협조합장은 축산계장이 읍자협의회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대출  
· 선정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게시판등에 공고 및 본인에게 통보

#### ○ 특수목적 양축자금

- 피해농가수 및 피해액등을 감안, 대상농가 및 지원금액을 별도로 결정

## 라.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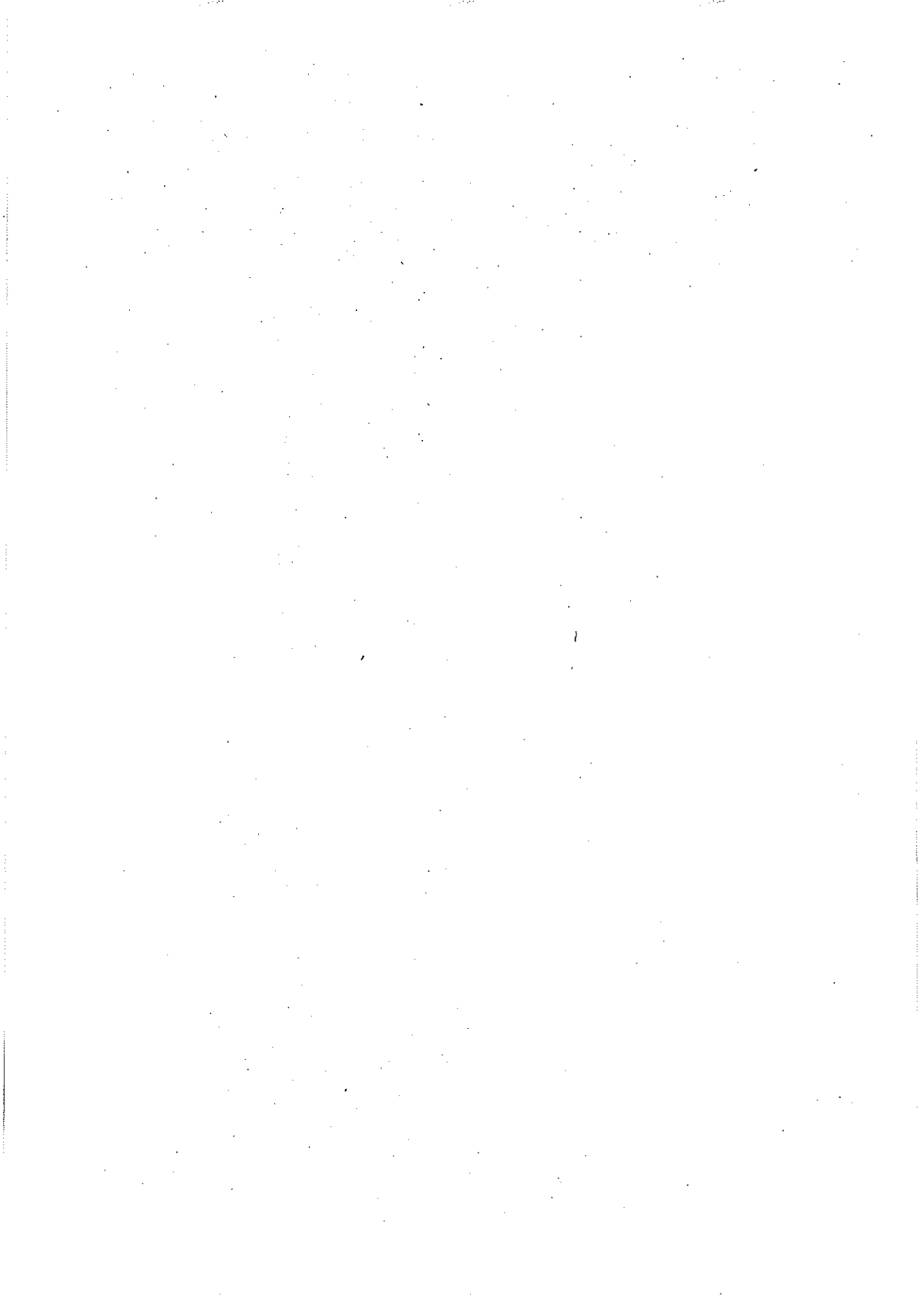
(1)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자금배정액,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자금지원 계획등을 관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홍보

(2) 양축인은 읍자신청서를 작성, 관내 축산계장에게 신청

- (3) 축산계장은 "용자협의회"를 개최,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조정한 후 그 결과를 축협조합장에게 제출
- (4) 축협조합장은 추천된 자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고, 자체 간행물 및 게시판에 공개
- (5) 용자실행 : 공제불가, 본인에게 직접 지급, 통장지급원칙 준수
- (6)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용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협회장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7) 특수목적 양축자금 세부지원 요령은 별도 시달
  - ※ 특수목적 양축자금은 사유 미발생시 축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반양축자금으로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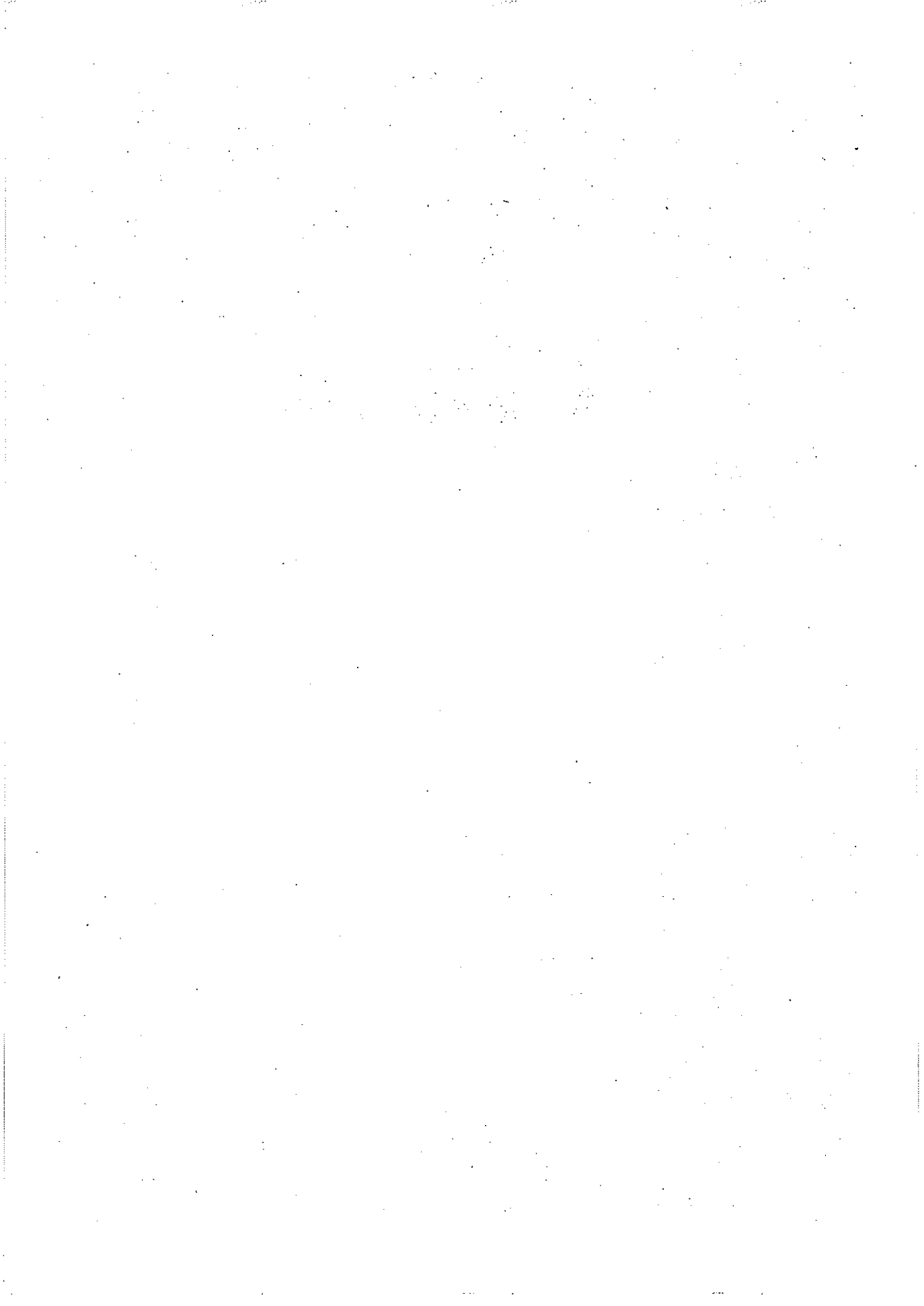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축협조합장 책임하에 목적사용 여부등을 수시확인, 필요시 회수
- 나. 보 고 : 축협중앙회장은 용자실행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정책과, 축협중앙회 여신관리부
  - 시.도 : 시.도 축산과, 축협도지회
  - 시.군 : 시.군 축산계, 관할축협(지역 및 업종)조합



## 나. 축산물수급 및 유통





# 가축계열화사업 ( 공공 )

## 1. 목 적

전문경영 주체중심의 생산,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능가는 일정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 만 전념케 하므로써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2. 추진방향

- 축산업에 관련된 기업체를 계열주체로 육성지원
- 계열사업 참여농가에는 돼지, 닭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원하여 체계적인 계열화 사업 추진
- 부분계열화등 다양한 계열화 추진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 위: 억 원)

		'95 까지	'96 - '98	'99- 2004	합 계
사 업 량 ( 개 소 )		26	15	12	53
사 업 비	합 계	1,475	750	840	3,065
	용 자	1,085	525	600	2,210
	자 담	390	225	240	855

\* 42조원 투융자 계획기준

### 나. '96지원계획

- 지원액 : 26,886 백만원

##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현황

(1) 사업기간 : 2년간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사육시설, 도축(도계)장, 종축생산시설, 가공 및 판매시설  
단.도축장(도계장)등 투자액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은 증.개축비  
( 별표 1 참조 )

※ 가축구입비,부지구입비,사료비,임차료등의 경영비는 지원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대상축종 :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도축(도계),부화, 종축업, 사료제조업등 해당 축종의 축산관련사업자로서  
신규로 가축계열화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 단체
- 기존계열화 업체중 사업의 보완을 위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계열사업체
- 닭(육계) 계열화사업 대상자는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 실적있있는 자  
(사업신청 전년도에의 연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인 사업자)

(4) 지원조건

- 지원액 : 2년간 분할지원
- 지원비율 : 융자 70%이내, 자담 30%이상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5%(생산자 단체) ~ 8% (기타)

(5) 사업시행체계

○ 사업구분 : 지방공공사업

○ 대상자선정 등 사업추진 : 시장.군수가 시.군농발위원회 심의를 받은자로서  
시.도지사가 선정

## 다. 사업신청

### (1) 신청자격

- 도축(도계), 부화, 사료제조업, 종축업등 축산관련 사업자
- 대상자구비조건
  - 축산관련업을하고 있는자로서 완전 또는 부분계열화사업을 할수있는 능력이있을것
  - 지원대상이되는 시설부지를 미리확보(소유권 등기)할것
  - 계열 농가에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이 있을것
  - 계약생산된 축산물을 직접판매하는 경우에는 브랜드화하여 품질을 보증할수있을것

### (2)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수립 → 시장·군수 경유 도지사에신청 →시. 도지사는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확정
  - 도지사는 예산요구시 업체별로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의 사전 심의를 받아 신청(사업계획 제출분에 한하여 예산반영 여부 결정)
- 검토사유의사항
  - 부지확보 및 사업확정후 조기 착수 가능성 여부
  - 축산관련 사업참여 여부
  - 담보능력 및 융자금 상환능력(사업신용도)조사

### (3) 구비서류

- 가축계열화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라. 대상자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자율적으로 가축계열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업체로서 규모확대를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업체
- 계열사업에 필요한 일부시설 (자축생산, 도축, 가공, 유통, 사료제조시설등)을 확보하고 미비한 시설을 신축하거나 시설보완으로 계열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업체
- 기존의 지원을 받은 계열화업체로서 규모확충과 보완을 위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업체

## (2) 선정절차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추진가능성 여부를 검토한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추진

## 마. 사업시행

### < 추진상 유의사항 >

- 계열사업에 필요한 시설중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도축(도계)장, 사료공장, 가공장 등의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을 임대하는등으로 추진하고, 계열농가의 시설지원은 계열주체로부터 신청을받아 품목별 경쟁력제고사업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우선지원하거나, 계열주체가 희망시에는 동주체를 통하여 계열농가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가와와의 계약 내용이 공정하도록하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함
- 사업대상부지는 계열주체가 자체확보하여 소유권등기가 되어있고 법적제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않는 지역
- 사업규모는 자금능력, 관리능력,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추진
- 건축시설 등 사업비는 축산단지 지원기준과 설계자료등에 의거 사업비를 책정 하여야 함
- 사업비지원은 기지원된 유사사업여부를 조사하여 중복지원이 되지않도록 하여야함.
- 시.도지사는 가축계열화사업 예산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의 심의를 받아 신청하여야함
  - 사업계획 심의신청은 시장.군수가 사업계획검토후 도지사에게 신청, 시.도지사는 예산요청 1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가축계열화사업계획 심의를위한 자체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등을 실시하고 심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5.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착수 당년도에 사업을 착수치 못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은 회수조치
- 시·도지사는 사후관리지침을 수립 시달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하고 사업계획대로 시행토록 지도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계획대로 미 이행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 나.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 가축계열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도	당년 3월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 식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실적 (중간, 완료)	도	매년 12월 20일 완료후 1개월이내	사업 계획 대실적대비
업체별 계열화사업생산실적(지정 업체별, 축종별구분, 1년간실적)	도	익년 1월25까지	별지 제2호 서 식

###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4-9434~5),  
축협중앙회 가공식품 사업부 (02 224 8114)
- 시·도 : 각 시·도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별 표 1]

가축계열화사업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담
종축생산	○ 종돈장	○ 종계장, 부화장
사육시설	○ 돼지사육시설 및 장비 - 돼지경쟁력제고사업 지원 내용 참조	○ 닭사육시설 및 장비 - 닭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내용 참조
도 축 장 (도계장)	○ 증.개축시에만 지원	○ 좌 동
가 공 시 설	○ 가공 및 저장시설 ○ 기계.기구.장비	○ 좌 동 ○ 좌 동 * 계란집하장, 난가공공장 포함
판 매 시 설	○ 냉동.냉장시설 및 차량	○ 좌 동
기 타	○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 좌 동

## [ 별지 제1호 서식 ]

### 가축 계열화사업 계획서(작성요령)

#### 가. 계열화 사업자 현황

- 일반현황 (소재지, 대표자경력, 회사설립년도등 )
- 최근 3년간 축산관련사업 추진실적
- 인력 및 자산, 시설보유현황(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의규모, 생산 및 용도별 처리 능력을 기재

#### 나. 계열화생산 사업계획 (향후 5년간 장기계획)

- 사업개요
- 신규시설 확보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
  - 사업비투자계획 및 사업추진기간은 2년간
- 계약 생산 방법
  - 생산자재 공급방법 (자축, 사료, 연료, 약품등)
  - 농가와의 계약내용
  - 농가 확보지역 및 방법(년차별 확대 계획)
  - 농가 지도인력.장비 확보 및 농가지도 방법
- 생산물의 수집.도축.가공 및 판매방법(년차별 계획)
  - 수집(수수료,수매 등)
  - 도축(자가, 임대, 위탁 등 구분)
  - 가공(부분육, 육가공등 구체적으로 )
  - 판매(직판, 체인점,공판장위탁등 구체화)
- 생산된 축산물의 브랜드화 계획(제품종류, 상품명 등)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자원별로 구분
  - 지원사업비의 투자계획
- 자금상환계획
- 손익 추정분석(사업개시년도로 부터 5개년간)
  - 기업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에 따라
- 계열 생산농가의 생산비절감 효과 및 소득추정(규모별 구분)
- 사업추진체계도
  - 자축생산 및 자재공급 → 생산물의 수집 → 도축 → 가공 →유통까지 사업체계도

## 다. 기타 첨부서류

-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계약서 ( 1농가분의 건본 1부 첨부 )
  - 단, 개별농가간의 계약서 사본은 도지사가 확인비치 활용
- 계열농가별 사육시설 및 가축사육두수, 계열농가시설 확충계획 등
- 자축, 사료, 기타생산자재등 공급계약서 사본
- 도축, 가공, 판매조직 확보등의 현황
- 도지사의 검토의견 및 지도계획서
- 영농조합법인등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 증빙서류
- 시설부지 확보(등기부 등본) 및 법적제한 유무 증빙서류
-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증빙서류
- 축산기술연구소의 가축계열화사업 계획 심사서류및 기타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

계열화 업체별 생산사업 추진실적 보고

○ 업체명 :

○ 축종 :

○ 추진실적

	단 위	계 획	실 적	%	비 고
○ 계열농가수	호				
○ 자축입식	두,수				
○ 사료공급	톤				
○ 생산량	두,수				
○ 수집량	"				
○ 도축량	"				
○ 판매량	"				
- 국내					
- 수출					

\* 1. 보고대상 : 기존업체 < 지원, 지정포함 >, 신규업체

2. 사업실적이 부진한업체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을 비교란에 기술

[ 별지 제3호 서식 ]

가축계열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보고

1. 계열업체 현황

○ 업체명 :

○ 대표자 :

( 전화 : )

○ 주소 :

○ 사업장위치 :

2. 년차별 농가확보 및 판매계획

	'96	'97	'98	'99	2000	비 고
농가확보	호					
생산물판매	두					

3. 사업비 투자계획

단 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1 년 차		2 년 차		합 계		
		용 자	자 담	용 자	자 담	용 자	자 담	합 계

4. 사법별 추진계획

( 인.허가 및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5. 첨 부 :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 축산물검사(공공)

### 1. 목 적

- 축산물(육류 및 우유등)의 위생적 처리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과 양축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 2. 추진방향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산 축산물의 차별없는 검사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 검사 장비의 조속 확보
- 육류의 위생적 처리 및 부정육류의 유통예방을 위한 위생검사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능력 향상 기술교육

### 3. 투융자계획

####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 업 비	계	1,872	2,040	6,675	12,086	5,202	-	27,875
	국 고	1,402	1,460	3,474	6,170	2,836	-	12,342
	지방비	470	580	3,201	5,916	2,366	-	12,533
	용 자	-	-	-	-	-	-	-
	자 담	-	-	-	-	-	-	-

#### 나. '96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국 비	지 방 비	계	
검사장비 지원	7종 300점	2,475	2,475	4,950	
검사재료비	노축검사, 원유검사, 잔류물질검사 등	200	-	200	
기술교육	축산물검사원교육, 수의사연수교육	73	-	73	
공수의위촉	360명	726	726	1,452	
계		3,474	3,201	6,675	

#### 4. 사업추진계획

##### 가. 검사장비 지원

##### 1)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대, 천원)

장비명	수량	단가 (천원)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Charm	12	40,000	240,000	240,000	480,000	
GC/MS	3	120,000	180,000	180,000	360,000	
T L C	115	2,000	115,000	115,000	230,000	
잔류물질생체 신속검사기	115	4,000	230,000	230,000	460,000	
세균수검사기	20	80,000	800,000	800,000	1,600,000	
체세포수검사 기	20	70,000	700,000	700,000	1,400,000	
미생물검사기	15	28,000	210,000	210,000	420,000	
계	300		2,475,000	2,475,000	49,500,000	

\* 시도별 사업량은 추후 통보

○ 검사장비구입을 위한 국비에산은 조기배정 계획인바 각 시·도에서는 검사장비  
조기구입 및 설치완료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장비구입에 따른 요령

Charm : 육류중 잔류물질의 계열별 검사를 위한 장비

GC/MS : 잔류물질검사서 최종 잔류물질의 정량확인을 위한 장비

T L C : 잔류물질(설파제) 간이검사용

잔류물질생체 신속검사기 : 생체(혈액·혈청등)를 이용한 잔류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장비

세균수검사 : 원유중 세균수 검사장비

체세포검사 : 원유중 체세포수 검사장비

미생물검사 : 육류에 있어서 미생물(주로 살모넬라균)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

나. 재료비 지원

1) 사업량 및 사업비(재료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 산	비 고
도축검사	18,000천두	3,913	도축검인용색소
오염도조사	1,500건	7,500	세균검사
잔류물질검사	75,750건	160,126	
원유위생검사	25,000호	16,250	
원유검사장비검증	2종류	12,200	
계		199,988	

\* 시·도별 사업량은 추후 통보

2) 사업내용

< 도축검사 > - 도축검사후 합격표시 검인을 위한 검인용 색소재료비

<오염도조사> - 육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도축장에서 육류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일정량의 표본조사

<잔류물질검사> - 육류중 유해성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검사

- 도축전·후 간이검사 : 75,000건
- 계열별 및 정량 정밀검사 : 750건

<원유위생검사> - 전국 25,000개 목장에 대한 원유의 위생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낙농가 지도에 활용

< 원유검사장비 검증 >

- 사업추진기관 : 수의과학연구소(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기간 : '96. 1 - '96. 12
- 자동검사장비 검증대상 : 집유장의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자동검사측정기기
  - ※ 세균수 측정기기 : Bactoscan, Bactometer, Malthus
  - 체세포수 측정기기 : Fosomatic, Somacount
- 검증회수 : 정기검증 - 년 2회  
수시검증 - 필요시
- 검증방법 : '95통합실시 요령 검증방법과 동일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의 세균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유대지급을 위한 원유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집유장에서 보정계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를 통해 수의과학연구소로 부터 검증을 받아 사용가능

다. 기술교육

1) 축산물검사원 교육

가) 사업내용

- 사업주체(교육실시기관) :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 실시기간 : '96년 2회, 교육기간 : 1주
- 교육대상 및 내용

대 상	내 용	비 고
시·도가축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축산진흥원) 연구·수의직 축산물검사요원 60명 (30명×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류물질검사방법 및 장비활용기술</li> <li>○ 도축검사요령</li> <li>○ 원유검사요령</li> </ul>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 자체계획에 의해 실시



## 기자수첩

### 최준호

농정사회부



“이런 황당한 예산안을 짜다니...”

국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내년도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서 흥분했다.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 사업’ 예산으로 13억원이 새로 편성된 탓이다.

사업 내용에 대한 정부의 설명 자료는 이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멜라민 사태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논란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

유무를 알아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멜라민 과동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는데...”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홍보 예산을 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멜라민 등의 안전

## 황당한 예산안

한 정보 전파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활성화(필요성 제기)’.  
쉽게 말해 홍보 부족으로 수입 식품 안전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홍보 예산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사업 개요를 보면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은 사업 개요. ‘초·중·고생 및 일반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65회), 소비자단체 주관 설명회(100회)...’.

여기서 체험 프로그램이란 뭘까. 국회 관계자는 “좀 과장하면 학생들에게 수입 쇠고기와 멜라민이 든 식품을 먹여 본 뒤 이상

성을 알리기(?) 위해 알토란 같은 국민 세금으로 수입 식품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

지금은 쌀값 하락으로 ‘풍년 시름’에 잠겨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식품 안정성 홍보를 위해 전체 예산안(14조6,434억원) 중 ‘새 밭의 괴’에 불과한 13억원을 쓰는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아껴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내년 예산을 확정하게 될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별표1]

##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시·도별	'96 급식계획			보조금 배정액 천원
	보조급식 천명/일	일반급식	계(전체급식)	
서울	15.3	1,340.7	1,356	550,800
부산	2.2	531.8	534	79,200
대구	7.7	334.3	342	277,200
인천	1.4	304.6	306	50,400
광주	4.5	181.5	186	162,000
대전	2.5	177.5	180	90,000
경기	8.3	927.7	936	298,800
강원	9.4	194.6	204	338,400
충북	11.9	180.1	192	428,400
충남	21.1	224.9	246	759,600
전북	35.8	240.2	276	1,288,800
전남	29.5	264.5	294	1,062,000
경북	22.1	331.9	354	795,600
경남	6.5	521.5	528	234,000
제주	1.8	64.2	66	64,800
계	180	5,820	6,000	6,480,000

※ ① 전체 급식계획은 시·도별 초·중·고등학생수 비율에 의해 배정함.

○ 자료 : '95 교육통계연보(교육부)

② 보조급식계획은 '95. 1~7월까지 누계 실적비율에 의해 배정함.